



2026. 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결산분석시리즈 IV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김경호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이상준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권인오 예산분석관

현서린 예산분석관

박은형 예산분석관

문소희 예산분석관

**지 원** | 장유진 행정실무원

강채현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V

#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 행정안전위원회 】

2026. 7.

---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회위원회의 심의(2026. 7. 8.)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

# 발간사



2025년은 2024년 말 이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어, 회계연도 중 새 정부가 출범하는 등 재정운용 여건의 변화가 있었고, 연초 발생한 영남지역 대형 산불과 미국의 관세정책 등 예기치 못한 재난과 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도 요구된 한 해였습니다.

당초 2025년도 본예산은 총수입 651.6조원, 총지출 673.3조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6월 대통령선거 전·후로 각각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은 각각 642.4조원, 703.3조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결산 결과 국세수입은 373.9조원으로 추경(372.1조원) 대비 1.8조원 증가하였으나 본예산(382.4조원) 대비로는 8.5조원 감소하였으며, 총수입은 추경 대비 5.0조원 감소한 637.4조원, 총지출은 추경 대비 19.1조원 감소한 684.1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리재정수지는 104.2조원 적자로 추경(111.6조원 적자) 대비 7.4조원 개선되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결산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회계연도 정부의 재정운용을 분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 8종, 22권으로, 「결산 재정총량 분석」, 「결산 분야별 자원 배분 분석」, 「결산 총괄 분석」, 「결산 위원회별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국가재무제표 분석」,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으로 구성되며, 특히 주요 재정현안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한층 강화하여 기존 3권에서 4권으로 확대 발간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2025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지 동 하



## 행정안전위원회

### [행정안전부]

#### I. 결산 개요 / 5

- 1. 현 황 ..... 5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0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1

#### II. 주요 사업 분석 / 12

##### 〈일반회계〉

-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분석 ..... 12
- 2.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사업 실효성 제고 필요 ..... 20
- 3. 지방이양사무관리시스템 주요 과업 미구현 문제 ..... 27
- 4.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R&D)추진실적 미흡 ..... 35
- 5.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 지자체 정보자원관리 강화 필요 ..... 39
- 6. 민주화운동지원사업 예산과다 편성에 따른 집행부진 ..... 44
- 7.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사업 관리 부적절 ..... 50
- 8. 공직선거추진 사업 예비비 불용과다 문제 ..... 59
- 9.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실효성 확보 방안 모색 필요 ..... 63
- 10. 디지털정부서비스 안정적 추진기반 조성사업 추진체계 정비 필요 ..... 68



# CONTENTS

- 11. 범정부 정보화 투자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통합 추진 내실화 필요 ... 73
- 12. 제주 4·3보상금 타 사업으로의 연계적 이용 과다 개선 필요 ..... 79
- 13.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집행내역 및 후속대책 분석 ..... 83
- 14. 국가정보자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의 일관성·체계성 제고 필요 ..... 89
- 15.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정자원관리원 ODA사업 수행상 문제점 ..... 95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16.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운용현황 분석 ..... 103
  - 16-1.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경과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변화 분석 ..... 104
  - 16-2. 결산상잉여금 활용 운용경비 지출내역 적정성 재검토 필요 ..... 114
  - 16-3.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자원 집행 지연 문제 ..... 121
- 17.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분석 ..... 125
  - 17-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사업 사전검토·일관성 강화 필요 ..... 126
  - 17-2. 지역사랑상품권 정보제공을 위한 오픈API 제공 실효성 미흡 ..... 135
- 18.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 신속집행 및 사업설계 정비 필요 ..... 141
- 19.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몰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채용에 따른  
종료 후 보조사업 추진 문제 ..... 148
- 20.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실적의 실효성 제약 문제 ..... 154
- 21. 기타경상이전수입 국고보조금 반납금 정산관리 강화 필요 ..... 161

## [경찰청]

### I. 결산 개요 / 169

- 1. 현 황 ..... 169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175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176

### II. 주요 사업 분석 / 177

#### 〈일반회계〉

- 1. 바디캠 도입방식의 사전검토 미흡 부적절 ..... 177
- 2. 예산에 미편성된 신형방탄복 사업 집행 부적절 등 ..... 182
- 3. 전자충격기 도입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 부적절 ..... 186
- 4. 경찰병원 국외교육여비 연례적 불용 부적절 ..... 189
- 5. 마약검사키트 구매사업 이월 부적절 및 검사의 실효성 확보 필요 ..... 193
- 6. 치안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고려 없는 조직 개편 부적절 ..... 197
- 7. 과거 납기지연 업체에 대한 불이익 부과를 위한 발주 지연 부적절 ..... 201
- 8. 경찰의 재정 외 자금 운영 부적절 ..... 206
- 9. KOICA 사업비의 경찰청 직접 집행에 따른 문제점 등 분석 ..... 211

## [소방청]

### I. 결산 개요 / 219

- 1. 현 황 ..... 219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223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224

### II. 주요 사업 분석 / 225

#### 〈일반회계〉

- 1. 국립소방병원 출연금 집행 부진 및 개원 준비 지연 ..... 225
- 2. 무인파괴방수차 도입·운용 체계 개선 필요 ..... 232
- 3.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 일괄교부로 인한 이월 과다 발생 ... 239
- 4.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신규 데이터 적합성 및 운영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 244
- 5.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사업 지연 및 이송병원선정 기능 실효성 미흡 ... 253
- 6.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 집행 부진 및 장기 미완료 ..... 258

## [인사혁신처]

### I. 결산 개요 / 265

- 1. 현 황 ..... 265
- 2.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272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273

## II. 주요 사업 분석 / 274

### 〈일반회계〉

- 1. 공무원 재해보상사업운영 현황 분석 ..... 274
  - 1-1. 재해보상심의 심의·심사 지연에 따른 재해공상자 부담 가중 해소 필요 ..... 275
  - 1-2.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 ..... 280
- 2. 소청심사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 287
  - 2-1. 소청심사 처리 지연 문제 개선 필요 ..... 288
  - 2-2. 소청심사위원회 관서운영경비 집행관리 개선 필요 ..... 293
- 3.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점 ..... 297
- 4. 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 301
- 5.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관서운영경비의 관련 지침 미부합 집행 시정 필요 ..... 305

### 〈공무원연금기금〉

- 6. 대여학자금융자 및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사업 분석 ..... 313
  - 6-1. 대여학자금 융자사업 연례적인 계획변경 문제 ..... 314
  - 6-2. 대여학자금 수탁금 적기 반환 필요 ..... 319
- 7. 주택사업관리 내실화 방안 모색 필요 ..... 32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I. 결산 개요 / 331

- 1. 현 황 ..... 331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335
- 3. 2025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 336

## II. 주요 사업 분석 / 337

### 〈일반회계〉

- 1.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회계처리 방식 변경 필요 ..... 337
- 2. 예비비의 면밀한 추계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편성 필요 ..... 341
  - 2-1.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집행 현황 분석 ..... 343
  - 2-2.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집행 현황 분석 ..... 349
- 3. 서울국제선거포럼의 계약 방식 개선 필요 등 ..... 354
- 4. 포상금 지급 실적 미흡 문제 ..... 361
- 5. 특별정려금 지급 필요성 및 지급방식 재검토 필요 ..... 366
- 6.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개선 필요 ..... 370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I. 결산 개요 / 381

- 1. 현 황 ..... 381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384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I. 결산 개요 / 387

- 1. 현 황 ..... 387
- 2.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 390

#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630억 7,700만원이며, 1,646억 2,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78.9%인 1,298억 4,600만원을 수납하고 347억 7,3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2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143,392	143,392	92,841	77,065	15,775	2	83.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9,685	19,685	71,779	52,781	18,998	0	73.5
지역자율계정	5,766	5,766	26,363	25,814	549	0	97.9
지역지원계정	13,919	13,919	45,391	26,942	18,449	0	59.4
제주특별자치도계정	0	0	25	25	0	0	1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0	0	0	0	0	0	0
합 계	163,077	163,077	164,620	129,846	34,773	2	78.9

자료: 행정안전부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86조 2,431억 4,100만원이며, 이 중 99.8%인 86조 934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305억 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91억 8,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추경포함)	예산 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82,554,813	82,815,544	82,677,673	30,344	107,526	99.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427,370	3,427,597	3,415,772	162	11,663	99.8
지역자율계정	252,898	252,898	252,898	0	0	100.0
지역지원계정	3,158,051	3,158,278	3,146,453	162	11,663	99.6
제주특별자치도계정	10,303	10,303	10,303	0	0	100.0
세종특별자치시계정	6,118	6,118	6,118	0	0	100.0
합 계	85,982,183	86,243,141	86,093,445	30,507	119,189	99.8

자료: 행정안전부

##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행정안전부의 자산은 14조 1,344억 300만원, 부채는 1조 219억 700만원으로 순자산은 13조 1,124억 9,6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2조 2,490억 8,100만원, 유·무형자산 11조 8,592억 8,800만원, 기타자산 260억 3,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조 1,919억 2,800만원(18.4%) 증가하였다. 이는 미수채권의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2조 1,650억 7,2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1조 184억 2,300만원, 기타부채 34억 8,4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8,425억 1,500만원(469.7%) 증가하였다. 이는 기타미지급비용의 증가 등에 따라 차입부채가 8,412억 7,0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4,134,403	11,942,475	2,191,928	18.4
Ⅰ. 금융자산	2,249,081	84,009	2,165,072	2,577.2
Ⅱ. 유·무형자산	11,859,288	11,817,655	41,633	0.4
Ⅲ. 기타자산	26,034	40,812	△14,778	△36.2
부 채	1,021,907	179,392	842,515	469.7
Ⅰ. 차입부채	1,018,423	177,153	841,270	474.9
Ⅱ. 총당부채	-	-	-	-
Ⅲ. 기타부채	3,484	2,239	1,245	55.6
순 자 산	13,112,496	11,763,084	1,349,412	11.5
Ⅰ. 기본순자산	4,043,523	4,043,523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4,205,510	2,851,713	1,353,797	47.5
Ⅲ. 순자산 조정	4,863,463	4,867,847	△4,384	△0.1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84조 7,116억 1,1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84조 3,532억 3,200만원, 관리운영비 4,685억 1,600만원, 비배분비용 341억 8,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731억 7,400만원, 비배분수익 711억 5,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14조 4,832억 7,500만원(20.6%) 증가한 84조 7,116억 1,100만원이며, 이는 지방재정경제 프로그램원가의 증가 등으로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 대비 14조 4,227억 5,9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총 20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지방교부세 프로그램(64조 8,464억 3,200만원), 지방재정경제 프로그램(13조 1,396억 3,6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434억 2,500만원과 경비 1,250억 9,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기타국가운영비용 341억 7,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2024	전년도 대비 증감	
	회계연도 (A)	회계연도 (B)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84,280,058	69,857,299	14,422,759	20.6
가. 프로그램 총원가	84,353,232	69,958,411	14,394,821	20.6
나. 프로그램 수익	73,174	101,112	△27,938	△27.6
II. 관리운영비	468,516	440,163	28,353	6.4
III. 비배분비용	34,187	3,798	30,389	800.1
IV. 비배분수익	71,150	72,924	△1,774	△2.4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84,711,611	70,228,336	14,483,275	20.6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84,711,611	70,228,336	14,483,275	20.6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1조 7,630억 8,400만원이고, 기말 순자산은 13조 1,124억 9,6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조 3,494억 1,200만원(11.5%)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4조 4,832억 7,500만원 증가,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980억 3,800만원 증가,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15조 9,737억 9,800만원 증가 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86조 1,959억 8,9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305억 8,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43억 8,4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 (A)	2024 회계연도 (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1,763,084	12,002,232	△239,148	△2.0
II. 재정운영결과	84,711,611	70,228,336	14,483,275	20.6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6,065,408	70,091,610	15,973,798	22.8
IV. 조정항목	△4,384	△102,422	98,038	95.7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3,112,496	11,763,084	1,349,412	11.5

자료: 행정안전부

### 다. 재정 구조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결산은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2개 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기금 간 거래는 없었다.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재정흐름도]

(단위: 억원)

일 반 회 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771	826,777	528	34,158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디지털서비스개방(정보화), ② AI 기반 안전신고정보의 과학적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③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등이 있다.

디지털서비스개방(정보화) 사업은 중계플랫폼 구축·운영 및 서비스 개방 확대와 관련하여 민간앱(웹)을 통한 공공 서비스 개방의 비용 대비 편익을 고려하여 신규 구축 10종의 개발비 19억원이 감액(104억원 → 85억원)되었다. AI분석 안전신고정보의 과학적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은 '24년 사업지연에 따라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3개월분에 해당하는 5억원이 감액(16억원 → 11억원)되었고,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사업은 전년도 집행 부진 등의 사유로 6억원이 감액(81억원 → 75억원)되었다.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사업이 있다.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빈집정비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한 사업 집행을 위해 노력한다”가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sup>1)</sup>.

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행정안전부는 ① 세계 최고의 디지털정부 구현, ② 지자체 경쟁력 제고 및 사회 통합·공동체 발전 증진, ③ 지역특화발전 지원, ④ 정부자원 효율적 관리 및 과학수사 신뢰 제고 ⑤ 국민안전시스템 구축에 따른 안전한 사회 구현 ⑤재난관리 역량강화로 재난피해 최소화를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2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차등 지원을 도모했으나, 제2회 추경에서 지자체 집행 쏠림이 내재된 사업 설계와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속집행 인센티브의 사후 도입, 회차별 집행실적 관리 미흡으로 당초 계획한 유형별 차등 지원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난 상황에서 유관기관 간 단일 통신망을 제공·활용하여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목적하에 총 1.5조원 규모(’21~’25)의 재정을 투입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 중이나 품질 저하, 필수기능 미구현 등의 사유로 경찰·소방 등 주요 기관이 사용망·기존 별도 망을 병행 이용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의지연으로 일부시설에서는 활용이 불가하는 등 한계가 노정되고 있으므로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1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분석

가. 현 황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sup>1)</sup>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동 사업 예산 12조 1,708억 6,700만원 중 99.6%인 12조 1,266억 4,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8,200만원을 이월했으며 440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민생회복 소비쿠폰	-	12,170,867	±2,874	12,170,867	12,126,645	182	44,040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되 소득 계층별로 차등을 두어 소득상위 10%에 해당하는 국민은 15만원, 일반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급하였다. 더불어 거주지에 따라서도 차등을 두어 비수도권지역 거주자는 추가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1인당 지원 금액은 15~55만원으로 상이하였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350-301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 개요]

구 분		지원단가			
지급 내용	시기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15만원	15만원	30만원	40만원
		① +3만원 ② +5만원	① +3만원 ② +5만원	① +3만원 ② +5만원	① +3만원 ② +5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계	15만원	25만원	40만원	50만원
① 18만원 ② 20만원		① 28만원 ② 30만원	① 43만원 ② 45만원	① 53만원 ② 55만원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방식 중 택1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사용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자 본인 주소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li> <li>· 신용·체크·선불카드: 신청자 본인 주소지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li> </ul>				
신청·지급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25.7.21.~'25.9.12.</li> <li>· 2차: '25.9.22.~'25.10.31.</li> </ul>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5.11.30.				

주: ①은 비수도권지역, ②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 나. 분석의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전 국민 대상으로 소득·지역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과 소득계층분포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분담비율 설정으로 지방비 부담의 불균형이 확인된 만큼 향후 유사 정책사업 추진 시 이를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속한 지급과 효율적 대민행정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상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12조 1,605억원 중 12조 1,215억원을 집행하였고 실집행액은 11조 8,411억원 수준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해당연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90%(서울 75%)까지 상향했지만 대응지방비가 1조 6,820억 1,000만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이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치단체보조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sup>1)</sup>	실집행액 <sup>2)</sup>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12,115,900	12,076,931	11,805,179	1,677,164
상품권·선불카드 발행 부대비용	25,699	44,618	35,942	4,896
읍면동 보조인력 인건비	17,256			
노트북 등 장비 임차료	784			
자치단체 홍보비 지원 등	883			
합 계	12,160,522	12,121,549	11,841,121	1,682,060

주: 1) 현재('26.6.11.) 카드취소분 등을 반영한 정산절차 중으로 최종 실집행액과는 상이할 수 있음

2) 국비 실집행액에 지방비 분담률을 곱하여 계상한 금액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이같이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집행 시 지자체별 재정여력을 감안한 보조율 다층화의 필요성은 긴급재난지원금(2020년) 추진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4차례 추진되는 동안 행정안전부에서는 보조율은 서울 70%, 그 외 지역 80%라는 일률적 구조로 설정하였다.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사업 국고보조율 내역]

(단위: %)

('20)긴급재난지원금		('21)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부안	국회확정	정부안	국회확정	정부안	국회확정
서울 70	평균 85.4	서울 70	서울 70	서울 70	서울 75
기타 80		기타 80	기타 80	기타 80	기타 90

주: 2020년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대상자 추가가 있었으며 국회 증액분은 모두 국비로 부담하면서 국고보조율이 조정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그러나 서울 외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력과 지원금 사업수요에 상당한 이질성이 존재한다. 특히 동 사업은 이전 코로나19 상생지원금 등과 달리 소득계층과 거주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원~55만원으로 지원금이 상이하여, 지자체별 인구 특성에 따라 지방비 부담 규모에도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가 오히려 높은 부담을 지는 반면, 재정여력이 양호한 지자체의 부담은 낮게 나타나는 역진적 현상도 확인된다. 이는 지방비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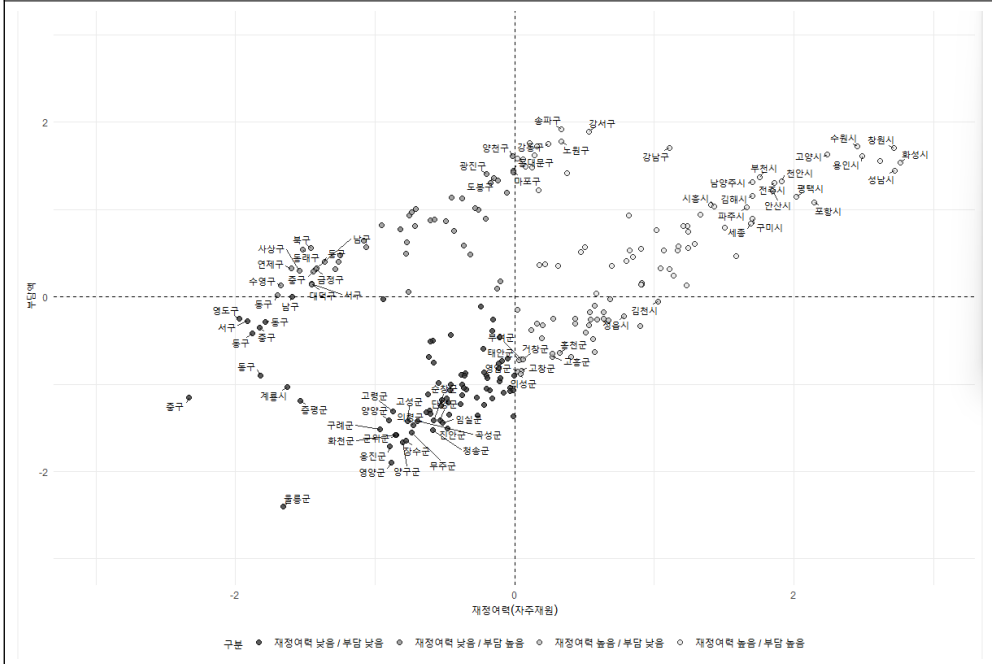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인구수가 예산소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재정자주도와 세입 규모가 낮은 대구·광주·대전 같은 도시형 지자체가 자체사업 세출예산(예산 중 국고보조사업과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금액)대비 지방비 부담은 오히려 더 무거운 반면, 세입 규모가 비슷하거나 큰 도 지역은 지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방비부담 주체인 시군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면 이러한 역진적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시·도별 재정여력과 지방비부담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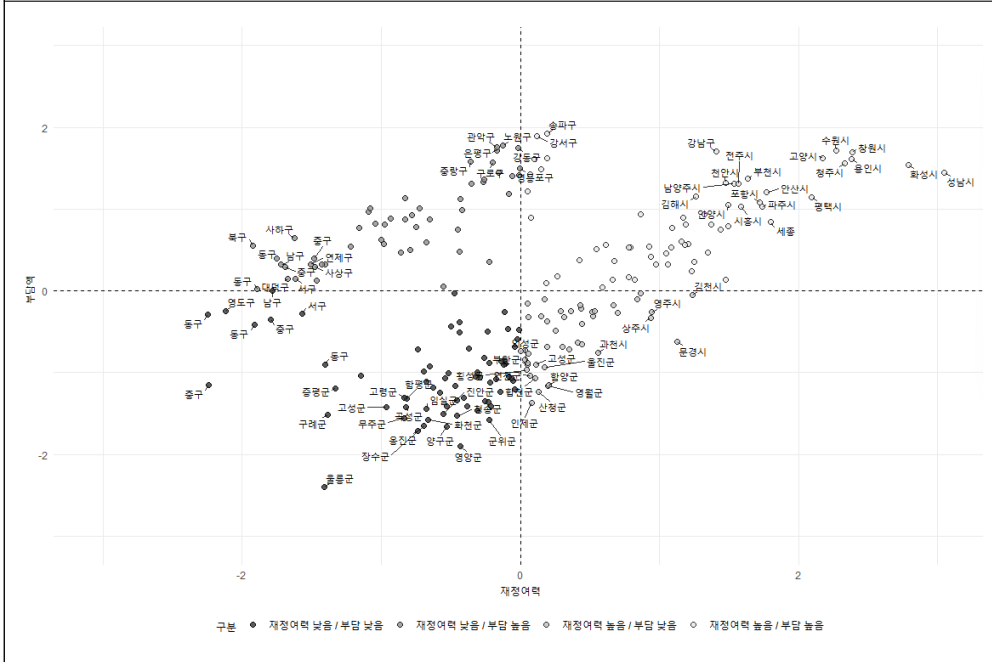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시·도명	재정력		지방비 부담액(B)	부담률 (B/A)
	자주재원 세입예산	자체사업 세출예산(A)		
서울	34,592,696	20,812,903	566,296	2.72%
부산	9,890,315	5,746,608	94,699	1.65%
대구	7,040,362	4,000,252	68,545	1.71%
인천	10,224,067	5,782,184	79,624	1.38%
광주	4,446,192	2,344,966	40,884	1.74%
대전	4,256,572	2,105,080	41,263	1.96%
울산	4,156,837	2,237,539	30,802	1.38%
세종	1,162,439	767,669	10,812	1.41%
경기	41,601,960	26,128,790	342,370	1.31%
강원	10,615,414	5,091,492	44,846	0.88%
충북	8,122,571	4,339,223	46,578	1.07%
충남	11,926,594	6,209,000	62,612	1.01%
전북	10,377,954	4,750,878	52,309	1.10%
전남	12,714,860	6,516,329	53,669	0.82%
경북	16,667,705	8,461,347	75,357	0.89%
경남	15,112,446	7,589,341	94,556	1.25%
제주	4,395,215	2,558,091	19,143	0.75%

### 시군구별 자주재원 세입예산 대비 지방비부담액 비교



### 시군구별 자체사업 세출예산 대비 지방비부담액 비교



주: 2025년 각 자치단체별 당초예산(순계)기준  
 자료: 지방재정365(<https://www.lofin365.go.kr>)공시자료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한편, 금년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이전 사업의 집행 내역에 대한 환류 없이 지역별·대상별 차등폭을 확대하였음에도, 국고보조율은 일률적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지원 수요가 큰 지자체일수록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 구조인데,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소득하위 70% 가구원 비중이 높은 경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불균형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대규모 국고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및 사업 수요의 이질성과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역진성 문제를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일률적 보조율 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여건을 반영한 보조율의 차등화 및 정교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추진 과정에서 예산 편성의 구조적 미비로 사업 경비의 이·전용 및 불용액 과다 발생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구조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편성 시 이를 환류하지 않고 기존 편성 방식을 답습하는 등 재정 운용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사전적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중 자치단체보조금을 제외한 운영경비는 총 103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50.7%에 해당하는 52억 4,900만원을 불용 또는 이월하고 28억 7,400만원(27.8%)은 전용하였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운영경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명	추경예산액	전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일반수용비 등 <sup>1)</sup>	1,276		1,276	1,060	182	34
공공요금및제세	-	2,874	2,874	2,546	-	328
민간위탁사업비	1,490		1,490	1,490	-	-
자산취득비	7,579	△2,874	4,705	-	-	4,705
합 계	10,345		10,345	5,096	182	5,067

주: 1) 일반수용비, 관리용역비, 국내여비, 사업추진비, 일반연구비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이는 2021년 재난지원금 사업 집행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예산편성 오류와 과다편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전년 편성 구조를 답습하여 일률적으로 증액하고, 2023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주도로 추진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네이티브 전환 기조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행정안전부는 2021년에도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추진 상황과 달라진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지급시스템<sup>2)</sup> 관련 예산편성에 오류를 범했다.<sup>3)</sup> 그리고 구축 과정에서 예산 구조의 오류를 인지하여 일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재배정하고 일부는 세목을 조정했으며,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해 약 10.9억 원을 지역사회상품권 발행지원사업으로 전용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편성 시 2021년과 동일한 내역 및 비목 구조를 유지한 채 오히려 11.6% 이상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2021년과 2025년 재난금 지급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예·결산 비교]

(단위: 백만원)

2021년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구분	예산액	집행액	구분	예산액	집행액
· 민간위탁사업비	973	973	· 민간위탁사업비	1,490	1,490
· 자산취득비 - HW도입, SW도입비용	6,789	103 <sup>1)</sup>	· 자산취득비	7,579	-
· 일반연구비, 감리비 등	-	1,095	· 공공요금 및 제세	-	2,546

주: 1) 행정안전부 결산서 상 금액으로 실제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재배정되어 약 54억원이 집행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 2)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대상자와 선정기준 등을 넘겨받아 조회·신청 처리시스템에 보관하되 새울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 및 제휴은행과 연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AP개발 비용과 암호화 및 연계솔루션, DB 구축비용 등이 소요된다.
- 3) 2020년에는 지원금 지급시스템 구축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직접 구축(‘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사업’)하여 자산취득비 약 38억원을 집행하였다. 그런데 2021년 추진방식을 민간위탁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이로 인해 집행과정에서 SW사용료 및 감리비 재원마련을 위해 자산취득비 중 10억 9,50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연구비, 감리비로 전용하고, HW·SW 도입에 대한 자산취득비의 경우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자체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55.9억원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재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누락되어 행정안전부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상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67억 8,900만원 중 1억 3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38억원을 들여 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으나 사업 종료 후 이를 폐기하였고, 2021년 코로나상생국민 지원금 지급 시에는 동일한 기능의 시스템을 67억원을 들여 재구축하였다. 2025년에도 2021년 구축한 시스템의 주요 서버가 다른 사업에 전용되어 있어 신규 구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9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사업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시스템을 폐기하고 재구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행정안전부는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전환하였다.

[전 국민대상 지원금 사업 지급시스템 관련 예산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 긴급재난지원금	(‘21)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25) 민생회복소비쿠폰
예산액	-	7,762	9,069
집행액	3,847 <sup>1)</sup>	103	4,063
추진방식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직접수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행 및 민간위탁(지역정보개발원)	민간클라우드 활용 및 민간위탁(지역정보개발원)

주: 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사업 예산에서 ‘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 사업으로 전용하여 재원을 확보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작성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급사업 특성상 긴급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으며, 집행과정에서 예산 소요를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사업부터 유사 사업 추진 시마다 1~2억원의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경과 기록 및 성과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정책학습을 제도화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직접 주도해 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운영경비의 과다한 계획변경 및 불용은 당초 사업계획이 기존 집행사례에 대한 학습과 사업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데 기인한 측면이 있으며 추진 여건상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과거 집행사례 및 여건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한 검토를 수행하여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sup>1)</sup> 사업은 경찰·소방·지방정부 등 재난관련 기관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PS-LTE<sup>2)</sup> 기술 방식의 전국 단일망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예산현액 1,127억 7,400만원 중 99.9%인 1,127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112,752	112,752	-	22	112,774	112,748	-	26	129,07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단일 공통 주파수를 사용함으로써 국가적 통합 지휘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현장에서 유관기관 간 실시간 교신을 가능케 하는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추진하였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기존 통신망이 음성 통화위주의 제한된 대역폭을 제공했던 것과 달리<sup>3)</sup>, 멀티미디어 정보전송이 가능하고 긴급 통신 우선순위 기술을 적용하여 통신 폭주 및 극한 상황에서도 중단 없는 지휘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이 기대효과로 제시되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 1) 코드: 일반회계 3031-502
- 2) PS-LTE(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음성, 문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서비스가 가능한 재난안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을 의미하며, 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합공공망용(재난안전통신망+철도통합무선통신망+해상초고속무선통신망)으로 700MHz 주파수대역 확정 후 고시하였다.
- 3) 재난안전통신망이 도입되기 이전 각 기관의 재난통신망은 TRS, VHF/UHF, 위성망 등 서로 다른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해당 통신망에 맞는 상이한 단말기를 운용하였으며, 서로 다른 통신 기반을 활용함에 따라 기관 간 교신이 어려웠고 재난 대응 시 여러 단말기를 동시에 휴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했다. 또한 기존 재난통신망은 서비스 지역이 제한되고 단방향의 음성통화만 제공하여 현장의 복합적인 상황을 공유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통신 인프라가 분산되어 있어 유지관리 및 중첩적인 커버리지 확보에 비효율성이 있었다.

[기존 재난통신망과 재난안전통신망 비교]

구분	기존 재난통신망	재난안전통신망
기술방식	TRS, VHF/UHF, 위성망 등	PS-LTE
기관별 차이여부	각 기관별 상이한 통신망 이용	모든 기관이 단일 통신망 사용
지역	통신망별로 일부 지역 서비스 제한	전국
서비스	단방향 음성 중심 서비스	고화질 영상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사업은 2015년 세부추진계획이 확정된 후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거쳐 2021년 5월 준공 및 서비스 개통이 이루어졌으며, 총사업비는 1조 4,776억원 규모('15~'25)이다.<sup>4)</sup>

[재난안전통신망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구축사업	순수 운영				
		2015~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b>합계 (①+②)</b>	<b>1,477,614</b>	<b>548,757</b>	<b>183,800</b>	<b>185,319</b>	<b>186,160</b>	<b>182,247</b>	<b>191,332</b>
	구축비	383,787	381,925	493	388	327	327
	단말기	400,580	115,637	87,863	70,750	41,599	37,968
	운영비	693,247	51,195	95,444	114,181	144,234	143,952
① 총사업비 내	소계	862,634	736,531	986	776	654	654
	구축비	383,787	381,925	493	388	327	327
	단말기	400,580	115,637	87,863	70,750	41,599	37,968
	운영비	78,267	3,923	6,872	13,502	17,990	17,990
② 총사업비 외	소계	614,980	47,272	88,572	100,679	126,244	125,962
	운영비(기타)	614,980	47,272	88,572	100,679	126,243.5	125,961.5
	기지국설치장소임차	121,183	16,187	10,894	20,125	24,659	24,659
	전송망임차	416,312	22,075	68,018	68,018	86,067	86,067
	상용망이용료	25,199	1,260	3,476	4,306	5,341	5,402
	전기료	39,709	5,066	4,211	6,207	8,075	8,075
	차량보험료	303.5	131	36	24	37.5	37.5
	무선국검사	12,273	2,553	1,937	1,999	2,064	1,721

자료: 행정안전부

4) 다만, 단말기는 각 기관에서 별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되어 6개 부처(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해안경찰청, 산림청, 보건복지부)에 나누어 편성·집행되고 있다.

## 나. 분석의견

재난 상황에서 유관기관 간 단일 통신망을 제공·활용하여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목적하에 총 1.5조원 규모('21~'25)의 재정을 투입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 중이나 품질 저하, 필수기능 미구현 등의 사유로 경찰·소방 등 주요 기관이 상용망·기존 별도 망을 병행 이용하고 있으며 철도시설 등 일부에서는 활용이 불가능한 등 한계가 노정되고 있으므로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종합계획(2018.5.)에 따라 국가기반시설, 도로 및 인구밀집지역 등을 커버리지 목표로 하여 재난망 전용 고정기지국을 구축하는 한편 그 외 지역은 철도망이나 상용망 등 다른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당초 ISP상 고정기지국당 커버리지 경계에서의 데이터처리량 기준은 512kbps였으나 예산 등 현실성을 고려하여 64kbps(전파 신호세기 -117dBm 수준)로 하향 조정되었고 총사업비 또한 6조 1,612억원 규모에서 1조 4,776억원 규모로 축소 조정되었다.

[재난안전통신망 사업 개요]

구분	ISP기준	시범사업결과 ( '16.8.)	사업계획 ( '16.10)	종합계획 ( '18.5)
국토면적 커버리지 비율	89.5%	89.5%	40.5%	-
고정기지국 수량	11,693개소	61,715개소	15,447개소	-
데이터처리량	512bkps	512bkps	64bkps	64bkps
총사업비	1조 8,953억원	6조 1,612억원	1조 9,611억원	1조 4,776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단. 이론상 고정기지국 1개소가 처리할 수 있는 단말기 수량 한계(전파반경 면적 내 300대)를 고려할 때 재난상황에서 일시 집중되는 통신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중송출 기능인 eMBMS(evolved Multimedia Broadcast Multicast Service)<sup>5)</sup> 기능을 도입하고 이후 관련 기술 확보 시 단말기 간 직접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D2D(Device to Device) 기능을 도입하여 한계를 보완하기로 계획하였다.<sup>6)</sup>

그런데 감사원 감사(2024.5.)에 따르면, 2021년 5월 재난망 준공 이후 일부 지역에서 통화품질 저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고, 행정안전부는 안정적 품질 유지를 위해 당초 -117dBm으로 설정한 상용망 전환기준을 -110dBm으로 상향 운영(일부 지역에서는 -104dBm)하여 커버리지 목표지역(국가기반시설 등)의 상당 부분을 재난망 전용 고정기지국이 아닌 상용망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나 집회 등의 상황에서는 재난망 전용 기지국 대신 상용망 기지국을 활용(랜웨어링)하도록 하거나 재난망 단말기의 상용망 강제 전환설정 기능을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사실상 재난망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매년 서울세계불꽃축제를 비롯하여 2025년 APEC 정상회의·헬러윈 행사 등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집회 시, 필수 지휘요원을 제외한 전체 근무자는 상용망으로 강제 설정하여 운영하고 통화그룹 수는 120개 이하로 유지하되 초과 운영이 필요한 경우 UHF 또는 상용망을 사용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왔으며, 2026년 3월 광화문 BTS콘서트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대규모 인파밀집 시에는 상용망 통신량까지 증가하면서, 축제 시작 시점부터 재난망·상용망 모두를 이용한 전반적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

5) 이론상 2,500여 대의 단말기가 동시 통신이 가능하다.

6) KDI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론상 고정 기지국을 통해 밀집도심의 경우 0.3km, 도심외곽의 경우 1.4km, 농어촌의 경우 3.3km 전파 반경 면적에서 300대의 단말기가 통신할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하여 통신을 시도하는 경우 통신 품질이 저하되거나 끊기는 상황이 발생한다. 재난상황에서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응자원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므로 고정기지국의 처리 한계를 벗어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행안부의 대(對)경찰청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관련 협조요청사항 공문 내용]

<p>가. 재난안전통신망 다중송출 기능 적용시 적정 통화그룹 수 120개 이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정 통화그룹수 초과 운영이 필요한 경우 UHF또는 상용망 함께 사용</li> </ul>
<p>나. 안정적인 현장운영을 위한 경찰 내부 교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휘요원만 재난망 사용, 기동부대 및 임시편성부대 팀원과 타청 동원부대는 상용망 사용</li> <li>· 재난망 단말기 스캔기능, 영상통화 사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 통화그룹 사용자의 데이터(문자, 사진) 사용, 개별송출 접속, 영상통화 시도 등으로 불필요한 트래픽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 필요</li> </ul> </li> <li>· 임시 편성부대는 부팀장까지만 단말기 소지 권고. 불요불급한 단말기 사용 자제</li> <li>· 상용망 자동 전용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대 초과시 무진공급 현상이 발생하므로 좁은 구간에 다수 인원이 투입되는 경우 필수 사용자 외 단말기 전원 OFF 설정</li> </ul> </li> <li>· 동원된 기동대 팀원은 재난망 단말기 상용망 강제설정으로 전환</li> </ul>

더욱이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해서는 현장영상 공유가 필수적임을 감안하여 별도로 45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였음에도, 통신망 품질 문제로 해당 기능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이다.

[재난안전통신망 응용서비스 개발 현황]

서비스명	주요내용	2022~2025년 추진현황	예산액
재난현장 영상정보 공유 서비스	기존 통신망 기반의 분산된 현장영상 개별 공유체계를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한 공유체계로 통합	(2022) 시범구축 (2023) BPR/ISP수립 (2024) 고도화 사업 (2025) 시스템 시범운영	(2022) 18억 * 행안부 10억, 협업기관 각 2억 (2023) 13.2억 * 행안부 5.2억, 협업기관 각 2억 (2024) 11억 * 행안부 3억, 협업기관 각 2억 (2025) 3억

자료: 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 결과 2025년 현재 재난안전통신망은 주 통신수단이자 단일 재난대응체계로서 본래의 기능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 당초 기관별 중복투자방지도 주요 정책 목표였으나 경찰은 재난망을 일부 지휘요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사용하면서 상용망을 사용해왔고, UHF 주파수를 새로 배분(24.8.)받아 예비무선망을 사용하고 있다. 소방청도 기존에 보유하던 UHF를 주요 통신망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재난 상황에서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상황전파 수단으로 병행하는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난다.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 현황]

(단위: 대)

구분	계	중앙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정원 (명)	66,802	728	7,434	3,749	2,980	3,405	1,617	1,630	1,399	585
ps-lte	38,162	847	5,933	1,270	1,708	1,718	1,043	772	1,417	278
UHF	47,302	131	4,708	2,353	1,924	3,425	1,089	1,568	1,164	6,46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정원 (명)	11,495	4,463	2,845	4,266	3,456	4,516	5,489	4,373	1,229	1,118
ps-lte	6,748	4,031	1,806	1,566	1,127	2,180	2,440	1,509	786	983
UHF	6,561	2,555	2,827	3,185	2,286	2,856	4,237	4,006	802	979

주: 정원은 2024년 말 기준, 단말기는 2025년 12월말 기준

자료: 「2025 소방분야 통계연보」 및 소방청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경찰·소방청 별도 무선망 운영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사업명	주요 내용	2024예산	2025예산
경찰	경찰유무선망개선	경찰무선망 운용을 위한 별도 내역사업운용	65,724	68,457
소방	소방 무선통신망 구축운영	재난안전통신망 ↔ UHF 연계장치 도입	500	500

주: 관련 세부사업 예산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아울러 재난안전통신망의 핵심 보완기능인 eMBMS는 구축사업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요소임에도 구현에 한계가 있다. 철도망 지역에서는 관계기관 간 무선자원 할당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eMBMS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sup>7)</sup> 결과적으로 현장에서는 재난망을 제한적으로 운용한 채 별도 망과 예비망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상당한 재정을 투입한 사업의 정책목표에 비추어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 제약 문제는 사실상 주파수 영역의 혼재에 따른 것으로, 2X10MHz의 대역폭에 대한 해상·철도망과 주파수 공동 사용으로 인해 인근 지역 전파간섭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2025년도에 주파수 추가 확보 및 분리를 위한 소요량 산출 용역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2026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용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가 진행 중이라고 부연하였다.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사업이 2021년 개시된 이후 매년 관계기관으로부터 활용상 애로사항 및 품질개선 요청이 제기되어 온 점, 망 구축 이후(20년) 현재까지 철도역 인근 eMBMS 기능 구현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미흡한 점, 그리고 공공주파수 할당신청이 2026년에야 추진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사안을 승인한다고 해도 신규 주파수의 실제 활용 시점이 2027년 이후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점<sup>8)</sup>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운영하는 과정에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관리와 적시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그간의 유기적 협의 부재와 품질관리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파수 확보 등 현안 과제의 이행 일정을 구체화하는 한편, 통신망 품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단일 재난통신망으로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7) 소방인력만 250명 이상 출동하는 소방 비상대응 2·3단계가 매년 30건 이상 발생하고, 이 경우 지자체·경찰·의료 등 다른 재난 대응기관의 인력도 집중되어 일시에 통신수요가 몰리는 상황이 빈번하므로 다수의 사용자에게 동일한 콘텐츠를 동시 전송하는 방식인 eMBMS는 필수적 기능이다. 그런데 철도망 내 eMBMS 기능 구현을 위해서는 철도망 지지국의 30~60%의 무선자원이 필요하나 철도망에서도 이미 자체적으로 eMBMS 기능을 활용하고 있어 자원할당을 위한 정책적 협의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용주파수 수급계획 추진 절차를 보면 3월에 이용계획서를 접수하여 전문가 평가 및 정책협의회 등을 실시하고 12월말에 최종·심의 의결결과를 통보하여 차년도에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을 받는다. 따라서 금번 심의를 통해 추가 주파수 개설을 허가한다고 해도 무선국 개설은 2027년에 이루어지며, 미승인 시 추가 지연이 불가피하다.

### 가. 현황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추진<sup>1)</sup> 사업은 국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및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영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권의 제도적 보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전년도 이월액 1억 8,400만원을 포함한 2025년 예산현액 10억 1,200만원 중 9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6,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추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 강화	1,524	1,524	184	±227	10,677	8,823	-	1,855	1,818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추진	828	828	184	±227	1,012	949	-	63	743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이양사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2024년 대국민 서비스 개시 및 2025년 성과평가 기능 개발을 계획하였으나, 사업 관리가 미흡하여 완료 시점인 2026년 6월 현재 대국민 포털은 미구현되고 내부 시스템은 기초 DB 제공 수준에 머무는 등 정보화전략계획 및 발주 당시 주요 과업들이 완료되지 못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39-506

행정안전부는 지방이양사무 발굴 단계부터 이양 이후 성과관리까지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024년부터 '지방이양사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2023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동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사무 발굴·확정 및 완료(법령 제·개정), 사후평가 등 이양 단계별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양사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방이양사무관리시스템 목표시스템 구성도]



자료: 행정안전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는 AI 기반 법령상 사무 총조사 자동화, 사무배분 현황 DB 구축 및 대국민 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2025년에는 사무 이양 이후 예산·인력 변화 추이 및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이양 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었다. 또한 2026년에는 AI·빅데이터 기반 사무 추천 알고리즘 구현 등 지능형 기능 개발을 계획하였다.

[연차별 시스템 구축·운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목표	주요 내용	집행액
2024	〈시스템 구축완료〉 기본관리 기능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동화</li> <li>법령상 사무배분 현황 DB구축 및 대국민 정보 제공</li> <li>사무이양 추진상황 단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시대위 심의·의결, 부처협의, 법령 제·개정 등 단계별 추진상황 공개</li> </ul> </li> <li>상시적 의견수렴 창구 개설</li> </ul>	1,044
2025	핵심기능 추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양 후 예산변화 추이, 성과평가 등 체계적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인력변화 추이, 성과평가 → 이양효과분석</li> </ul> </li> <li>'14년~'24년 사무관련 질의답변 자료 DB구축·활용</li> <li>유관시스템(지방재정·지방기능분류 등) 연계</li> </ul>	488
2026	지능형기능 추가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관련 질의답변 DB를 활용한 챗봇 서비스 구축</li> <li>이양 완료 사무의 성과평가 결과 자료 DB축적 관리</li> <li>AI·빅데이터 기반 적합 사무 추천 알고리즘 구현 등</li> </ul>	(예산액) 2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 구축시스템 운영관리</li> </ul>	122

자료: 행정안전부

그러나 지난 2년간('24~'25) 총 15억 3,200만 원을 투입하여 시스템 1·2차 구축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현재 당초 계획 대비 실제 구현된 기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에 제공 예정이던 대국민 서비스는 관련 인터페이스 및 도메인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양 완료 사업에 대한 예산·인력 변화 정보 역시 제공되지 않고 있다. 관련 배너가 확인되는 주요 기능 역시 데이터 정합성이 낮거나 예시용 시험 데이터만 입력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방이양사무관리시스템 현황('26.5월 기준)]

당초 기획	구현 여부	
AI 기반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동화	일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출·분류 화면과 승인·재분류 기능은 구현되어 있으나, AI 적용 미비</li> <li>사무조사 1,018,495건이 모두 '대기중'으로 표기되어 확정(66,616건)까지 수작업 검토가 전제되는 구조로 보이며, 미검토 물량 적체 증으로 확인됨</li> </ul>
법령상 사무배분 현황 DB 구축·통계조회	일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B 통계 기능은 정상 작동, DB내용은 보완 필요</li> </ul>
지방이양 추진 실적 단계별 관리	일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 단계 전체 7건, 이양 확정 0건으로 데이터 부족</li> <li>담당자명 연락처 모두 예시 시험 데이터만 구축</li> </ul>
대국민 대상 사무배분 현황 공개	미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국민 공개 서비스 부재</li> </ul>
이양완료 후 예산변화 추이·성과평가 / 평가결과 DB관리	일부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산 입력란과 비용평가조사서 탭은 존재하나, 시점 간 예산변화 추이 분석이나 성과평가 결과 산출 기능 없음</li> <li>비용평가조사서·이양계획서 등록 0건</li> </ul>
챗봇서비스 구축	구현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챗봇 인터페이스 없음</li> </ul>
성과평가 결과자료 DB 축적·관리	구현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누적된 성과평가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관련 등록 건수도 0건임</li> </ul>
AI 기반 지방이양 적합 사무 추천 알고리즘	구현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합 사무를 자동 선별·추천하는 기능 부재</li> <li>이양 건의 수작업 등록 방식으로 처리</li> </ul>

자료: 행정안전부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AI 기능 구현에 제약이 발생하여 일부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일부 기능은 담당자의 기초 데이터 입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현재로서는 실제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BPR/ISP<sup>2)</sup> 수립 시 주요 기능의 기술적·운영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었으며,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기능의 구현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사업 범위 및 소요예산에 대한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간의 구축 기간 동안 이에 대한 조정이나 보완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25년 제2차 구축 사업 추진 시에도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예산에 2차 시스템 구축 비용만 반영되어 있었으나, 1차 구축이 적기에 완료됨에 따라 운영을 개시하기 위해 자체 전용을 실시하였다고 설명했으나, 확인 결과 2025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이미 지방이양사무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 비용 소요를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다. 그런데 시스템 유지보수비는 관리용역비로 별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반연구비에 기능개발비와 유지보수비를 함께 편성한 후 집행 시점에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지방이양사무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편성 오류에 따른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5.1.22.)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1132-300)	260-01	175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역량강화 (1132-300)	210-15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금년도 추진 중인 위탁운영관리 사업에는 구축이 미흡한 단계별 이양자료 선별, 구축되지 않은 대국민 포털 운영 및 이용자 문의 대응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이양 성과 우수사례의 발굴·선별,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 수행은 시스템 위탁관리 업체의 수행 범위가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해당함에도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위탁업체에 지급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2) 정보화전략계획으로 시스템을 본격 개발하기에 앞서 현행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진단하고 정보화에 맞게 재설계한 뒤 향후 정보화 추진 방향과 구축 범위를 설계하는 선행 단계를 의미한다.

[2026년 지방이양사무관리시스템 위탁운영관리 내역]

구분	내 용
데이터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령상 사무총조사 자동화 기능 구축에 따른 상시검수 인력필요</li> <li>• 지방이양 추진단계 별 자료 선별·등록</li> <li>• 국가-자치단체 사무배분 현황 통계 작성 및 공개관리</li> <li>• 지방이양 성과 우수사례 발굴, 선별 및 게시</li> <li>•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대상 사무이양 수요발굴 지원 및 단계별 공개</li> </ul>
서비스 데스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국민 포털 운영/이용자 문의 응대</li> <li>• 시스템 사용자 교육 및 가이드 제작</li> <li>• 지방이양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이벤트 수행</li> <li>• 서비스 개선 사항 발굴 및 모니터링</li> </ul>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추진실적과 과정을 보면 지방이양사무관리시스템 구축·운용사업은 면밀한 계획에 따른 예산편성과 사업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더불어 기본 데이터의 추가 축적이 필요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2024년에 구축이 완료된 기본 기능조차 실제 활용이 어려운 상태에서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점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당초 이 시스템 구축의 기대효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구축된 기능의 실사용 가능 여부를 우선 점검하여 미비 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회의 및 지방이양 간담회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을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로 지출한 것은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편성 비목의 용도외도 괴리가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추진사업은 지방사무이양관리시스템 관련 일반연구비 7억원을 제외하면 모두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회의 및 의견수렴 간담회와 지방이양 간담회 개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가 주를 차지한다. 2025년 에도 연 12회(월 1회)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회의, 자치분권 의견수렴 및 지방이양간담회 개최를 근거로 일반수용비 5,6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런데 결산 내역을 보면 간담회 참석 수당으로 편성된 일반수용비 중 일부를 연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네트워크 케이블 이전설치를 위해 집행하였다. 이는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예산 운용이 정책적 목적에 따라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집행되도록 한 「국가재정법」 제45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반수용비 예산 편성근거 및 집행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비목	예산편성		집행	
	산출근거	예산액	집행내역	집행액
일반 수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회의 개최를 위한 참석수당 및 회의 자료 제작 28</li> <li>· 사전협의 지침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 참석수당 및 홍보물 제작 등 12.5</li> <li>· 지방이양간담회 11.8</li> </ul>	56	· 자치분권 사전협의 자문회의 및 지방이양간담회 개최 비용	35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비용(네트워크 이전 설치 등)	5

자료: 행정안전부

더욱이 동 사업뿐만 아니라 차관보실 기본경비,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사업 등 여러 내역사업에 간담회 운영비 및 회의자료 인쇄비 명목으로 편성된 일반수용비를 합산하여, 동일한 날짜에 사무실 네트워크 케이블 구축과 가구 이전 용역 대금으로 총 3,853만 원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무실 가구·집기 등 이전 용역대금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업체명	건명	금액
일반 수용비 (집행일 12.24, 12.26.)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및 사무구분 명확화	명지 시스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네트워크 케이블 이전 설치)	4,950
	차관보실			2,750
				2,970
				4,620
				4,510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3,850	
	차관보실	애니체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가구 및 집기이전)	1,900
				1,260
				3,230
				3,040
차관보실	브라더 코퍼 레이션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전산장비 현행화)	1,320	
			1,155	
			1,100	
			1,870	
합 계				38,52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해당 지출 건은 그 내역의 성격과 집행 규모 측면에서 경상적 행정수요를 충족하는 일반수용비의 본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시설 개선·이전 성격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하므로 해당 소요 이상의 집행잔액이 있었던 기관운영 및 예산지원관리 사업에서 일반용역비로 전용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세출예산이 편성 목적과 비목의 용도에 부합하게 활용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R&D)<sup>1)</sup> 사업은 일반국민, 관련 종사자 등 수요자 중심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재난안전 불안 요소를 해결하는 국민 체감형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예산 60억 8,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R&D)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 안전 연구개발	6,080	6,080	-	-	-	6,080	-	-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난안전 신기술의 신속한 개발·실용화를 위해 별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상용화 실적이 미흡하고, 2025년 사업취소 과제 또한 실생활 수요·상용화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기획 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R&D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 과제를 추진한 데 이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를 추진한 후 종료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일반적인 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과 달리 국민수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연구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931-642

과제를 발굴·기획하고, 그 기획안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한 뒤 주관연구 기관에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즉, 현장 수요를 정책기획 단계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실생활 밀착형 안전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려는 취지에서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당초 정책목적에 비해 상용화 성과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단계 과제를 보면, 연구개발 성과로 특허등록, 시제품 제작, 소프트웨어 등록 등의 중간 성과는 확인되지만 제품 출시나 기술이전, 매출 확대와 같은 시장성으로 연결된 사례는 제한적이다.<sup>2)</sup>

2단계 사업에서는 식품 산업 내 식중독균 검출을 위한 통합시스템과 AI 기반 고독사예방 시스템 개발과제가 제품 출시로 이어져 두 제품의 총 매출액은 2025년 말 기준 7,243만원으로 제시되었다. 다만 전체 과제군을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상용화까지의 전환율은 높지 않은 편이고, 제품이 출시된 과제와 관련하여 조달청의 혁신제품 지정 성과도 확인되지 않는다.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R&D 2단계(2023~2025년) 사업성과('25.12.기준)]

연구과제명	사업성과
정밀주소 플랫폼 기반 재난응급상황 신고 및 출동 서비스	특허등록 2, S/W등록 3
식품 산업 내 식중독균 검출을 위한 현장형 정밀 고속 전자동 통합시스템 개발	특허등록 1, 제품출시
AI IoT기반 맞춤형 취약계층 고독사예방 시스템 개발 및 실증	특허등록 3, 시제품 4, 제품출시
자원재활용 멀티셀부표를 활용한 도시침수 스마트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특허등록 6, 시제품 3
차량 2차사고방지를 위한 200m 이상 자동주행형 비상신호 전개장치 개발	성실중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2) 1단계 추진과제 가운데 제품이 상용화되어 기술이전 또는 매출 성과를 나타낸 과제는 2건에 그쳤고, 제품 출시까지 이어진 과제는 '스마트 부력밴드' 1건뿐이었다. 이는 기술개발 자체는 진행되었으나, 사업 목적이었던 생활안전 분야의 신속한 현장 확산과 상용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특허기술이 상용화까지 상당한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나 시장에 유사한 경쟁제품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효과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동사업이 실생활 수요와 빠른 도입·상용화라는 차별성에 근거하여 별도 편성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업 종료 시점까지 상용화 단계에 이른 과제가 일부에 그치고 다수 과제의 성과가 중간산출물 단계에 머무른 점은 편성 취지가 성과로 충분히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2025년 성실 중단된 「차량 2차 사고방지를 위한 200m 이상 자동주행형 비상신호 전개장치 개발」 과제는 기술개발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서 실생활 수요와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 과제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삼각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2년간 추진되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근거한 특별평가 결과 작동 성능이 불충분하고 3차년도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현장 적용 및 상용화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중단되었다.

[자동주행형 비상신호 전개장치 기술개발 지원내역 및 중단사유]

협약기간	기지원액	('25) 불용액	중단사유
2023~2025	11억원	5.5억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5조에 근거한 특별평가 결과 정지형 비상신호 장치는 적절히 수행했으나, 개발 목표인 레일봇 현장 조사 결과 작동 성능이 불충분하고 3차년도를 수행해도 현장 적용, 상용화가 불가하다고 판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이 과제의 실패는 단순히 기술적 한계에 따른 중단보다 초기 기획 단계에서 실수요와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데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해당 장치에 대한 운전자의 실수요, 운전자가 사고 후 하차하여 기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소형기기가 고속도로 역주행 방향으로 충돌 없이 200m를 이동한다는 전제의 실현 가능성 등3)에 대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추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재원 투입을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주행형 비상신호 전개장치 개발모형]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 사업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유사 사업 설계 시 과제 기획 단계에서 실수요·실효성·구현 가능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함으로써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고속도로 사고확률과 자율주행 기기 단가를 고려할 때 운전자가 구매할 유인이 있을지 불분명하고,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도로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삼각대 설치와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이 구현되더라도 차량들이 100km/h 이상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소형 장치가 역주행 방향으로 충돌 없이 200m를 이동하기에는 제약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가. 현황

행정정보화 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sup>1)</sup> 사업은 국가위임사무 및 자체사업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운영·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통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등 경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예산액 39억 100만원의 99.9%인 39억원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행정정보화 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행정정보화 지원 및 관리조정	3,901	3,901	-	-	3,901	3,900	-	1	3,51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30개 정보화 위탁사업에서 총 47억 2,200만원의 재원을 별도 징수하여 통합관계·재해예방을 위한 지역클라우드센터를 운영 중이나 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시스템 안정성 점검결과 예방점검, 서비스 연속성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안관계 및 재해대응 역량이 담보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시스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47-500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KLID”)은 「전자정부법」 제72조2)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의 주요 정보화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사업을 수탁하여 추진하고 있다. 2025년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3,060억원 규모의(행정안전부 710억원, 국가·자치단체 공동 1,377억원, 지방자치단체 973억원) 정보화사업을 위탁받아 수행 중이며, 이를 통해 69개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2025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수탁사업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국가수탁사업		국가·자치단체수탁사업		자치단체수탁사업		합 계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70,948	70,948	137,726	137,726	97,328	97,317	306,002	305,991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해당 시스템에는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세·세외수입정보시스템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관리·인사행정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 온나라문서시스템 등 국가 차원의 행정·재난관리와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2)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중략>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원은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KLID에 위탁 중인 A1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일부예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액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5,109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9,181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6,492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4,616
온나라 문서시스템 운영	1,492
클라우드 온나라 문서시스템 운영	3,032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5,812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3,315

주: A1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정부시스템 등급제에 따라 가장 높은 중요도로 분류된 핵심 정보시스템으로, 국민 생활과 국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격한 안정성 관리가 요구됨

자료: 행정안전부

이들 가운데 다수는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등급제상 A1으로 분류된 핵심 시스템으로, KLID는 관련 정보자원을 통합관제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체하기 위하여 지역클라우드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 일부를 위탁 정보화사업에서 공통보수 등의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

[2025년 사업별 지역클라우드센터 경비 분담비용]

(단위: 천원)

구 분	지역클라우드센터 분담비용		
	계	IT서비스	보안관제
시도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91,359	66,359	25,000
시군구(서울)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22,489	47,489	75,000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개방시스템 유지관리	17,045	17,045	0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지킴-e) 유지보수	51,048	31,048	20,000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0,000	0	10,000
지자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추진 지원 기반 운영	43,484	33,484	10,000
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100,596	100,596	0
자치단체 기능분류모델(BRM)시스템 유지관리	9,131	9,131	0
정부 통합인증(Any-ID)운영 및 유지관리	10,000	0	10,000
온나라 및 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 유지관리	30,000	0	30,000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78,613	28,613	50,000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515,262	215,262	300,000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운영	73,134	23,134	50,000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222,109	822,109	400,000
지방공기업 통합결산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3,652	3,652	0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957	10,957	10,000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30,000	0	30,000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	863,967	463,967	400,000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433,192	133,192	300,000
주민e직접 플랫폼 유지관리	12,784	12,784	0
상시 모니터링(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20,000	0	20,000
표준기록관리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20,000	0	20,000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7,655	17,655	10,000
자치단체 우편모아시스템 통합유지관리	12,434	2,434	10,000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	107,227	57,227	50,000
자치단체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607,906	407,906	200,000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0,348	10,348	0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118,613	28,613	90,000
지방공기업 신속집행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3,652	3,652	0
공공기관 G-포털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55,918	35,918	20,000
합 계	4,722,575	2,582,575	2,140,000

자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공공부문 1·2등급 시스템 안전성 점검 결과를 보면, KLID가 운용하는 주요 시스템의 안정성 수준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165개 항목을 기준으로 한 서면조사에서 4개 주요 시스템의 충족률은 평균 77.7%였으나, 현장점검에서는 예방점검이 평균 63.6%, 서비스 연속성이 평균 46.4% 수준이다. 특히 대국민 행정서비스와 직결되는 시도 및 시군구(서울)행정시스템의 안정성 충족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2025년 정보시스템 안정성 기준 충족률 점검 결과]

(단위: %)

대상	서면조사 충족률	현장점검 충족률				
		운영·관리	예방·점검	장애관리	안정성개선	서비스연속성
통합지방재정시스템	87.7	91.1	98.6	100.0	100.0	42.9
시도행정시스템	69.2	83.3	28.6	86.4	66.7	50.0
서울행정시스템	69.2	83.3	28.6	86.4	66.7	50.0
지방세정보시스템	84.8	81.2	98.6	100.0	100.0	42.9
평균	77.7	84.7	63.6	93.2	83.3	46.4

자료: 행정안전부

전술한 바와 같이, KLID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관련 시스템과 더불어 주민등록정보시스템, 행정전자서명 인증시스템 등 국가 핵심 기반에 해당하는 1등급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 장애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국민 생활과 행정서비스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30개 위탁사업에서 47억여 원의 전담 재원을 별도 징수하여 통합관제·재해예방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예방점검 및 서비스 연속성 수준은 타 기관 평균을 다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재해복구센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에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재원의 편성·집행 수준에 상응하는 보안관제 및 재해대응 역량이 실질적으로 갖추어질 수 있도록 예방점검 체계 정비, 재해복구 훈련 주기화, 서비스 연속성 기준 상향 등을 포함한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이행 상황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민주화운동지원<sup>1)</sup> 사업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보존·관리를 위한 보존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예산액 214억 9,600만원 중 95억 4,000만원 이용 감액하였다. 이를 통한 예산현액 119억 5,600만원의 82.6%인 98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민주화기념사업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30,864	30,864	-	△11,240	19,624	17,516	-	2,108	27,763
민주화운동 지원사업	21,496	21,496		△9,540	11,956	9,876	-	2,080	11,979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첫째, 제8차 5·18민주화운동 손실보상은 제1~7차의 집행 경험이 축적되어 있음에도 집행가능성 검토 없이 예산이 과다편성되어 실집행률이 43%에 불과한 만큼, 향후 차수별 집행 실적 및 대상자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 절차상 지연 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435-300

행정안전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근거하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망·행불자, 상이자, 질병 및 후유증 사망자,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자, 공소기각·면소판결·유죄판결·해직자·학사징계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 절차를 보면 5·18 관련자와 그 유족이 접수한 건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에서 2차에 걸친 사실조사 후 관련자로 인정 되는 경우 보상금 산정 및 지급 결정을 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신속한 지급처리를 위해 자치단체보조사업(국고보조율 100%)으로 추진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분류 및 지급기준]

구분	대상	보상 분류	지급기준
사망·행불자	사망자· 행불자	보상금	법5조(평균임금×취업가능기간×이자)
		생활지원금	70백만원
		위로금	21백만원
	상이후 사망자	보상금	법5조(평균임금×취업가능기간×이자)
		생활지원금	70백만원
		휴업보상금	법5조(평균임금×노동력상실률×취업가능기간×이자)
		위로금	21백만원
	상이자 <sup>1)</sup>	등급 상이자 (1~14급)	보상금
의료지원금			치료비·간병비·보장구 구입비 일괄 지급
생활지원금			30~50백만원
위로금			4.5~19.5백만원
기타 상이자 (1~2급)		생활지원금	7~10백만원
		위로금	1~2백만원
수배·연행· 구금자	기소 및 불기소자	수형일수 보상금	형사보상 1일 보상금×수형일수
		생활지원금	10~50백만원
		위로금	2~19.5백만원
	훈방자	연행·구금일수 보상금	형사보상 1일 보상금×연행·구금일수
		생활지원금·위로금	8백만원

주: 1) 연행·구금·수형 후 상이자 포함

자료: 행정안전부

8차 보상은 2023년부터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2024년은 37억 8,400만원을 편성한 후 21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에는 실집행률이 더욱 감소하여 예산액 170억 9,000만원 중 74억 2,000만원을 집행(43.2%)하였다.

[제8차 5·18민주화운동 보상 결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액	집행액	이용액	이용사유
2024	3,784,000	2,185,206	898,000	• 재난대책비 부족 재원 마련
2025	17,090,055	7,420,711	7,840,000	• 청사 공공요금 부족재원 마련 • 재난대책비 부족재원 마련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신청접수 건을 바탕으로 심의인원을 예상하고 이에 40%의 인정률을 적용하여 소요 재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시한 연차별 소요(연 1,795명)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신청자의 80%가 관외거주자여서 사실조사가 장기화되어 심의실적이 717명에 그치는 등 공정한 심사를 위해 지연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1차부터 제7차에 이르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업무의 수행 경험을 통해 연내 심사완료 건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지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한 조사완료 예정자 수를 그대로 수용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부처가 연내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소요를 반영하도록 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내역]

(단위: 건, 백만원)

차수별	1차 (’90년)	2차 (’93년)	3차 (’98년)	4차 (’00년)	5차 (’04년)	6차 (’06년)	7차 (’15년)
보상건	2,219	1,832	464	473	109	426	284
보상액	142,171	38,771	27,456	18,572	4,827	13,639	5,683

자료: 행정안전부

더불어 일반적으로 보상금 지급 사업에서 보상금 지급대상별(보상금, 생활지원금 등) 소요를 계상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과 달리 5·18민주화운동 보상금은 대상 및 상이자 등급별로 지급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음에도 단순 지난 회차 평균 보상금에 심의예상인원과 예상인정률로만 예산을 계상하는 점 또한 과도한 집행잔액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신청자의 보상대상 구분과 심사·지급 절차상 최소 소요기간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실조사 단계에서의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해소하여 보상금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사업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설계용역 착수 지연으로 인한 일정 순연의 영향으로 집행률이 24.4%에 그쳤으므로, 행정안전부는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사업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전용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수장고는 만고율이 95%에 달하는 등 추가 기록물의 보관 및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존 시설만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기록물 수량과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총사업비 419억 1,400만원 규모로(국고보조율 50%)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부지에 연면적 6,000㎡,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보존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설 내에는 수장고와 함께 전시실·사무공간 등 시민 친화적 복합문화공간이 조성될 예정으로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전·후 비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2025년 예산은 설계용역 추진 및 착공에 따른 설계 적정성 검토 수수료, 공사 금액 소요비용과 감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23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총사업비 협의 및 설계공모 절차이행(25.5.)으로 설계 용역이 6월에 실시되었으며, 공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액 중 설계공모 포상금 5,600만원과 설계용역성금 5억 1,300만원만 집행되었으며, 공사비와 감리비 등은 미집행 불용되어 집행률이 24.5%인 것으로 확인된다.

[2025년 5·18기록물 보존시설 확충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1. 시설비	2,167	569	26.3%	- 설계공모 포상금 56 - 설계용역기성금 513
설계비	600	569	-	
공사비	1,567	-	-	
2. 감리비	150	-	-	-
3. 시설부대비	10	-	-	-
합 계	2,327	569	24.5%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현재 기존 수장고의 가용 공간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러 신규 기록물의 수용 여력이 소진된 상태로, 기록관 본연의 보존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세계기록유산으로서 국제적 보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기록물이 적정 환경을 갖추지 못한 채 관리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기록물의 훼손 및 멸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기록 보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보존시설 확충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착공 지연에 따른 순연과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공정을 엄격히 관리하여 당초 계획된 일정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sup>1)</sup> 사업은 국가와 지방의 상생 협력 및 지방행정 자치제도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대상으로 운영, 정책연구 및 조사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예산현액 34억 2,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정책개발 연구등지원	3,423	-	-	-	3,423	3,423	-	-	3,12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근거 법령을 위반하여 잉여금을 기금 전입·이월하지 않고 여유자금으로 관리하면서 예산서상 전년도 잉여금을 과소 기재해 이사회 판단을 왜곡하였으며, 행정안전부 또한 103억원 규모의 잉여금이 있음에도 출연금을 확대해왔으므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5년 잉여금의 전액 기금 전입·이월 및 동 지원사업의 전반적 재설계가 필요하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131-3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관 출연기관으로, 국가 출연금과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출연금 그리고 개별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수행에 따른 자체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회계는 통상적인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한 일반회계와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 등의 수행을 위한 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집행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결산 내역을 보면 정부와 17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 등 수입액이 지출액보다 많아 일반회계는 집행률이 78~86%, 특별회계는 41~52% 수준의 집행률을 나타내며 이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잉여금이 발생해 왔다.

[최근 5년간(2021~202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입·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					지출			집행률 (C/B)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B)	지출액 (C)	집행잔액 (A-C)		
		계 (A)	정부 출연금	자체수입 등 <sup>1)</sup>					
'21	일반	11,243	9,100	2,854	6,246	11,243	8,792	308	78.2
	특별	10,865	9,466	200	9,266	10,865	5,684	3,782	52.3
'22	일반	12,961	12,111	2,854	9,257	12,961	10,708	1,403	82.6
	특별	9,160	7,482	200	7,282	9,160	4,206	3,276	45.9
'23	일반	13,352	12,585	3,354	9,231	13,352	9,744	2,841	73.0
	특별	13,066	11,810	200	11,610	13,066	5,410	6,400	41.4
'24	일반	11,320	10,488	2,854	7,634	11,320	9,716	732	85.8
	특별	11,880	11,372	200	11,172	11,880	5,492	5,880	46.2
'25	일반	11,509	11,163	3,423	7,740	11,509	9,484	8,025	82.4
	특별	10,963	10,885	200	10,685	10,963	4,971	5,914	45.3

주: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연구용역수수료, 전년도이월액 등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결산서에 근거하여 재구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 대해 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을 우선 보전하고 그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에 이입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여야 한다.

또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원칙적으로 ‘혁신법’ 제13조에 따라 처리하고 비연구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없는 경우 주무부처가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대한 별도의 처리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는 등 출연금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러나 2025년 행정안전부 자체 감사에 따르면, 지방행정연구원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잉여금을 법령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입하거나 기금으로 전입하지 않았다. 해당 잉여금은 일반·특별회계 보통예금에 이체만 한 후 여유자금으로 관리하면서 임직원 급여 및 각종 대금 지급 등 자금 필요시 일반·특별회계 지출계좌(보통예금)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적립된 누적 잉여금은 2025년 말 기준 총 103억 5,093만원(일반회계 56억 2,526만원, 특별회계 47억 2,566만원) 수준이다.

[2025년말 기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누적 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5,625	4,725	10,350

주: 일반회계는 정부출연금 및 수탁용역사업 등 사업 수입을 재원으로 하며, 특별회계는 지방재정투자 심사 사업 및 기타 사업수입을 재원으로 함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아울러 근거 규정에 따라<sup>2)</sup>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 편성 시 전기이월금을 포함하여 예산의 수입과 지출 항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사회에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잉여금 일부만 예산서에 표기하여 이사회 의결을 받았다. 일례로, 2025회계연도 예산서를 보면 잉여금의 일부인 17.5억원만을 '전기이월금' 명목으로 편성하고 나머지 잉여금 72.5억원은 별도 표기하지 않았고, 2026년 예산서에도 전년도 잉여금 103.5억원 중 25.1억원만 전기이월금으로 표기하고 있다.

2) 연구원 「정관」 제23조과 「재무회계 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세입세출예산안에는 예산설명서와 예산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모든 예산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최근 7년간(2020~2026년) 결산상 잉여금 본예산 과소편성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실제 결산상 누적잉여금 (A)	이사회보고 전기이월금 (B)	차액 (C=A-B)	실제 결산상 누적잉여금 (D)	이사회보고 전기이월금 (E)	차액 (F=D-E)
2020	3,069,239	1,035,000	2,034,239	5,324,850	529,000	4,795,850
2021	2,865,842	1,350,000	1,515,842	6,816	960,000	△953,184
2022	3,849,173	2,226,991	1,622,182	504,760	504,760	-
2023	3,538,014	531,085	3,006,929	599,712	-	599,712
2024	5,188,807	1,685,005	3,503,802	2,129,077	468,042	1,661,035
2025	5,453,789	1,558,228	3,895,561	3,549,716	193,310	3,356,406
2026	5,625,263	2,071,340	3,553,923	4,725,663	440,850	4,284,813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수입·집행현황 및 별도재원 현황에도 불구하고, 매년 30억 5,400만원을 편성하여 연초에 전액 교부하였으며, 2025년에는 오히려 출연금을 34억 2,300만원으로 증액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출연금도 매년 41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7년간(2020~2026년) 정부 출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정부출연금	교부일자	교부횟수	비교(지자체출연금)
2020	3,054	2020.4.17.	1	4,100
2021	3,054	2021.5.27.	1	4,100
2022	3,054	2022.6.14.	1	4,100
2023	3,554	2023.3.24.	1	4,150
2024	3,054	2024.6.19.	1	4,094
2025	3,423	2025.4.22.~	4	4,100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지방행정연구원이 매년 정부출연금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을 전액 집행했다고 하나 지출액 및 집행잔액 규모를 고려할 때 자체수입 등으로 충당되는 재원을 먼저 집행했다면 정부 출연금의 실집행률 역시 낮았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부하고 차년도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은 이에 대해 동 재원을 활용하여 제2원주청사 신축을 계획 중으로 최근 부지확보 및 공사단가 등을 고려하면 적립금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금년도 내 부지를 확보하고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지방행정연구원 제2청사 건립 계획 및 소요예산

구분	소요예산	비고
부지매입	48억원	반곡동 기준
건축비 등	350억원	7,000㎡×500만원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그러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이하 “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시행령 제2조는 기금의 원본 감소 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주무부처의 통제가 예정되는데, 연구원이 정관 제12조를 위반하여 잉여금을 기금으로 정식 전입하지 않고 청사 구축 목적으로 여유재원 형태로 유보한 것은 기금 전입 시 수반되는 주무부처의 승인·통제 절차를 우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더불어 제1청사를 유지하면서 제2청사를 신축하는 이유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현원 30여 명)의 직무공간 확보라는 점을 감안하면 390억원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유와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법령상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관 및 재원 특성을 감안하면, 신축사업 추진에 앞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에 준하는 사전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청사 신축에 대한 사전타당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결산 잉여금의 정관 외 방식 유보, 이사회 제출 예산서 전년도 잉여금 과소 기재, 출연금 우선 집행을 통한 자체수입 보전(제2청사 구축 재원확보)은 각각을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및 정관이 정한 규율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는 소속기관의 이러한 운용현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출연금을 편성, 정산해 왔으며 이사회의 핵심 임원으로 참여하면서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감사결과 이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예산서에 잉여금 전액이 명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2026년 말까지 잉여금의 기금 전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자의적인 잉여금 유보 및 부적정하게 추진되는 청사 신축 재원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연구원의 실제 소요 재원 현황을 반영하여 출연금 편성규모 및 교부 체계를 전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소멸대응연구과제 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3억원을 별도 증액 교부하였으나,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이를 운영비 총액에 합하여 활용함으로써 해당 과제의 인건비·경비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별도 과제 추진 시 사업출연금 혹은 위탁과제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예산(기관운영출연금)을 통해 지방행정연구원의 인건비, 정책연구개발비, 지방투자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차년도에 예정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3건의 ‘소멸대응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3억원을 별도로 증액 편성하였다.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과 관련된 3건의 과제수행을 전제로 3억원을 교부했으나 지방행정연구원은 2건의 과제 수행과 1회 국제세미나 개최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교부된 것으로 해당 과제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와 간접비 등을 포함한 1억 9,500만원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사업비로 지출한 1억 500만원에 대해서도 다른 출연금과 혼용하여 비목별, 집행 내역별 정확한 금액의 계상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소멸대응연구과제 지원 예산편성 내역과 실집행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출연금 예산·교부내역			소멸대응연구과제		
인건비	'24년 인건비의 23% 증액	2,373	사업비	2개 과제 수행 국제세미나 개최	105
정책연구 개발비	32과제×27백만원 ×63.7%	550	인건비	연구원인건비 (5,458백만원)에 함께 편성. 과제별 분류 불가	195
지방투자 타당성 조사	4회×1억원×50%	200			
<b>소멸대응 연구과제</b>	<b>3회×1억원</b>	<b>300</b>	간접비	과제별 분류 불가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소멸대응연구과제는 특정 주제의 과제 수행을 전제로 별도 편성된 것이고 산출 내역상 과제의 수나 과업수행 횟수를 근거로 금액이 산정된 만큼 사업출연금으로 교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출연한 이후에도 행정안전부가 과제별 산출내역의 적정성과 지출 내역, 정산에 대해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면밀하게 수행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셋째, 지방행정연구원은 자체 규정인 「수탁용역사업 집행예산편성기준」에 따라 간접비를 계약총액의 50% 이내로 계상하고 있으며, 실제 징수율은 약 40%로 유사 기관(10~20%) 대비 높은 수준이고 별도의 정부·지자체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점 까지 고려할 때 간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설립 당시 자체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수탁과제 간접비(사업관리비) 요율을 계약총액의 50% 이내로 설정하였으며, 이후에도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의 간접비 요율을 적용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2025년의 경우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과제 21건 중 2건을 제외한 19건에 대하여 간접비를 계약총액의 40%로 일률 적용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발주한 과제의 경우 과제 규모가 약 1억원에서 3억 2천만 원 수준이며, 이에 따른 간접비도 약 4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반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공동출연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내부 규정상 간접비 요율을 15% 이내에서 실수요를 감안하여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년 행정안전부 사업출연금 수탁과제에 적용된 간접비 요율은 12.6~13.3% 수준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경우에도 15%를 초과하지 않았다. 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간접비 요율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가 있다.<sup>3)</sup>

[202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 수탁연구과제 간접비 요율 비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25년 과제	간접비 요율	'25년 과제	간접비 요율
· 마을기업법 시행 대비 지자체 실행체계 및 정책모델 마련 연구 등 19건	40%	· 지방세특례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후심층평가	13.3%
·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연구	36%	·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12.6%
·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방향 및 생활인구 분석 연구용역	32%	· 재산세분리과세대상 토지타당성 평가	13.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지방행정연구원은 이에 대해 자체 규정인 「수탁용역사업 집행예산편성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원내 연구사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있으며, 기관 운영비 충당을 위해 설정한 상한비율(50%) 내에서 의뢰된 과제의 과업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사업비 확보를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3) 이에 대해 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등 유사기관은 사업인건비 항목에 연구자 인건비를 계상하는 반면, 지방행정연구원은 사업인건비에 외부 위촉연구원 인건비만 계상하고 내부 연구자 인건비는 간접비와 업무성과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간접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과다해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첫째, 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과 달리 인건비 지급을 포함한 기관운영 경비 지원 목적의 별도 정부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접비 징수율은 여전히 과다한 수준이고, 둘째, 비R&D 연구과제에 대해 업무성과금을 별도로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수탁과제의 90% 이상에 40%가 일괄 적용되고 1~2건에만 34~36%가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과제 특성에 따른 실질적 차등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지방행정연구원은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 경비 목적으로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별도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는데, 별도 기관운영출연금을 받지 않는 한국지방세연구원보다 간접비 징수율이 높고 여타 출연연구기관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 기관들은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통해 객관적 산식에 근거한 요율을 부여받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도 PBS 폐지 이전 연구회 차원의 심의·의결을 거쳐 간접비 요율을 확정하였다. 이는 직접 연구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을 간접비가 잠식하지 않도록 상위기관 또는 독립적 위원회가 통제함으로써 연구비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쓰이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은 이러한 외부 통제 체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만큼, 간접비 요율의 적정성에 대해 관리·감독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공동출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갖출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현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간접비 상한 비율은 1984년 기관 신설 시점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설정된 것으로, 현재의 출연금 규모 및 잉여금 수준에 비추어 그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간접비 요율의 산정 근거를 객관화하고 외부 심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공직선거추진<sup>1)</sup> 사업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 법정선거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대통령선거를 위한 예비비 89억 6,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4억 9,400만원 중 81.6%인 77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17억 4,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공직선거추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1,524	1,524	184	227	8,969	10,677	8,823	1,855	1,818
공직선거 추진	525	525	-	-	8,969	9,494	7,751	1,743	98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예비비는 불가피하게 발생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해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되는 만큼 실제 필요에 기반한 면밀한 계상이 필요함에도 이전 선거 집행 내역 및 결위선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편성으로 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132-300의 내역사업

법정선거는 「대한민국헌법」 제114조에 의거하여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 사무를 담당하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가사무인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안내 및 투표소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해당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동 사업을 편성,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당초 5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25.6.3.) 실시에 따라 예비비 89억 6,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이 중 77억 5,100만원이 집행되었다.

[연도별 대통령선거 추진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7년 대통령선거		2022년 대통령선거		2025년 대통령선거	
	예산현액	결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예산현액	결산액
직접집행	614	519	588	548	607	483
지자체 배분	7,644	7,386	8,086	7,158	8,362	7,120
총액	8,258	7,905	8,674	7,706	8,969	7,751

주: 2022년은 예산현액은 추경 감액을 통한 예산액이며 2025년은 예비비 편성액임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임차료, 특근매식비, 공공요금, 국내여비의 실 집행률이 80% 미만이며 국내여비는 63%를 나타낸다. 관련 지침상 예비비는 연대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sup>2)</sup> 지난 선거의 실집행내역과 예산 산출단가(선거사무지원 인원, 선거관리일수, 담당자교육 회차 등)를 고려할 때 예측가능성이 충분했다는 점에서 20% 이상의 불용은 예비비 과다 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과 함께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대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2025년 대통령선거 추진을 위한 비목별 예비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비목	세부내역	예산액	집행액	불용액
일용임금· 고용부담금	선거업무 보조 상용임금·일용임금	1,350	1,132	218
일반수용비	업무편람 매뉴얼, 선거인명부 작성 등	3,232	3,090	142
일반수용비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물 제작	51	46	5
	선거업무 유공자 표창	28	25	3
임차료	선거상황실 운영 임차	70	54	16
공공요금및제세	거소투표신고 등기우편료 및 책자발송	698	553	145
특근매식비	특근매식비	2,209	1,679	530
일반수용비	선거사무 추진 지도점검 및 교육	6	6	-
국내여비		790	499	291
사업추진비	유관기관회의	535	519	16
합 계		8,969	7,603	1,366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제19대, 제20대 대통령선거 예산 및 물가상승률, 선거 구별 기본 인력·경비소요 등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쉼터선거의 특성상 선거관리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공명선거 관리비용 등이 예상보다 적게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소요가 63~79억원 수준으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등의 상승분을 반영하더라도 89.7억원의 예비비 편성은 과다 계상된 측면이 있다.

[역대 전국 단위 선거 관련 예산액 및 집행액]

(단위: 백만원)

구분	(‘17)대통령선거	(‘20) 국회의원선거	(‘22)대통령선거	(‘24) 국회의원선거
예산액	8,258	8,674	8,674	7,184
집행액	7,905	7,692	7,706	6,303

자료: 행정안전부

더욱이 예비비 요구 당시 궐위선거의 특성상 선거준비 기간이 약 4개월인 일반 대선에 비해 52% 이상 짧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실제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따른 대통령 궐위 일이 4월 4일, 자금배정일이 4월 8일, 선거일 6월 3일, 당선확정일 6월 4일로 총 58일의 기간 동안 선거관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산출 과정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면밀히 검토되어 반영되지 않았다.

[2025년 대통령선거 예비비 요구안 산출내역 일부 예시]

(단위: 원)

비목	내역	산출근거	자금배정일	당선확정일
일용임금	선거지원상황실 행정실무원 기본급 및 수당	21,965,400×1명×4개월	4.8.	6.4
특근매식비	선거사무종사자 특근매식비	9,000×3명×60일×시도/ 시군구 280개		
일반수용비	공명선거지원상황실 물품	3,000,000×3개월		
임차료	상황실 전산장비 등 임차	5,000,000×3개월		
여비	추진상황 점검 여비	120,000×10회		
사업추진비	상황실 관계기관 회의	30,000원×30명×10회		

주: 각 비목별 일부 내역만 기재

자료: 행정안전부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국회의 심의 없이 편성하는 재원으로서 비효율적 재정운영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체적 근거와 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금액만 반영하는 것이 원칙인 만큼, 충분히 집행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산출에 면밀히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예비비 운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선거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예비비 편성 시 실질적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선거 유형별 특성과 과거 실질적 내역을 충실히 반영하여 이와 같은 과다 편성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sup>1)</sup>사업은 범정부적으로 초거대 AI를 도입함으로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각 기관의 특화된 데이터를 활용한 초거대 AI서비스를 신속하게 구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예산현액 53억 9,2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범정부 인공 지능 공통기반 구현	5,392	5,392	-	-	5,392	5,392	-	-	7,371

자료: 행정안전부

다만, 사업시행주체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실적행 현황을 살펴보면, 교부액 53억 9,200만 원 중 실적행액은 49억 7,600만 원으로 실적행률은 92.3%이며, 나머지 4억 1,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 실적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교부액(A)	실집행액(C)	이월액(D)	불용액	실집행률
5,392	5,392	4,976	416	-	92.3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39-506

## 나. 분석의견

중앙·지방정부의 AI서비스 도입 시 중복투자 방지와 신속한 행정망 내 활용을 위해 구축된 범정부 AI공통기반이 2026년 3월말 완료됨에 따라, 당해연도 기관별 AI사업들이 이미 개별 착수되어 공통기반을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통 인프라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정·협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5년도에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한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플랫폼은 초대형 언어 모델로서 데이터, 알고리즘, 컴퓨팅 인프라, 보안·윤리 등 핵심 요소가 표준화·모듈화되어 있으며, 각 부처·기관별로 특화된 AI모델을 파인튜닝(fine-tuning)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응용서비스(예: 수출지원, 산업특화 챗봇, 행정특화 서비스 등)의 개발·연동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총사업비는 472억원이다.

[범정부 인공지능공통기반 연차별 이행과제 및 재정소요]

총사업비: 472억원(행안부+과기부)		
1차년도 (98.6억원)	2차년도 (149.5억원)	3~7차년도 (224.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플랫폼·모델·서비스 개발도구 도입 및 제공체계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모델 추가도입 및 언론 기사 공통데이터 확대 등 기능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용자 수요, 활용성 반영하여 범정부 AI 공통서비스 및 공통AI 데이터 추가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행정업무 관련 자료 수집하여 학습데이터 및 지식데이터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AI서비스의 AI모델·도구 연계활용에 대한 통제기능 구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라우터 고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용 AI서비스 제공</li> <li>- 연관정보검색 서비스 및 문서초안작성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통기반의 안정적 운영 및 공통기반을 활용한 중앙·지방정부 AI서비스 구축과정 기술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기관이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최신기술 적용하도록 지속적 신기술 도입·검증 추진</li> </ul>

자료: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그런데 2025년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축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전에 예산이 편성되어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예산 배정('25.3.20.) 이후 계약절차를 거쳐 2025년 6월부터 추진되면서 차년도인 2026년 3월 말에 구축이 완료되었다.

[2025년 인공지능 공통기반구축사업 절차별 경과]

기간	추진 내역
'25.1.24.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적용 사업 심의 후 참여 허용 결정
'25.2.10.	업무프로세스재설계 및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완료
'25.3.20.	수시배정 요구 및 예산배정
'25.3.25.~'25.6.23.	조달발주 및 계약체결(조달발주(3.25.))
'25.6.23.~'26.1.19 ( '25.11.24.~'26.2.28)	범정부 초거대 AI공통기반 구현 사업추진 (시범운영: 범정부 AI공통기반 Chat 등)
'26.3.27.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현 완료보고

자료: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이러한 구축 지연은 2026년도 공공부문 AI 투자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되는 시점과 맞물려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한 2026년 전(全) 부처 AI 관련 예산은 10조 1,000억원을 상회하여 2025년의 약 3배 수준이다. 대규모 AI 투자가 집행되는 환경에서 공통기반이 활용되지 못한다면, 개별 기관이 AI 모델 도입·운영 비용, 보안 인증, 인프라 확보 등 공통 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고착될 위험이 있다. 이는 총사업비 472억원을 투입하여 구축한 공통기반의 정책적 실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 운용의 비효율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 2026년 중앙부처 정보화사업 예비검토<sup>2)</sup> 단계에서 범정부 AI 공통기반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받은 사업은 총 87개에 이른다. 해당 사업들은 2026년 1월부터 이미 추진 중이며, 일부는 용역 계약 사전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통기반이 2026년 3월 말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사업들은 공통기반 활용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 예비검토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 해에 추진할 정보화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서 단계에서 유사·중복 여부, 타당성, 사업 연계성 등을 미리 확인하는 절차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전문기관이 검토의견을 제공한다.

[2026년 AI시스템 구축·서비스 도입 사업 중 예비검토 지적사례 일부 예시]

(단위: 백만원)

기관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26년 예산액
고노부	근로복지정보시스템(정보화)	지능형생활안전지원시스템 구축	6,436
고노부	노동약자지원	AI근로감독관/AI노동법 상담	3,967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출연	AI기반 디지털 감사시스템 구축	266
국조실	청년정책통합플랫폼 구축	청년정책통합플랫폼 2차구축	1,935
금융위	신용정보(정보화)	빅데이터 기반 업무선진화	2,615
농림부	검역본부정보화(정보화)	농림축산검역정보 시스템 운영	15,609
문체부	디지털 신기술 기반 문화향유 서비스 개발 및 확산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봇 구축	3,125
문체부	한국문화정보원 운영(정보화)	AI기반 문화생활지원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9,949
법원행정처	사법업무전산화	사법업무시스템 구축	4,391
병무청	병무행정정보화(정보화)	병무행정정보화	8,057
산림청	산림과학원정보화(정보화)	산림연구정보시스템구축·운영	1,998
산림청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	AI기반스마트수목원구축ISP/BPR	250
산업부	공장설립정보화기반구축(정보화)	지능형 민원지원서비스 구축	172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정보화경비	6,554
식약처	식의약품 안전정보체계 선진화	의약품 허가심사 자동화 체계 구축 등	12,470
통계청	통계데이터분석 및 활용지원	AI기반 행정자료DB주소 표준화 시스템 구축 등	866
특허청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	12,774
특허청	특허기술 조사분석	AI 기반 특허행정 혁신	1,980
특허청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차세대 특허넷 시스템 ISP/BPR 수립	500
해경	해양경비지원시스템구축관리	AI 해양경비지원시스템 구축	1,117
해경	해양경찰정보화관리(정보화)	AI 수사시스템 ISP	370
환경부	국립생태원 출연	멸종위기종복원센터	420
중기부	데이터 인프라구축(정보화)	데이터인프라구축	4,75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범정부 AI 공통기반은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여 마련한 공공 인프라인 만큼, 구축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업에서의 활용도와 확산 가능성이다. 그럼에도 부처별로 개별 AI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고도화하는 방식이 계속되면, 공통기반의 활용 범위가 축소되고 중복투자 방지라는 사업 목적도 충분히 달성되기 어렵다. 특히 AI 서비스는 초기 개발 단계에서 아키텍처가 굳어지는 경향이 강하므로, 공통기반 적용 시점이 늦어질수록 전환비용이 커지고 사업 연계도 어려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사실상 공통기반의 기본체제는 2025년 11월말 완성하고 범정부 기관에 AI사업 추진 시 공통기반의 활용을 우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여러 부처들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다만, 일부 특화된 개발환경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기관이 자체 인프라 확보를 지향하거나 용역업체가 고유 아키텍처 활용을 선호하는 경우 공통기반 활용을 종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부연하였다.

그러나 명확한 이행지침이 부재하면 각 행정기관은 기관 고유의 업무 특수성을 명분으로 독자적 시스템 구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실제 구축을 담당하는 민간 용역사업자 역시 기존에 축적된 자사 테크스택(Tech Stack) 및 툴체인(Tool Chain)<sup>3)</sup> 적용을 우선시하는 관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수요기관과 공급사업체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공통기반은 실질적 활용 동인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중복투자 방지 및 범정부 AI 역량 집적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 달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부처별 AI 사업과 공통기반 간 연계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공통기반 의무 활용 대상과 예외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비검토 단계에서 공통기반 활용 권고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보완, 예산 조정, 계약조건 변경 가능성 등을 포함한 후속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공통기반 활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통기반이 부처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공공부문 AI 전환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3) 테크스택(Tech Stack)은 특정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프레임워크,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인프라 등 기술 요소들의 조합을 의미하며, 툴체인(Toolchain)은 소프트웨어 개발·배포의 각 단계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의 연결 체계를 일컫는다.

### 가. 현황

디지털서비스 안정적 추진기반 조성<sup>1)</sup> 사업은 디지털정부 서비스 장애예방 정보시스템 운영수준 및 운영시설 점검 및 진단을 통해 디지털정부 서비스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예산현액 16억 8,800만원 중 95.3%인 16억 8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디지털서비스 안정적 추진기반 조성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지능형 전자정부 재설계 및 정책연구	2,886	2,886	-	-	2,886	2,886	-	-	2,886
디지털서비스 안정적 추진기반 조성	1,688	1,688	-	1,688	1,688	1,608	-	80	1,688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 대책으로 매년 출연기관을 통해 정보 시스템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실제 업무가 민간 용역으로 재위탁되는 한계를 고려할 때 주관 부처에서 이를 면밀히 관리·감독하여 기관 참여도와 정부 책임성을 높이고, 점검 후 환류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1131-302

이 사업은 2023년 11월에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24.1.31.) 중 상시 예방강화 기제로 추진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도에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관리에 등급제를 도입하여 1~4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였다. 또한 「전자정부법」 개정('25.7.8.시행)으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이용하는 정보시스템의 현황조사 및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4년부터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하여 1·2등급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과 운영시설(데이터센터, 전산실 등)에 대해 각 기관에서 해당 기준에 적합하게 상시 예방·점검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업 집행절차를 보면, 출연기관에서 용역을 통해 민간전문가들이 각 기관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를 검토하고 이 중 일부에 대해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행정전산망 시스템 및 운영시설 예방 점검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추진체계	· 출연사업(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집행절차	· 행안부와 출연기관 협의 → 출연기관이 조달청에 사업자 선정 의뢰·선정 → (용역 사업자) 1,133개 정보시스템·운영시설에 대해 설문을 통한 현황조사 → (용역 사업자) 100개 정보시스템 및 51개 기관 운영시설 현장점검 → 출연기관이 준공검사 완료, 사업자에게 사업비 지급
집행내역	· 직접사업비 14억 4,700만원(실태점검 825백만원(8인, 8개월 인건비)) · 일반관리비 1억 6,1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이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행체계 및 환류체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범정부 정보시스템 상시점검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준정부기관 출연 방식으로 수행하면서 민간용역에 의존하는 현 구조는 책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에 대한 최종 책임이 행정안전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한 위탁 운영에 그치기보다 행정안전부의 관리·통제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보시스템 상시점검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은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민간전문가 활용 자체는 타당하나, 위탁기관이 용역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가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점검 이행 과정과 결과를 직접 확인·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책임 주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정보시스템 상시점검의 실효성은 점검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여부에 크게 좌우되는데, 전담부처가 아닌 출연기관 명의로 점검이 이루어질 경우 대상 기관의 이행 동기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장점검 동행을 강화하는 등 직접적인 확인을 확대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과 대상 기관의 이행 유인을 동시에 제고하고, 이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소관부처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환류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상시 모니터링의 효과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정보시스템 안정성 서면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입주 시스템은 약 78%의 안정성 충족률<sup>2)</sup>을 보이는 반면 민간클라우드는 63.7%, 자체운영시스템은 55.7% 수준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장비 교체 및 이중화구성의 안정성 개선 분야, 일상점검 등 예방점검 분야에 충족률이 37.3%, 36.2%로 5대 분야 평균이 48.5%에 불과하다.

---

2) 행정안전부에서 운영관리, 예방점검, 장애관리, 안정성 개선, 서비스 연속성으로 구성된 분야의 42개 항목을 중심으로 마련한 평가 기준을 의미한다.

[기관 유형별 1·2등급 시스템 안정성 충족률]

(단위: %)

구분	안정성 기준 5대 분야						
	계	운영·관리	예방점검	장애관리	안정성 개선	서비스 연속성	
계	61.2	62.8	56.9	66.5	61.3	51.4	
국정자원입주 <sup>1)</sup>	77.8	84.7	78.8	85.3	83.9	39.5	
민간클라우드	63.7	67.6	67.2	70.3	69.5	26.8	
자체 운영	소계	55.7	55.6	49.3	60.3	53.7	57.2
	중앙	60.5	61.8	61.9	66.3	67.0	39.3
	공공	65.3	67.3	60.7	66.4	70.3	62.6
	광역	53.6	48.7	49.3	64.3	51.1	47.0
	기초	48.5	48.1	36.2	53.7	37.3	60.8
	시도교육	73.4	72.2	78.6	75.4	84.7	54.5

주: 1) 정부·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서버·전산실을 운영하지 않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데이터센터 시설에 맡겨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상황에서 대국민 서비스 영향도, 장애 이력, 자료 제출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100개 시스템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안정성이 미흡한 시스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환류 방안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2025년 1·2등급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안정성 충족률 현장점검 결과]

(단위: %)

구분	계	운영·관리	예방점검	장애관리	안정성 개선	서비스 연속성
계	71.7	73.4	68.9	77.8	71.3	56.3
국정자원 입주(17)	80.1	85.6	88.7	84.7	87.4	40.9
기관 자체(62)	69.6	69.3	62.5	76.1	63.6	66.2
KLID 주관(4)	77.7	84.7	63.6	93.2	83.3	46.4
민간클라우드(17)	68.9	72.7	71.8	72.9	78.7	39.7

주: 괄호 안 숫자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대상 정보시스템·시설 수를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정보시스템 안전성 조사 및 점검 결과 취약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하고 1개월 이내에 조치계획을 제출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부연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 현황을 보면 이행점검 및 환류체계가 충분히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 2025년에는 시범사업 성격이라는 이유로 이행점검 내역이 당초 과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이 10월경 완료되고 현장점검 결과보고가 12월에 완료되는 일정으로 해당 연도 이행점검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 나아가 안전성 충족률이 낮은 시스템을 보유한 기관에서는 전문인력부재, 노후장비 교체 재원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해당한다. 이를 감안할 때 점검 중심의 모니터링에 그치고 실질적인 개선조치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정책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본 사업이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방지 대책의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무부처로서 실질적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점검 결과가 예산지원, 기술지원, 제도개선 등으로 연계되는 명확한 환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범정부 1·2등급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라는 정책목표가 실질적으로 달성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범정부 정보화 투자관리체계 효율화<sup>1)</sup> 사업은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적용 확대 및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여 최적의 운영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예산액 3억 5,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전자정부 성과평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전자정부 성과평가	3,568	3,568	-	-	3,568	3,568	-	-	3,592
범정부 정보화 투자관리체계 효율화	353	353	-	-	353	353	-	-	353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당초 범정부 정보화 투자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13,026개 정보시스템의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계획 변경으로 이행 대상이 전체의 29%인 3,870개로 조정되었고, 해당 대상 또한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계속 운용되거나 민간 클라우드 전환을 명목으로 예산을 확대하는 등 후속 이행실적이 미흡하므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34-500의 내역사업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범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방식 개편의 일환으로, 이용도가 낮고 성과가 저조한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여 관리효율성을 제고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중복·유사 기능을 정비함으로써 시스템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된다.

[공공부문 정보시스템 등급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기준	배점	내용
업무영향도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발생 등 서비스 중단 시 업무영향도</li> <li>국민의 안전생명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국민의 경제·사회활동에 잠재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대체수단 활용으로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li> </ul>
사용자 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중 가장 사용자가 많은 기간의 일 평균 사용자 수 (시스템 접속자 기준, 중복 사용자 포함)</li> </ul>
서비스 파급도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서비스 중단 시 바로 영향을 미치는 타 업무 서비스 수</li> </ul>
합계(최종등급)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등급) 90점 이상, (2등급) 85점 이상, (3등급) 80점 이상, (4등급) 80점 미만</li> </ul>

자료: 행정안전부(2024),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대응 통합표준 매뉴얼」에 근거하여 재구성

조사 결과, 중앙부처 정보시스템 371개를 포함한 총 13,026개 시스템이 통·폐합 대상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6년까지 기관이 1·2등급 시스템으로 통폐합하거나, 기관 내 3·4등급 시스템을 통합하여 1·2등급 수준으로 재구축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다만, 3·4등급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기관 대표시스템이 1개뿐인 경우나, 슈퍼컴퓨터 등 시스템 특성상 통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같이 당초 정보시스템 통폐합 정책은 활용도가 낮은 시스템 정비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강도 높게 추진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통폐합 등급 기준이 기존 3·4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되고, 기관대표 시스템, 슈퍼컴퓨터 등 기술적 특성에 따른 제한적 예외 인정에서 나아가 재개발 예정 시스템, 서비스형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스템 등으로 예외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제 통폐합 추진 대상은 3,870개로 축소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난다.

[정보시스템 통폐합 추진 현황 및 지침변경 내역]

일자	내 용
'24.4.	3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대상 통폐합 기준·절차 마련
'24.6.	지자체 공공기관은 통폐합 기준 4등급으로 완화
'24.10.	기관 의견을 검토, 예외사유 등 검토하여 대상 확정
'25.2.	정보시스템 정비 관련 통폐합 예외 근거 마련(지침 개정)
'25.5.	2024년 수립 통폐합 계획 변경 및 2025년 신규 대상 조사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한편, 추진 계획과 실제 이행 간의 괴리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통·폐합 추진대상 시스템 3,536개 중 74.9%인 2,647개가 계획대로 추진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계획수립을 포괄한 것으로 실제 이행실적과는 괴리가 크다. 또한 대부분 시스템에 2026년에도 예산에 통·폐합을 위한 재원이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기존 시스템이 그대로 운용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2024~2025년 정보시스템 통폐합 대상 이행점검 결과]

(단위: 건, %)

구분	합계(A+B+C)		추진(A)		예외인정(B)		미제출(C)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2024년 계획 (2025.5.점검)	10,754	100	3,536	32.9	5,810	54	1,408	13.1
2025년 계획 (2026.5.점검)	13,026	100	3,870	29.7	6,755	51.9	2,401	18.4

자료: 행정안전부

[2024년 3·4등급 정보시스템 통폐합 이행현황 발표자료]

(단위: 건)

계	추진		미추진	
	기존 계획 <sup>1)</sup>	계획 변경 <sup>2)</sup>	예외 승인 <sup>3)</sup>	재수립 필요
3,536	2,647 (74.9%)	298 (8.4%)	106 (3.0%)	485 (13.7%)

- 주: 1) IRM 등록 정보 정정에 따른 시스템 삭제(폐기) 등 포함  
 2) 예산, 시스템 상황 변경 등으로 일정 등 조정 및 '24년 불인정 시스템 계획 수립  
 3) 당초 추진이나 등급 조정, 통폐합 예외 사유 발생 등으로 예외 인정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도 지침 변경에 따라 31개 시스템만 폐기·통·폐합 대상으로 조정되었는데, 이들도 확인 결과 대부분이 2026년 5월 현재까지 정상 운용 중이며 당해연도 통·폐합 관련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폐합 계획이 실질적인 예산 편성과도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5년 통폐합·폐기 이행점검대상 시스템 중 운용중인 시스템 일부 예시]

상위기관명	시스템명	정비유형	현황('26.4.)
교육부	열린배움터	통폐합	운용중
국방부	공군 기록관리시스템	통폐합	운용중
	해군 인터넷홈페이지	폐기	운용중
	해병대_인터넷홈페이지	폐기	운용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보시스템	폐기	운용중
기획예산처	E재정배움	통폐합	경제배움E통합
재외동포청	스터디코리아	통폐합	운용중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통폐합	운용중
	코리아넷	폐기	운용중
	한상넷	폐기	운용중
외교부	업무분석시스템	통폐합	운용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홈페이지	폐기	운용중
재정경제부	공공기관 현황조사 시스템	폐기	폐기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또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자체 시스템의 경우에도 4등급으로 분류된 시스템이 서비스 고도화 등을 이유로 증액 편성되거나, 시스템은 기존대로 운영하면서도 메인만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등 관리효율성 제고라는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된다.<sup>2)</sup>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관리효율성을 강화하되 각 기관의 건의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한 것이며 예외사유 인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2027년부터는 단순 등급 기준에 따른 계획수립·추진이 아니라 기존 전자정부 성과관리 제도에 시스템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통폐합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부연하였다.

그러나 2024년 이후 상당한 행정비용을 투입하여 정보시스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활용도가 낮고 성과가 저조한 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해 온 점을 고려할 때, 통·폐합 계획의 수립과 실제 집행 간 연계성이 미흡한 현 상황은 정책 추진의 적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향후 기존 성과관리 제도하에서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우,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6조<sup>3)</sup>에 따르면 운영성과 평가 점수 40점 미만의 정보시스템만 폐기 권고 대상으로 설정하고 40점

---

2) 일례로, 국민소통플랫폼(소통24)는 업무영향도 최하위, 사용자 수 5개 등급 중 4등급, 서비스 파급도 최하위등급으로 4등급 평가를 받았으나, 2026년 AI기반 서비스 고도화를 이유로 증액편성되었고,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역시 하위지표가 모두 최하등급으로 평가되었으나 민간클라우드 사용계획을 이유로 유지 운영 중이다.

3)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6조(정보시스템의 정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성과평가 결과, 총점 40점 미만은 폐기
  2. 성과평가 결과, 총점 40점 이상 60점 미만인 정보시스템은 폐기하거나, 통폐합, 기능고도화, 전면재개발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은 폐기권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제협약 또는 법령에 구축·운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
  2. 국민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국가 차원의 안보·치안의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3. 국가경제의 심각한 손실이나 국민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4. 대국민 서비스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5. 이용자가 사회적 약자로서 생활 편의에 도움이 되는 경우
  6.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급받은 표준 보급시스템인 경우
  7. 서비스 운영이 개시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8. 그 밖에 폐기가 곤란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정보시스템
- ③ 중앙행정기관등 및 지방자치단체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정비권고를 따라야 한다.

이상 60점 미만의 시스템은 기능 재건 및 고도화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당초 통·폐합 계획은 더욱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 인정 범위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추진 대상 시스템에 대한 예산 반영 및 이행 점검 체계를 강화하는 등 계획과 집행 간 연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제주 4·3피해보상<sup>1)</sup> 사업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22.4.12. 시행, 이하 “「4·3사건법」”)에 따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예산액 2,418억 7,700만원 중 418억 2,900만원 이용 감액하고 1,945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4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제주 4·3 피해보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제주 4·3 피해보상	241,877	241,877		△41,829	200,048	194,583	-	5,465	200,01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제주 4·3 피해보상 사업은 예산편성의 면밀성 부족과 심사·지급 지연으로 집행부진과 타 사업으로의 과다 이용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국가보상금의 적기 지급을 위해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지급을 규정한 「4·3사건법」(22.1.11.개정)에 근거하여 2022년부터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후 지급 결정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431-306

「4·3사건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제주 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결정된 희생자 중 이미 보상을 받은 자와 국가유공자 등을 제외한 인원으로, 행정안전부는 동 지급대상을 당초 10,206명으로 파악하였으나 4·3사건법 시행령 개정('22.4.12.)에 따른 8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에 따라 2025년 기준 15,088명인 것으로 확인된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22.6.1.~'25.5.31.의 기간 동안 반기별로 신청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급신청을 받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보상금을 균등하게 편성·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후 4·3사건법 시행령 개정('22.4.12.)에 따른 8차 희생자·유족 추가신고에 따라 신청접수기한은 2026년 12월까지, 지급 완료시점은 2028년으로 각각 조정되었다.<sup>2)</sup>

[제주 4·3 보상금 지급 계획]

(단위: 명, 백만원)

구분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기간	'22.6.1.~ 26.12.31.	'22.6.1.~ 12.31.	'23.1.1.~ 6.30.	'23.7.1.~ 12.31.	'24.1.1.~ 6.30.	'24.7.1.~ 12.31.	'25.1.1.~ '26.12.31.
대상	15,088	2,117	2,500	2,795	2,663	2,714	2,299+ $\alpha$
결정	7,524	1,955	2,288	1,999	1,272	10	심의중

자료: 행정안전부

보상금 지연이자<sup>3)</sup> 규모는 신청개시월인 2022년 6월부터 1년이 지난 시점('23.6.)부터 해당순서의 신청 접수 시작일까지 경과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2025년에는 74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26년 예산에는 93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 중이다.

2) 「4·3사건법」에 따르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의 경우 9,000만원, 후유장애 희생자는 장애등급에 따라 5,000~9,000만원, 수형인 희생자는 형벌 정도에 따라 3,000~9,000만원이다.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휘리를 고려한 기재부령으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며, 2025년의 경우 3.5%이다.

[보상금 지급 지연이자 예산 현황]

구분	2023	2024	2025	2026
대상자 수	600명	2,500명	2,176명	2,107명
지연이자	5,400만원	15억 7,500만원	74억 2,700만원	93억 500만원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각각 470억원, 100억원, 288억원, 418억원의 보상금 예산이 미집행되어 타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에도 333억 2,900만원은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로 이용되었고, 85억원은 본부 인건비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 감액된 것으로 확인된다.

[2022~2025년도 예산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당초예산	이·전용	예산현액	집행	불용
2022년	181,010	△47,000	134,010	62,560	71,450
	· (이용) 제11호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비 부족에 따른 이용 · (불용) 4·3사건법 시행(22.4.12.), 신청 및 사실조사 기간 소요 등으로 심의기간이 부족하여 불용액 과다 발생				
2023년	193,554	△10,000	183,554	183,548	6
	· (이용) 6.27~7.27 호우, 제6호 태풍 ‘카눈’ 피해복구비 부족에 따른 이용				
2024년	226,198	△28,800	197,398	197,398	-
	· (이용) 7.8~7.19, 9.19~9.21 호우피해복구비 부족에 따른 이용				
2025년	241,877	△41,829	200,048	194,583	5,465
	· (이용) 7.16.~7.20. 호우피해복구비 부족 등에 따른 이용(333.3억원) · (이용) 11.20. 기관운영을 위한 부족재원 마련 (85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제주4·3위원회 결정을 갈음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간소화와 조사원·심사위원 확충을 통해 지급 속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한계가 있었고, 위원회 위원 구성(25.11.)이 지연된 상황

에서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였음에도 실집행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회계마감으로 인해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미집행 금액에 대해 호우피해 복구비 부족에 따라 재난대책비(보조)로 이용하는 등 불요불급한 이·전용은 실시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업 신설 후 4년 연속으로 100억~470억원 이상의 예산이 이·전용된 것은 지급절차 지연 및 이전년도 업무처리 속도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이 미흡한 데 기인한 측면이 있다. 보상금 예산산출내역을 보면 1인당 최대 지급액인 9,000만원을 기준으로 연내 지급 대상자의 수를 산출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매년 대상자 수와 1인당 보상금이 계획 대비 낮게 나타나 과도한 미집행액이 발생하고 있다.

[2023~2025년도 보상금 예산산출근거 및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명)

연도	보상금 산출내역		집행내역	
	산출근거	예산액	지급인원	집행액
2023	9,000만원×2,150명+이자 6,480만원	193,554	2,039	183,548
2024	9,000만원×2,496명+이자 15억 7,500만원	226,198	2,178	197,398
2025	9,000만원×2,605명+이자 74억 2,700만원	241,877	2,083	194,583

자료: 행정안전부

이같이 예산 과다편성과 지급절차 지연으로 인해 보상금으로 집행되어야 할 예산의 과다한 이·불용이 반복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무엇보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신속한 지급이 요구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보상금 연차별 지급계획이 2028년 완료로 조정된 점을 감안하여 실집행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급속도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시에는 업무처리 속도에 따른 연내 지급 가능인원을 면밀히 파악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사업<sup>1)</sup>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운영 중인 52개 부처 정보자원의 관리를 지원하고자 편성된 것으로, 2025년 예산액은 2,721억 4,900만원이었으나, 대전센터 화재('25.9.) 대응을 위해 예비비 320억 4,1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예비비와 전용 증액을 합한 예산현액 3,079억 2,600만원 중 88.1%인 2,714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사업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전산장비를 교체·통합하기 위한 예산액 1,733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화재로 인한 전산장비 교체 및 행정정보시스템 정상화 추진을 위해 예비비 1,298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현액 3,076억 7,000만원 중 97.8%인 3,009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실된 G드라이브 재구매 대신 SaaS서비스를 구독하기 위해 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사업에 민간 SaaS 이용료 5억 1,0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를 이를 포함한 사업 예산현액 68억 5,700만원 중 98.4%인 67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관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운영	272,149	3,755	32,041	19	307,926	271,441	16,666	19,819	313,426
중앙행정기관 노후장비 통합구축	173,334	4,513	129,823	-	307,670	300,997	6,519	154	410,722
정보자원관리지원	6,347	-	510	-	6,857	6,749	-	108	3,97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36-500, 2036-507, 2039-500

## 나. 분석의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화재사고로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의 물리적 손실뿐 아니라 공공행정서비스 중단이라는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 핵심 정보인프라의 위협예방체제와 비상대응·복구체제의 운용 현황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후속 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다.

2025년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를 정보시스템과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이전 작업 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7-1 전산실이 전소(전산장비 약 740대, 리튬이온배터리 384모듈 포함)되었다. 더불어 관련 서버 전소로 대전센터의 709개 시스템<sup>2)</sup> 가동이 중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을 포함한 7개 사업에 서버·스토리지 구매 및 기타 장비 임차비용, 기반시설 및 데이터 복구 등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소요와 G드라이브의 민간 SaaS구독료 등을 감안한 1,723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였다. 그러나 당초 전소로 판단되었던 냉각탑 및 자동제어반 등 기반시설이 재점검 결과 내부 전체 손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복구 소요가 당초 예상을 하회하였고, 주요 설비 및 건물 복구공사가 절대공기 확보를 위해 차년도로 이월됨에 따라, 당해연도 관련 예비비 집행액은 1,496억 3,800만원이다.

[2025년 국정자원 화재피해복구를 위한 예비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명	집행내역	예비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국가 정보 자원 관리원 운영	공공요금및제세	민간클라우드사용료	6,122	4,773	1,115	234	
	일반용역비	전산실 클리닝	1,000	987	-	13	
	관리용역비	시스템복구지원 용역	6,250	4,963	-	1,287	
	일반연구비	대구센터이전 클라우드전환	3,861	1,676	120	2,065	
	공사비	전산실, 냉각탑 등 복구	14,460	1,335	5,485	7,639	
	자산취득비	사무실 집기류 구입	사무실 집기류 구입	100	98	-	2
			대구센터이전 상용SW	248	-	185	63

2) (행안부) 정부24·국민민서·모바일신분증·정보공개시스템·온나라문서, (권익위) 국민신문고, (과기정통부) 인터넷우체국, (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조달청) 나라장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위: 백만원)

구분	비목명	집행내역	예비비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노후장비 통합구축	임차료	전산장비 임차료	1,464	1,464	-	-
	자산취득비	전산장비 구입	128,359	124,503	3,856	-
정보자원 관리지원	민간위탁사업비	민간 SaaS 이용료	510	510	-	-
미래전자 정부추진	일반출연금	민간클라우드전환API전	4,265	4,265	-	-
공공데이터 개방및이용 활성화지원	일반출연금	민간클라우드전환API전	2,785	2,779	-	6
재난정보 통신관리	민간이전	시스템복구 및 민간클라우드 AP이관	2,887	2,779	106	-
합 계			172,311	149,638	13,964	12,823

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사업은 예비비 편성 전 공사비 41억원을 전용함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시스템을 우선순위에 두고 복구를 진행하였으며, 화재피해로 대전센터 전력이 부족하여 1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 내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전을 추진했다. 10월 31일 정부24·국민비서 등 1등급 시스템 40개가 모두 복구 완료되었고, 12월 30일 오전 9시 30분을 기점으로 709개 전 시스템의 복구가 마무리됨에 따라 재난 위기경보를 해제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대응체계를 공식 종료했다. 또한 전산실 내 위치한 배터리는 2026년 1월말에 전산실에서 분리반출을 완료하였으며<sup>3)</sup> 전산실의 전력은 지하배터리실을 통해 공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관리 중이다.

더불어 이러한 화재 피해복구에서 나아가 국가정보자원 인프라 관리에 대한 구조적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관련 대책을 수립 중이거나 시행 중이다.

3) 화재 시발점이 됐던 제7전산실의 경우 배터리를 지하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2전산실(2층) 역시 배터리가 전산실 내 공간에 함께 위치해 위험에 취약하여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지하 배터리실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관리 중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후속대책 주요 내역]

구분	지적사항	조치·향후계획
복구 우선순위 체계 개편	복구율 중심 대응보다 이용자 체감도 기준 우선순위 필요, 국정원·행안부·과기정통부 간 복구 기능 증척·지휘체계 공백 문제 제기	시스템 유형별 복구목표시간 기준 마련 (국가 핵심 실시간~1시간, 대국민 필수 3~12시간, 행정 중요 1~5일). 국민 영향도(70%) 고려해 A1~A4 등급 분류
리튬배터리 관리 규정 정비	화재 당시 최초 발화 배터리 충전율이 90%로, 업계 안전지침(30% 미만)이 지켜지지 않은 점이 드러나 사전 규정·감독 부재 비판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절차 정비 및 배터리공사 관련 계약제도 개선을 관계부처와 협의, 작업 시 충전율 30% 이하 유지 등 안전지침 준수 강화
데이터센터 안전기준 강화	기존 시설은 안전기준 상 구조 변경이 어려우면 대안조치 계획 제출을 허용해, 노후·기존 센터 적용의 실효성 논란	BMS(배터리관리시스템)·화재 조기탐지 추가설비 의무화, 리튬배터리 분리격실·이격거리 기준 도입(2026년도 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2026.2.11 시행
G드라이브 소실 대응, 민간SaaS 활용	용량·성능 문제로 외부 백업을 하지 않아 데이터 영구 소실(19만여 명 가입, 858TB 소실). 서버-백업이 동일 전산실에 위치	민간 SaaS·클라우드 기반 협업·저장 환경 전환 검토
대전센터 폐쇄·이전	대전센터 재해 대응 능력·수용 용량 한계 도달	대전센터 2030년까지 단계적 폐쇄. 공주 백업센터, 대전 인근 30~50km 신규 센터, 세종 민간 클라우드 등 대체 방안 검토
재해복구·이중화 체계	재해복구시스템(Disaster Recovery) 구축 미흡	2030년까지 1만5천여개 정부 시스템 DR 등급별 완비, 2026년 대전센터 134개 우선 구축 예정
대구센터 PPP존 운영	여러 MSP <sup>1)</sup> 가 개별 관리하면서 운영 방식과 장애·보안 대응이 달라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대구센터 PPP 16개 시스템을 통합관리하는 사업 추진. 24시간 관제, 표준화된 ITSM, 데이터 백업 일원화, 원격 운영 거점 구축 계획

주: 1) 클라우드 인프라(CSP) 위에서 시스템의 운영, 보안, 백업, 모니터링 등을 대행해 주는 전문 기술 기업을 의미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6.5.18). '민관협력으로 더 단단해진 정부 정보시스템, 통합관리본격가동';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 고시개정안;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대한민국 인공 지능행동계획」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전 시스템의 복구가 연내 마무리된 것은 신속한 대응의 성과라 할 수 있으나, 해당 사고는 국가 정보인프라 안전관리 체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재점검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조치사항 상당수가 차년도 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향후 그 추진 경과와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일부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실행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한 G드라이브 자료 소실(858TB) 이후 백업 체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련 기관의 시스템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자료관리 책임자들의 업무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 자료 보호 및 복구 체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 방향과 표준화된 관리 방침을 신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 전후 G드라이브 활용 현황]

기관명	2025.8월 기준				2026.3월 기준			
	기관	할당량 (GB)	총사용량 (GB)	사용률 (%)	기관	할당량 (GB)	총사용량 (GB)	사용률 (%)
중앙 행정기관	48	4,570,589	864,012	18.90	46	3,647,000	135,802	3.72
위원회	26	76,289	23,599	30.93	10	9,800	912	9.30

주: 국정자원 화재 이후, 대구센터 민간협력존의 SaaS G드라이브(구독형) 이용 중이며, 사용량만큼 비용을 지급함(사용률(%): 총사용량/할당량×100)  
 자료: 행정안전부

또한 화재보험에 대해서도 각 센터별로 개별 계약을 추진하면서 보험가입 물량 산출<sup>4)</sup>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 대전본원의 정보시스템 화재보험 가입물량이 전체의 24.8%에 불과하다는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보험가입금액 산정 방안, 전자기기 보험(EEI)별도 활용, 통합발주 필요성 등에 대해 모색하여 핵심 인프라에 대한 위험대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보험가입 물량 산출 시 대전본원은 정보시스템의 도입금액을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광주센터는 도입금액에 감가를 적용해서 산출하는 등 차이가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센터별 화재보험 가입 현황]

구분	대전본원	광주센터	대구센터
보험가입금액	4,557억원	5,080억원	2,194억원
보험료	2,284만원	2,462만원	813만원
보험기간	'25.7.26.~'26.7.26.	'25.9.8.~'26.9.8.	'25.7.26.~'26.7.26.
정보시스템수	10,082개	10,618개	2,789개
보험가입 시스템 수	2,503개	10,618개	2,789개

- 주: 1. 전 센터에서 센터별 UPS/리튬이온배터리는 보유 개수 전량 보험가입  
 2. 대구센터 보험가입금액은 민간협력클라우드(PPP) 시설을 포함하되, PPP에 대한 보험료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부담함

자료: 행정안전부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의 화재사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센터별 물리적·기술적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 발생 시 서비스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산·이중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핵심 정보인프라의 구조적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sup>1)</sup> 사업은 전쟁·재난·재해·대규모 장애 등 비상사태로 대전·광주센터 동시 기능 마비 시에도 행정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중요 전산자원의 안전한 보호 구현을 위한 정부 재해 복구 전용데이터센터를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전년도 이월액 55억 9,300만원을 포함한 2025년 예산현액 72억 700만원 중 96.4%인 69억 5,2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정보자원 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1,614	1,614	5,593	-	7,207	6,952	-	255	4,373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재해복구체계는 자연재해, 서비스 오류, 사이버 공격 등 시스템 재해 등 발생시 정보시스템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핵심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인적·물적 자원 및 관리체계 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시설 측면에서는 주센터 외에 별도의 장소에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성이 높은 방식으로 분류된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지침」, 2005.12.).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공주센터 구축을 추진하였으나, 타당성 재조사, 사업자 선정 유찰 등으로 지연되면서 2019년에 착공했고, 착공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사업계획 재검토 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건물 신축공사는 2023년 5월에 완료되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36-500

이에 더해 당초 2024년도에 개칭할 계획이었으나,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23.11.)로 단순 백업을 넘어 두 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 운영되는 'Active-Active Disaster Recovery'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일정이 추가 연기되어 2025년 10월 개칭하였다.

## 나. 분석의견

매년 Active-Active 이중화를 포함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의 수립 기준과 사업 내용이 변경되어 예산집행의 체계성이 떨어지고 국가 정보자원관리에 제약이 발생하였으므로, 범정부 차원의 면밀한 데이터센터 이중화 계획을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재해복구체계(이하 “DR”)는 운용방식에 따라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자원을 이중화하여 주센터와 원격지 센터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Active-Active 방식,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기반으로 재해 발생 시에만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Active-Standby 방식, 데이터만 주기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재해 시 복구에 활용하는 Cold Site 방식 등으로 구분된다.<sup>2)</sup>

[정보자원 재해복구체계 운용방식별 비교]

용어	구축 및 운용방식	목표복구 시간(RTO)	초기투자 및 유지보수비용
Active-Active	전체 정보자원에 대해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재해복구센터를 원격지에 구축하여 동시가동	0	높음
Active-Standby	전체 정보자원에 대해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재해복구센터를 원격지에 구축하여 재해발생시 가동	≒0	높음
Warm Site	일부 정보자원에 한해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재해복구센터를 원격지에 구축(일부에 한해 액티브스탠바이 방식 운용)	수시간 ~1일	비교적 저렴
Cold Site	데이터만 원격지에 보관, 재해 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복구	수주 ~수개월	가장 저렴

자료: 정보시스템 재해복구지침

2) 이는 재난복구체계를 복구센터의 가동·대기 형태(복구 수준·RTO:Recovery Time Objective)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데이터 복제 단계를 중심으로 스토리지 DR, 서버 DR, Active-Active DR로 구분하기도 한다. 통상 스토리지 DR·서버 DR은 Active-Standby 방식으로 운영되고, Active-Active DR은 그 자체로 양 센터 동시 가동을 전제한다.

이 중 Active-Active DR은 장애 발생 시 타 센터의 시스템이 서비스를 이어 받아 증단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해복구 측면의 우위가 인정된다. 그러나 초고속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 등 인프라 요소와 업무서비스 간 데이터 동기화 기술의 적용이 수반되어 상당한 비용과 고도의 기술적 역량이 요구된다. 또한 주센터와 보조센터 간 물리적 거리 제약으로 인해 적용 가능한 대상 시스템이 제한되며, 공주센터의 경우 대전본원에 위치한 정보시스템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한 구조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DR 구축 현황을 보면, 2025년 말 기준 대전센터 47개, 광주센터 30개 등 총 77개 업무에 걸쳐 전체 업무 수(1,271개) 대비 구축률이 6.1%에 불과하다. 구축 방식 또한 서버 DR(67.5%)과 스토리지 DR(32.5%)에 머물러, 재해복구체계의 기반이 상당히 취약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DR현황]

구분	시스템 수	DR 구축 업무 수			DR 구축율
		계	서버 DR (Active-Standby)	스토리지 DR	
대전센터	709개	47개	28개	19개	6.6%
광주센터	562개	30개	24개	6개	5.3%
계	1,271개	77개	52개 (67.5%)	25개 (32.5%)	6.1%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이하 “행정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다수 서비스에 공통 적용가능한 표준 기능에 대해서는 DR 구축방식을 ‘다중지역 동시 가동’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도 개별 부처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2024년 연내 재해복구시스템 이전을 완료하여 개청할 예정이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이하 “공주센터”)의 사업 일정도 추가 연기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Active-Active DR 시범사업을 위해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비 16억 7,500만 원과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하 "nTOPS") 센터이중화 구축비 7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은 전액 미집행되었고 nTOPS 센터이중화 구축의 집행률도 30%에 그쳐, 시범사업은 사실상 이행되지 못하였다.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과제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역사업명	과제명	예산액	집행액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부처 신규전산장비 통합구축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인프라구축	1,675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	공동인프라 운영강화	nTOPS 센터이중화 구축	773	235
합 계			2,448	235

자료: 행정안전부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입찰 및 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시범사업의 핵심인 기술적 검증 절차가 적기에 착수되지 못하였으며, 이후 화재로 인해 nTOPS 주시스템이 소실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어 기술적 검증절차가 2026년으로 연기되었다. 이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타당성과 확산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려는 당초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과제별 추진현황]

구분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인프라구축	nTOPS 센터이중화 구축
입찰공고일	2025.7.15.	2025.7.15.
공고기간	2025.7.15.~8.19.	2025.7.15.~8.19.
재공고	2025.8.19.~9.3.	2025.8.19.~9.3.
선정방식	일반경쟁 → 수의계약	일반경쟁 → 수의계약
계약금액	16억 7,500만원	7억 7,300만원
계약기간	2025.9.24.~2026.6.11.	2025.9.24.~2026.6.11.

자료: 행정안전부

한편, DR 구축 관련 예산 편성 기준도 단기간 내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2025년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Active-Active 방식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2026년에 본격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전까지는 부처별 DR 구축을 제한하는 방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후 2025년에는 일부 1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부처별 Active-Active DR 예산편성을 허용하면서, 2026년에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과 스토리지 DR 구축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변경은 초기 제시된 추진 기준과의 정합성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3)

나아가 2026년 예산안에는 당초 통합스토리지 DR 중심 구축을 전제로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에 3억원만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다만, 화재사고 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범정부 차원의 Active-Active DR 구축을 전제로 예산 조정(3억원 → 3,445억원 증액)이 있었다. 노후장비 통합구축 사업에 Active-Active DR 구축 예산이 반영되었고, 공주센터에는 미구축 시스템을 대상으로 스토리지 DR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이 추가 편성되었다.

[2026년 Active-Active DR 구축 관련 예산(국회증액분)]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역사업명	내용	예산액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범정부 이중 운영시스템 구축	13개 주요 시스템 Active-Active DR 구축 / 97개 시스템 최적 이중화모델 수립을 위한 ISP수립	252,322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스토리지 DR구축	대전센터 입주 주요 정보시스 템 중 재해복구 미구축시스 템 121개 스토리지 DR구축	87,992
합 계			340,314

자료: 행정안전부

3) 이에 따라 공주센터 사업도 정책 변화에 따른 조정이 있었다. 2024년도에는 공주센터에 1~4등급 정보 시스템 장비 941대를 이전하기 위한 예산이 14억 2,200만원 편성되어 있었으나, 다중지역 동시 가동 정책에 따라 1·2등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주센터에 신규 구축하기로 하고 3·4등급 정보시스템 증원격차 소산 방식에 해당하는 67대만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1·2등급 정보시스템 이전 관련 예산 13억 4,300만원을 전용 감액하여 전산환경 구축 공사비 10억원, 자산취득비 1억 9,600만원 및 감리비 1억 4,700만원을 각각 전용 증액하여 인프라사업을 추진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공주센터 신축과 더불어 범정부 정보자원 재해복구체계 확립을 위해 계획을 수립해왔으며, 행정전산망 장애 이후 기존 계획을 변경하고 재원 소요가 상당한 Acitve-Active DR체계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지침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Acitve-Active방식을 비롯한 재해복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편성 기준과 추진 방향이 반복적으로 변경되면서 정책 일관성이 저하된 측면이 있다. 이로 인해 재해복구센터인 공주센터의 개청 지연으로 국가정보자원 관리와 디지털 행정서비스 연속성 확보에도 제약이 따랐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Acitve-Active방식의 DR의 구축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해복구체계 구축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구체화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의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서, KOICA가 추진하는 공모형 ODA사업<sup>1)</sup>과 ODA 프로젝트형 사업<sup>2)</sup>을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였다.

해당 사업의 예산 흐름은 ① 외교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확정, ② 외교부에서 KOICA로 사업출연금 교부, ③ KOICA가 사업수행 기관 명의의 별도 계좌로 사업비 송금, ④ 소속기관의 사업비 직접 집행, ⑤ KOICA 및 회계법인의 사업비 정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KOICA는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 명의의 사업비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안내한 후 사업비를 해당 계좌로 송금하였고 국과수와 국정자원 사업담당자가 직접 비용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외교부 및 KOICA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는 중앙행정기관도 포함된다.

2) ODA 프로젝트형 사업은 개별 부처의 업무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부처에 사업수행자(PMC, PC 등 사업관리용역) 역할을 맡기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사업비를 실제 집행·관리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4개 사업,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KOICA로부터 송금받은 누적 송금액은 51억 8,400만원이고 누적 반납액은 700만원이다.

[2025년 국과수·국정자원에서 집행한 프로젝트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ODA 프로젝트명	누적 송금액 <sup>1)</sup>	누적 반납액 <sup>2)</sup>
국가정보 자원관리원	튀니지 전자정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가정보센터(CNI) IT서비스 관리 역량 강화 사업('24~'25)	393	7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스리랑카 사법체계의 마약분석 역량강화사업('21~'25)	1,193	-
	몽골 국립과학수사원 법과학 역량강화 사업('20~'25)	2,119	-
	알제리 경찰청 과학수사 역량강화사업('25~'29)	499	-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과학수사기관 구축을 통한 젠더기반폭력 사건 대응 역량강화사업('24~'28)	980	-

주: 1) 사업을 시작한 이후 KOICA가 부처로 송금한 금액임

2) 사업을 시작한 이후 KOICA가 부처로부터 반납받은 금액임

1. 위 표의 프로젝트에는 공공협력사업과 그 외 일반적인 형태의 국가별 협력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자료: KOICA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 나. 분석의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집행한 ODA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KOICA의 ODA 프로젝트 위탁경비를 기관 별도 계좌로 수령·집행하여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국가재정운용체계에서 벗어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고금 관리법」은 부처 소관 예산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 공무원을, 지출에 대하여 재무관·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이들 회계관계직원의 직무를 원칙적으로 상호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징수·수납 기능과 지출 기능을 인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그 적용은 해당 자금이 부처 소관 세입·세출로 편성·관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과수·국정자원 예산집행 원칙 및 KOICA 사업비 집행방식 비교]

구분	수입	지출	
		일반	관서운영경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수) 수입징수관 담당</li> <li>○(수납) 수입금출납공무원 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요청</li> <li>○지출관의 확인 후 실제 지출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출관이 교부한 관서운영경비 범위 내에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원인행위 및 실제 지급실시</li> </ul>
KOICA 위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OICA가 부처 명의 계좌에 송금</li> <li>○사업담당자가 계좌내역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출소요 발생 시 사업담당자가 직접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li> </ul>	

자료: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각 부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한편, 기관 계좌로 송금된 KOICA 사업비는 ①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른 기관 근로자에게 지급할 직접인건비 내지 자문료, 여비, 제경비 등으로 구성된 해외 전문가 파견경비와 ② 연수운명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직접인건비, 수원국 초청인사에게 지급할 초청경비, 초청연수 진행을 위한 교육경비 및 기타 사업비 등으로 구성된 초청연수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되며, 해당 자금은 기관에서 직접 사업비를 집행한다.

국과수와 국정자원은 이러한 사업비를 기관 명의의 전용계좌에서 직접 관리하면서도 이를 세입·세출 외 거래로 분류하고 있어, 부처 소관 세입·세출을 전제로 작동하는 위 통제절차가 처음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출 단계에서는 회계관계직원의 관여 없이 사업담당자가 현금 또는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수입에 해당하는 사업비 송금 역시 수입 담당 회계관계직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기관이 실질적 집행 책임을 부담하는 자금이 회계관계직원의 점검 범위 밖에서 수납·집행되고 있어, 그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KOICA 사업비 세부 항목 및 산정 기준]

구분	세부 항목	산정 기준 (KOICA 내부규정)
해외 전문가 파견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인건비 내지 자문료</li> <li>○ 여비</li> <li>○ 제경비</li> </ul>	「용역경비 산정지침」,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글로벌 연수사업 규정 시행세칙」 등
초청연수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인건비</li> <li>○ 초청경비</li> <li>○ 교육경비</li> <li>○ 기타 사업비</li> </ul>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이와 달리 같은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KOICA로부터 위탁받은 연수사업을 수입대체경비로 분류하여 기관 소관의 세입·세출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고금 관리법」상의 회계관계직원 관련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어 집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동일한 유형의 위탁사업이라 하더라도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재정통제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입대체경비로 처리 중인 연수사업 현황]

구분	ODA 프로젝트명	수입대체경비 세부사업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스리랑카 정부혁신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수입대체경비
	키르기스스탄 공무원 및 교수요원 역량강화	
	필리핀 디지털 전환과 공공행정혁신 역량강화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KOICA 사업비와 같이 소속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입대체경비 등 세입·세출 내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최소한 회계관계직원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sup>3)</sup>

**둘째, 동 사업 추진인력에 대하여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처리하였음에도 해당 공무수행에 대해 직접인건비 또는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과수와 국정자원은 KOICA 사업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해당 공무원이 사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기관 구성원의 지위에서 직무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리이다. 그런데 두 기관은 동시에 이러한 복무 처리와 별개로 해당 공무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3) 다만, 현행 수입대체경비 제도는 연수·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에 한하여 관련 예산 항목이 편성·운영되고 있어, 프로젝트형(PMC) 사업을 수행하는 국과수 등 소속기관은 이를 적용할 예산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실정이다. 프로젝트형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수입대체경비 편성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국과수·국정자원 ODA사업 해외파견 자문료 누적지급 현황]

프로젝트명	정산차수	자문료 지급액	국외 근무일	수령인
(국정자원) 튀니지 전자정부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국가정보센터 IT서비스 관리역량강화 (‘24~’25)	1차	10,320,000원	6일	7명
(국과수) 스리랑카 사법체계의 마약분석 역량강화 (‘21~’25)	1차	9,760,000원	8일	5명
	2차	해외파견 미실시		
	3차	9,680,000원	22일	2명
		5,550,000원	5일	4명
	4차	해외파견 미실시		
	5차	9,680,000원	22일	2명
		3,600,000원	15일	1명
2,200,000원		11일	1명	
7,080,000원		6일	5명	
(국과수) 몽골 국립과학수사원 법과학 역량강화 (‘20~’25)	1차	해외파견 미실시		
	2차	3,240,000원	4일	3명
	3차	해외파견 미실시		
	4차	8,320,000원	13일	3명
		12,800,000원	20일	3명
		14,000,000원	35일	2명
		33,040,000원	14일	11명
		9,960,000원	6일	6명
		2,640,000원	11일	1명
		11,000,000원	25일	2명
		16,800,000원	21일	4명
	5차	5,720,000원	13일	2명
		3,080,000원	7일	2명
		11,760,000원	14일	4명
	6차	2,640,000원	6일	2명
5,250,000원		5일	4명	
1,480,000원		4일	1명	
(국과수)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과학수사기관 구축을 통한 젠더기반폭력 사건 대응역량 강화 (‘24~’28)	1차	23,530,000원	13일	7명

주: 참여자별 출국일과 귀국일이 상이한 경우 국외근무일이 동일한 경우 동일 차수에 기재.

자료: 각 프로젝트별 정산서에 근거하여 재작성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는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며, 그 외의 별도 대가 수수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는 공무원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무수행과 결부된 자문료를 위 법령이 정한 보수·여비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더불어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조차 상한액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원수행 그 자체에 대하여 보수 외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더욱이 KOICA 내부규정인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은 전문가가 소속 기관에서 직접인건비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협력단이 직접인건비를 대신하여 동일 기준의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직접경비만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문료는 직접인건비와 동일한 기준단가가 적용되고 출국일과 귀국일을 포함한 국외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된다는 점에서, 명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직접인건비와 동일한 성격의 비목이다. 즉 자문료는 소속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보전적 성격의 항목이다.

이에 대해 두 기관은 수원국 현지 기관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업의 특성상 실무역량이 검증된 직원을 현지에 장기 파견할 필요가 있으나, 파견지역 대부분이 치안이 불안정하여 파견인력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처우에 활용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KOICA가 송금한 선금을 초과하는 지출 소요가 발생할 경우 별도 재원이 없어 자문료 비목 일부를 이에 충당하였다고 부연하였다.

특히 국과수의 경우, 파견 지역이 대부분 범죄취약지역에 해당하고 장기간 체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파견인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는 숙박비·위험수당 등 여비 또는 수당 체계 내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며,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국외 파견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급기준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건비 성격의 자문료를 활용하는 방식은 본래의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KOICA 사업비 선금을 초과하는 지출 소요 대응 문제는 해당 소요의 불가피성과는 별개로 특정 비목의 집행 여력을 다른 비목의 부족분에 임의로 보완한 것이어서 적절한 집행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실제로 동일한 KOICA 내부규정이 적용된 다른 사업에서는 이와 상이한 처리가 확인된다.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처리하면서, 공무수행에 대한 별도 대가의 지급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국과수와 국정자원은 참여 공무원이 기관 구성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자문료 지급의 적절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과수와 국정자원은 KOICA 사업에 참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문료 지급 여부를 보수체계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위험지역 파견인력에 대한 안전처우 방안을 반영함과 동시에, KOICA와의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을 국가재정운용체제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 출연금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인구감소지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10년간(2022~2031년) 10조원 규모로 출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기금의 주된 용도는 지방소멸대응 등 관련 기반조성 등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지방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관리 및 운용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2021년 12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2022년 예산에는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7,500억 원만 편성·집행되었으며 이후 매년 1조원씩 편성·집행되고 있다.

[2025회계연도 지방소멸대응 출연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	-	1,000,000	1,000,000	-	-	1,000,000

자료: 행정안전부

광역지원계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관할 여부와 재정여건 등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지는데 기준 산식1)에 따라 정액 배분하는 방식이고,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시·군·구가 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한 평가와 이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배분한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 1)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제4조(광역지원계정 배분대상 및 배분기준) 광역지원계정은 다음 각호에 따라 배분하고, 시·도의 최종 배분금액은 각호에 따른 배분금액을 합하여 결정한다.

$$\text{해당 시·도 배분 금액} = \text{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9 \times \frac{A_i \times a_1_i \times a_2_i}{\sum (A_i \times a_1_i \times a_2_i)}$$

$A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a_1_i$  =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지정비율  
 $a_2_i$  = 전체 인구감소지역 중 해당 시·도가 관할하는 인구감소지역 비율

$$\text{해당 시·도 배분금액} = \text{제3조제1호 광역지원계정 배분총액} \times 0.1 \times \text{해당 시·도 배분계수}$$

## 16-1.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경과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변화 분석

### 가. 현황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sup>1)</sup>은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에 근거하여 출연금 1조원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를 배분하되, 2021년 10월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집중적으로 배분하고 관심지역에 대해서도 재원을 배분하고 있다.

지난 4년간('22~'25년) 총 3조 7,500억원('22년 7.5천억원, '23~'25년 매년 1조원)의 기금이 인구감소지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완료되었으며, 2026년 10월에는 주요 대상지인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의 재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현황]

분류	시·도	지 역
인구 감소 지역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관심 지역	(부산)	금정구, 중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대전(대덕구, 동구, 중구)
	(경기)	동두천시, 포천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 김천시 (경남) 사천시, 통영시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61-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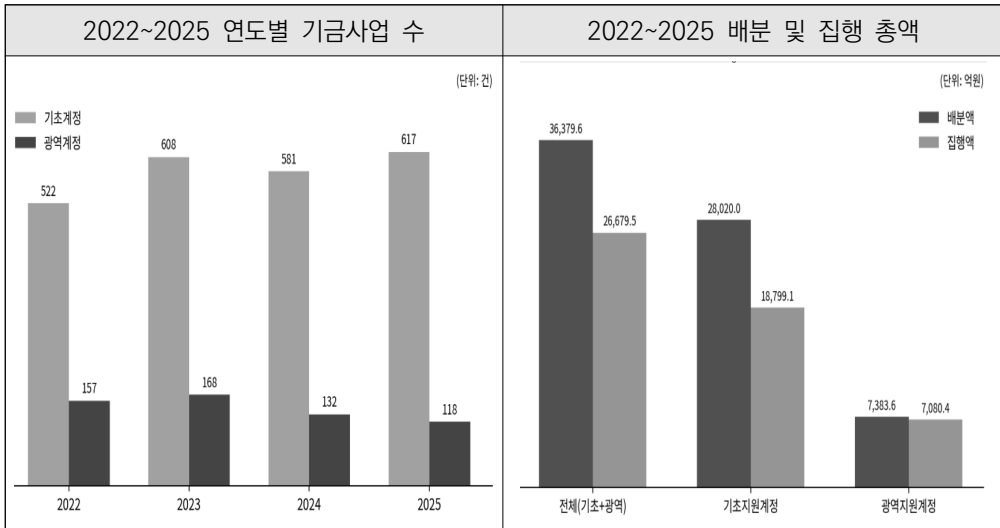
## 나. 분석의견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26.10.)을 앞둔 만큼 그간의 운영성과와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의 변동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방향성 및 운용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신설 이후 4년간(2022~2025년) 총 3조 5,379억원이 배분되었고, 이 재원으로 추진된 세부사업은 2,903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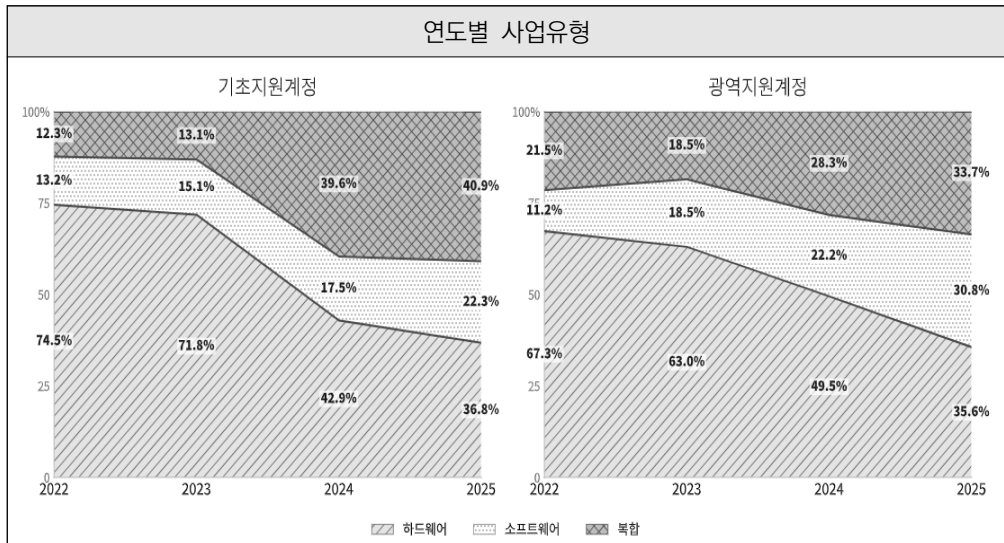
[2022~2025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 현황]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사업유형별로 보면 인프라 구축(하드웨어) 사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된 반면, 프로그램 운영(소프트웨어) 및 복합사업의 비중은 확대되었다. 기초지원계정의 하드웨어 사업 비중은 2022년 74.5%에서 2025년 36.8%로, 광역지원계정은 같은 기간 67.3%에서 35.6%로 낮아졌다. 이는 기금 신설 초기에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시설·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사업이 설계되었고 행정안전부의 투자계획 평가 또한 이에 초점을 두었으나, 점차 프로그램 운영, 용자지원 등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 사업유형 및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이러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문제에 대한 종합적 대응 수단으로서 인구감소 둔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은 배분 대상 지역의 인구변동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이루어진 2021년 10월 이후 4년간 해당 지역의 총인구는 4.3%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국가 전체 인구가 1%, 비지정지역 인구가 0.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다만 국토연구원(2026)의 이중차분법 모형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감소 속도는 기금 도입 이후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전·후 지역별 인구변동]

(단위: 명, %)

구분	2021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기간				누적변화 (‘21~’25)
		2022	2023	2024	2025	
총 인구	5163.9	5,144.0	5,132.5	5,121.7	5,111.7	△1.0
인구감소 지역	489.8 (△1.81)	484.0 (△1.18)	479.4 (△0.97)	472.7 (△1.40)	468.8 (△0.81)	△21.0 (△4.29)
비지정 지역	4411.3 (△0.17)	4,400.4 (△0.25)	4,397.1 (△0.07)	4,395.6 (△0.04)	4,391.5 (△0.09)	△19.8 (△0.45)
수도권	2602.3	2,598.5	2,601.4	2,604.8	2,608.2	-
비수도권	2561.6	2,545.4	2,531.1	2,517.0	2,503.6	-
수도권 비중	(50.4)	(50.5)	(50.7)	(50.9)	(51.0)	-

(DID분석결과)  
인구감소지역  
연평균감소율  
기금 도입 이전  
△1.4%(2016~2022년),  
기금 도입 이후  
△1.1%(2022~2025년)  
다소 둔화

자료: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인구」 및 국토연구원(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인구감소지역 요인별 인구변동 추이]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누적 (‘22~’25)	
사회 요인	합계	△26,346	3,930	3,872	△15,635	14,293	6,460
	전입	373,876	344,835	331,887	320,108	340,560	1,337,390
	전출	400,222	340,905	328,015	335,743	326,267	1,330,930
자연 요인	합계	△42,336	△54,766	△51,514	△51,745	△53,277	△211,302
	출생	18,345	16,665	15,905	16,072	16,403	65,045
	사망	60,681	71,431	67,419	67,817	69,680	276,347

주: 동일 시·군·군 내 전입·전출은 제외한 수치이며 2025년은 잠정값임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6).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증가지역 정책사례 분석 연구」 발췌

변동 요인별로 나누어 보면, 출생과 사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자연적 감소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이후로도 유지·심화되고 있으나, 전입과 전출의 차이인 사회적 이동은 순유입 방향으로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시키고 있다.

한편 지정 시점인 2021년과 비교해 총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7곳이며, 지정 이후 전체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1년간 1% 이상 증가한 지역은 14곳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6)은 이러한 변화를 농어촌 기본소득 등 인구유입 촉진 정책에 따른 사회적 이동의 결과로 추정하며, 이러한 회복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증가 지역 현황]

(단위: 명)

지자체명	주민등록인구 현황			지정 시기 대비 증감률	직전년도 대비 증감률
	2021	2024	2025		
전남 신안	38,326	38,173	41,858	9.2%	9.7%
충북 괴산	36,843	36,252	38,293	3.9%	5.6%
강원 정선	35,659	33,515	34,879	△2.2%	4.1%
경북 영양	16,330	15,328	15,941	△2.4%	4.0%
경기 연천	42,797	40,866	42,340	△1.1%	3.6%
전북 순창	26,980	26,822	27,714	2.7%	3.3%
충북 옥천	50,194	48,204	49,601	△1.2%	2.9%
전남 영광	52,113	52,098	53,526	2.7%	2.7%
전남 곡성	27,616	26,566	27,287	△1.2%	2.7%
경남 남해	42,372	39,832	40,770	△3.8%	2.4%
전남 장성	43,553	42,026	42,958	△1.4%	2.2%
전북 김제	81,106	80,635	81,676	0.7%	1.3%
전북 장수	21,731	20,663	20,922	△3.7%	1.3%
충남 청양	30,399	29,658	29,986	△1.4%	1.1%
인천 강화	69,351	69,402	69,698	0.5%	0.4%
충남 예산	76,974	78,772	78,815	2.4%	0.1%

주: 1. 2024년, 2025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 기준이며 2021년은 10월말 주민등록인구 기준

2. 강조 표기된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시범지역임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6).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증가지역 정책사례 분석 연구」

다만 이러한 반등 양상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수도권 전입자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동일 시·도 내 전입인구 비율은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신안군·김제군 등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다. 또한 수도권에 인접한 강화군·연천군을 제외하면, 최근 6년간(2020~2025년) 인접 시·군으로부터의 전입 비율은 증가한 반면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 비율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즉, 상당수 지역의 인구 회복은 수도권 인구 분산보다 인근 지역 간 이동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증가지역 전입인구의 전출지 유형별 비중]

(단위: %)

	2020			2023			2025		
	인접 시군	동일 시·도	수도권	인접 시군	동일 시·도	수도권	인접 시군	동일 시·도	수도권
인천 강화군	13.6	36.9	89.0	13.4	33.3	88.1	15.8	34.6	89.7
경기 연천군	24.5	50.5	73.4	28.4	55.9	77.9	31.1	57.8	79.2
강원 철원군	21.4	33.5	42.9	19.3	35.0	41.4	25.7	44.0	35.9
충북 옥천군	33.6	12.4	19.7	30.9	14.7	22.5	36.4	15.1	19.2
충북 괴산군	47.0	48.2	32.7	40.0	41.0	37.9	49.6	50.4	29.5
충남 청양군	20.8	32.4	35.1	28.5	36.2	32.6	26.2	37.2	32.9
충남 예산군	33.4	43.0	36.7	40.5	50.5	31.2	34.6	44.5	33.3
전북 김제시	58.7	61.2	20.7	56.6	59.0	22.0	62.8	64.9	17.7
전북 장수군	10.2	45.2	26.7	9.4	41.4	33.1	11.6	53.1	24.5
전남 순창군	9.5	31.0	26.4	11.3	31.8	25.7	8.9	32.5	24.3
전남 곡성군	11.7	19.2	18.2	11.5	17.3	20.5	9.8	16.7	17.2
전남 영광군	5.0	18.3	26.8	5.9	15.9	23.2	5.8	15.0	22.0
전남 장흥군	40.1	10.3	21.8	39.9	11.5	20.3	46.8	9.4	17.9
전남 신안군	45.7	56.0	19.8	46.4	56.6	19.6	59.6	66.7	15.2
경북 영양군	15.4	36.1	21.8	17.2	36.9	23.6	22.0	41.3	18.8
경남 남해군	8.1	40.9	20.1	6.6	40.9	16.4	10.4	44.3	16.2

주: 1. 동일 시군내 이동은 제외, 유형별 중복 가능

2. 인접시군은 해당지역과 경계를 맞대는 시군을 의미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6). 「인구감소지역 중 인구증가지역 정책사례 분석 연구」

이같은 변동을 이중차분법에 근거하여 분석한 연구(국토연구원, 2026; 국회에 산정정책처, 2026)에 따르면, 기금은 체류인구 확대에 기여하고 순인구 이동에서도 상대적 개선을 보였으나, 주민등록인구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유형별로는 하드웨어 사업이 체류인구 유인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반면, 소프트웨어·복합사업 중점지역에서는 정주민구 감소세가 상대적으로 더딘 양상이 관찰되어 사업구성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한편,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은(한국고용정보원, 2024; 국회미래연구원, 2025; 산업연구원, 2025)<sup>2)</sup> 공통적으로 인구 이동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일자리에 주목한다. 최근 인구감소지역 전입자 대상 설문조사(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6)에서도 직장 이전·농어업 종사 등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한 전입이 약 40%를 차지하며, 20~30대의 경우 직장 이전 사유가 46.0%이다. 인구감소 원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9.4%가 '산업·일자리'를 지목하여 일자리가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요인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현재 기금 사업을 비롯한 지방소멸대응 정책이 '생활인구'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지방 행·재정 측면에서는 등록인구가 중요한 만큼 정주민구에 방점을 두고 생활인구와 통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시 지역의 정주여건과 구심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소프트웨어·복합사업 간 균형과 생활인구·정주민구의 병행 고려를 바탕으로 사업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을 넘어 광역권 차원의 인구영향평가와 지역 간 연계를 반영하고, 공간위계별 차별화를 배분기준에 반영하는 한편, 사업 평가·환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금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2025년부터 배분기준에 전년도 집행실적을 반영하고 있으나 단순 배분액 대비 누적집행액 비율 평가가 아니라 집행과정 전반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지표로 전환하고 사업특성(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따라 산정방식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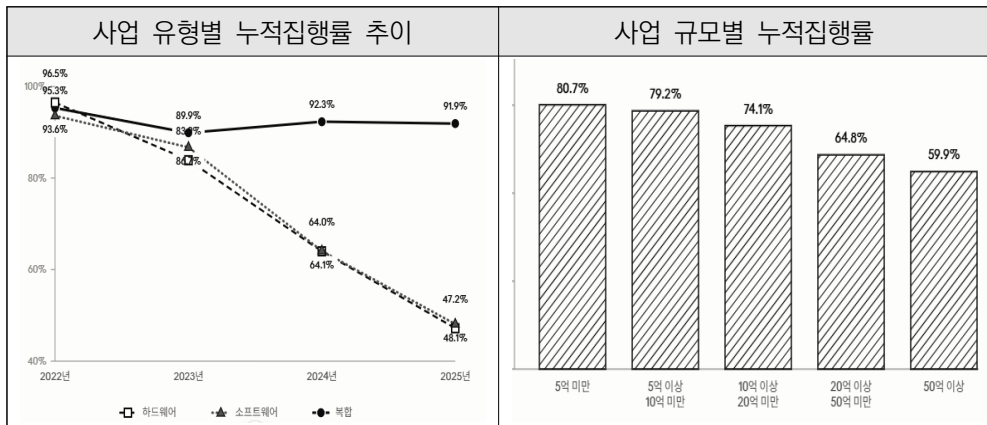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 관리는 배분액 대비 누적 집행액의 비율로 산정되고 있으며, 집행실적 제고를 목적으로 2025년부터 전년도 집행률을 재원 배분

2) 한국고용정보원(2024). 지방소멸 2024: 광역대도시로 확산하는 소멸위험. 「지역산업과 고용」 여름호; 국회미래연구원(2025). 「인구감소시대 지역간 인구이동 패턴과 대응전략」; 산업연구원.(2025). 지방소멸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 육성정책 체계 검토. 「월간 KIET산업경제」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다만 현재와 같이 집행률이 단순한 수치의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경우 사업 유형 및 추진 단계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집행률 관리가 사업의 적기 추진 및 실효성 제고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일례로, 다년도에 걸쳐 추진되는 인프라 구축 사업이나 설계·인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의 경우 선행 절차로 인하여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에도 누적집행률 기준으로는 이를 일률적으로 집행부진으로 판단하게 되는 반면, 단년도 내 집행이 완료되는 경상비 위주의 소프트웨어 사업은 구조적으로 집행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사업특성별 누적집행률 현황]



자료: 국토연구원(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성 분석」

2025년 사업유형별 결산내역을 보면, 인프라 구축 사업의 집행률 중위값은 38.2%인 반면 소프트웨어 사업은 99.9%로 현저히 높다. 사업 기간별로도 1년 이하 단기사업의 집행률(평균 73.2%)이 2년(54.3%) 및 3년 이상 사업(55.7%)보다 높다. 미집행은 정주인구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규모 인프라·복합사업에 집중된 반면, 소프트웨어 사업의 미집행은 일부 기업 특례보증 수요 부족 사례에 한정되었다.

즉, 단순 집행률만으로 성과를 평가할 경우 단기 소프트웨어 사업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나 기금의 중장기적 지역 역량 강화 목적과 괴리될 우려가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사업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 비중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 높은 집행률이 실질적 사업 추진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기금사업특성 별 집행률 분석 결과]

(단위: %, 개)

구분	집행률					
	유형	평균	중위값	최소	최대	사업수
사업 기간	인프라구축	48.9	38.2	0	100	225
	소프트웨어	80.7	99.9	0	100	132
	복합	52	52.9	0	100	186
사업 기간	사업기간	평균	중위값	최소	최대	사업수
	1년 이하	73.2	91.6	0	100	69
	2년	54.3	56.3	0	100	96
	3년 이상	55.7	65.2	0	100	378
연차별	연차구분	평균	중위값	최소	최대	사업 수
	1차년도	55.5	63.4	0	100	242
	2차년도	52.9	62.7	0	100	61
	마지막년도	62	74.1	0	100	71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집행률 10%미만, 100% 사업 내역 예시]

(단위: 백만원)

2025년 집행률 10% 미만 사업 주요 예시						
유형	광역	기초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I	A	○구	의료 R&D 클러스터 조성	'24~'26	3,360	-
I	A	○○구	청학수변공원 친수공간 조성	'22~'27	2,800	-
I	B	○△군	청평 어린이놀이공원 조성사업	'23~'26	3,800	-
S	C	△△군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24~'26	60	-
S	D	△○군	체류형 귀산촌밸리 조성	'24~'28	200	-
S	F	□□군	기업지원 특례보증	'24~'25	600	8
복합	G	○○군	숨터화계21 조성	'25~'26	2,000	-
복합	F	◇□군	누구나 농장 농촌체험 복합단지 조성	'22~'26	4,100	-
복합	H	◎○군	트리가드닝파크 조성	'25~'27	7,140	-
복합	J	○☆군	태안다움 의료복합 플랫폼 구축	'24~'27	1,150	-
2025년 집행률 100% 사업 주요 예시						
유형	광역	기초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I	K	○○군	군위식품마더센터 조성	'22~'27	300	300
I	B	△△시	미래를 여는 평생교육 허브조성	'25~'25	286	286
S	G	○○군	인제에서 살아보기	'22~'26	210	210
S	J	□☆군	청년마을활동가 제도 운영	'22~'26	200	200
복합	L	□◇군	고령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24~'26	3,500	3,50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관련 연구들<sup>3)</sup>에서도 단기적·수치 위주의 집행률 평가에 근거하여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중장기 성과평가와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상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지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절대적 수준보다는 사업 유형과 일정에 비추어 추진 속도의 적정성, 지연 발생의 구조적 요인, 향후 정상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 유형에 따라 상이한 집행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 방식이 요구된다. 인프라 사업의 경우, 단순 예산집행 수준보다 공정률을 중심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대규모 시설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소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인허가·설계·보상 등 착공 이전 단계의 추진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집행률과 더불어 운영 성과 지표를 구체화·일관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실질적 효과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요구된다.<sup>4)</sup>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집행실적 관리에 있어 사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기준을 적용하되, 기금 본래의 취지와 정주인구 유인이라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함께 고려하고, 사업관리체계와 연계함으로써 집행과정에서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3) 국토연구원(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성 분석」,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2026).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현황·평가」,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보고서. 임태경(2026).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연효과 및 누적효과에 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40(1). pp.251-279.

4)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6년 투자계획 평가 시 햇빛소득마을 추진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고 관련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 경우 동 기금을 설비 구축 지원(하드웨어)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자본보조 또는 운영비 지원(소프트웨어)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설계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6-2. 결산상잉여금 활용 운용경비 지출내역 적정성 재검토 필요

### 가. 현황

지방소멸대응기금<sup>1)</sup>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하고 있으며, 결산서 상 사업시행주체인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교부액 1조원 중 89.9%인 8,992억 3,2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행액은 이와 다소 상이하여 광역계정은 1,390억 6,400만원, 기초계정은 3,109억 2,7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집행 현황(결산서)]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예산액	교부액(A)	집행액(C)	이월액(D)	불용액	집행률
	1,000,000	1,000,000	884,984	115,016	-	88.5

주: 2025년 이월액은 기초지원계정에서 기금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분할지급 도입에 따른 미배분 잔액 및 운영비 등 219억과 광역지원계정에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자금액(1천억) 중 사업 선정이 되었으나 아직 출자되지 않은 미집행 잔액과 운영비 잔액을 포함한 931억을 합한 금액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계정별 집행행액]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광역계정	250,000	139,064	55.6
기초계정	750,000	310,927	41.4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61-300

## 나. 분석의견

누적된 집행잔액 및 미배분액(2025년말 기준 결산상 잔액 9,507억원, 이자수입 84억원)을 운용하면서 그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기금 운영비 지출의 적정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신설년도인 2022년 10월 말 지방자치단체로 실교부되면서 사업계획 수립 등의 기본 행정절차에 필요한 절대 소요로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실집행률이 5.4%에 그쳤으며, 이후에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실집행부진이 반복되면서 미집행 반납액이 매년 상당 규모로 누적되어 왔다.

[2022~2025년 계정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구분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2	광역	187,500	163,510	87.2
	기초	562,500	30,422	5.4
2023	광역	250,000	231,837	92.7
	기초	750,000	145,155	19.3
2024	광역	250,000	136,932	54.7
	기초	750,000	246,079	32.8
2025	광역	250,000	139,064	55.6
	기초	750,000	310,927	41.4

주: 당해연도 실집행액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말 기준 지방자치단체별 미집행액 총액은 9,507억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해당 재원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기금관리 계정에 여유자금 형태로 누적되면서 이자수입도 상당규모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집행률 제고를 위한 기초지원계정 분할 배분<sup>2)</sup> 및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집행 지연에 의한 잔액 등으로 이자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2025년말 기준 84억원을 초과한다.

2) 기초지원계정의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금을 인구감소·관심지역 자치단체에 바로 배분하지 않고 실집행 현황을 보고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미집행액 규모('25.12.31.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배분금액	집행액	미집행액
광역지원계정		735,365	708,041	27,324
기초지원계정	인구감소지역	2,664,800	1,782,313	882,487
	관심지역	137,800	96,841	40,959
합 계		3,537,965	2,587,194	950,771

주: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예·결산액은 3조 7,500억원이나 2,000억원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출자하여 지자체 배분대상액은 3조 5,500억원임. 이중 실제 배분액은 3조 5,379억원으로, 차액 120.4억원 중 58.4억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정비용으로 지출하고, 62.0억원은 지자체 배분액 계상잔액 및 운영비의 집행잔액임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연도별 이자수입 현황]

(단위: 원)

연도	이자수입	상세내역	
2024	3,142,387,650	광역지원계정	1,005,459,610
		기초지원계정	2,072,406,350
		운영비	18,442,350
		예치금 등	46,079,340
2025	8,427,825,304	광역지원계정	1,751,182,040
		기초지원계정	6,394,191,020
		운영비	19,677,440
		예치금 등	262,774,804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안전부는 기금관리조합의 의결을 거쳐 이를 우수 지자체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20억원 내외), 기금 운영을 위한 각종 행정비용 등에 집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인구활력펀드를 신설하여 45억원을 출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역들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결산 자료에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별도의 상임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는다.

더욱이 매년 23억원 내외의 예산을 기금 운영 경비로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으나 편성 근거 및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도 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연도별 미배분액 및 기금운영비 예·결산액]

(단위: 백만원)

연도	미배분액	운영비		
		예산액	집행액	잔액
2024	119,160	2,298	1,499	639
2025	199,150	2,300	1,744	705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례로,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치단체 등 이전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 운용을 위해 파견한 공무원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금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5급 이하)은 1인당 연간 1억원의 단가를 적용하며, 공제회 직원은 1인당 연간 7천만 원을 기준으로 실제 파견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어 ‘자치단체 이전’ 비목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직원 또한 동일한 사유로 해당 비목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파견 공무원의 적용 단가가 보수 규정<sup>3)</sup> 대비 높게 책정된 것은, 인건비 외에 서울 지역에 주거지가 없는 경우를 고려한 주거 안정비와 기타 수당, 성과연봉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결과라고 부연하였다.

3) 2025년 지방공무원(일반직 및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단위: 원)

호봉	5급	6급	7급	8급	9급
1	2,798,500	2,308,700	2,173,600	2,028,200	2,000,900
15	4,492,200	3,848,900	3,478,200	3,123,100	2,833,100
20	4,910,800	4,231,500	3,834,200	3,450,300	3,146,900
30	5,427,200	4,734,100	4,311,500	3,903,700	3,573,300
32	-	4,799,800	-	-	-

[2022~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비 지출액]

(단위: 천원)

비목명	지출액				비고
	2022	2023	2024	2025	
계	1,041,183	1,554,765	1,498,761	1,743,995	
인건비	77,485	117,341	74,666	71,159	파견 직원 파견 수당
일반 운영비	183,894	261,638	374,390	431,247	평가단 수당 및 인쇄비, 회의 운영비, 보험료, 우편료, 회의실 및 장비 임차료
여비	10,117	34,395	17,665	18,775	
업무추진비	26,156	49,072	56,286	54,119	
직무수행 경비	3,813	4,085	1,813	1,200	부장 직책수행경비
연구개발비	-	21,736	21,339	189,695	시스템 구축·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92,131	2,827	8,613	8,757	
자치단체 등 이전	647,588	1,063,672	943,989	969,043	· 공무원 파견 지자체 1인당 1억원 지원 · 공제회 1인당 7천만원 지원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그러나 인건비 비목으로도 파견직원 수당이 중복 편성되어 있으며 내역을 보면 파견보조비, 귀향교통비, 주거안정비 및 성과연봉으로 구성되어 동일인에게 별도 지급되고 있다. 이러한 별도 수당의 지급 기준과 단가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금 운영경비 인건비 비목 지출내역]

(단위: 원)

대상자	파견보조비	귀향교통비	주거안정비	성과연봉
경남 A	3,561,290	2,670,960	-	-
강원 B	3,600,000	2,100,000	-	1,200,000
대구 C	3,600,000	2,400,000	-	-
경북 D	3,600,000	2,400,000	-	-
단양군 E	7,200,000	4,200,000	920,000	-
전남 F	7,200,000	5,400,000	-	2,400,000
충남 G	3,600,000	2,100,000	-	-
전북 H	3,600,000	2,400,000	-	1,200,000
전북 I	3,483,870	2,322,580	-	-

자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종합하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파견된 지방공무원의 보수로 1인당 연 1억원을 소속 자치단체에 지급하면서, 인건비 비목에서 인당 570만원~1,500만원 수준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제6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 파견근무 관련 규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p>제27조의2(파견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li> <li>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7. 국내 연구기관, 국내 민간기관과 국내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하거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ol> <p>⑥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의 사유로 파견된 공무원은 <b>보수 외에 파견된 기관으로부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기준을 초과하여 수당·경비 그 밖의 금전을 지급 받아서는 안 된다</b></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더욱이 동 기금 재원을 통해 파견 지방공무원 개인의 실제 소요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속 자치단체에 연 1억원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공무원 보수단가 기준으로는 3천만원~6천만원 내외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는바, 지급액과 실소요액 간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행정안전부는 지급된 1억원 중 실제 인건비로 사용된 금액과 잔여 금액의 구체적 사용 내역에 대해 사후적으로 확인하거나 정산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적기 대응을 위하여 마련된 재원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산출근거의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경상경비로 집행되고 있는 것은 재원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운영경비의 편성 근거와 지출내역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한편 산출근거와 적용 단가의 적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16-3.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집행 지연 문제

#### 가. 현황

정부는 2023년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펀드인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모(母)펀드가 자(子)펀드로 출자하고, 자펀드가 지역개발 사업으로 출자하는 이중 구조를 가지는데, 총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 정부 재정 1,000억원, 민간투자(산업은행) 1,000억원으로 조성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재원 1,000억원을 모펀드에 매년 출자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현액 1,000억원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1,000,000	-	-	1,000,000	1,000,000	-	-	1,000,000
광역계정	250,000	250,000	-	-	250,000	250,000	-	-	250,0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출자	100,000	100,000	-	-	100,000	100,000	-	-	100,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집행의 지연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조성된 재원이 실제 사업으로 신속히 연결되지 못하고 상당 규모가 금융기관에 유보·미집행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출자액 조정 등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금융 수단으로, 공공재원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제한된 재정으로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신설 취지이다. 이를 위해 시·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재원 중 1,000억원을 해당 모펀드에 출자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말 기준 모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액 2,000억원을 포함하여 6,000억원이 조성되었으나 집행된 금액은 31.9%인 1,915억원 수준('25.12 월말 기준)이다.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실출자금액(2025.12.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2024	2025	합계
모펀드 실투자액(A)	0	1,915	1,915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조성액(B)	3,000	3,000	6,000
실투자비율(A/B)	0.0	51.4	31.9

자료: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 2,000억원의 출자 계획 대비 실제 출자액이 212억원에 불과하며, 미집행 잔액 1,788억원은 사업으로 신속히 연결되지 못하고 한국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지방공제회”)에서 유보·운용되고 있다.<sup>1)</sup> 이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원이 실제 지역투자로 전환되는데 상당한 지연이 있음을 나타낸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활성화펀드 여유자금 이자수입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4	2025
공공예금 이자수입 결산액	928,630	1,607,345

이러한 집행 지연은 펀드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프로젝트 공정률에 연동한 Capital Call 방식으로 자금을 단계적으로 집행하므로, 자펀드 결성 이후에도 사업 진척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모펀드 자금이 즉

1) 지방공제회는 이러한 미출자 자금을 정기예금(이자율 2.60~3.74%)에 예치하고 있다.

시 투입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자펀드 결성 지연이나 착공 지연이 발생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유보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더불어 연도별 사업 구조를 보면, 2024년 승인 사업(1~3호)의 경우 총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서 자펀드 결성 이후에는 모펀드 출자액이 일정 규모 이상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2025년 승인사업(5~8호)는 개별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아, 자펀드 결성이 모두 완료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 전체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약정액 합계는 270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해당 연도 모펀드에 출자하는 1,000억원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자펀드 결성이 모두 완료되더라도 출자금의 상당 부분은 지역 투자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재차 유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승인된 8개 프로젝트의 기금 약정액 합계가 1,076억원임을 감안할 때, 조성된 출자 계획 대비 실투자 연결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기금 집행 부진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지역활성화투자 펀드 실출자금액(2025.12. 기준)]

(단위: 억원)

프로젝트명	승인일	자펀드 결성일	총사업비	기금 약정액		
				모펀드 투자액		
1호	충북 단양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24.2.16.	'25.9.26.	680	68	23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24.2.22.	'25.8.21.	876	39	13
3호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24.8.29.	'25.2.28.	14,362	1436	478
4호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24.11.26.	결성중	8,191	786	262
5호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콤플렉스 1단계	'24.12.24.	'26.4.9.	900	90	30
6호	경남 거제 「체류형 숙박시설」	'25.11.4	결성중	7,200	420	140
7호	전남 장성, 「첨단 데이터센터」	'25.11.4.	'25.12.10.	3,959	372	124
8호	충남 태안, 「Seed Farm 1호」	'25.11.28.	결성중	177	17	6
합 계				36,345	3,228	1,076

자료: 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출자액을 500억원 규모로 축소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집행 부진은 단순한 사업 관리상의 문제를 넘어, 지방소멸대응이라는 정책목표가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시의성과 부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대응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교부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일부를 전용하여 조성한 것인데 적기에 투자가 집행되지 못한다면 펀드를 조성한 정책적 의의가 제약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의 적시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출자 시기와 방식의 탄력적 조정, 자펀드 결성 및 투자 실행 속도의 제고 등 제도적 보안을 통해 조성된 재원이 정책목표에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연계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소지자가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권을 의미한다.<sup>1)</sup>

지역사랑상품권의 핵심 혜택은 구매 할인으로, 지역별·기간별로 차이가 있으나 통상 5~2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발행 초기에는 할인 판매에 따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자체 부담하였으나, 2018년 군산·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100억원 지원을 계기로 국비 보조가 시작되었다. 이후 지원 대상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발행 지방자치단체 수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5년 말 현재 광역 11개, 기초 183개 등 총 194개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운영되고 있다.

[2018~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규모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2021
발행지원 규모	1,000억원	2.3조원	9.6조원	19.9조원
국비지원 예산	100억원	884억원	6,690억원	1조 2,522억원
	추경 60억원 예비비 40억원	예비비 533억원 특교 351억원	본예산 712억원 특교 401억원 추경 5,577억원	본예산 1조 522억원 추경 2,000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발행지원 규모	18.4조원	11.0조원	8.6조원	22.0조원
국비지원 예산	8,050억원	3,522억원	2,998억원	9,996억원
	본예산 6,050억원 전용 1,000억원 추경 1,000억원	본예산 3,522억원	본예산 2,998억원	추경 9,996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랑상품권”이란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등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효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 17-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고보조사업 사전검토·일관성 강화 필요

### 가. 현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sup>1)</sup> 사업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제1회·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예산현액 9,996억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1,000,000	-	-	1,000,000	999,969	5	26	1,150,000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	999,600	-	-	999,600	999,600	-	-	1,149,400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2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등 지원 설계, 신속집행 인센티브 도입 등을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으므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정안전부가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에서 국비지원율을 회차별로 차등 조정하면서,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율이 높은 2회 추경에 재원을 집중할 유인이 발생하였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49-306의 내역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은 2025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1회 추경”, 2025년 5월)에 약 4,000억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하 “2회 추경”, 2025년 7월)에 약 6,000억원이 각각 편성되어 전액 교부되었다. 국비지원율은 자치단체 유형별로 차등 적용되었는데, 1회 추경에서는 일반자치단체 2%, 인구감소지역 5%, 대형산불 피해지역 등 최대 10% 수준이었으나, 2회 추경에서는 최대 6%p 상향 조정되어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10%로,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는 2%에서 8%로 각각 인상되었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율 기준]

구분	자치단체 유형	국비지원율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일반 할인지원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미지원	2%
	일반자치단체	2%	수도권: 5%, 비수도권: 8%
	인구감소지역	5%	10%
재난대응할인지원	고용위기 및 특별재난지역	최대 10%	5%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처럼 회차 간 보조율 격차가 상당하였음에도 양 추경 간 시차는 크지 않았다. 1회 추경예산 자금 배정('25.6.18.) 직후 2회 추경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25.6.19.)이 이루어졌으며, 2회 추경예산의 자금 배정일은 9월 12일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1회 추경예산 집행 이전에 2회 추경의 지원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국고보조금 교부 시차도 3개월 이내였다.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 편성 및 교부 추진 경과]

일자	편성·교부 내역
'25.5.1.	•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확정
'25.6.18.	•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금 배정
'25.6.19.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25.7.4.	• 제2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의결·확정
'25.9.12	• 제2회 추가경정예산 자금 배정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러한 일정과 보조율 구조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1회 추경 사업 참여를 최소화하고 보다 높은 국비지원율이 적용되는 2회 추경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 설계 및 재원 배분 단계에서 이러한 유인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여 보다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설정할 필요가 있었으나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행정안전부가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사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집행 실적에 연동하여 국비지원율을 상향 적용하면서, 당초계획과 달리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보다 높은 지원율을 적용받는 구조가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1회 추경예산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고, 신속히 집행한 지자체에 대하여 2회 추경 시 기준 보조율에 5%p의 인센티브를 추가 부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신속집행 인센티브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논의된 지원율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집행 단계에서 사후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이는 국회가 심의한 보조율 기준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실적에 연동하여 국비지원율을 상향 적용한 것으로, 예산 심의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더불어 이러한 운영의 결과, 1회 추경예산을 신속히 집행한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는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13%의 지원율을 적용받게 되어 10%가 적용되는 인구감소지역을 상회하였다. 이는 사업설계 시 전제로 한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당초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 구조로 판단된다.

[신속집행 인센티브 추가 시 국비지원을 변경 내역]

자치단체 유형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기본	특별지원 ① (10%p)	기본	특별지원 ② (+5%p)
				인센티브
불교부단체	미지원	해당 없음	2%	-
일반자치단체	2%	12%	수도권 5%	수도권 10%
			비수도권 8%	비수도권 13%
인구감소지역	5%	15%	10%	15%

- 주: 1. 특별지원 ①: 3월 대형산불 피해지역 추가 지원  
 2. 특별지원 ②: 3월 대형산불 피해지역, 고용위기지역, 호우피해 관련 특별재난지역  
 3. 인센티브: 1회 추경 신속집행 시 5%p 추가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셋째, 회차별 집행 실적을 구분·관리하지 않아 1·2회 추경 집행 규모를 확인할 수 없고, 동일 지원기준 집단 내에서도 실제 국비지원을 간 격차가 최대 9.4%p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행정안전부는 전술한 신속집행 인센티브를 제시한 이후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9월에 지침을 변경하였으며, 해당 시점까지 1회 추경예산 집행을 완료하지 않은 지자체는 잔여 국고보조금을 2회 추경 국비지원율로 집행하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1회 추경 미집행 잔액을 2회 추경예산에 통합하여 집행하면서 해당 금액과 재원 배분을 별도로 구분·관리하지 않아, 지자체별 국비지원분 중 1회 추경과 2회 추경으로 각각 집행된 규모를 확인할 수 없고 지자체 간 지원을 차이의 발생 요인을 파악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액 및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국비지원액(부처)			실집행(지방자치단체) <sup>1)</sup>		
1회 추경	2회 추경	합계	집행액	발행액 <sup>2)</sup>	평균 국비지원율
399,600	600,000	999,600	794,060	13,784,233	5.8%

주: 1) 실집행액은 2026.6.24. 현재 정산 미완료로 최종정산액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국비지원분에 대한 발행액으로 자체 예산 100%로 할인발행한 금액은 제외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결과적으로 당초 계획된 국비지원율과 집행 자료에 근거한 실제 국비지원율을 비교하면, 일부 지자체는 계획된 지원율을 상회하는 지원을 받은 반면 일부는 이를 하회하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상 지원율대로 집행된 경우는 인천 동구가 유일하다.

[지자체별 계획 대비 실제 국비지원율 비교(일부 예시)]

(단위: 백만원, %)

구분	국비 지원율		지원액		국비 집행액	발행액	원칙상 국비지원율	실제 국비지원율	
	1회	2회	1회	2회					
실제지원율 > 기준지원율	Y시	2%	8%	3,908	1,801	5,709	76,083	2.7	7.5
	K시	2%	8%	2,027	3,031	4,613	54,755	3.6	8.4
	M군	2%	8%	2,060	1,556	3,312	43,000	3.1	7.7
	J구	-	8%	-	1,520	1,520	11,928	8.0	12.7
	T군	5%	10%	1,210	1,050	1,811	18,463	6.5	9.8
실제지원율 < 기준지원율	H군	5%	15%	865	1,230	1,027	18,904	8.2	5.4
	B군	5%	10%	580	1,575	1,287	19,684	7.9	6.5
	D구	-	10%	-	1,065	609	6,980	10.0	8.7
	S시	5%	10%	3,184	5,844	5,021	79,633	7.4	6.3
	P군	5%	10%	430	322	752	13,992	6.4	5.4

- 주: 1. 행정안전부가 추경 회차별 발행액을 별도 관리하지 않아 당해연도 총발행액(국비지원분)만 기재  
 2. 현재 정산미완료로 실집행액은 최종정산금액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3. 국비지원율은 집행과정에서 행정안전부가 인센티브 추가할인율 제공 전 확정예산 기준임  
 4. 원칙상 국비지원율은 1차 지원율과 2차 지원율에 회차별 지원액 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으로 계상  
 5. 살재 국비지원율은 국비집행액/발행액으로 계상  
 6. 호우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은 2차 추경 집행 시 국비지원율 5% 추가 적용, 인구감소지역은 10%+5%=15%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공시한 기준에 따라 동일한 지원율을 받을 것으로 계획된 지자체 집단 내에서도 실제 국비지원율은 최소 0.3%p에서 최대 9.4%p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비수도권 일반자치단체 집단(1회 2%, 2회 8%)에서는 실제 국비지원율이 최저 3.3%에서 최고 12.7%로 그 격차가 9.4%p이다.

[지원율 기준 동일 집단 내 지자체별 실제 국비지원율 편차 현황]

(단위: %, %p)

구분	지원기준	실제 국비지원율			
		평균	최고(A)	최저(B)	격차(A-B)
인구감소-산불피해지역	1·2회 모두 15%	10.7	14.6	7.7	6.8
일반-재난·고용위기	1회 2%, 2회 13%	7.0	13.0	4.5	8.5
인구감소-재난·고용위기	1회 5%, 2회 15%	8.6	10.4	5.4	4.9
인구감소	1회 5%, 2회 10%	7.8	10.2	4.8	5.4
비수도권	1회 2%, 2회 8%	6.3	12.7	3.3	9.4
수도권	1회 2%, 2회 5%	3.9	5.0	3.3	1.7
불교부단체	1회 0%, 2회 2%	2.2	2.4	2.1	0.3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일부 탄력적 운용의 필요성은 있으나, 동 국고보조사업은 지원율과 지원 기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 기준과 변경 가능 범위를 보다 명확히 설정·고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일 회계연도 내 다회 추가경정예산 간 지원율과 적용 방식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간 선택 유인을 왜곡하거나 집행 결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고 예외 적용 시에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경우 지침 변경 및 예외 허용이 1차 추경 실집행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지자체별 국비지원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일부는 당초 계획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등 집행의 일관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미흡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보조율을 차등 조정하는 경우 회차 간 연계성과 자치단체의 집행 유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명확한 지침과 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자체 간 혼선을 최소화하고 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표방하였으나, 해당 지역은 대응지방비 부담 누적 등으로 참여 여력이 낮아 지원 예산이 오히려 재정 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집중됨으로써 당초의 지원 취지와 상충되는 배분 구조가 나타났으므로, 향후 유사 사업 설계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위축된 지역 소비 여력을 보강하고 지방소멸 및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2회 추경편성 당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의도적 차등 보조 방식’을 채택하여 해당 지역을 한층 더 두텁게 지원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사업 역시 지방비 분담률은 5%로 고정시키되, 국비 지원율은 1회 추경 대비 상향조정하면서 수도권(5%), 비수도권(8%), 인구감소지역(10%) 순으로 격차를 두어 차등 설계함으로써 소비 여력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에 재정 인센티브가 집중되도록 유도하였다.

[2025년 지역사랑상품권 일반발행분 국고보조율 비교]

구분	국비할인지원율		지자체할인부담률
	1차 추경(A)	2차 추경(B)	
불교부지역	-	2%	5%
수도권	2%	<b>5%</b>	
비수도권	2%	8%	
인구감소지역	<b>5%</b>	10%	

자료: 행정안전부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자원배분 내역을 보면, 2회 추경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국비지원액은 1회추경 대비 오히려 감소하고 해당 자원은 수도권·비수도권 일반 지역에서 흡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발행액도 일반 지역은 총 11.2조원을 발행하여 지자체당 1,236억원 규모를 보이는 데 반해 인구감소지역은 지자체당 312억원을 발행하였다.<sup>2)</sup>

2) 단, 이는 국비지원을 받은 발행액만 계상한 것으로 자체예산 100%로 추진한 상품권 발행분을 합하면 전국적으로 22조 4,410억원 규모이다.

[지역별 1회·2회 추경 국비지원액과 발행액 비교]

(단위: 백만원, %)

지역구분	계획		집행		
	1회 추경 국비지원액	2회 추경 국비지원액	국비집행액	총 발행액	지자체별 평균 발행액
수도권	95,537	104,837	173,366	4,478,840	79,979
비수도권	157,960	399,106	417,773	6,950,629	124,118
인구감소지역	146,103	96,057	202,930	2,481,972	31,417
총합계	399,600	600,000	794,069	13,911,441	72,835

주: 총 발행액은 국비지원 대비 발행예산액으로 실제 발행액과 상이할 수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아울러 1회 추경 국고보조금만 교부받은 지자체는 모두 인구감소지역으로 기준 국비지원율이 5%에 해당한다.<sup>3)</sup> 반면, 2회 추경 국고보조금만 교부받은 36개 지자체 중 전체 지원액(256억원)의 약 64.3%가 이들 불교부단체에 집중되었다. 이는 1회 추경만 교부받은 인구감소지역 2곳 지원액 합계(20억원)의 약 12배를 상회한다. 반면 비수도권 광역시 자치구는 2회 추경 보조율(8%)이 적용되어 1회 추경 국고보조사업만 교부받은 인구감소지역(5%)보다 높은 수준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결과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높은 지원율에 기반하여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사업이 집행된 측면이 있다.

[단일 회차 교부 지자체 현황 일부 예시]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역분류	교부액	집행액	발행액	
1회 추경만 편성 (인구감소, 지원율 5%)	A군	인구감소	1,698	667	7,210
	B군	인구감소	366	366	4,344
2회 추경만 편성 (불교부단체, 지원율 2%)	A시	불교부단체	6,900	6,900	298,232
	B시	불교부단체	4,604	3,027	131,545
	C구	불교부단체	1,100	1,096	50,000
	D구	불교부단체	917	812	35,794
	E구	불교부단체	564	553	26,000
	F구	불교부단체	507	503	23,791
	G구	불교부단체	414	414	18,992

3) 다만, 실질적으로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지원분과 1회 집행잔액을 2회 추경 지원율로 적용하여 각각 7.7%, 8.0% 수준의 지원율을 나타낸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역분류	교부액	집행액	발행액
2회 추경만 편성 (비수도권, 지원율 8%)	H구	비수도권	1,586	719	7,463
	I구	비수도권	1,520	1,520	11,928
	J구	비수도권	1,300	1,297	9,973
	K구	비수도권	850	850	10,000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행정안전부는 국비 배분 시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고자 했으나, 재정여력상 지방비 부담률 등의 문제로 인구감소지역의 발행계획액 및 국비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시군구별로 다각적 요소를 검토하여 지원액을 산정하되, 시·도 단계의 최종 교부 과정에서 시군구별 재정 여력을 감안한 재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 우대 보조율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별 재정여력과 1회 추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별 지방비 부담률을 일괄 설정하는 사업 설계로 인해, 2회 추경의 국비지원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재정여력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됨으로써 동 사업이 정책 의도대로 구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향후 유사한 보조사업 추진 시 지방비부담률 설정 방식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면밀한 사업설계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 보조율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7-2. 지역사랑상품권 정보제공을 위한 오픈API 제공 실효성 미흡

### 가. 현황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sup>1)</sup>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분석 및 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 등을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예산현액 4억원 중 3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이월했으며 2,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	1,000,000	-	-	1,000,000	999,969	5	26	1,150,000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	400	-	-	400	369	5	26	600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연간 약 3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보를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간 애플리케이션 개발 사례가 전무하고 활용 신청도 저조하며, 대국민 서비스 관점에서 기술적 접근 장벽으로 인해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 가맹점 및 판매·환전 지점 정보, 결제 및 운영정보, 지점별 재고정보, 지자체별 판매정책정보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고자 별도 예산을 편성·집행해왔다. 해당 데이터는 한국조폐공사가 제공하나 운영대행사로부터 원데이터를 수집·처리하고 관련 서버를 유지관리하는데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49-306의 내역사업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여 2025년에도 3억원을 민간위탁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2026년에도 3억원을 편성하여 집행 중이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사업을 통한 오픈API연계 제공 데이터 목록]

주제구분	공개 데이터명	제공정보
종이형 상품권 판매· 환전 지점정보	지류판매지점정보	판매지점명, 주소, 전화번호, 상품권명, 판매여부, 읍면동코드
	지류환전지점정보	환전지점명, 주소, 전화번호, 상품권명, 판매여부, 읍면동코드
	지류지점별 재고정보	지점명, 총액면가, 재고량, 읍면동코드
	지자체별 판매정책정보	사용처지역코드, 할인정책적용시작·종료일, 할인율, 월간구매제한금액
상품권 가맹점 정보	지류가맹점 기본정보	가맹점명, 전화번호, 주소, 위경도, 표준산업분류코드
	카드 가맹점 기본정보	
	모바일 가맹점 기본정보	
	통합가맹점 기본정보	
	결제정보	가맹점 업종별·지역별 결제금액, 결제건수
	운영정보	카드발행수량, 지류판매액·지류회수액

자료: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자료검색일:2026.05.29.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으로서 오픈API<sup>2)</sup>는 기존 CSV파일<sup>3)</sup> 방식과 비교할 때 이용자가 호출하는 시점에 최신 데이터를 반환하고 필요한 항목만 선택적으로 요청할 수 있어 데이터 활용의 유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반면 서버 인프라 구축·운영, 보안 관리 등에 상당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며, CSV처럼 파일을 내려받아 엑셀 등으로 바로 열람하는 것과 달리 HTTP 요청·JSON 파싱 등 별도의 기술적 처리가 필요하여 일반 사용자의 진입장벽이 높다. 이러한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대부분 두 방식을 병행 제공하거나, 실시간성과 갱신 빈도가 중요한 데이터는 API로, 변경이 드물고 일괄 다운로드 수요가 높은 정적 데이터는 CSV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OPEN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나 기능을 외부 개발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로 HTTP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한다.

3) CSV(Comma Separated Values)는 데이터를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파일 형식이다.

[공공데이터 제공방식별 장·단점 비교]

구분	CSV 제공 방식	OPEN API 방식
데이터 최신성	특정 시점 정보제공. 특정 주기별 갱신	호출 시점의 최신 데이터 변환
이용자 접근성	엑셀 등으로 즉시 열람 가능 비개발자도 쉽게 활용	HTTP-JSON등 개별지식 필요 비개발자 진입장벽 높음
데이터 선택성	전체 파일 일괄 다운로드만 가능	필요한 부분만 요청 가능
제공자부담	파일 업로드로 제공, 인프라·유지비 최소	서버운영·보안·버전관리비용 상시 발생
대량데이터수집	파일하나로 전체 데이터확보	호출횟수 제한으로 전량수집 불편

자료: 최신행(2022). 「오픈 API기반의 정보전달에 관한 연구」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가 국가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제공하는 취지는 비정형적으로 발생하는 변동 정보를 신속하게 반영·제공하고, 민간 개발자가 이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통합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를 도모하는 데 있다.

이를 고려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정보제공에 있어 이러한 기대효과가 충분히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① 민간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 ②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라는 정책목적의 달성 여부와, ③ 오픈API 고유의 강점인 실시간성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제 이용 환경을 고려할 때 민간 활용 확대 효과의 실현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가맹점 현황 등 변동 정보는 해당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와 운영대행사 별로 앱을 통해 이미 서비스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수요 역시 전국 단위의 통합 정보보다는 본인이 구입·사용할 특정 상품권에 관한 정보에 집중된다.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이용자는 상품권 사용을 위해 전용 앱을 사용해야 하므로 별도 경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유인이 더욱 낮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급자인 민간 개발자의 입장에서도 동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에 나설 유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은 발행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폐쇄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개별 상품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잠재 이용자 규모 자체가 제한적이며, 결제 기능은 지자체가 지정한 운영대행사 앱을 통해서만 제공되므로 민간 개발자가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정보

조회 등 부가적 기능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개발·운영 비용을 상쇄할 만한 수익모델을 기대하기 어려워, 오픈API를 활용한 신규 창업이나 서비스 제공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같이 시장 유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술적 진입장벽까지 더해지면서 민간 활용은 더욱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까지 오픈API에 대한 활용신청 건수가 3년간 45~545건에 그친다는 사실과 저조한 민간 앱 개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데이터 오픈API 활용신청 현황('22~'26.5.누적)]

(단위: 건)

결제정보	운영정보	판매정책정보	재고정보	판매점 정보	환전지점정보	업종별 결제정보
545	156	71	52	50	49	45

자료: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자료검색일:2026.6.7.

둘째, 개발자 대상 데이터 제공 목적 외에도, 상품권 관련 데이터 제공은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있으나 동 방식을 통한 데이터 제공은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오픈 API를 통해 해당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활용 신청 및 인증키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후 데이터 호출 및 JSON 형식의 응답 데이터를 별도로 처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추출한 CSV 데이터도 운영대행사 및 지역 정보를 식별하기 위해 행정표준코드(법정동코드) API 및 관련 코드북을 순차적으로 다시 별도 조회하여 매핑하는 가공 과정이 요구된다. 이는 사실상 일반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하기까지의 기술적 처리 절차가 상당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이는 파일을 내려받아 엑셀 등으로 곧바로 열람할 수 있었던 기존 CSV 제공 방식과 비교할 때, 일반 이용자가 정보에 접근하기까지의 기술적 처리 절차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류상품권 관련 정보를 핵심으로 하나, 지류형은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이용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오픈API 방식으로의 전환이 주된 이용자층의 정보 접근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류형상품권 관련 정보 추출 결과 비교]

오픈 API 데이터 확인 절차	일반 CSV형식 데이터 확인 절차																																																																																																																																																																
지류형 상품권 지점정보 호출결과	2021년 공공데이터 포털 제공 파일																																																																																																																																																																
<pre> Example Value Model {   "currentCount": 0,   "data": {     "item": {       "json_list_id": "string",       "corp_name": "string",       "head_id": "string",       "head_nm": "string",       "branch_id": "string",       "branch_nm": "string",       "st_type_dname": 0,       "st_type_dcode": 0,       "usage_type": "string",       "usage_pname": "string"     }   },   "totalCount": 0,   "page": 0,   "pageCnt": 0,   "totalCount": 0 }         </pre>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A</th> <th>B</th> <th>C</th> <th>D</th> <th>E</th> <th>F</th> <th>G</th> </tr> </thead> <tbody> <tr> <td>1</td> <td>지자체</td> <td>1월판매액</td> <td>2월판매액</td> <td>3월판매액</td> <td>4월판매액</td> <td>5월판매액</td> <td>6월판매액</td> </tr> <tr> <td>2</td> <td>합계</td> <td>1682805069</td> <td>2051648283</td> <td>1833301947</td> <td>1791339053</td> <td>1856245279</td> <td>1960529176</td> </tr> <tr> <td>3</td> <td>서울특별시</td> <td></td> <td>266276210</td> <td>84039475</td> <td>32352905</td> <td>4205980</td> <td>3291640</td> </tr> <tr> <td>4</td> <td>부산광역시</td> <td>75442715</td> <td>86194765</td> <td>85044087</td> <td>117745128</td> <td>111722976</td> <td>99973667</td> </tr> <tr> <td>5</td> <td>대구광역시</td> <td>87876210</td> <td>80106800</td> <td>88576488</td> <td>94887170</td> <td>100069960</td> <td>105565220</td> </tr> <tr> <td>6</td> <td>인천광역시</td> <td>255039759</td> <td>258946354</td> <td>292052786</td> <td>295669778</td> <td>308702035</td> <td>302545477</td> </tr> <tr> <td>7</td> <td>광주광역시</td> <td>74509932</td> <td>78753115</td> <td>92267721</td> <td>98141124</td> <td>100896035</td> <td>102675581</td> </tr> <tr> <td>8</td> <td>대전광역시</td> <td>149272398</td> <td>160158340</td> <td>127386305</td> <td>133988834</td> <td>223065154</td> <td>150646406</td> </tr> <tr> <td>9</td> <td>울산광역시</td> <td>63830134</td> <td>60098311</td> <td>40915355</td> <td>30570530</td> <td>31358232</td> <td>30912084</td> </tr> <tr> <td>10</td> <td>세종시</td> <td>2735868</td> <td>25544384</td> <td>25160900</td> <td>20089079</td> <td>19216891</td> <td>20248458</td> </tr> <tr> <td>11</td> <td>경기도</td> <td>327348421</td> <td>285909329</td> <td>320991723</td> <td>339420664</td> <td>363372146</td> <td>544058516</td> </tr> <tr> <td>12</td> <td>강원도</td> <td>50571613</td> <td>578760086</td> <td>530590300</td> <td>52142347</td> <td>67271612</td> <td>67274279</td> </tr> <tr> <td>13</td> <td>충북도</td> <td>54752350</td> <td>67495894</td> <td>66888898</td> <td>66478799</td> <td>69742988</td> <td>70535166</td> </tr> <tr> <td>14</td> <td>충남도</td> <td>84837323</td> <td>103462808</td> <td>85392330</td> <td>98940201</td> <td>89478404</td> <td>108268996</td> </tr> <tr> <td>15</td> <td>전북도</td> <td>152507879</td> <td>181866159</td> <td>135102317</td> <td>129679135</td> <td>127295870</td> <td>118220861</td> </tr> <tr> <td>16</td> <td>전남도</td> <td>68943442</td> <td>102412275</td> <td>110861025</td> <td>72474528</td> <td>70056482</td> <td>72801253</td> </tr> <tr> <td>17</td> <td>경북도</td> <td>106107481</td> <td>110953467</td> <td>104165483</td> <td>102573929</td> <td>64582808</td> <td>63123274</td> </tr> <tr> <td>18</td> <td>경남도</td> <td>97576322</td> <td>112639010</td> <td>103252801</td> <td>81135543</td> <td>76728074</td> <td>69755679</td> </tr> <tr> <td>19</td> <td>제주도</td> <td>6842322</td> <td>12954976</td> <td>18145223</td> <td>25048359</td> <td>28479632</td> <td>30632619</td> </tr> </tbody> </table>		A	B	C	D	E	F	G	1	지자체	1월판매액	2월판매액	3월판매액	4월판매액	5월판매액	6월판매액	2	합계	1682805069	2051648283	1833301947	1791339053	1856245279	1960529176	3	서울특별시		266276210	84039475	32352905	4205980	3291640	4	부산광역시	75442715	86194765	85044087	117745128	111722976	99973667	5	대구광역시	87876210	80106800	88576488	94887170	100069960	105565220	6	인천광역시	255039759	258946354	292052786	295669778	308702035	302545477	7	광주광역시	74509932	78753115	92267721	98141124	100896035	102675581	8	대전광역시	149272398	160158340	127386305	133988834	223065154	150646406	9	울산광역시	63830134	60098311	40915355	30570530	31358232	30912084	10	세종시	2735868	25544384	25160900	20089079	19216891	20248458	11	경기도	327348421	285909329	320991723	339420664	363372146	544058516	12	강원도	50571613	578760086	530590300	52142347	67271612	67274279	13	충북도	54752350	67495894	66888898	66478799	69742988	70535166	14	충남도	84837323	103462808	85392330	98940201	89478404	108268996	15	전북도	152507879	181866159	135102317	129679135	127295870	118220861	16	전남도	68943442	102412275	110861025	72474528	70056482	72801253	17	경북도	106107481	110953467	104165483	102573929	64582808	63123274	18	경남도	97576322	112639010	103252801	81135543	76728074	69755679	19	제주도	6842322	12954976	18145223	25048359	28479632	30632619
	A	B	C	D	E	F	G																																																																																																																																																										
1	지자체	1월판매액	2월판매액	3월판매액	4월판매액	5월판매액	6월판매액																																																																																																																																																										
2	합계	1682805069	2051648283	1833301947	1791339053	1856245279	1960529176																																																																																																																																																										
3	서울특별시		266276210	84039475	32352905	4205980	3291640																																																																																																																																																										
4	부산광역시	75442715	86194765	85044087	117745128	111722976	99973667																																																																																																																																																										
5	대구광역시	87876210	80106800	88576488	94887170	100069960	105565220																																																																																																																																																										
6	인천광역시	255039759	258946354	292052786	295669778	308702035	302545477																																																																																																																																																										
7	광주광역시	74509932	78753115	92267721	98141124	100896035	102675581																																																																																																																																																										
8	대전광역시	149272398	160158340	127386305	133988834	223065154	150646406																																																																																																																																																										
9	울산광역시	63830134	60098311	40915355	30570530	31358232	30912084																																																																																																																																																										
10	세종시	2735868	25544384	25160900	20089079	19216891	20248458																																																																																																																																																										
11	경기도	327348421	285909329	320991723	339420664	363372146	544058516																																																																																																																																																										
12	강원도	50571613	578760086	530590300	52142347	67271612	67274279																																																																																																																																																										
13	충북도	54752350	67495894	66888898	66478799	69742988	70535166																																																																																																																																																										
14	충남도	84837323	103462808	85392330	98940201	89478404	108268996																																																																																																																																																										
15	전북도	152507879	181866159	135102317	129679135	127295870	118220861																																																																																																																																																										
16	전남도	68943442	102412275	110861025	72474528	70056482	72801253																																																																																																																																																										
17	경북도	106107481	110953467	104165483	102573929	64582808	63123274																																																																																																																																																										
18	경남도	97576322	112639010	103252801	81135543	76728074	69755679																																																																																																																																																										
19	제주도	6842322	12954976	18145223	25048359	28479632	30632619																																																																																																																																																										

자료: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자료검색일:2026.5.30.

마지막으로, 데이터 특성상 오픈API 고유 강점인 실시간성의 실질적 부재 문제가 있다.

지류상품권의 판매·환전 지점은 우체국, 농협, 지역은행 등으로 한정되고 계약 변경도 빈번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정적 데이터에 해당한다. 또한 주된 정보 이용자인 가맹점주에게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데이터를 오픈API 형태로 실시간 제공하는 방식이 갖는 효용성은 제한적이다. 판매정책정보 역시 기본 사항은 조례를 통해 규율되므로 실시간 갱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간별 할인율 등은 각 지자체별 상품권 전용 애플리케이션, 공식 홈페이지 및 인쇄물 등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가맹점 및 결제·판매액 정보는 실시간 데이터가 유용할 수 있으나 실제 API로 제공 중인 데이터는 월별 정보로 제공되고 있고, 결제정보는 자료의 최신성 확보 측면에서도 미흡하여 실시간 데이터 제공을 위해 상당한 재원을 투입하는 실효성에 제약이 있다.

즉, 오픈API를 통해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데이터는 정적이거나 갱신 주기가 길어 실시간성이 요구되는 데이터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오픈API 방식 도입의 근거가 되는 핵심 강점 자체가 상품권 데이터에는 충분히 적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지류형상품권 관련 정보 추출 결과 예시]

운영정보 변환 결과										결제정보 변환 결과														
구분	종	상업	제약지	제약여부	순위	데이터	일도	보기	도움말	Power Print	이런 작업을 할때시나	구분	종	상업	제약지	제약여부	순위	데이터	일도	보기	도움말	Power Print	이런 작업을 할때시나	
1	card_pblcn	qt_ctr	ym	mbl_chg	mbt_joiner	ppr_inst	at_ppr_rtrvl	a_pvsr_inst	usage_rgn_cd			1	card_use	ctr	ym	emd_cd	emd_nm	mbl_use	ambt	user_spar_ag	par_gend	stlm_amt	stlm_nocs	usage_rgn_cd
13052		4	202504	85841000	47883	85841000	1.06E+08	10000004	47940			1048543	24056030	202302	41190110	소사본통	3257340	342	2.M	27313070	2058	41190		
13053	20000	202504	0	293035	0	0	10000001	51820				1048544	42522110	202302	41190110	소사본통	13656730	1164	3.M	56178840	4169	41190		
13054	10	202504	3.47E+08	121515	3.47E+08	4.08E+08	10000004	51760				1048545	1204E+08	202302	41190110	소사본통	16417420	1078	4.M	121E+08	5133	41190		
13055	0	202504	0	1339078	0	0	10000001	48270				1048546	88409034	202302	41190110	소사본통	7686280	389	5.M	96095314	4973	41190		
13056	7	202504	3.73E+08	32534	3.73E+08	4.44E+08	10000004	47760				1048547	93755339	202302	41190110	소사본통	2795030	160	6.M	96530369	6465	41190		
13057	0	202504	0	47771	0	0	10000001	28710				1048548	3536580	202302	41190110	소사본통	0	0	1	3536580	282	41190		
13058	0	202504	84788100	366437	84788100	1.8E+08	10000004	48240				1048549	912410	202302	41190111	삼국본통	3500	1	1.F	915910	81	41190		
13059	10000	202504	0	21911780	0	0	10000001	41590				1048550	33995369	202302	41190111	삼국본통	3885490	275	2.F	37880859	2249	41190		
13060	0	202504	1.38E+09	31311	1.38E+09	1.79E+09	10000004	47730				1048551	51958151	202302	41190111	삼국본통	9890740	662	3.F	61848891	4135	41190		
13061	5	202504	7.4E+08	88793	7.4E+08	2.71E+09	10000004	46660				1048552	104E+08	202302	41190111	삼국본통	10660560	610	4.F	115E+08	6198	41190		
13062	0	202504	0	61149	0	0	10000004	31170				1048553	1.11E+08	202302	41190111	삼국본통	9864240	604	5.F	1.2E+08	8430	41190		
13063	0	202504	0	4321368	0	0	10000001	48330				1048554	1.99E+08	202302	41190111	삼국본통	5262860	216	6.F	2.04E+08	14061	41190		
13064	0	202504	1.07E+08	0	1.07E+08	1.01E+08	10000006	41430				1048555	1096110	202302	41190111	삼국본통	26500	5	1.M	1122610	54	41190		
13065	0	202504	0	690	0	0	10000004	11110				1048556	28863580	202302	41190111	삼국본통	4425420	259	2.M	33089000	1918	41190		
13066	0	202504	0	594966	0	0	10000001	28200				1048557	46783330	202302	41190111	삼국본통	13828230	755	3.M	60711560	3537	41190		
13067	0	202504	0	305947	0	0	10000001	41390				1048558	69816838	202302	41190111	삼국본통	13411235	710	4.M	83228073	4368	41190		
13068	5000	202504	0	5252762	0	0	10000001	41500				1048559	69873316	202302	41190111	삼국본통	7388260	349	5.M	77259576	4586	41190		
13069	0	202504	0	0	0	0	10000002	43750				1048560	98274790	202302	41190111	삼국본통	1922770	69	6.M	1E+08	7364	41190		
13070	0	202504	0	777808	0	0	10000001	51810				1048561	5298190	202302	41190111	삼국본통	0	0	1	5298190	390	41190		
13071	167	202504	8.73E+08	578439	8.73E+08	6.38E+09	10000004	46170				1048562	6477290	202302	41190112	법박통	79150	7	1.F	6556440	159	41190		
13072	0	202504	82091100	0	82091100	1.44E+08	10000004	48170				1048563	7732320	202302	41190112	법박통	1014650	79	2.F	8746970	598	41190		
13073	455	202504	0	1689362	0	3.25E+08	10000011	47250				1048564	26245715	202302	41190112	법박통	6477060	342	3.F	32722775	1326	41190		
13074	1482	202505	0	1162758	0	0	10000004	51210																
13075	36	202505	2.45E+09	219299	2.45E+09	8.73E+09	10000004	46820																
13076	52	202505	2.35E+09	683715	2.35E+09	3.82E+09	10000004	46810																
13077	0	202505	0	3862940	0	0	10000005	47850																
13078	363	202505	0	3899861	0	0	10000004	51130																
13079	0	202505	0	0	0	2.4535000	10000006	51210																
13080	36	202505	1.12E+09	136714	1.12E+09	4.74E+08	10000004	47830																
13081	0	202505	0	0	0	8265000	10000006	41270																
13082	0	202505	0	1509862	0	0	10000001	41820																
13083	146	202505	1.8E+09	281412	1.8E+09	3.53E+09	10000004	46790																
13084	0	202505	0	8137054	0	0	10000001	28177																

자료: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 자료검색일:2026.5.30.

일반 국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라는 본래의 공공데이터 제공 취지를 감안할 때, 갱신 주기를 월별로 설정하되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더 적합할 수 있고 재정 효율성도 높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현행 데이터의 특성, 이용자의 기술적 접근 제약성, 저조한 활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오픈API 제공서비스의 대상과 범위, 지속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sup>1)</sup> 사업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역대 최대규모 산불로 마을 전체가 소실된 지역(안동시, 영덕군, 의성군)의 이재민 주거안정 등 종합적·체계적인 마을단위 복구 추진을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1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산불지역 마을 단위 복구·재생	-	10,000	-	-	10,000	10,000	-	-	12,00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은 시급성을 감안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음에도 실시설계 착수가 연도 말에 이루어져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미흡하였던 만큼, 적기에 주요 시설이 구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재점검함으로써 재난회복 정책으로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35-302

2025.3.21.~26.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산불로 8개 지자체<sup>2)</sup>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이 중 피해가 집중된 지구의 기반 조성 및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중·소규모 피해 마을을 대상으로 하여 마을 단위 개선복구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업 대상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사항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동시, 영덕군, 의성군 내 5개 지구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415억 1,500만원(국고보조율 80%)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도로·상하수도 재설치, 인접 사면 정비 및 커뮤니티 센터 등 편의시설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우선 100억원이 반영되었다.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사업 개요]

- (주요내용) 도로, 상하수도, 예경보시설 등 기반시설과 커뮤니티센터, 소공원 등 편의시설을 함께 구축하여 주거환경과 생활여건 개선
- (사업지) 3개시군 5개지구(안동 중마, 추목/영덕 수암, 대곡/의성 구계1)
- (사업기간) 2025~2027(3년)

연도	예산	사업내용
2025	125억원	실시설계 착수
2026	150억원	실시설계 완료, 공사 착공
2027	140억원	공사 준공

- (총사업비) 41,515백만원 (국비 80%, 지방비 20%)
- (2025년 추경예산) 실시설계비 53억원, 착공비 및 공사선급금 47억원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당해연도 6월 총사업비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국고보조금 100억원을 전액 교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계 착수가 10월 말 이후 추진되면서 당해연도에는 설계 용역 선금 14.9억원만 집행되었다. 2026년 6월 현재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예산 85.1억원의 16.8%인 16억 7,800만원을 실집행하였다.

2) 총 104,788ha가 소실되고 18,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피해 추정액이 1.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경북 안동·영덕·의성·청송·영양, 경남 산청·하동·울산 울주를 포함한 8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10,000	10,000	1,490	8,510	-	14.9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사업 절차별 추진 일정]

기간	추진 내역
'25.5.	마을단위복구재생 5지구 사업신청서 제출
'25.6.	총사업비 415억 1,500만원 확정
'25.7.	국고보조금 100억원 전액 교부
'25.10.~12.	실시설계착수(의성 10월, 영덕 11월, 안동 12월)
'26.6.~10.(예정)	실시설계 완료 예정(의성 6월, 영덕 10월, 안동 10월)
'26 하반기(예정)	전체 지구 공사착공 예정(의성 9월, 영덕 11월, 안동 11월)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단순 소실 시설별 복구가 아닌 마을 단위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 사업계획 수립 등에 절대적 시간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지연 되었으나,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2026년 내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신속한 복구의 필요성을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실시설계 착수비와 공사비를 함께 반영함으로써 설계와 시공이 연속적으로 추진가능한 여건이 갖추어지도록 전제하였다. 그럼에도 실시설계 착수가 연도 말에 이루어진 것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제시된 시급성과 괴리가 있다. 더욱이 행정안전부는 실시설계 착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연도 7월에 국비를 전액 교부하고, 세부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2026년 예산 공사비 120억원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사업 실적행헌황 및 계획('26.5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일시	안동		영덕		의성	합계	누계
	중마지구	추목지구	수암지구	대곡지구	구계1지구		집행률
현 황							
~'26.4	266	283	466	465	455	1,935	1,935
	설계비 선금 등		설계비 선금 등		설계비 선금 등		4.7%
'26.5	-		200	200		400	2,335
			부지정리선금				5.6%
예 정							
'26.6			500	200	214	914	3,249
			사면선금/토지보상		설계비 준공		7.8%
'26.7			200	200	100	500	3,749
			실시설계완료		토지보상		9.0%
'26.8			800	600	112	1,512	5,261
			부지정리준공/본공사선금		토지보상		12.7%
'26.9			1,000	1,000	100	2,100	7,361
			사면준공/관급자재선고지		토지보상		17.7%
'26.10	100	100			1,303	1,503	8,864
	수수료(감정평가등)				기반·사면 공사선금		21.4%
'26.11	100	100			340	540	9,404
	토지보상금				건축공사선금		22.7%
'26.12	214	222	650	650	424	2,160	11,564
	실시설계완료/토지보상		본공사기성금		기반기성금/ 관급자재		27.9%
합계	8,786	8,956	8,520	8,337	6,916	41,515	27.9%

자료: 행정안전부

나아가 실시설계 완료 시점이 지구별로 2026년 6월에서 12월로 예정되어 있고,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월별 집행계획에 따르면이라도 2026년 말 기준 누계 실적행률은 총사업비의 27.9%에 그칠 전망이다.3) 잔여 공정의 대부분을 준공 예정연도인 2027년에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이다.3)

3) 다만,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이 고밀도 건물 및 고난이도 공정이 없는 사업 환경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착공 후 연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2027년 내 준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포함된 인접 사면 정비와 예·경보시설 구축은 대형산불 이후 상존하는 2차 피해 위험에 대응하는 재해예방의 성격을 지닌다. 산불 피해지역은 지표 식생과 토양의 결속력이 훼손되어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과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이러한 위험은 피해 이후 수년간 지속되므로, 사면 정비 등 재해예방 공정이 풍수해 기간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경우 인명·재산상의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마을 단위의 종합적 재생계획 수립에 시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긴급성을 요하는 공정이 전체 계획에 연동되어 함께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별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동 사업의 정책목표인 공동체 회복 자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2026년 5월 말 현재 2,085세대 3,551명(기타 임시주거시설 포함 시 3,710명)의 이재민이 기존 주택을 재건하지 못한 채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이재민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역 임시조립주택 입주세대 현황]

(단위: 호, 명)

초기입주('25.3.)		거주지역 복귀		타지역 이주 <sup>1)</sup>		잔류세대('26.5.)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2,661 <sup>2)</sup>	4,587	464	849	17	28	2,085	3,551

주: 1) 타지역 이주: 다른 시·군으로 이주

2) 2,661세대: 피해주민 3,358세대(5,546명) 중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한 세대 수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가운데 국립보건연구원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산불 발생 11개월 후(2026.2.) 안동·의성 지역 이재민 400명 중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이 34.25%, 우울 고위험군이 2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 경험, 주거 불안과 복구 지연, 생계 위축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지만, 고령층 위주의 지역주민이 산불 이전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어가던 일상이 화재 이후 단절되면서 고립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동시·의성군 산불피해 지역주민 대상 조사('26.2.)결과]

구분	세부 항목	해당자 수	비율
정신건강 측정결과	PTSD 고위험군	137명	34.25%
	우울 고위험군	96명	24.0%
신체 증상	정신건강 문제 (수면장애·우울·불안·분노 등)	286명	71.50%
	호흡기 증상 (기침·가래·인후통)	221명	55.20%
	안구 증상 (충혈·눈 따가움)	97명	24.20%
	전신 증상 (두통·어지러움·발열·피로)	76명	19.00%

자료: 국립보건연구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2026.5.), '산불피해 이재민의 장·단기 건강영향조사 및 대응 체계 연구 포럼' 발표자료에서 발췌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공동체 회복과 이재민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목적으로 신규 편성된 동 사업이 지연될 경우, 이재민이 마을 귀환을 포기하고 자녀 등 다른 가족의 거주지인 타지로 이주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해지역은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어 마을과 주택의 소실이 지역 이탈과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으며, 커뮤니티센터나 소공원 등 공동체 기반시설은 실제 이용할 주민이 정주할 때 비로소 기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주인구의 감소는 정책목표의 달성 가능성 자체를 저해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와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소 주택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민간기부금을 포함하여 최대 1억원 수준이나, 2025년 건물신축단가표 기준 34평형 주택의 신축비용이 2.3억원을 상회하고 다수의 피해주민이 단기적으로 소득기반을 상실한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력으로 주택을 재건하기 곤란한 세대가 상당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이재민의 중장기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커뮤니티센터·소공원 등 편의시설의 조성이 우선될 경우, 주거기반을 상실한 피해주민에게 실질적 효용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복의 체감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본이 노토반도 지진 복구 과정에서 응급가설주택을 마을만들기형·고향회귀형 등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입주기간 종료 후 공영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임시주거 지원과 마을 재생을 연계한 사례<sup>4)</sup>를 참고할 때, 마을단위 복구·재생계획은 이재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방안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수립·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도 동일 피해지역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주거·기반시설 정비와 지역경제 재생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계획 수립 단계에 머물러 있다. 행정안전부의 마을재생사업이 공동체 공간 조성을 통한 사회·심리적 회복에 중점을 둔다면 국토교통부의 특별재생사업은 주거·기반시설 정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양 사업은 대상 지역과 기능 면에서 상호 연계될 수밖에 없으므로,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와 사업의 범위·내용 및 추진 일정을 협의하여 초기 주거지원과 중장기 재생사업 간의 시간적 간극을 최소화하는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산불피해 이재민의 회복탄력성과 피해지역의 존립 기반을 고려하여 사업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사면 정비 등 재해예방 공정을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지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 및 국토교통부의 특별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마을단위 주요 시설이 적기에 구축되고 실질적인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

4) 일본 이시카와현은 2024년 노토반도 지진 복구 과정에서 응급가설주택을 기존형·마을만들기형·고향회귀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 이 중 마을만들기형과 고향회귀형은 이재민 입주기간 종료 후 시정운영주택(공영주택)으로 전환하였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마이시시 헤이타 지구에서도 고령 이재민을 위해 돌봄기능과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가설주택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박유나 외(2024), 「이재민 생활안정을 위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단지 조성방안」, 건축공간연구원 참조).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몰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대체채용에 따른 종료 후 보조사업 추진 문제

### 가. 현 황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sup>1)</sup>사업은 청년 고용 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를 통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인건비, 창업지원, 일경험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전년도 이월액 4,400만원을 포함한 2025년 예산액 198억 9,700만원 중 168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30억 6,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9,853	19,853	44	-	19,897	16,832	-	3,065	-

자료: 행정안전부

### 나. 분석의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025년 종료되었으나 2024년 중도탈락자 대체 채용으로 인해 지자체가 전년도 교부예산을 이월·집행함으로써 사업 종료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고보조사업 정산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국회 차원의 집행결과 및 성과 점검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고보조율 30~50%를 적용하여 추진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혁신형·상생기반대응형(소멸위기지역창업형/창업성장플러스형)·지역포용형으로 구분된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31-303

유형별 지원기간은 지역혁신형·소멸위기지역창업형 2년(+1년), 창업성장플러스형 1년(+2년차 지역청년 채용 시 추가 지원), 지역포용형 1년 이내로 각각 설계되어 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내역]

유형구분		주요 지원내용
지역혁신형		청년 대상 지역특화 일자리·임금 지원 (1년차) 인건비 연 2,400만원 지원 (2년차) 인건비 연 2,400만원 지원 (3년차) 정규직 유지시 인센티브 연 1,000만원
상생 기반 대응형	소멸위기 지역 창업	인구감소지역 청년의 신규 창업 등 지원 (1년차) 창업준비비용 1,500만원 지원 (2년차) 창업 성공시 1,500만원 지원 (3년차) 청년 신규채용 시 1년간 인건비 2,400만원 지원
	창업성장 플러스	서울 외 지역 청년의 창업 '정착' 지원 (1년차) 시제품·홍보·공간임차 등 1,500만원 지원 (2년차) 청년 신규채용 시 1년간 인건비 2,400만원 지원
지역포용형		청년 일경험 지원 (1년차) 임금(2,250만원 내외)·직무교육 등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동 사업은 높은 중도탈락률과 부정수급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5년도 일몰이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최소 2년의 지원기간을 감안하여 신규 선발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중 중도포기 인원에 대한 대체채용을 실시하였는데, 지역혁신형 및 상생기반대응형의 경우 3년차 추가 인센티브를 제외하더라도 최소 2년간의 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는 구조상, 2024년 중반에 대체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2025년은 물론 2026년에도 예산소요가 발생하게 되었다.

[2022~2026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선발유형별 지원금 편성구조]

구분	2023	2024	2025	2026
사업 상태	정규 추진	신규 선발 중단	<b>사업 종료</b>	사업 종료 후
2022년 이전 선발 인원	2·3년차 지원	지원 종료	-	-
2023년 신규 선발 인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b>3년차 지원</b>	-
2023년 대체채용 인원	1년차 지원 (1년 미만)	1년차 잔여기간 ~2년차 지원	<b>2년차 잔여기간 지원</b>	-
2024년 대체채용 인원	-	1년차 지원 (~0.5년차)	<b>1년차 잔여기간</b>	2년차 잔여기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5년도 교부액 167억 4,900만원 중 반납되어야 할 집행잔액 50억 400만원에 대하여 실집행이월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A)	실집행액(B)	이월액(C)	불용액
19,545	16,749	2,795	16,749	10,698	5,004	1,047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조치는 채용약정에 따른 잔여 지원기간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사업 일몰이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신규 대체채용을 허용하고, 그에 따른 지원소요가 사업 종료 이후 연도까지 이어지도록 한 것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보조사업 종료 후 잔여 보조금 반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료 예정 사업의 신규 약정을 자제하도록 규정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취지와도 상충한다.<sup>2)</sup>

2) 한편, 2024년 대체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3년차 추가지원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였는데, 이 사업이 최대 3년 지원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고 청년 참여자들이 그러한 조건 하에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종료에 수반되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인정하더라도 일방적 정책설계 변경·적용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지자체별 실집행현황('26.3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

지자체명	25년 교부액	실집행액	실집행 비율
합계	16,749,727	11,885,390	71.0
서울	76,681	70,602	92.1
부산	2,325,564	1,565,458	67.3
대구	193,208	172,773	89.4
인천	656,175	486,518	74.1
광주	344,022	286,312	83.2
대전	102,062	77,149	75.6
세종	126,500	107,428	84.9
경기	451,567	325,477	72.1
강원	587,574	246,792	42.0
충북	1,579,009	1,384,101	87.7
충남	1,164,248	978,531	84.0
전북	2,203,708	1,725,748	78.3
전남	1,991,081	1,181,149	59.3
경북	2,187,490	1,361,788	62.3
경남	2,558,909	1,905,576	74.5
제주	201,929	9,988	29.7

주: 울산은 국고보조금 미교부  
자료: 행정안전부

이월조치의 허용여부와 별개로 이월액이 실제 소요에 부합하게 산정·관리되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에 차년도 예산 부족분 대응을 이유로 지출원인행위(대체채용)가 발생하지 않은 건을 합하여 실집행잔액을 일괄 실집행이월 처리하였으며, 2024년에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대체채용 미달 사실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미사용 보조금에 대한 반납 조치를 취하지 않아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3)

3) 2024회계연도에 대한 국회 결산검토과정에서 다음의 시정요구가 있었다.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보조금 집행잔액 부적정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일부(15억 3,900만원)가 절차상 하자로 이월되지 못하였음에도 적기에 반납 처리되지 않아 반납이 2025년 4월 이후로 지연됨</li> <li>▫ 해당 보조금 집행잔액은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의 2024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입되었는데,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조사업자에 의해 임의로 집행될 위험이 있었음</li> </ul>	시정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규채용자·2·3년차 참여자·대체채용자의 혼재, 유형별 지원단가 및 지원기간의 상이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려 있어 정확한 소요액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 이러한 이월액 관리상 문제가 반복된 점을 고려하면 2025년 실집행이월액 50억원의 실제 대체채용 인원에 대한 잔여지원 소요와 대응하는지 집행종료 후 정산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하여 정산할 필요가 있다.

[사업종료 후 지원금 교부 대상 인원 현황('26.5월말)]

(단위: 명)

지자체명	지역혁신형	채용인원	미채용
서울	-	-	-
부산	83	-	-
대구	15	-	-
인천	1	-	-
광주	6	-	-
대전	3	-	-
울산	-	-	-
세종	3	-	-
경기	13	-	-
강원	15	2	-
충북	14	-	-
충남	9	2	-
전북	68	-	-
전남	44	-	-
경북	73	9	-
경남	78	2	-
제주	1	-	-
계	426	15	-

자료: 행정안전부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의 데이터 연계, 공유 등을 통해 보조금 미반납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효적인 제재방안, 제도 및 시스템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li> </ul>	

아울러,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잔여 지원기간이 존재함에 따라 사후관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일몰 사유 중 하나였던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기 확인된 부정수급 과징금이 적기에 환수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실질적인 종료 시점까지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현장점검 및 지자체 점검에 따른 부정수급 적발 및 과징금 징수결정 규모는 2021년 300만원(1건)에서 2024년 6억 6,562만원(2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적발 건수의 상당수가 민간 제보에 기반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의 점검을 통한 선제적 적발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정 광역시의 자체 특정감사에서 21건의 관리부실·부정수급이 확인된 사례는,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최근 4년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상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건, 천원)

연도	부정수급 적발 건수	과징금 부과 건수	징수결정액	수납액
2021	1	1	3,000	2,500
2022	5	5	10,799	9,951
2023	12	12	204,677	106,073
2024	20	20	665,622	479
2025	9	9	261,544	4,110
합 계	47	47	1,145,642	123,113

자료: 행정안전부

금년도는 사업이 공식 종료되었음에도 잔여 채용인원에 대한 실질적 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종료 시점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사업은 형식적으로 종료되었으나 실질적인 집행과 지원은 향후에도 일정 기간 계속되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이월액의 집행 목적 부합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집행 완료 후에는 미사용 잔액을 정확히 계상하여 적기에 반납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부정수급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sup>1)</sup>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협업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의 빈집 정비 지원을 통해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 및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예산현액 100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A)							
지자체 빈집 정비 지원	10,000	10,000	-	-	10,000	10,000	-	-	-

자료: 행정안전부

당초 매년 50억원 규모로 3년간(2024~2026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계획과 달리 2025년에는 예산을 전년 대비 100% 증액 편성(100억원)하여 2025년에 종료하였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에 예산액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 17억 6,200만원 이월, 8억 6,900만원 불용이 발생하여 실집행액은 73억 6,900만원(73.7%)이다.

[2025회계연도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A)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10,000	10,000	10,000	-	10,000	7,369	1,762	869	73.7

자료: 행정안전부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32-300

## 나. 분석의견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동 사업은 관련 법령의 소관부처들에서 추진하던 정비사업과 달리 인구 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체계적인 빈집 철거로 관련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정비개소 1,584호 중 인구감소·관심지역 비율이 60.7%에 그치고 지역별 빈집현황과 정비개소 비중 간에도 불균형이 존재하여 정책 의도가 충분히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하여 소관부처에서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시행 중이었으며, 지역별 분산정비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토부를 중심으로 전국 빈집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부처별 빈집정비 사업 법적근거 및 내용]

구분	행안부	농림부	국토부	해수부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사업대상	인구감소지역	농촌지역	도시지역	어촌지역
2025년 관련 사업 <sup>1)</sup>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1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약지역개조 (1,045억원)</li> <li>· 농촌공간계획 및 재생지원 (1,157억원)</li> <li>· 농촌생활인구 유입지원 (20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재생사업 (4,648억원)</li> <li>·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738억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촌신활력 증진 (1,296억원)</li> </ul>

주: 1) 예산액은 세부사업 기준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다만, 해당 부처들이 추진하던 기존 사업은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일부 빈집의 철거·리모델링을 수행하는 데 그쳐, 전국 빈집 규모 대비 정비 범위가 협소하고 부처별 특정 소관 지역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빈집 정비를 추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sup>2)</sup>

그러나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비 개소는 전체의 60% 수준이며 교부액 기준으로는 52.7%에 그쳐 기타 지역(47.3%)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동 사업의 재원 배분이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에 충분히 부합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2025년 인구감소·관심지역 및 기타지역 정비사업 현황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개소수		교부액		이월액	
		비중		비중		비중
인구감소지역	862	54.4	4,478	44.8	710	40.3
관심지역	100	6.3	790	7.9	217	12.3
기타	622	39.3	4,732	47.3	834	47.4
합 계	1,584	100.0	10,000	100.0	1,761	100.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동 사업의 정비단가는 농어촌지역 호당 500만 원, 도시지역 호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국고보조율 7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2025년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표준품셈」 상 관련 장비의 일일 사용료를 감안할 때, 실제 철거 소요비용이 호당 500만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 대비 50% 수준의 단가로 산정되었으나, 실제로는 접근성 제약, 증장비 임차 여건 미비, 숙련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단위비용이 오히려 더 높게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단체는 당초 예산을 초과하는 지방비 매칭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2) 정부는 2024년 8월말부터 2025년 8월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국토교통부)-농어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빈집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4개 부처로 구성된 빈집정비 통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였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다시 국토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빈집정비 사업을 위한 예산이 별도 편성되어 추진 중이다.

[연도별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사업 국고보조율 및 지원단가]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규모	국고보조율	지원단가 및 지방비 소요	
2024	5,000	100	(당초계획) 직접수행	도시지역 1,000만원
			(계획변경) 국고보조 100%	농어촌지역 500만원
2025	10,000	70	· 도시지역 국비 1,000만원+지방비 400만원 · 농어촌지역 500만원+지방비 200만원	

주: 2024년도에는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에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됨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문제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의 경우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추가적인 지방비 조달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빈집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는 지역일수록 오히려 사업 참여와 적극적 추진에 구조적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다음으로, 120개 지자체별 정비개소 수를 비교해보면 당초 계획대로 빈집 증가로 주민 안전, 위생·경관 저해 등의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하여 면밀하게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

빈집 수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군산(3,672), 여수(2,768) 목포(1,808) 부산서구(1,865), 진주(1,843), 부산진구(1,795), 의성(1,635), 김천(1,405), 순천(1,339) 등이나, 빈집정비 개소는 포항(110), 곡성(90), 천안(68), 익산(55), 해남(42), 장흥(39) 등이다. 시도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역시 역내 빈집 개소현황과 실제 정비사업 실적 간의 상관관계가 미흡하여 고밀도 지역에 재원과 행정력이 집중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2025년 지역별 빈집 현황과 빈집 정비 지원 현황 비교]

(단위: 호, %, 백만원)

지역	지역별 빈집 현황			지역별 빈집 정비 지원 현황		
	빈집수	빈집률	심각도 역대 상위20% 지역	개소수	교부액	정비 개소 상위 20% 지역
전남	20,006	14.9	목포, 여수, 해남, 순천	382	1,943	곡성, 해남, 장흥, 목포
전북	18,300	13.7	군산, 정읍, 김제	244	1,674	익산, 진안, 고창, 군산
경남	15,786	11.8	의령, 고성, 밀양	242	1,305	하동, 거창, 남해
경북	15,302	11.6	의성, 경주, 포항	201	1,378	포항, 의성
부산	11,471	8.6	서구, 영도구, 동구	34	300	부산진구, 사하
강원	7,091	5.3	홍천, 춘천, 동해	106	735	춘천, 태백
경기	6,714	5.0	평택, 동두천, 의정부, 양평, 파주	26	220	평택, 동두천
충남	6,268	4.7	부여, 서산, 금산	103	550	천안, 청주
대구	6,009	4.5	동구, 북구	40	300	서구
충북	4,995	3.7	제천, 영동	65	400	청주, 옥천
대전	4,991	3.7	대덕구	8	80	서구
인천	4,178	3.1	미추홀구, 중구	14	175	강화
광주	2,272	1.7	광산구	4	200	남구
울산	1,849	1.4	중구	71	440	울주, 동구
제주	1,158	0.9	-	39	200	제주
세종	688	0.5	-	5	100	-

주: 1. 빈집현황 정보는 빈집정비시스템에 공시된 2024년말 기준 현황임

2. 심각도와 정비개소 상위 20%는 각 시·도내 상위 20%를 의미

자료: REB빈집정비통합시스템(빈집愛: <https://www.binzibe.kr>) 공시자료 및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이러한 추진실적을 종합해보면,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별 빈집현황의 심각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빈집 비중 등에 기초한 사업 우선순위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도 실질적 필요도보다 대응지방비 확보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둘째, 2024년 실집행률이 26.6%이고 시범사업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 예산을 전년 대비 100% 증액 편성하여 추진한 결과, 17.6억원(17.7%)을 상회하는 실집행이월이 발생한 채 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면밀한 사후관리를 기할 필요가 있다.**

해당 사업은 당초 타 부처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획되어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예산안 확정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업무가 지방사무로 자치단체 보조방식이 적법하다는 점을 인지하여 2024년 5월 예산을 전용하고 당해연도 7월 교부를 시작했다.<sup>3)</sup>

이와 같은 사업방식 변경 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며, 2024년도 예산액 50억원 중 실집행액은 13억 3천만 원에 그쳐 예산액의 74%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면서 실질적인 사업 성과평가와 정책적 학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처 예산현액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교부액(A)	실집행액(B)	이월액(C)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4	5,000	4,969	1,330	3,584	55	26.8
2025	10,000	10,000	7,368	1,761	870	73.7

자료: 행정안전부

3) 다만, 연도 중 사업방식이 직접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비 매칭 확보가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국고보조를 100%가 적용하고 7월에 교부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에는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수요 재조사 없이 예산을 전년 대비 100% 증액하여 100억원을 편성·교부하였다. 시범사업의 본래 취지인 정책 실험과 검증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규모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합리성이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25년도에 대응 지방비 확보가 가능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실집행 이월 및 불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방식의 적법성, 정비소요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여 집행부진이나 성과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산 증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이 종료되었음에도 이월되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기타경상이전수입<sup>1)</sup>은 국고보조사업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과오지급금 회수액 등으로 구성되는 수입 항목이다.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현액은 1,141억 3,4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620억 6,200만원으로 이 중 81.4%인 505억 1,300만원을 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수납률 (A/C)	수납률 (B/C)
기타경상이전수입	114,134	62,062	50,513	11,549	44.3	81.4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현액은 129억 900만원이었으며 418억 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42억 3,700만원(58.0%)을 수납하였다. 지역자율계정의 경우 예산현액은 52억 8,300만원이었으나 253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48억 8,200만원(98.0%)을 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미수납액	수납률 (C/A)	수납률 (C/B)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지원)	12,909	41,802	24,237	17,565	187.8	58.0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자율)	5,283	25,395	24,882	513	471.0	98.0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59-59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9-596

## 나. 분석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과 관련하여 매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미수납액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반납 의무 발생 후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수납액도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국고환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기타경상이전수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구성되며, 이는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반납한 집행잔액 및 보조금 교부 취소분을 포함한다.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은 자치단체보조사업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 반납 주체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sup>2)</sup>

최근 5년간(2021~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2023년까지는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을 크게 상회하는 초과수납 양상이 나타났으나, 이후 이러한 추세가 전환되어 2025년에는 징수결정액이 예산액의 55% 수준에 그쳤다. 한편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24년 상당히 개선되었다가 2025년에 81.4%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1~2025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2021	44,718	363,437	246,245	550.7	67.8	117,192
2022	46,060	328,869	253,525	550.4	77.1	75,344
2023	47,442	151,167	107,584	226.8	71.2	43,583
2024	267,121	97,354	84,125	31.5	86.4	13,230
2025	114,134	62,062	50,513	44.3	81.4	11,549

주: 예산현액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의 경우, 2023년을 제외한 매 회계연도에 세입 과소추계로 인해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대비 300%를 상회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2025년에도 예산액 129억원에 대해 징수결정액은 418억원(예산액의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받은 후 보조금액을 확인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보조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2배)에 달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42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58.0%에 불과하다. 이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98.0%인 것과 대조된다.

[2021~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A)	징수결정액(B)	수납액(C)	수납률(C/A)	수납률(C/B)	미수납액
지역 지원 계정	2021	597	7,938	5,031	842.7	63.4	2,907
	2022	3,399	11,415	9,568	281.5	83.8	1,847
	2023	3,501	3,883	3,178	90.8	81.8	705
	2024	8,510	72,182	64,722	760.5	89.7	7,459
	2025	12,909	41,802	24,237	187.8	58.0	17,565
지역 자율 계정	2021	1,800	120	114	6.3	95.0	6
	2022	1,854	490	473	25.5	96.5	17
	2023	1,910	10,604	10,490	549.2	98.9	114
	2024	1,833	16,901	16,872	920.5	99.8	29
	2025	5,283	25,395	24,882	471.0	98.0	513

자료: 행정안전부

이러한 징수결정액 규모와 미수납액 규모는 전년도 자치단체보조사업 규모에 반드시 비례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례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보조사업 교부액은 2022년~2024년 약 1.4배 증가한 반면, 차년도 미수납액('23~'25) 약 25배 증가하여, 양자 간 규모의 정합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미수납액이 전년도 보조사업 규모에 연동되기보다 각 연도의 집행잔액 규모와 수납 실적에 따라 결정됨을 의미하며, 해당 연도 미수납액이 전년도 보조사업 규모의 확대가 다음 연도 미수납액 증가로 직결되는 구조라고 보기에는 제약이 있다.

[행정안전부 자치단체보조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교부액	예산액	교부액	예산액	교부액	예산액	교부액
일반회계	18,117	18,117	4,469	4,449	8,491	8,480	133,173	132,780
지특지원	10,307	10,211	13,721	13,705	14,249	14,217	21,305	21,200
지특자율	2,241	2,241	2,257	2,257	2,167	2,167	2,529	2,529
합계	30,665	30,569	20,447	20,411	24,907	24,864	157,007	156,509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반납 통지가 지자체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완료 이후에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성상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며, 광역지자체가 관할 기초지자체의 정산반환액을 취합하여 납부하는 과정에서 역내 시군구의 예산 미확보 및 추경편성 지연 등의 문제로 수납률이 낮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징수결정액 규모가 클수록 정산반환금 편성 및 지급 부담이 가중된다고 부연하였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징수결정액 규모와 미수납률 간의 상관성이 뚜렷하지 않고 지자체별 편차도 상당하여, 예산편성 시차에 따른 불가피한 미수납 증가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2024~2025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반납주체별 미수납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2025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미수납률
민간	19,139	818	4.3	24,662	836	3.4
지자체	201,967	22,117	10.9	118,560	30,445	25.7
서울	27,843	298	1.1	1,257	295	23.4
부산	14,149	198	1.4	6,023	273	4.5
대구	9,752	101	1.0	1,662	0	0.0
대전	7,981	62	0.8	384	3	0.8
광주	4,001	177	4.4	2,509	854	34.0
울산	2,494	28	1.1	445	1	0.1
인천	35,336	100	0.3	28,513	14	0.1
세종	167	44	26.4	965	17	1.8
경기	26,013	1,836	7.1	8,178	2,603	31.8
충북	7,212	1,612	22.4	9,341	2,450	26.2
충남	5,305	1,169	22.0	4,426	3,282	74.2
전남	5,933	4,438	74.8	12,022	10,100	84.0
경북	8,010	1,297	16.2	16,295	3,933	24.1
경남	9,331	2,382	25.5	8,156	2,736	33.5
강원	11,537	6,188	53.6	8,306	2,001	24.1
전북	4,970	1,354	27.2	8,636	1,864	21.6
제주	2,793	15	0.5	1,442	19	1.3

자료: 행정안전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보조금의 집행 후 정산·반납을 체계적으로 규율한 이유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보조금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이같이 보조사업의 정산 및 국고반납이 지연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2026년 3월 말 기준 미수납액 중에는 2017년에 징수결의된 건을 포함하여 5년 이상 장기 미수납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바,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행정안전부의 보다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요구된다.

[납기경과 국고보조금 반납 미수납 현황('26.3월말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2017	117,461	117,461	-	-
2018	63,146	63,146	-	-
2019	18,914	18,914	-	-
2020	19,510	19,510	-	-
2021	274,458	274,458	4,363	433
2022	985,523	972,988	79,025	79,025
2023	96,927	66,395	26,657	107,170
2024	869,311	250,273	2,760,680	2,643,481
2025	7,212,830	4,758,733	13,890,628	11,077,729

주: 지역자율계정의 2025년 이전 징수결정액은 모두 수납 완료됨

자료: 행정안전부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보조출연사업의 집행 및 정산과 국고반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보조금 및 출연금 집행잔액의 적기 반납을 유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미납사유 및 납부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부조건에 반납기한 설정 및 미반납 시 교부 제한, 지자체 합동평가 및 지방재정 우수사례 인센티브 제한 등 실효적 제재수단을 포함함으로써 기타경상이전수입의 수납률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5,568억 300만원이며, 2조 8,816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2.2%인 1조 5,030억 4,700만원을 수납하고 1조 3,713억 9,6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71억 8,0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465,264	1,465,264	1,465,264	2,796,201	1,417,646	1,371,375	7,180	50.7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91,539	91,539	91,539	85,422	85,401	21	-	100.0
합계	1,556,803	1,556,803	1,556,803	2,881,623	1,503,047	1,371,396	7,180	52.2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3조 5,992억 4,300만원이며, 이 중 98.2%인 13조 3,558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724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10억 4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3,488,033	13,490,870	13,502,698	13,267,442	72,413	162,843	98.3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91,539	91,539	91,539	83,379	-	8,160	91.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006	5,006	5,006	5,006	-	-	100.0
합계	13,584,578	13,587,415	13,599,243	13,355,826	72,413	171,004	98.2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나.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75억 1,500만원(△3.8%) 이 감소한 1조 4,464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05억 3,000만원(△3.4%)이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수입	1,497,009	1,503,994	1,503,994	1,446,479	△57,515	△50,53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2025회계연도 경찰청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310억 2,400만원(△1.7%) 이 감소한 13조 2,997억 7,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769억 6,400만원(2.8%)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총지출	12,922,810	13,527,961	13,530,798	13,299,774	△231,024	376,964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 다. 재무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경찰청의 자산은 18조 3,058억 1,900만원, 부채는 3,964억 2,100만원으로 순자산은 17조 9,093억 9,8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조 4,135억 9,900만원, 유·무형자산 16조 8,583억 1,200만원, 기타자산 339억 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2,197억 4,500만원(1.2%) 증가하였다. 이는 미수채권 증가 등에 따른 금융자산 289억 9,100만원 증가, 토지 취득 및 건물의 완공 등에 따른 유·무형자산 1,804억 9,9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2,860억 5,700만원, 충당부채 1,088억 4,800만원, 기타부채 15억 1,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55억 9,300만원(1.4%) 감소하였다. 감소의 주요 원인은 BTL임대료미지급금 상환 등으로 인한 차입부채 83억 3,1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8,305,819	18,086,074	219,745	1.2
Ⅰ. 금융자산	1,413,599	1,384,608	28,991	2.1
Ⅱ. 유·무형자산	16,858,312	16,677,813	180,499	1.1
Ⅲ. 기타자산	33,909	23,653	10,256	43.4
부 채	396,421	402,014	△5,593	△1.4
Ⅰ. 차입부채	286,057	294,388	△8,331	△2.8
Ⅱ. 총당부채	108,848	105,720	3,128	3.0
Ⅲ. 기타부채	1,516	1,906	△390	△20.5
순 자 산	17,909,398	17,684,060	225,338	1.3
Ⅰ. 기본순자산	6,898,650	6,898,650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4,193,141	3,933,000	260,141	6.6
Ⅲ. 순자산 조정	6,817,607	6,852,410	△34,803	△0.5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5조 838억 3,5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조 6,549억 3,200만원, 관리운영비 13조 4,889억 7,000만원, 비배분비용 213억 8,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77억 2,300만원, 비배분수익 535억 1,100만원, 비교환수익 등 2억 2,3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6,062억 2,100만원(4.2%) 증가한 15조 840억 5,7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가 등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5,526억 6,4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1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치안인프라구축 프로그램(4,609억 1,400만원)과 범죄수사활동 프로그램(3,653억 7,200만원), 교통안전·소통확보 프로그램(3,080억 5,9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0조 5,189억 4,100만원과 경비 2조 9,700억 2,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대손상각비 209억 1,400만원과 기타비용 4억 7,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경찰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627,209	1,575,482	51,727	3.3
가. 프로그램 총원가	1,654,932	1,605,787	49,145	3.1
나. 프로그램 수익	27,723	30,305	△2,582	△8.5
II. 관리운영비	13,488,970	12,936,306	552,664	4.3
III. 비배분비용	21,389	16,361	5,028	30.7
IV. 비배분수익	53,511	50,314	3,197	6.4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15,084,057	14,477,836	606,221	4.2
VI. 비교환수익 등	223	194	29	14.9
VII. 재정운영결과(V-VI)	15,083,835	14,477,642	606,193	4.2

자료: 경찰청

경찰청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7조 6,840억 6,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7조 9,093억 9,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253억 3,800만원(1.3%)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15조 838억 3,5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조달및이전은 15조 3,439억 7,600만원, 조정항목은 △348억 300만원 발생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조달및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조달 16조 7,951억 8,4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이전 1조 4,512억 8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경찰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7,684,060	17,418,038	266,022	1.5
II. 재정운영결과	15,083,835	14,477,642	606,193	4.2
III. 재원의조달및이전	15,343,976	14,782,699	561,277	3.8
IV. 조정항목	△34,803	△39,036	4,233	10.8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7,909,398	17,684,060	225,338	1.3

자료: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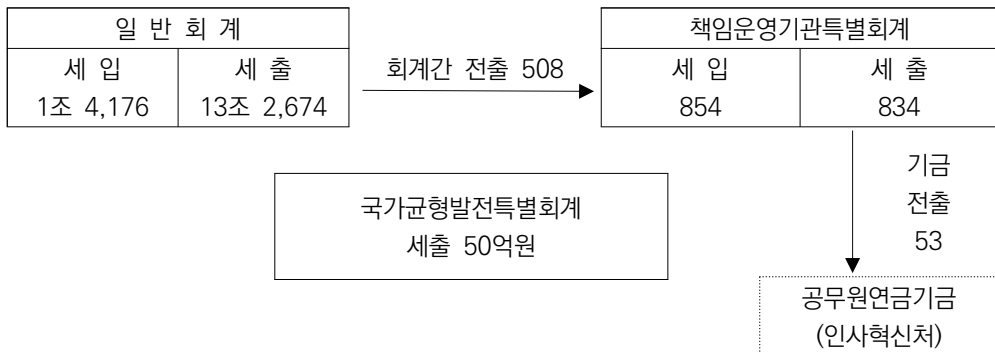
라. 재정 구조

2025회계연도 경찰청의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책임운영특별회계로 508억원 전출되었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53억원 전출되었다.

[2024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회계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경찰청

경찰청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① **경찰청 특수활동비** ② **기동대 운영및관리** ③ **헬기운용및현대화** 등이 있다.

경찰청 특수활동비 사업은 지출용도의 제한이 뚜렷하지 않고, 사용내역이 제출되지 않아 전액 감액(31억 6,700만원)되었고, 기동대 안전관리장비 및 개인피복및장구 사업은 안전방패 등 장비 구매 필요성이 낮아 감액(166억 700만원 → 130억 9,300만원)되었고, 헬기 보험료 사업은 최근 보험료 낙찰차액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감액(26억 3,300만원 → 23억 3,300만원)되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는 ① 수사지원AI 구축 사업 ② VR 기반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시범사업 ③ 무인 단속장비 구매·운영 사업 등이 있다. 수사지원AI 사업은 “경찰청은 ‘AI 수사도우미’ 서비스의 명칭을 공모 절차 등을 거쳐 적절한 명칭으로 개선한다.”, VR 기반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시범사업은 “경찰청은 VR 기반 운전능력 평가시스템 시범사업 시행시 농어촌 등 소외지역의 운전자도 교육훈련 및 면허 반납 테스트를 받기 용이하도록 교육장소 등을 마련한다.”, 무인 단속장비 구매·운영 사업은 “경찰청은 무인 교통단속장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적정 대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설치 기준 정비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신호체계·무인단속장비·어린이보호구역 운용 등 종합적인 교통제어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으로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경찰청은 「헌법과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경찰 ② 국민이 신뢰하는 경찰수사 ③ 국민 안전을 지키는 민생경찰을 전략목표로 총 15개 프로그램, 43개 단위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경찰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피복관리 사업 관련 희망품목비 예산을 신형방탄복 구매사업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노후 보호장비의 체계적 관리 및 교체계획의 미비, 타 사업 예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구매계약 지연으로 신속 소요 대응이라는 목적달성에도 제한이 있었다.

둘째, 경찰청은 광역예방순찰대(구 기동순찰대)를 2024년 출범 후 2년만에 정원을 50% 가량 감축하였는데, 이는 출범 당시 조직의 필요성, 규모, 수사인력의 여력 등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한 점에 기인하므로 향후 조직 출범 및 개편시에는 예방과 수사 기능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인 기준 마련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찰청의 재정 외 자금(“경찰위로·복지기금”) 직접 운영 관련, 국가기관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기능하면서도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책임성·투명성·의회통제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국고 편입 등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1

바디캠 도입방식의 사전검토 미흡 부적정

가. 현 황

범죄대응및치안상황관리<sup>1)</sup> 사업은 112시스템과 지역경찰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치안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2025년도 예산현액 347억 7,400만원 중 345억 9,600만원이 집행되고 1억 7,800만원이 불용되었다. 내역사업인 지역경찰운영 사업은 지역경찰의 다양한 활동과 장비를 지원하려는 것이며 내내역사업으로 바디캠 도입 예산이 77억 1,400만원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다.

[2025회계연도 범죄대응및치안상황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34,250	34,250	524	8,014	34,774	34,596	-	178	16,004
지역경찰 운영	17,870	17,870	524	8,014	18,394	18,380		14	- <sup>1)</sup>

주: 1) 해당 내역사업은 2026년 예산부터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1131-311) 세부사업으로 이관

1.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비통신형 바디캠의 구매사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으나 집행 과정에서 통신형 월 구독 방식으로 변경하며 이를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용하였는데, 비용절감, 편의성 등의 사업효과는 별론으로 하고 사전 도입방식에 대한 검토가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32-311

**미비하여 사업 규모와 집행방식이 변경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착용기록장치(이하 “바디캠”)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 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의미한다.

경찰은 현장 영상증거를 간이·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바디캠을 활용하여 왔으나, 개인 부담이 있었고 바디캠 사용에 법적 근거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2024.1.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바디캠이 경찰장비로 명시<sup>2)</sup>됨과 동시에 경찰관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sup>3)</sup>되어 바디캠 사용의 적법성이 담보 되자,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에

2)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이하 이 조에서 “위해성 경찰장비”라 한다)를 사용할 때에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警察裝具), 경찰착용기록장치, 최루제(催淚劑)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鑑識機具),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구,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1. 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것
3.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등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경찰착용기록장치에 기록되는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기록대상자”라 한다)로부터 그 기록의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제6조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 행위를 긴급하게 예방 및 제지하는 경우
7. 경찰관이 「해양경비법」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하는 경우
8. 경찰관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난구호 업무 시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이 법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란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여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기록장치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계 바디캠을 일괄 보급하기 위하여 2025년 예산으로 7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다.

한편, 바디캠은 통신가능여부에 따라 통신망을 통해 영상을 서버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는 '통신형'과 기기 저장능력만 있는 '비통신형'으로 구분된다. 통신형은 다시 '단말기 통신형'과 '무선공유기 통신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개별 단말기에서 직접 서버와 통신이 가능하고, 후자는 단말기가 파출소·지구대 등의 무선공유기에 접속되면 서버와 통신이 가능하다.

[바디캠 통신형, 비통신형 비교]

구분	비통신형	통신형
형태		
전송방식	바디캠을 전용 도크에 꽂아 내부망 서버에 유선 전송	▶ 서버 업로드용 외부 전용망 사용 ▶ 실시간 무선전송
서버	지역관서별 분산 저장	시·도청 이상 중앙 집중 저장
장점	통신망 증설 등 불요하여 초기 시설 구축이 비교적 간단	▶ 실시간 전송으로 임의삭제·편집 등 불가하여 촬영 영상 완결성·무결성 확보 가능(개보법 준수 의무 이행 적합) ▶ 유지보수·관리 용이 ▶ 내구성이 높아 외근활동 적합
단점	▶ 접근이 용이하여 보안 취약 ▶ 영상에 대한 관리·감독 한계 有 ▶ 유지·보수 비용 증가 ▶ 영상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별도 예산 확보 필요 ▶ 지역관서별 서버 공간확보 필요 ▶ 기기 내용연한 경과시 교체 필요	▶ 통신망 증설 등 초기 시설 구축 필요 ▶ 예산 세목변경 또는 이전용 필요 ▶ 2년 사업 이후에도 통신비 예산 지속 확보 필요 ▶ 바디캠 전용장비로 조회 기능 탑재 등 확장 가능성 無

자료: 경찰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경우로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영상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하는 때에 그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③ 경찰착용기록장치로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제10조의7에 따른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하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음성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그 밖에 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기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청은 당초 비통신형 바디캠 17,000여 대를 도입하려는 계획 하에 2025년 1년차 예산으로 자산취득비(430-01) 7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다.<sup>4)</sup>

그러나 연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방식이 변경되어 월 구독방식의 통신형 단말기 도입이 결정되자, 편성된 자산취득비 전액을 2025.3.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로 전용하여 집행하였다.

[바디캠 사업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이·전용 감액	이·전용 증액	이·전용 등 사유
전용 (2025.3.19.)	자산취득비(430-01) △7,714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7,714	바디캠 관련 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기 위한 전용

자료: 경찰청

사업방식이 변경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당초 경찰청은 2025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저비용으로 도입이 가능한 비통신형 바디캠을 계획하였다. 기기에 통신기능이 포함될 경우 통신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등 예산상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은 과거 기기에 통신기능이 포함되어 실시간 영상이 가능한 통신형 바디캠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나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5년간 346억원)되는 등의 이유로 도입을 추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24년 11월경 일부 경찰관이 사적으로 구매하여 사용 중인 비통신형 바디캠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영상자료를 유선으로 전송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자료 유실 등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초 제3의 대안으로 지구대·파출소 공유기 라우터를 통해 통신하는 ‘무선공유기 통신형’을 월 구독형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통신형보다 절감된 비용(5년간 195억원)으로 통신형 단말기의 여러 장점을 활용할 수 있음을 고려, 이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4) 총사업비는 2년간 154억원이었다.

[바디캠 종류별 도입예산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비통신형 (자산취득형) <b>*(편성시)당초 검토</b>	단말기 통신형 (구독형)	무선공유기 통신형 (구독형) <b>*최종 결정</b>
2025	7,714	7,714	7,714
2026	7,714	6,720	2,943
2027	-	6,720	2,943
2028	-	6,720	2,943
2029	-	6,720	2,943
합 계	15,428	34,594	19,486

자료: 경찰청

비통신형 바디캠은 촬영자가 기기 영상을 컴퓨터로 수동으로 전송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임의로 저장·삭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경찰청이 도입한 무선공유기 통신형 바디캠의 경우 촬영 영상이 파출소 복귀시 자동으로 업로드 되어 경찰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촬영된 영상의 임의 삭제가 불가능하고 전송과정에서 자동 암호화가 되어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유지, 증거자료 보존 면에서도 우수한 측면이 있다. 계약 구조상 연간 구독의 형식을 취하여 경찰청이 바디캠의 소유권을 확보하지는 못하나, 컨소시엄이 유지관리를 맡아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경찰청이 비통신형이 아닌 무선공유기 통신형을 도입한 것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용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무선공유기 통신형 바디캠의 도입을 결정한 것은 2025년 2~3월로, 2025년 예산 확정 이후 불과 몇 개월 내에 사업변경이 이루어진 것인데, 도입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앞당겼더라면 예산 편성 당시부터 계획에 부합하는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계획대로 집행하였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신규사업 수행 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시장조사 및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 방식의 급격한 변경이 초래하는 행정상, 비용상 비효율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사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피복관리 사업<sup>1)</sup>은 경찰관이 사용하는 피복 및 장구류를 일괄적으로 구매 및 보급하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55억 8,300만원 중 59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63억 6,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피복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피복관리	64,206	64,206	1,377	-	65,583	59,109	6,369	105	76,077
경찰관 피복비 등	63,892	63,892	1,377	-	-	65,269	58,795	63,892	63,88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피복관리 사업 내 희망품목비 예산을 신형방탄복 구매사업으로 사용하였는데, 노후 보호장비의 체계적 관리와 교체 계획 수립이 미비하여 결과적으로 타 사업 예산을 활용하였고, 2026.5. 현재까지도 구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신속 소요 대응이라는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은 경찰장비의 내구연한 등을 검토하여 교체소요를 적시에 반영하고, 노후 방탄복을 신속히 교체할 필요가 있다.

피복관리사업의 내역사업 중 경찰관 피복비 사업은 2025년 예산현액 638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다시 경찰관 희망품목비 503억 1,400만원, 신임 경찰피복비 60억 4,8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4231-313

경찰청은 2025.7. 송도 사제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사용 강력범죄에 대한 경찰 내부의 불안감이 증폭되자 경찰의 사기진작 및 대응력 강화 측면에서 긴급하게 2025.10. '신형 방탄복 구매사업' 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사업은 2016~2017년 도입된 방탄복 23,000벌 중 내구연한 10년<sup>2)</sup>이 도과한 11,500벌을 신형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방탄복 교체 개요]

도입시기	도입수량(벌)	내구연한에 따른 사용기한	예산편성여부
2016	11,500	2025	미편성
2017	11,500	2026	2027(계획)

자료: 경찰청

'외근장구·보호장비'예산에 신형방탄복 교체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았으나, 경찰청은 '희망품목비' 사업 예산에서 51억 8,000만원을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2025년도 피복관리 사업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편성액	이·전용	집행액	비고
경찰관 희망품목비	50,314	△5,180	45,080	-
신임경찰피복비	6,048	-	5,842	-
경찰관특수피복비	55	-	55	-
외근장구·보호장비 <sup>3)</sup>	7,308	5,180	7,655	(이월) 6,317

자료: 경찰청

- 2) 조달청 고시에 따른 내용연수는 9년이나, 군과 달리 경찰은 내부적으로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3) 일반적인 장비·물자와 달리 보호장비는 경찰관의 안전과 대응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경찰청은 보호장비가 제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적어도 최소 수량에 대하여 내구연한에 맞춘 교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비에 대한 사전적·체계적 관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2025년 예산에 내구연한 도과 방탄복의 교체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형 방탄복 구매사업은 2025.10. 비로소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2025.12.에서야 입찰공고가 되는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이 이월되었다. 그리고 2026.5. 현재까지도 유찰과 재공고 등을 거치며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의 이러한 예산 집행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첫 번째 측면은 ‘과정’에 관한 것으로서, 경찰청은 보호장비의 기능·성과와 내구연한을 고려한 체계적 관리 하에 교체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 2025년에 내구연한이 도과한 신형 방탄복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타사업 예산 잔여분을 이용하여 구매예산을 집행하였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장비·물자와 달리 보호장비는 경찰관의 안전과 대응력 확보에 필수적이다. 경찰청은 보호장비가 제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적어도 최소 수량에 대하여 내구연한에 맞춘 교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장비에 대한 사전적·체계적 관리를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아 적시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방검복과 달리,<sup>4)</sup> 경찰청은 방탄복에 대해서는 2025년 예산에 내구연한 도과분에 대한 교체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sup>5)</sup>

신속한 소요대응이라는 경찰청의 사업 취지는 일응 인정되나, 편성 필요성 및 소요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사전적으로 고려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집행은 「국가재정법」 제45조<sup>6)</sup>의 취지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두 번째 측면은 ‘결과’에 관한 것으로서, 2026. 5. 현재 기준으로도 참가업체 부적격으로 인한 재공고를 실시하는 등 신형 방탄복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4) [방검복 교체수량 및 예산 결산내역]

구분	교체계획	보급수량(벌)	편성(백만원)	집행(백만원)
2023	내피형방검복	29,486	12,434	12,434
2024	외피형방검복	8,250	1,414	1,414
2025	베임방지재킷	7,324	1,414	1,414
2026.5.	목보호대	1,261	1,414	집행중

자료: 경찰청

5) 물론, 예산의 한계로 물자와 장비가 내구연한을 넘겨 사용되는 경우도 많으나, 방탄복은 아라미드 섬유 마찰력을 이용해 탄환을 막는 것으로, 습기와 자외선 등으로 섬유가 화학적 변형 시 걸어서 드러나지 않으면서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 주기적인 관리·점검과 적시 교체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6)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경찰청은 2025.10.이 되어서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성능검토를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는 물품 조달·구매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사업예산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이었다. 특히 방탄복은 제조기술과 성능이 중요한 품목으로서 일반 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 경우 성능 검토, 협상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일반경쟁계약에 비해 연내 집행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 참고로 경찰청은 2016년 방탄복 도입 당시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방탄복을 도입한 바 있다.

게다가 경찰청의 입찰공고 참여업체가 전부 성능 심사를 미통과하여 유찰이 되었다. 이에 2026.5. 현재 재공고 후 참여업체의 성능 심사를 다시 거치고 있는데, 결국 노후 방탄복이 적기에 교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 지연에는 급박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국내 방탄복의 성능 등에 대한 시장조사, 검토가 부족했던 점이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우려가 있다.

경찰청은 향후 경찰의 안전과 대응력에 직결되는 장비·물자의 경우 내구연한과 노후도, 보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체 시급성을 분류하고, 교체가 필요한 수량에 대해서는 적기에 교체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신형 방탄복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면밀히 하여야 한다.

### 가. 현황

장비유지관리 사업<sup>1)</sup>은 현장 대응에 필요한 장비 장구를 보급하고 운용에 필요한 부품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37억 4,800만원 중 365억원을 집행하고 64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6,3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 중 현장대응장비 구입 사업으로는 예산현액 154억 5,500만원 중 92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64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장비유지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장비유지관리	43,699	43,699	49	150	43,748	36,500	6,485	763	59,892
현장장비 구입	15,406	15,406	49	-	15,455	9,249	6,485	67	27,91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 나. 질의 사항

국산 전자충격기의 국산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방식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등 전자충격기의 연내 조달에 실패하고 국산화도 실패하였는바, 경찰청은 사업방식 변경시 필요성과 효과성(국산화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지연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경찰청은 2025년 56억 1,000만원을 전자충격기 예산으로 편성였으나, 발주 지연 등으로 사업예산 전액이 이월되었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4231-314

경찰청은 전자총격기 도입을 위해 일반 경쟁입찰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연도 중 국내회사 A社가 신제품(R3+ 모델) 검토 제안을 하였고 이에 성능을 검토하기 위해 2025.10.경 낙찰자 결정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상기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된 데다가 A社의 응찰과정 절차 미비로 재공고를 실시하는 등 지연 사유가 중첩되어 사업 예산이 전액 이월되었고, 결국 2026. 초 진행된 협상에의한계약 과정에서 평가결과 후순위로 선정, 결과적으로 美엑손(AXON)사의 테이저7으로 외자를 도입하게 되었다.

[전자총격기 도입 및 국산화 시도 관련 경과]

구분	시기	내용
R3 개발 관련	'16~'18	산업통상자원부 R&D를 통한 국산 전자총격기 개발 착수
	'18.4.~9.	전자총격기 안전성 검사
	'22.11.	R3 구매 계약
	'23.10.	R3 납품검사 불합격
	'23.12.~現	R3 업체 제소(사유: 시험평가 불합리)로 현재 2심 진행중
국산화 지속 시도	'24.9.	2023년도 결산심사(제418회 행정안전소위원회)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 “경찰청은 한국형 전자총격기 개발을 위해 투입한 예산과 연구성과가 매몰되지 않고 국산장비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4.12.	'25년 예산편성시 전년대비 28.5억 증액
'25년 전자총격기 구매절차 관련 (R3+)	'25.1.~3.	R3 성능개선여부 확인요청(2회) - 소송 등의 이유로 미제출
	'25.3.	전자총격기 구매 계획 수립(경쟁입찰: 적격심사)
	'25.5.	'25년 전자총격기 구매 사업 진행
	'25.6.	전자총격기 구매 절차 중단(조달청 요청)
	'25.8.	R3+ 입찰 의사를 인지
	'25.9.	입찰방식 변경(적격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 변경)
	'25.9.	국자원 화재 발생으로 조달절차 일시 중단
	'25.11.	전자총격기 경쟁입찰 공고('25.11.17.~12.16)
	'25.12.	개찰결과: 유찰(1개 업체 응찰)
	'25.12.	2차 공고(재공고)
	'26.1.	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 대상 1순위: 테이저7(엑손)
'26.1.	최종 낙찰자 선정 보고 - 테이저7 선정(엑손)	

자료: 경찰청

이 과정에서 경찰청의 사업관리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A社は 개발 신제품 R3+ 모델의 성능확인 요청에 대해 응하지 않아 낙찰자 방식 변경에 상당한 위험부담을 제공하였다. 낙찰자 결정 방식 변경은 그 자체로 기간을 요하여 사업지연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된 공정한 입찰 기회를 부여해야한다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향후 성능 미달시 장비 적시도입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社は, 2023년 전자총격기 R3모델을 개발하여 납품을 약속하였으나 제품의 성능미달로 계약이 해제되는 등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전적이 있으며, 현재 동사안으로 경찰청과 소송을 진행중인 회사이다. 이미 성능기준 불합격 이력이 있고 이에 대해 법적 분쟁 중인 업체의 제품에 대하여, 성능 검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4분기에 이르러 계약방식을 변경한 것은 다소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장비의 국산화는 국내산업 발전, 공급망 안정성 확보, 안보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맞지만, 당해연도 조달계획에 차질을 발생시키면서까지 무리하게 진행할 과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장비 적기 도입 실패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경찰청은 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사업방식 변경시 국산화 가능성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진료업무운영관리 사업<sup>1)</sup>은 경찰병원의 의료 설비·장비 등을 점검하고 시설을 유지하며 공무원 근로자에 대한 상용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업이다. 2025년 예산 현액 216억 2,800만원 중 207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9억 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진료업무운영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진료업무 운영관리	21,608	21,608	-	20	21,628	20,719	-	909	22,02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경찰병원의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정원 683명, 현원 618명으로 90.5%의 운영률을 보이고 정원의 82.7%인 565명이 2026. 5. 현재 근무중이다. 의무직의 경우 정원 75명에 대한 운영률은 92.0%이고 정원의 88%인 66명이 현재 근무중이다.

[2026년 경찰병원 인력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원장	의무	약무	간호	간호 조무	의료 기술	행정	위생	운전 방호	전산	공업 시설	기타	경찰
정원	683	1	74	21	269	68	108	69	22	13	7	15	12	4
현원	618	1	68	21	244	45	104	69	20	10	7	14	11	4
휴직	53	-	3	1	34	5	5	3	1	-	-	1	1	-
근무	565	1	65	20	210	40	99	66	19	10	7	13	11	4

자료: 경찰청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4331-311

## 나. 분석 내용

경찰청은 해당 세부사업 내 전문의가 해외연수를 가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교육여비를 편성해오고 있으나 2020년 이후 6년간 전액 불용 중이므로 동 사업구조와 운영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찰병원은 소속 전문의 중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 3개월 범위 내에서 해외 공식초청을 받아 선진의료 의학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병원 의학연수 신청요건, 허가기준, 예산지원 등]

구분	내 용
신청요건	의학연수는 의무직 공무원 중 現 재직기간 5년 이상인 자로 병원재직기간 중 해외 연수 경험이 없는 전문의
허가기준	선진의료 연수가 가능한 대학병원급 이상의 기관에서 공식 초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 진료 관련 지식·정보·기술의 습득 및 연구를 위하여 국외의 대학병원급 등의 기관에 파견되어 연수하는 것으로 3개월까지 허용 ※ 단, 2개월 이상 의학연수 실시자는 2년 이상 의무복무 하여야 함
선발인원 및 예산지원	<b>총 2명 이내로 1인당 500만원 이하로 지원</b> 하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예산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경찰병원 해외의학연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국외교육여비를 편성해오고 있는데 2020년부터 해당 예산이 전액 불용되고 있다.

[2017~2025 진료업무운영관리 사업 내 국외교육여비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편성	집행	집행률
2017	13	4	32.0
2018	10	-	0.0
2019	10	5	50.0
2020	10	-	0.0
2021	8	-	0.0
2022	8		0.0
2023	8	-	0.0
2024	8	-	0.0
2025	8	-	0.0

자료: 경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해외연수 지원금에 대한 신청 안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으로, 2024년 이후부터는 의료대란에 따른 전공의 부족으로 의료 인력에 여유가 없어 집행이 부진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경찰청 확인 결과 2019년 이후로 지원금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 의학연수 신청자 자체가 전무하였다.

그러나, 경찰청은 동 예산의 집행부진이 최소 9년 이상 이어지고 있음에도 동 사업의 운영방향성과 존치여부를 판단하는 등 적극적인 환류 검토를 실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외 의학연수 신청자 미달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동 제도를 위해 예산을 편성해두는 것은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동 사업의 극심한 집행부진은 수요 예측 실패뿐만 아니라, 혜택에 비해 과도한 의무를 부과한 제도 자체의 설계에도 기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동 제도는 불과 3개월간 500만 원 남짓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2년의 의무근무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훈련기간 대비 의무복무기간의 비율로 보나, 수혜 받은 금전적 혜택 대비 의무의 경중으로 보나, 일반 공무원에게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2)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국외훈련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의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것과 비교할때 형평성에 다소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현행 의무근무 조건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여 실질적인 수요를 유인하려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미 수년간 지원자가 전무하여 제도의 존립 실익이 크게 감소한 만큼, 이러한 조건 완화 조치 이후에도 지원자가 미달할 경우에는 동 사업의 폐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경찰청이 동 사업의 집행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나 독려를 행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적극적인 안내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찰청은 동 사업에 대해 조건 완화 등 다각적인 제도 보완 노력을 기울이고, 향후 집행부진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 폐지를 고려하는 등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42조(국외훈련 공무원의 복무의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국외훈련 중에 복귀한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 현 황

감사·감찰·인권활동<sup>1)</sup> 사업은 감사·감찰 활동을 통해 부정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인권침해 요소를 가진 관행적 경찰활동의 정상화를 통해 대국민 인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2025년 예산현액 27억 5,200만원 중 24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 중 감사·감찰활동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23억 2,200만원 중 19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감사·감찰·인권활동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감사·감찰· 인권보호활동	2,752	2,752	-	11	2,752	2,404	324	25	2,572
감사· 감찰활동	2,322	2,322	-	-	2,322	1,974	324	25	2,05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 나. 분석 내용

첫째, 경찰청은 2025년도 마약검사키트 구매예산 집행 전 마약검사의 적법성에 관한 국가경찰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구매사업이 지연되며 사업예산이 전부 이월되었는데, 경찰청은 신규사업 수행시 사업의 적법성, 실시가능성에 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불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7133-311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청정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스마트폰의 보급과 온라인망 발전으로, 연간 단속 마약사범이 2015년 무렵부터 급증, 2023년에는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 수치인 27,611명을 기록하였다.<sup>2)</sup>

마약범죄 단속 강화 기조 가운데, 법 집행 주체인 경찰 공무원의 철저한 기강 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2023년 발생한 현직 경찰관의 마약 투약 및 사망 사건은 경찰 내부 마약류 유입의 위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으며, 사법권 행사 및 총기 소지라는 경찰의 직무 특성을 고려할 때 조직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선제적 마약검사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 2023년 국정감사 시정조치 사항으로 ‘경찰관 대상 정기 마약검사를 도입할 것’이 채택되자, 경찰청은 “마약사범은 경찰에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확립하고 내부 마약검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찰청은 2024년과 2025년 각각 내부약물 등 검사 예산 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총경이상 전 직원과 경정이하 직원 중 10%를 선별하여 마약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검사 키트 구매예산이다.

그러나 2025년 예산의 경우 마약검사키트의 발주 지연으로 인해 전액 이월되었다. 무작위 마약검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경찰청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발생하자,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사의 실시 가부, 기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경찰청은 2024년에도 동 예산을 편성하여 마약검사키트를 구매하여 둔 바 있으나, 내부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당초 상반기로 계획되었던 1차 검사가 지연되며 2024년도 구매분 키트의 사용도 연기되었다.

[마약검사키트 구매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편성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률
2024	414	406	-	98.1
2025	414	74	324	17.9

자료: 경찰청

2) 대검찰청, 「2024 마약류 범죄백서」

이후 2025.8.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 마약류 통제 방안 실시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이에 따라 마약검사는 총경 이상 전직원과 감사·감찰·마약수사 부서 소속인원에 대해 ‘자발적 동의’를 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내부 마약류 통제방안 실시계획」(2025. 8.) 주요 내용〕

- (시기·장소) 검사일을 사전에 공개할 경우 투약 시기 조절을 통해 회피가 가능한 만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시 검사’ 실시
- (검사방법) 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밀 검사(혈액·모발·소변 등)방식이 아닌 사전 감지 방식의 ‘간이타액 검사’ 실시
- (개인 동의) 검사 실시 전 대상자 신분 확인 및 검사방법 안내 후 개인 동의를 받아 검사 실시, 부동의시 강제하지 않고 현황(통계)만 관리
- (단계적 실시) 고위직과 상급기관 및 감찰 및 마약수사 부서 우선 실시

자료: 경찰청

그러나, 내부 마약검사 시행에 따른 적법성이나 기본권 침해 소지 등의 쟁점은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단계에서 보다 면밀히 사전 검토되었어야 할 사항이며, 상급자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내부적인 공감대 형성을 선행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전 조율 부족으로 인하여 관련 예산이 적시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당초 마약검사의 추진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의 달성도 함께 지연되었다.

따라서 경찰청은 신규사업 수행시 사업의 적법성과 추진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조직 내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먼저 검토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경찰공무원법의 개정으로 마약검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신설된 만큼, 마약검사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정한 대통령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특히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동의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 2월 「경찰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투약 검사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sup>3)</sup>되었다. 다만, 검사의 대상·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할 대통령령(하위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실제 검사의 실시 방향성과 세부 계획은 미정인 상황이다. 따라서 경찰청은 법령의 시행 예정일(2027.2.)에 맞추어 적시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5년 고위직(총경 이상), 마약·감사 부서 소속 공무원, 신입 경찰 등 총 6,540명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감찰 등 조치 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위직 검사 대상자 총 911명 중 18명이 동의를 거부하여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현재 법령 기준으로 임의 검사에 대해 경찰관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불이익 조치할 수 있는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추후 경찰청이 시행령 제정 등으로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임의거부에 대한 일련의 불이익 조치 없이 미실시 현황이나 통계만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 향후 무작위 또는 불시 검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담당하는 등 직무와 신분에 있어 고도의 특수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는 검사 거부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거나, 조직 관리 차원의 실효성 있는 불이익 조치 또는 사후 관리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마약류검사 실시) 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주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6.2.27.][시행일: 2027.2.28.]

## 가. 현황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사업은 과학치안에 기반한 맞춤형 범죄예방·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중심 경찰 업무수행 등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130억 8,800만원 중 126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4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내역사업인 기동순찰대 운영 사업은 현장 치안 중심 조직 재편의 일환으로 2024년 2월 신설된 조직 '기동순찰대'(현 명칭은 '광역예방순찰대'로서, 이하 본문에서는 '광역예방순찰대'라 한다)의 지속적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현액 55억 9,500만원 중 52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13,088	13,088	-	-	13,088	12,669	-	419	24,941
기동순찰대 운영	5,595	5,595	-	-	5,595	5,273	-	322	4,97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광역예방순찰대(구 기동순찰대)를 2024년 출범 후 2년만에 정원을 50% 가량 감축하였는데, 이는 출범 당시 조직의 필요성, 규모, 수사 인력의 여력 등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못한 점에 기인하므로 향후 조직 출범 및 개편 시에는 예방과 수사 기능 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등 종합적인 기준 정립을 선행하여야 한다.

광역예방순찰대(구 기동순찰대)는 광역성과 기동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예방적 치안활동을 강화하고, 이상동기범죄 등 새로운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 2월 20일 전국 28대 330개 팀, 2,668명 규모로 신설되었다. 이는 지역경찰 중심의 기존 순찰체계를 보완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대규모 조직개편이었다. 그러나 이는 치안 인력의 전반적인 증원 없이 기존 내근직 등을 중심으로 재배치 신설한 것으로,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인력과 현장대응인력의 직접적인 차출은 없었으나, 결국 인력의 재배치 과정에서 기존 필수 치안 기능의 약화를 직·간접적으로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출범 이후 조직 규모는 단기간 내 큰 폭으로 조정되었다. 경찰청은 2025년 수사·기소 분리 정책 추진과 보이스피싱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이유로 광역예방순찰대 인력을 약 10% 감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광역예방순찰대 관련 특근매식비 예산 29억 1,000만원 중 3억 1,000만원이 불용되어 약 10.7%의 불용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어 출범 3년 차인 2026년에는 조직 규모가 28대 162개 팀, 1,051명으로 재편되면서 출범 당시 대비 정원이 60% 이상 축소되었다.

[광역예방순찰대 규모 변화]

(단위: 명)

구분	2024	2025	2026
정원	2,668	2,338	1,051
현원	2,543	2,403	1,047
비고	신설	연도 중 인력 10% 감축	전년比 정원 △60.6%

자료: 경찰청

이와 같은 급격한 조직 확대와 축소는 경찰청의 증장기적 치안 환경 변화와 인력 수요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경찰청은 수사인력 확대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광역예방순찰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보이스 피싱 등 초국가범죄의 증가 추세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에 따른 수사인력 수요 확대는 이미 수년 전부터 예견되어 온 과제였다.

결과적으로 출범 후 불과 2년여 만에 조직 규모를 절반 이하로 축소된 것은 경찰청의 조직 설계 역량에 의문을 발생시키는 측면이 있다. 이는 경찰청 스스로 검토 부족과 수요 예측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예컨대 광역예방순찰대 출범 초기부터 지역경찰과의 역할 중복 및 적정 인력 규모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실시한 2025년 8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역예방순찰대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지휘부 응답자의 55.0%가 인력조정, 55.0%가 역할 차별화를 요구하였으며, 응답자의 62.0%는 현재 인력이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리자 집단 역시 역할 차별화(58.2%), 인력조정(51.2%), 경찰서와 광역예방순찰대 간 협업 강화(42.6%) 등을 주요 개선과제로 제시하였고, 응답자의 69.5%가 현재 인력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지역경찰의 경우에도 44.1%가 광역예방순찰대 임무 명확화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광역예방순찰대의 역할과 기능이 지역경찰과 충분히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 규모 또한 실제 치안현장의 수요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국회 역시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광역예방순찰대와 지역경찰 간 역할 중복 문제, 조직의 고유 기능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 부족 등이 지적된 바 있다.

급격한 조직 개편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재정적 측면에서도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조직 신설과 축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 재배치, 교육훈련, 복무체계 조정 등 각종 행정비용이 수반될 뿐 아니라, 개별 경찰관의 업무 적응 및 조직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아울러 광역예방순찰대 운영을 전제로 확보한 순찰차량, 장비 및 관련 인프라 역시 조직 규모 축소에 따라 활용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경찰청은 ‘경찰기동력강화(4231-311)’ 사업 내 노후차량 교체 예산을 증차예산으로 조정하여 광역예방순찰대 순찰차 330대를 구매하였는데, 현재는 조직의 축소로 이중 100대가량을 타 조직에 전환하여 사용 중이다.

종합하면, 광역예방순찰대의 단기 실적 유무<sup>1)</sup>와 관계없이, 2년만에 발생한 대규모 조직 축소는 신설 조직에 대한 장기적 안목과 면밀한 설계가 부족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경찰청은 향후 대규모 조직 신설 시 중장기 인력수요와 정책환경 변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한 시범운영과 성과평가를 거쳐 조직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조직·인력 운용의 안정성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1) 경찰청은 광역예방순찰대가 치안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범죄 취약지역에 우선 배치되어 도보 중심의 현장 순찰활동을 수행한 결과, 2025년 기준 수배자 검거 14,116건, 형사범 입건 등 처리 12,260건,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95,460건 등의 실적을 거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 가. 현황

경찰기동력강화<sup>1)</sup> 사업은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차량확보를 위해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정수를 늘리고 부족한 차량을 임차하려는 것으로서 2025년 예산현액 839억 8,100만원 중 283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550억 9,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이 중 노후차량교체 내역사업의 경우 2025년 예산현액 154억 5,500만원 중 92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64억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700만원을 불용하였다. 증차 내역사업의 경우 2025년 예산현액 41억 8,600만원 중 27억 3,2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다.

[2025회계연도 경찰기동력강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경찰기동력강화	88,757	88,757	332	-	89,089	31,966	57,039	84	87,545
노후차량 교체	83,981	83,981	332	-	83,981	28,391	55,091	6	81,143
증차	4,186	4,186	-	-	4,186	2,732	1,948	-	4,18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 나. 분석의견

경찰청은 납기지연 업체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이후 차량 구매계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그 결과 노후차량 교체 및 증차 물량의 상당 부분이 연내 도입되지 못하여 사업 목적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였는바, 향후에는 계약상대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4231-311

**방에 대한 제재절차의 적정성 확보와 별개로 사업 일정 관리 및 위험요인 대응을 통해 필요한 차량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노후차량 교체 계획 물량 1,744대 중 1,062대, 증차 계획 물량 110대 중 41대를 연내 도입하지 못하여 관련 예산을 이월하였고, 이에 따라 2025년 경찰기동력강화 세부사업의 예산 이월률은 64%에 달하였다.

[경찰기동력강화 사업 납품지연 차종 내역]

구분	사고조사차 (스타리아)	수소순찰차 (넥쏘)	전기순찰차 (아이오닉5)	고속순찰차 (그랜저)
납품업체	'Y'특장	'Y'특장	'N'컴퍼니	'N'컴퍼니
계약대수	37	36	181	89
납품약정시기 (계약기간)	'24.5.16~ '24.12.12	'24.6.24~ '25.1.20	'24.9.3~ '25.3.18	'24.6.21~ '25.1.17
실제납품대수	37	36	181	89
납품시기	'25.5.8	'25.6.2	'25.6.2	'25.6.2

자료: 경찰청

경찰청은 이에 대하여 2024년 계약된 차량의 납품이 특장업체의 부품 조달 지연으로 당초 2025년 3월에서 6월로 지연되었고, 이후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조달청의 종합쇼핑몰 시스템상 납기지체율 반영 감점조치<sup>2)</sup>가 지연되면서 새로운 계약 발주가 제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납기지연 및 이로 인한 조달청 감점 관련 사안의 경과]

▶ 납기지연(전기순찰차 등 343대) 기간: '25.3.18.(당초 납품일) → '25.6.2.(실제 납품일)  
 ▶ ('25.8.7) 납기지연업체에게 지체상금 부과(8.1억원) ⇨ ('25.9월) 법원 가처분 신청 ⇨ ('25.12.9.) 가처분 기각결정 ⇨ ('25.12.10.) 조달청 납기지체 감점(7.5점) 제재 완료

자료: 경찰청

2) 감점의 근거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 훈령)」 [별표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의 배점표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한도
기본 평가 항목 (4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20점 이상 60점 이하
	<b>적기납품</b>	<b>납기지체 여부</b>	<b>10점 이상</b> <b>20점 이하</b>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10점 이상 20점 이하
	신인도 (-1.75~+2.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우수기업/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1점 +0.5점
	기술 인증	+1점	
선택 평가 항목 (6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7.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7.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7.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7.5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7.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7.5점 이하
	약자지원	약자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수출기업 지원	수출기업 지원 대상 기업 여부	7.5점 이하

자료: 경찰청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이 납기지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하여 적정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달청에 납기지체를 반영을 요청한 것은 계약질서 확립 및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은 노후차량을 적기에 교체하고 필요한 수량의 차량을 확보함으로써 경찰기동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계획 물량의 과반이 연내 도입되지 못한 것은 사업 목적 달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차량은 현장 치안활동의 기본적인 장비로서 노후차량 교체 지연이나 차량 확보 부족은 경찰관의 근무여건 및 업무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제재조치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적기 조달의 필요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즉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종합평가방식에서 납기지체 실적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도록 한 취지는 계약이행 실적을 고려하여 보다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관련 사실의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신규 발주를 사실상 유보하는 것이 제도의 본래 취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납기지연 이력이 있는 업체가 다시 선정될 가능성이 우려되었다면, 신규 발주 자체를 미룰 것이 아니라 발주 이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이를 통제하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한다. 예컨대 차량을 일괄적으로 납품받는 대신 시기별·수량별 ‘분리납품’ 방식을 채택했다면, 일부 물량의 납기 지연 여부를 조기에 식별하여 지체 징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계약 상대방에 대한 제재절차와 사업 추진은 각각 고유의 필요성과 목적을 갖는 만큼, 일단 신규 발주를 진행하되 분리납품 등 능동적인 밀착형 사업관리를 통해 사업 목적의 적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청은 조달청에 수차례 공문을 발송하여 납기지체를 반영을 요청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던 만큼, 조달청으로서도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기 이전에 관련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요청은 계약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 일정의 지연을 해소하는 데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찰청은 향후 유사한 이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상감사, 사업설명회 등 입찰 관련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고, 4월부터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하반기 중 차량 납품을 완료하겠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이월 발생에 납기지연 업체와의 법적 분쟁 등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 측면이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사업 준비절차의 조기 이행과 발주 일정의 조정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일정 부분 사전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차량 구매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고,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변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관리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규모 예산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단순히 발주 시기를 앞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 조건 자체를 일괄납품에서 '분리납품'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납기 관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재단법인 경찰위로·복지기금”(이하 “경찰위로복지기금”)은 경찰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의 사기 진작 및 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조성된 것(「경찰위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으로, 순직·공상 경찰관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 5·3 동의대 사건 행사 시 위로금 지급, 순직·공상경찰관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한다. 경찰청의 재정 외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기준 자금의 규모는 약 95억 5,600만원이다.

## [규칙상 기금의 용도(정관상 목적사업)]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순직·공상 경찰공무원과 전투경찰순경의 위로금 지급
2. 5·3 동의대 사태 행사경비 및 위로금 지급
3. 순직 경찰공무원의 조화대금 지급
4. 우수 경찰공무원의 국내외 연수 지원
5. 수사·안보경찰 직무교육 및 연구비 지원
6. 기타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경찰 조직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안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해당 기금은 2002년 설립되었으며, ① 기금 설립 당시의 순직·공상경찰관 위로기금의 잔여액, ② 기금 설립 당시의 수사경찰관복지기금의 잔여액, ③ 재단법인 보안경찰육성회 해산 후 잔여재산, ④ 기타 이자수익금 및 기금운영수익금으로 조성된다.(규칙 제3조)

조성당시 재원의 규모는 98억 4,610만원으로, ① 순직·공상 경찰관 위로 기금('89년 조성)의 잔여액 58억 9,117억, ② 수사경찰관복지기금('81년 조성) 잔여액 16억 5,463만원, ③ 재단법인 보안육성회(91년 조성) 잔여재산 23억 3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경찰위로·복지기금 2024~2025년 결산내역]

(단위: 천원)

주요 사업 내용		2024년 결산		2025년 결산		비 고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총 계		310	84,825	297	99,267	
순직·공상 퇴직 등 유가족 위문	순직기일 위문금	187	56,100	183	54,900	·1인당 30만원*1회
	공상퇴직자위문금	69	6,900	64	6,400	·1인당 10만원*2회
	장기투병자위문금	35	3,500	34	3,400	·1인당 10만원*2회 (4주이상 입원 중)
	순직의경 위로금	1	1,000	-	-	·일반 100만원 ·위협 500만원
	공상의경 위로금	-	-	1	200	·일반4,8,12주 10/20/30만원 ·위협4,8,12주 20/30/50만원
동의대 위로금	순직자 위로금	7	3,500	7	7,000	·1인당 50-100만원
	공상자 위로금	8	2,400	8	4,800	·1인당 30-60만원
행정 지원비	세무사 선임 등	-	2,625	-	2,567	·관리보고(회계장부), 등기비용 등
예비비	경찰기념공원 긴급보수 등	-	-	-	20,000	·사업비 외 잔여금은
	동의대 유족회 활동지원 등	-	-	-	-	차기년도로 이월
법률 구조금	변호사비 등	3	8,800	-	-	·1인당 500만원 이하

자료: 경찰청

기금은 규칙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운영된다. 재단법인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임원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5인, 감사 1인, 간사 1인을 두도록 규정하는데, 정관에 따라 이사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이사는 경무인사기획관, 경비국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및 안보수사국장으로 하는 등 경찰청 특정 직위 보직자를 임원 당연직으로 보하고 있다. 또한 기금 정관은, 기금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기금 지급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실행위원회 역시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경찰청 조직 내부인원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기금 규칙상 출납 등 사무의 주체도 경찰청 재무관이다.

[경찰위로복지기금 정관상 기금 구성 및 운영]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기금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1인
  3. 간사 1인
-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6조(임원의 구성) ① 이 기금의 이사장은 경찰청 차장으로 한다.

- ② 이사는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 경비국장,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및 안보수사국장으로 한다.
- ③ 감사는 경찰청 감사관으로 한다.
- ④ 간사는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으로 한다.

제25조(목적) 이 기금은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계획 등의 원활한 수행과 기금 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으로 한다.

- ② 위원은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경비과장, 수사기획담당관, 안보기획관리과장으로 한다.
- ③ 간사는 경찰청 복지운영담당으로 한다.

자료: 경찰청

## 나. 분석 의견

동 기금은 경찰청의 재정 외 자금으로서, 국가기관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기능하면서도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책임성·투명성·의회통제를 약화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재정운영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 기금은 재단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국가예산이나 기금으로 편성·관리되지 않는 사법상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그 실질적 운영은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동 기금이 민간의 성금과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국고의 직접적인 출연이나 지원이 없었으므로 국가재정과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금 설립 당시 재원의 조성 경위와 출처에 관한 자료가 충분히 보존·관리되지 않아 재원의 형성과정 전반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특히 과거 경찰 조직 내 개별 부서 등 여러 단위에서 관리되던 재원이 통합되어 기금이 조성되었을 가능성 등 직·간접적으로 국가재정이 개입되었을 여지를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직·공상 경찰관 위로 기금(총무과, '89년 조성)은 기존 재원 23억 9,117만원과 1989년 동의대 사건 당시 국민 성금 35억원을 합하여 총 58억 9,117만원 규모로 조성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기존 23억 9,117만원의 구체적인 조성 경위와 출처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한 자료가 제한적이다. 또한 재단법인 보안육성회(보안국, '91년 조성) 재원 중 일부 전직 경찰의 회사 사실은 확인되나, 회사 경위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기타 재원의 출처 역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수사경찰관복지기금(수사국, '81년 조성) 역시 윤노파 살인사건 당시 경제인 12명이 5억원을 회사하였으나 회사 경위는 파악되지 않는 등 재원의 조성경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자금 조성 당시 재원의 출처]

출처	금액	비고
순직·공상경찰관위로기금('89년 조성)	58.9억원	기존 재원 23.9억원(출처 불명) 동의대 사건 국민 성금 35억원
재단법인 보안육성회('91년 조성)	23.3억원	당시 경찰간부 회사(경위 불명) 등
수사경찰관복지기금('81년 조성)	16.5억원	기존 재원 11.5억원(출처 불명) 경제인 12인 5억 회사(경위 불명)

자료: 경찰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재작성

따라서 현재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자금이 전적으로 민간재원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운영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기금 조성 재원 중 동의대 사건 당시 모금된 성금 등 특정목적으로 기부된 재원은 모금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액 집행하였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며,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사회복지공동모금(사랑의열매) 제도 등을 통하여 운영하거나 국고로 귀속하여 「국가재정법」상의 관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더하여, 기금의 운영과 의사결정이 전적으로 경찰청 내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기금 운영의 적정성과 형평성 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향후 운용과 집행과정에서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동 기금의 사업계획 수립, 지급기준 설정, 지원대상 선정 및 집행 여부 등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은 경찰청 내부 조직과 내부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기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역시 경찰청 예규 및 내부지침 등을 통해 결정되는 등, 외부의 독립적인 검토나 통제가 사실상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과거 의사결정이 어떠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개별 집행이 관련 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내부지침 자체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마련되었는지, 지급기준의 변경이나 사업의 신설·확대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이 적시에 점검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기금 운용 전반이 내부 판단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재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기금 운영 기준과 의사결정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공개하고, 외부적 점검 및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국가기관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기능하면서도 국가재정법상 예산·기금 체계 및 국회의 심의·결산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조는 국가가 책임과 권한을 분리하여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외부의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찰청은 동 기금에 대한 운영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기금을 국가재정 내로 편입하여 운용하는 등으로 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외교부 및 KOICA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2조의2<sup>1)</sup>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sup>2)</sup>에 따라서 공공 및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KOICA가 추진하는 공모형 ODA사업<sup>3)</sup>과 ODA 프로젝트형 사업<sup>4)</sup>을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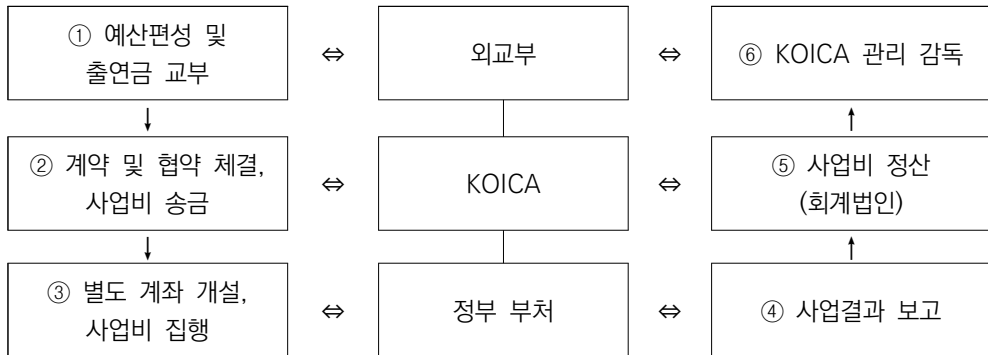
해당 사업의 예산 흐름은 ① 외교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확정, ② 외교부에서 KOICA로 사업출연금 교부, ③ KOICA가 사업수행 기관 명의를 별도 계좌로 사업비 송금, ④ 소속기관의 사업비 직접 집행, ⑤ KOICA 및 회계법인의 사업비 정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KOICA는 내부규정에 따라 기관 명의를 사업비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도록 안내한 후 사업비를 해당 계좌로 송금하였고 경찰청 사업담당자가 직접 비용을 집행하도록 하였다.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 1)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2조의2(공모 등에 의한 사업추진) ① 협력단은 공공·민간부문의 기술 및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민간부문에 공모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단은 공모한 제안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개별 사업 및 그 수행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 「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2(공모에 따른 사업추진) ① 협력단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별 사업의 제안을 공공·민간부문에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3. 예정된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사업비
  4. 사업 시행 시기
  5. 사업 선정 기준 및 방법
  6. 그 밖에 개별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3) 외교부 및 KOICA는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한 공모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는 중앙행정기관도 포함된다.
- 4) ODA 프로젝트형 사업은 개별 부처의 업무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부처에 사업수행자(PMC, PC 등 사업관리용역) 역할을 맡기는 방식이다.

[정부 예산의 흐름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이와 같은 구조에서 사업비를 실제 집행·관리하는 주체는 경찰청으로, 경찰청은 총 6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KOICA로부터 송금받은 누적 송금액은 45억 600만원 이고 누적 반납액은 1,200만원이다.

[2025년 경찰청에서 집행한 프로젝트 현황]

(단위: 백만원)

ODA 프로젝트명	누적 송금액 <sup>1)</sup>	누적 반납액 <sup>2)</sup>
키르기스스탄 마약범죄수사역량강화사업('23~'25)	250	12
페루 ICT 수사기법을 활용한 사이버 수사역량 강화사업('24~'28)	667	-
과테말라 경찰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고등교육원 개선 사업('24~'29)	502	-
우즈베키스탄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시설 구축을 통한 경찰역량 강화사업('23~'27)	1,378	-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1~'26)	1,235	-
필리핀 경찰청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3~'28)	474	-
합 계	4,506	12

주: 1) 사업을 시작한 이후 KOICA가 부처로 송금한 금액임

2) 사업을 시작한 이후 KOICA가 부처로부터 반납받은 금액임

1. 위 표의 프로젝트에는 공공협력사업과 그 외 일반적인 형태의 국가별 협력사업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자료: KOICA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 나. 분석의견

경찰청에서 집행한 ODA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찰청 등이 KOICA의 ODA 프로젝트 위탁경비를 기관 별도 계좌로 수령·집행하여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국가재정운용체계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외교부 및 KOICA 등과 협의하여 추진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고금 관리법」은 부처 소관 예산의 수입에 대하여 수입징수관과 수입금출납공무원을, 지출에 대하여 재무관·지출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각각 임명하도록 하고, 이들 회계관계직원의 직무를 원칙적으로 상호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징수·수납 기능과 지출 기능을 인적으로 분리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며, 그 적용은 해당 자금이 부처 소관 세입·세출로 편성·관리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국고금관리법」 상 예산집행 원칙 및 KOICA 사업비 집행방식 비교

구분	수입	지출	
		일반	관서운영경비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징수) 수입징수관 담당</li> <li>○(수납) 수입금출납공무원 담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결의 요청</li> <li>○지출관의 확인 후 실제 지출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출관이 교부한 관서운영경비 범위 내에서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급원인행위 및 실제 지급 실시</li> </ul>
KOICA 위탁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OICA가 부처 명의 계좌에 송금</li> <li>○사업담당자가 계좌내역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출소요 발생 시 사업담당자가 직접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li> </ul>	

자료: 「국고금 관리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각 부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그런데 기관 계좌로 송금된 KOICA 사업비는 ①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컨소시엄을 구성한 다른 기관 근로자에게 지급할 직접인건비 내지 자문료, 여비, 제경비 등으로 구성된 해외 전문가 파견경비와 ② 연수운영을 담당할 인력에 대한 직접인건비, 수원국 초청인사에게 지급할 초청경비, 초청연수 진행을 위한 교육경비 및 기

타 사업비 등으로 구성된 초청연수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 수행 기관이 이를 직접 집행하고 있다.

경찰청 등 사업 수행 기관은 이러한 사업비를 기관 명의의 전용계좌에서 직접 관리하면서도 이를 세입·세출 외 거래로 분류하고 있어, 부처 소관 세입·세출을 전제로 작동하는 위 통제절차가 처음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출 단계에서는 회계관계직원의 관여 없이 사업담당자가 현금 또는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수입에 해당하는 사업비 송금 역시 수입 담당 회계관계직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기관이 실질적 집행 책임을 부담하는 자금이 회계관계직원의 점검 범위 밖에서 수납·집행되고 있어, 그 투명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KOICA 사업비 세부 항목 및 산정 기준]

구분	세부 항목	산정 기준 (KOICA 내부규정)
해외 전문가 파견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인건비 내지 자문료</li> <li>○ 여비</li> <li>○ 제경비</li> </ul>	「용역경비 산정지침」,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글로벌 연수사업 규정 시행세칙」 등
초청연수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인건비</li> <li>○ 초청경비</li> <li>○ 교육경비</li> <li>○ 기타 사업비</li> </ul>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따라서, 경찰청은 외교부 및 KOICA 등과 협의하여, KOICA 사업비와 같이 소속기관이 직접 집행하는 위탁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입대체경비 등 세입·세출 내 관리 방식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최소한 회계관계직원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 추진인력에 대하여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처리하였음에도 해당 공무수행에 대해 직접인건비 또는 자문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관련 법령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KOICA 사업에 참여한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해당 공무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하였다. 공무상 국외출장 처리는 해당 공무원이 사적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기관 구성원의 지위에서 직무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럼에도 이처럼 자문료를 지급한 것은 결과적으로 공무수행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등이 정하는 기준 외에 별도의 대가를 추가로 지급한 셈이 된다.

[경찰청 ODA사업 해외파견 자문료 누적지급 현황]

구분	프로젝트명	정산 차수	자문료 지급액	국외 근무일	수령인
경찰청 <sup>1)2)</sup>	요르단 빅데이터 기반 치안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21~'26)	1차	5,440,000원	8일	3명
		2차	4,680,000원	6일	3명
		3차	1,440,000원	6일	1명
		4차	4,320,000원	9일	2명
	우즈베키스탄 시뮬레이션 기반 훈련시설 구축을 통한 경찰역량 강화사업('23~'27)	1차	16,800,000원	12일	5명
		2차	해외파견 미실시		
		3차	6,750,000원	8일	5명
	6,270,000원		11일	2명	
	필리핀 경찰청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3~'28)	1차	11,640,000원	12일	3명

주: 1) 경찰청에 따르면, ODA 사업관리가 소관 업무인 부서의 공무원에게는 자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

2) 우즈베키스탄 사업에 참여한 1인은 복무상황을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처리하면서도 겸직허가를 받았음

1. 정산서 상 부처 소속으로 분류된 인원들에게 지급된 자문료 현황임

2. KOICA 내부규정 상 출국일과 귀국일을 포함하여 직접인건비 내지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기에 출국일과 귀국일을 포함한 국외근무기간으로 작성함

자료: 각 프로젝트별 정산서에 근거하여 재작성

그러나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는 「국가공무원법」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며, 그 외의 별도 대가 수수는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는 공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무수행과 결부된 자문료를 위 법령이 정한 보수·여비 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조차 상한액이 엄격히 정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무수행 그 자체에 대하여 보수 외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더욱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KOICA 내부규정인 「전문인력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은 전문가가 소속 기관에서 직접인건비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 협력단이 직접인건비를 대신하여 동일 기준의 자문료를 지급하거나 직접경비만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자문료는 직접인건비와 동일한 기준단가가 적용되고 출국일과 귀국일을 포함한 국외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된다는 점에서, 명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직접인건비와 동일한 성격의 비목이다. 즉 자문료는 소속 기관에서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보전적 성격의 항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파견 지역에 범죄취약지역이 포함되고 장기 체류가 필요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파견인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는 숙박비·위험수당 등 여비 또는 수당 체계 내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항이며, 「공무원 여비 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국외 파견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급기준을 이미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건비 성격의 자문료를 활용하는 방식은 본래의 지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KOICA 사업비 선금을 초과하는 지출 소요 대응 문제는 해당 소요의 불가피성과는 별개로 특정 비목의 집행 여력을 다른 비목의 부족분에 임의로 충당한 것이어서 적절한 집행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동일한 KOICA 내부규정이 적용된 다른 사업에서는 이와 상이한 처리가 확인된다.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를 공무상 국외출장으로 처리하면서, 공무수행에 대한 별도 대가의 지급이 관련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아 자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경찰청은 공무원의 공무수행이라는 업무의 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청은 KOICA 사업에 참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자문료 지급 여부를 보수체계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고 KOICA와의 협의를 통해 동 사업을 국가재정운용체계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45억 6,300만원이며, 48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8%인 48억 6,400만원을 수납하고 1,0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일반회계	4,563	4,563	4,874	4,864	10	0	99.8

자료: 소방청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777억 4,900만원이며, 이 중 90.9%인 3,434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280억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3억 2,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소방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 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4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일반회계	345,620	377,749	343,403	28,026	6,320	90.9

자료: 소방청

##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소방청의 자산은 8,593억 6,300만원, 부채는 52억 8,600만원으로 순자산은 8,540억 7,7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37억 8,100만원, 유무형자산 8,550억 8,700만원, 기타자산 4억 9,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072억 8,200만원(14.3%) 증가하였다. 이는 유무형자산의 증가 등으로 유무형자산이 전년 대비 1,087억 1,8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52억 8,400만원, 기타부채 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2억 7,700만원(163.3%) 증가하였다. 이는 국가항만 중형 소방선 건조구매 관련 사고이월 미지급금 등에 따라 차입부채가 32억 7,7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859,363	752,081	107,282	14.3
Ⅰ. 금융자산	3,781	3,537	244	6.9
Ⅱ. 유무형자산	855,087	746,369	108,718	14.6
Ⅲ. 기타자산	495	2,175	△1,680	△77.2
부 채	5,286	2,009	3,277	163.1
Ⅰ. 차입부채	5,284	2,007	3,277	163.3
Ⅱ. 총당부채	-	-	-	-
Ⅲ. 기타부채	2	2	-	-
순 자 산	854,077	750,072	104,005	13.9
Ⅰ. 기본순자산	102,344	102,344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671,420	567,157	104,263	18.4
Ⅲ. 순자산 조정	80,313	80,571	△258	△0.3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760억 1,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1,721억 8,400만원, 관리운영비 1,089억 1,500만원, 비배분비용 1억 4,5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7억 5,000만원, 비배분수익 35억 9,5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248억 9,600만원(9.9%) 증가한 2,760억 1,9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및 관리운영비가 증가한 점 등에 기인한다.

총 1개의 프로그램은 소방정책지원 프로그램(1,704억 3,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90억 1,300만원과 경비 299억 2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감가상각비 1억 1,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소방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70,434	153,368	17,066	11.1
가. 프로그램 총원가	172,184	154,692	17,492	11.3
나. 프로그램 수익	1,750	1,324	426	32.2
II. 관리운영비	108,915	101,183	7,732	7.6
III. 비배분비용	145	256	△111	△43.4
IV. 비배분수익	3,595	3,684	△89	△2.4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276,019	251,123	24,896	9.9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276,019	251,123	24,896	9.9

자료: 소방청

소방청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7,500억 7,2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8,540억 7,7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040억 500만원(13.9%)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248억 9,600만원 증가,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3,000만원 증가하였으나,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34억 8,2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3,851억 4,5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48억 6,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억 5,8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4회계연도 소방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750,072	644,683	105,389	16.3
Ⅱ. 재정운영결과	276,019	251,123	24,896	9.9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80,282	356,800	23,482	6.6
Ⅳ. 조정항목	△258	△288	30	10.4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854,077	750,072	104,005	13.9

자료: 소방청

소방청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증액이나 예산감소 없이 정부안대로 반영되었다.**

소방청은 ①현장 중심의 실전적 대응역량 강화, ②사회변화에 발맞춘 예방 정책, ③소방장비의 첨단·고도화 및 소방산업 진흥, ④국민안전에 전념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소방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에 기관운영출연금을 집행 진도에 따른 분할 교부 없이 상반기에 전액 교부하여 실집행률이 51.6%에 그쳤고, 정식 개원(2026.6.8.)을 앞두고 일부 시스템·장비 준비가 미완료이며 의사직 충원율이 60.4%에 불과한 상황 이므로, 출연금 집행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잔여 개원 준비를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지방비 부담능력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분할교부가 필요하였음에도 교부금을 일괄교부하여 전체 실집행률이 39%에 그쳤는데, 이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동일한 사유로 분할교부를 시정요구받고 조치 완료를 보고하였음에도 반복된 것이므로, 향후 교부 관리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은 2025년 추경사업에서 외화 물품 구매 임에도 입찰 기준을 원화로 설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유찰로 전액 이월이 발생하였고, 2022년 추경사업 역시 4대가 미완료 상태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추경사업의 신속 집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입찰 조건 설계 및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II

## 주요 사업 분석

### 1

### 국립소방병원 출연금 집행 부진 및 개원 준비 지연

#### 가. 현황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상병 치료와 유해인자 노출관리 등을 전담하는 최초의 소방전문 의료기관이다. 2021년 1월 12일에 국립소방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2년부터 개원준비단을 운영하였다. 2025년 6월 21일 준공하여 12월 18일에 의료기관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완료하고, 12월 24일부터 시범진료를 운영 중이며, 2026년 6월 8일에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다.

소방청은 개원준비단 운영<sup>1)</sup>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217억 3,3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립소방병원 건립 개원준비단 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립소방병원 건립	62,418	69,067	12,668	△1,214	80,521	77,626	543	2,352	41,451
개원준비단 운영	21,733	21,733	-	-	21,733	21,733 (11,222)	-	-	41,45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소방청

문소희 예산분석관(shmoo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31-305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첫째, 소방청은 기관운영출연금을 집행 진도에 따른 분할 교부 없이 상반기에 전액 교부하였으며, 출연금 실적행률이 51.6%에 그쳐 집행 부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였다.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여 개원준비단에 개원준비 및 병원 관리·운영의 전부를 위탁하였다.<sup>2)</sup> 소방청은 2025회계연도 기준 개원준비단에 기관운영출연금 217억 3,300만원을 상반기 중 전액 교부하였고, 이 중 51.6%에 해당하는 112억 2,217만원이 집행되고 잔액 105억 1,083만원이 이월되었다. 2025년 6월 21일 건물 준공 이후 의료장비 구매·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개원준비 업무가 하반기에 집중됨에도, 출연금은 집행 진도에 따른 분할 교부 없이 상반기 중 전액 교부되었다. 집행이 부진한 비목은 재료비(실집행률 62.5%), 유형자산취득비(실집행률 73.0%), 무형자산취득비(실집행률 0%)이다.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 2025년 출연금 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분	출연금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미집행 사유	'26년 진행계획
총계	21,733.0	11,222.2	51.6	-	-
인건비	2,843.0	2,664.2	93.7	-	-
재료비	29.7	18.6	62.5	'25.12월: 외래진료 필요 약품 계약 완료	'26.3월 집행 완료
관리 운영비	1,080.4	1,016.5	94.1	-	'26.1월 집행 완료
유형 자산취득	10,311.6	7,522.9	73.0	'25.12월: 의료장비 구매 일부 계약 완료	'26.4월 집행 완료
무형 자산 취득	7,468.0	-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5.12월: 통합의료정보 시스템 구축 완료, 검수 절차 미완료</li> <li>'25.12월: 스마트솔루션 계약 완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6.2월: 통합의료정 보시스템 완료</li> <li>'26.7월: 스마트 솔 루션 잔금 지급 예정</li> </ul>

주. 실적행률은 2025회계연도 결산시점임

자료: 소방청

2) 개원준비단은 서울대병원 인력으로 구성되며, 병원 인력배치 계획, 병원 운영 프로세스 설계 및 의료 장비와 병원비품의 구매·검토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재료비는 외래진료에 필요한 약품 중 일부가 2025년 12월에 계약이 완료되어 11억 1,600만원을 이월했고, 2026년 3월에 집행 완료되었다. 유형자산취득비는 일부 의료장비의 계약이 2025년 12월에 완료되고 의료진 검수 절차가 지연되어 27억 8,800만원을 이월했고, 2026년 4월에 집행 완료되었다. 무형자산취득비는 통합 의료정보시스템(45억 6,400만원) 및 스마트솔루션(29억 400만원)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전액이 이월되었다.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은 2025년 12월 31일 구축 완료 후 이월액이 2026년 2월에 지급 완료되었으나, 스마트솔루션은 2025년 12월 계약 체결 후 이월액 중 일부를 선금(7억 7,000만원)으로 2026년 3월에 지급하고, 기성금 2차례(5월·6월) 및 잔금(7월)을 순차 지급할 계획으로, 정식 개원까지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다.

소방청은 개원준비단에 병원 관리·운영 전부를 위탁한 위탁자로서 수탁자의 집행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한다. 소방청은 총 2회('25.8.25. 및 '25.11.10.)에 걸쳐 출연금 집행실적 보고를 요청하고 비목별 집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을 회신받았다. 그러나, 출연금 실적행률이 8월말 기준 11.1%, 11월말 기준 28.9%로 집행 부진이 지속됨에도 구체적인 개선조치 요구 등은 확인되지 않아, 위탁자로서 개원준비단과의 협의를 통해 집행계획을 보완하는 등의 출연금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 출연금 집행실적 보고]

보고요청 시점	회신시점	누적 집행률	부진비목(집행률%)
2025.8.25.	2025.9.01.	8월말, 11.1%	재료비(0%), 유형자산(0%), 무형자산(0%)
2025.11.10.	2025.11.19.	11월말, 28.9%	재료비(0%), 무형자산(0%)
-	-	최종결산, 51.6%	재료비(62.5%), 유형자산(73.0%), 무형자산(0%)

- 주: 1. 집행률은 각 보고 시점 기준 누적 집행률  
 2. 인건비(93.7%)·관리운영비(94.1%)는 최종 결산 기준 정상 집행으로 부진 비목에서 제외  
 3. 최종 결산 기준 무형자산취득 미집행액(전액)은 2026년으로 이월 처리  
 자료: 소방청 자료를 재구성

소방청은 출연금을 집행 진도에 따른 분할 교부 없이 상반기에 전액 교부하였으며, 집행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행률 51.6%의 집행 부진이 발생하였다. 소방청은 잔여 이월액이 적기에 집행되어 개원 준비항목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출연금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식 개원(2026년 6월 8일)을 앞두고 일부 시스템·장비 준비가 미완료이고, 의사직 충원율이 6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진료 제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당초 2023년 12월로 계획된 정식 개원이 2026년 6월로 약 2년 6개월 지연된 상황에서, 2026년 5월 기준 시스템·장비·인력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이 미완료 항목이 잔존하고 있다.

[국립소방병원 건립 사업 추진 현황]

구분	주요 단계	당초 계획	실제 추진 및 계획	지연	비고
건립	예비타당성 조사	'18.7.~'19.11.	'18.7.~'19.11.	-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4.~'21.12.	'20.10.~'22.7.	약 8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 추진계획 변경</li> <li>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 반영 및 총사업비 조정협약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 연장</li> </ul>
	착공	'22.1.~	'22.12.~	약	설계용역 기간 소요에 따른 사업추진 일정 순연
	건축 준공	'23.12.	'25.6.	11개월	
	건축물 사용승인	'23.12.	'25.7.	약 19개월	-
운영	종합병원 개설 허가	'23.12.	'25.12.	약 24개월	-
	시범진료	-	'25.12.~	-	12개 진료과 운영 중
	정식 개원	'23.12.	'26.6.8.	약 30개월	-

주. 당초계획은 소방병원 건립사업 추진계획에 의함  
 자료: 소방청

시스템 측면에서 스마트솔루션 기능이 일부 미완료 상태이다. 모바일앱·키오스크·보안솔루션은 2026년 5월 말까지 구축 완료 예정이나, 의료장비 인터페이스와 네트워크 및 전산장비는 6월 말까지 구축 예정으로 정식 개원(6월 8일) 이후에도 구축이 진행된다. 특히 의료장비 인터페이스는 원내 의료장비와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을 연동하여 진료 기록 작성 및 검사 결과 확인에 직결되는 기능으로, 개원 이후에도 구축이 진행되는 상황이 초기 진료 운영에 차질을 줄 수 있다.

의료장비는 필수 장비 1,387점 중 555점이 미도입 상태이다. 소방청은 의료진 검수 절차를 거쳐 2026년 2분기 중 도입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개원일을 고려하면 필수 장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원 및 진료를 수행해야 할 우려가 있다.

[국립소방병원 시스템·장비 준비 현황]

구분	항목	당초계획시점	현황 및 추후계획
시스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25년 1~2월	'25.12.31. 완료
	스마트솔루션 모바일앱·키오스크·보안	'25년	구축 중, '26.5월 말 완료 예정
	스마트솔루션 의료장비 인터페이스	'25년	구축 중, '26.6.30. 완료 예정 →개원 후 완료
	스마트솔루션 네트워크·전산장비	'25년	구축 중, '26.6월 말 완료 예정 →개원 후 완료
장비	필수 의료장비	-	1,387점 중 555점 미도입 →26년 2분기 도입 예정

자료: 소방청 자료를 재구성

의료인력 충원 미진은 지속되어 왔다.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sup>3)</sup>이 있었고, 이에 대해 소방청은 의사 전원을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로 파견

3)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2025.1.)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5)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 충원 방안 마련 필요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개원준비단은 병원 인력 배치와 관련하여 '23년에 소방병원 부단장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없어 현재까지 충원하지 못하였음</li> <li>- 당초 부단장 충원을 예상하고 편성한 인건비 12개월 분 2억 5,516만원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단장 채용은 '25년 말에 준비하여 '26년 소방병원 정상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서울대학교 병원과 의료인력 확보 및 충원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li> </ul>

하는 등의 의료직 확보계획을 조치결과로 보고하였다(조치예정일 2025.12.31.). 그러나 2026년 6월 1일 기준 의사직 현원은 29명으로 목표인원 대비 충원율이 60.4%에 불과하다. 특히 내분비내과·신장내과·입원외과학과는 현원이 0명이고, 종합병원 운영의 핵심 진료과인 응급의학과도 정원(6명) 대비 현원 4명으로 2명이 부족하여, 정식 개원 시 일부 진료과의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

[국립소방병원 직종별 인력 충원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원장	의료직			보건·기술직		행정·관리직	
			의사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기술직	사무직	기능직
정원	616	1	48	288	12	62	17	37	151
'26년 목표인원	370	1	48	186	6	51	12	21	45
현원	305	1	29	168	4	59	11	29	41
'26년 목표 대비 충원률	82.4	100	60.4	90.3	66.7	115.7	91.7	138.1	91.1

주: 1. 2026년 6월 1일 기준

2. 채용된 간호직 168명 중 131명은 임용완료, 37명은 병상가동 모니터링을 통해 순차 임용 예정  
자료: 소방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p>집행하지 못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방병원 개원(26년)까지 48명의 의료진을 추가 확보하여야 하나,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소방병원 의료인력 충원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li> <li>*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35곳 지방의료원 의사 결원율은 2018년 7.6%(정원 1,037명, 결원 79명)에서 2023년 13.4%(정원 1,422명, 결원 191명)로 증가하였음</li> <li>[시정요구사항]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개원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구체적인 의료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료진 확보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립소방병원 의사 40명 전원을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 파견</li> <li>전원을 임상교수로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진료교수* 파견</li> <li>* 서울대병원 의사직: 겸직교수 &gt; 임상교수 &gt; 진료교수 &gt; 전임의 &gt; 전공의</li> <li>진료교수가 부족하거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퇴직교수를 채용하는 시니어 의사제도 활용</li> <li>인근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과의 협약을 통한 의사 파견</li> <li>(영상)판독의등은 촉탁의 제도를 활용한 다양한 의료진 수급 방안 활용</li> </ul> </li> </ul> </li> <li>조치예정일: 2025년 12월 31일</li> </ul>

[국립소방병원 진료과별 의사직 미충원 현황]

(단위: 명)

진료과목		정원	현원	충원 필요인원	비고
내과	내분비내과	1	0	1	전원 미충원
	소화기내과	3	1	2	-
	순환기내과	2	1	1	-
	신장내과	2	0	2	전원 미충원
	호흡기내과	2	1	1	1명 임용예정('26.9.1.)
성형외과	2	1	1	-	
신경과	2	1	1	-	
마취통증의학과	3	2	1	-	
영상의학과	2	1	1	-	
응급의학과	6	4	2	핵심 진료과	
입원의학과	3	0	3	전원 미충원	
정형외과	3	2	1	-	
합 계		31	12	19	-

- 주: 1. 총 19개 진료과, 의사직 정원 48명  
 2. 충원 완료 진료과 11개(충원 필요인원 0명): 감염내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직업환경의학과·가정의학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진단검사의학과(정원17명), 치과는 외주 운영  
 3. 2026년 6월 1일 기준  
 자료: 소방청

현재 의사직 현원 29명 중 서울대병원 파견 인력이 17명으로 5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탁계약은 2027년 6월까지이다. 의료직 충원에 있어 단기 유인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채용 확대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계획<sup>4)</sup>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개원 이후에도 미완료 항목이 잔존하지 않도록 잔여 이월액의 적기 집행과 시스템·장비 구비 및 의료인력 충원을 조속히 완료하여 진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현재 소방청은 의료진 유인을 위해 정주여건 확보 측면에서 기숙사 건립(2029년 예정) 전까지 의사직에 대해 민간임대주택 월세(월 160만원)를 기관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일 반직에 대해서는 LH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로 진료과별 급여 현실화, 다빈도 질환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 등의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가. 현황

전기차 화재대응 진압장비 지원 사업<sup>1)</sup>은 전기차 화재 대응 진압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무인파괴방수차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방청은 동 사업의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 42억 9,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전기차 화재대응 진압장비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5,007	5,007	98	-	5,105	5,098	-	7	866
전기차 화재 대응 진압 장비 지원	4,291	4,291	-	-	4,291	4,291 (4,223)	-	-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소방청

### 나. 분석의견

무인파괴방수차 구입은 시·도별 개별 발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계약·납기 등 획득 과정에서 소방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며, 배치 이후 운용 현황에 대한 전국 단위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무인파괴방수차는 구조 인력이 직접 투입되지 않고 말단부의 파괴장치와 방수구를 통해 외부에서 파괴·침투·직접방수·원격제어가 가능한 특수차량으로, 샌드위치 패널 공장화재,<sup>2)</sup>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운 고위험 현장에 활용된다.

문소희 예산분석관(shmoo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32-300의 내역사업

2) 샌드위치 패널 공장 화재의 경우,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유독가스 발생 등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 많아 외부에서 진압 및 대응력 강화가 필요하다(자료: 소방청).

[무인파괴방수차 제원]

○ 기본 제원: 전장 10.5m 이하, 전폭 2.5m 이하, 전고 3.9m 이하, 붐 높이 21m 이상  
 ○ 파괴장치: 샌드위치판넬(두께 200mm 이상), 콘크리트블록(두께 160mm 이상), 나무(두께 25mm 이상), 철판(두께 4mm 이상), 파괴노즐 분당 3,800ℓ 이상 방수 가능



<파괴형>



<천공형>

자료: 소방청 자료를 재구성, (사진) <https://www.jinwoosmc.com/product/jwf210a.php>, <https://www.yna.co.kr/view/AKR20260428152900062>

2012년 최초 도입 이후 2025년까지 총 43대가 전국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있으며, 2026년 1대가 추가 배치 완료될 예정으로 총 44대 규모이다.

[무인파괴방수차 전국 보유 현황]

(단위: 대)

총계	중구분	시·도 본부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44	7	37	1	2	2	2	1	3	4	2	8	1	1	3	1	1	1	2	1	1

주. 중구분은 중앙119구조본부로 시흥, 구미, 울산, 익산, 여수, 서선, 충주센터를 말함  
 자료: 소방청

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구매 재원별로 국비 7대(15.9%), 국고보조 8대(18.2%), 소방안전교부세 2대(4.5%), 지방비 27대(61.4%)로 지방비 구매 비중이 높다. 제조사별로는 국내 업체가 32대(72.7%), 국외 업체가 12대(27.3%)를 공급하였다. 국내 업체 중 진OOO가 총 31대로 전체의 70.5%이며, 현△△△은 1대(2.3%)에 그친다. 장비 방식별<sup>3)</sup>로는 파괴형이 35대(79.5%), 천공형이 9대(20.5%)이다.

[무인파괴방수차 구매 재원·제조사·장비 방식별 현황]

(단위: 대, %)

구 분		대수	전체 비율	
구매 재원	국비	7	15.9	
	국고보조(국비50%+지방비50%)	8	18.2	
	소방안전교부세	2	4.5	
	지방비	27	61.4	
	합 계	44	100.0	
제조사	국내	진OOO	31	70.5
		현△△△	1	2.3
		소 계	32	72.7
	국외	오스트리아 로□□□	7	15.9
		핀란드 브□□□	2	4.5
		미국 그□□□	3	6.8
		소 계	12	27.3
	합 계		44	100.0
장비 방식	파괴형	35	79.5	
	천공형	9	20.5	
	합 계	44	100.0	

자료: 소방청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함

2025회계연도 무인파괴방수차 구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방식(국고보조를 50%)으로 시·도가 각자 발주하였다. 계약형태는 제한경쟁과 경쟁입찰 후 수의계약 전환으로 상이하였는데, 6개 시·도 중 제한경쟁은 강원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5개 시·도는 모두 단독응찰로 인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되어 동일 제조업체(진OOO)와

3) 파괴형은 외벽·천장을 파괴한 후 방수하는 방식으로 샌드위치패널 공장·창고 화재 현장에, 천공형은 구멍을 뚫어 물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전기차·항공기·유류사고 현장에 주로 활용된다(자료: 소방청).

계약하였다. 집행액의 경우 제한경쟁을 통해 현△△△이 낙찰된 강원이 11억 8,400만원으로, 나머지 5개 시·도(12억 9,200만원~12억 9,800만원) 대비 약 1억원 이상 낮았다. 또한, 동일 제조사 계약임에도 계약일이 더 빠른 시·도의 인도일이 더 늦게 확인된 사례<sup>4)</sup>가 확인되는 등, 계약형태·집행액·납기에 편차가 발생하였다.

[2025년 6개 시·도 무인파괴방수차 계약·인도 현황]

시·도	계약형태	제조사	계약일	인도일	총액(백만원)
강원	제한경쟁	현△△△	'25.3.27.	'26.4.3.	1,184
광주	경쟁→수의	진○○○	'25.6.12.	'25.10.13.	1,295
대구	경쟁→수의	진○○○	'25.6.23.	'25.9.1.	1,292
전북	경쟁→수의	진○○○	'25.3.5.	'25.7.28.	1,298
충남	경쟁→수의	진○○○	'25.4.22.	'25.9.23.	1,298
충북	경쟁→수의	진○○○	'25.5.9.	'25.12.16.	1,298

주: 1. 총액은 국비+지방비 집행액 합계 기준(국고보조율 50%)

2. 강원을 제외한 5개 시·도는 경쟁입찰 실시 후 단독응찰로 인해 수의계약으로 전환됨

자료: 소방청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함

이러한 편차는 사실상 과점적 공급구조(진○○○, 전체 중 70.5%)에서 소방청의 중앙 관리 없이 시·도가 개별 발주함에 따라, 계약 단가·사양·납기에 관한 정보가 시·도 간에 공유되지 않고, 소규모 물량 개별 구매 방식으로는 경쟁이 구조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청은 현행 개별구매 방식에 대해 시·도 소방본부가 각 본부의 운용 여건에 맞게<sup>5)</sup> 장비 성능기준 및 규격을 결정하여 구매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간 구매 재원이 지방비 구매 비중이 높은 특성상 현행 방식을 통해 시·도의 예산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인정된다.

다만, 2025년 6개 시·도의 구매 규격서를 검토한 결과, 물탱크 용량·파괴관통력(철판·콘크리트·패널)·방수압력·방수량·봄 최대 작업높이 등 핵심 제원은 시·도 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확인되지 않으며<sup>6)</sup>, 차이는 점검 장비 및 부수 장비 등<sup>7)</sup>에서

4) 계약일이 더 빠른 충북(2025.5.9.)의 인도일(2025.12.16.)이 계약일이 더 늦은 광주(2025.6.12.)의 인도일(2025.10.13.)보다 늦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소방청은 시·도별 운용 여건 차이의 예로 강원(고립·원거리 현장에서의 차량 고장 대응 장비, 차체 통전 대비 장비 등)과 대구(도심 붕괴사고 시 콘크리트 잔해 제거 및 차량 진입로 확보 장비, 지하차도 실측·차량 파손 예방 장비 등)를 제시하였다.

주로 확인된다. 이는 차량 본체에 대해서는 중앙 차원의 표준화된 획득·관리가 가능하며, 부수 장비에 대해서는 시·도별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의 병행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국가 단위 재난 대응 역량 강화와 광역 소방력 동원 체계 측면에서도, 소방청이 무인파괴방수차와 같은 고가 특수장비의 도입·운용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의 역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단기적으로는 시·도 간 계약 정보(사양·단가·납기)를 수집·공유하고 납기 관리를 강화하는 정보 관리자 역할이 필요하다. 소방청도 표준 성능 관리, 진도율 관리 및 제조 공정 모니터링 체계 운영 등을 통해 장비의 적기 배치와 현장대응력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차량 본체는 소방청 주도로 통합 발주하고, 시·도별 특성에 따른 부수 장비는 각 시·도 소방본부가 별도 조달하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소방장비의 통합 구매)<sup>8)</sup>는 수요량이 적거나 개별 소방기관의 구매가 곤란한 소방장비에 대해 소방기관 간 공동발주 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방청장이 계약체결 사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 제3항). 무인파괴방수차는 연간 도입 수요가 소량에 그쳐 경쟁입찰이 반복적

6) 2025년 6개 시·도(강원·광주·대구·전북·충남·충북) 구매 규격서를 분석한 결과, 물탱크 용량은 전 시·도 2,000ℓ, 파괴관통력은 철판 4mm·콘크리트 160mm·샌드위치패널 200mm로 동일하였으며, 방수압력별 방수량(0.85MPa 기준 2,800ℓ/min, 1.4MPa 기준 2,000ℓ/min)과 무인방수분 최대 작업높이(21m) 역시 시·도 간 차이가 없었다. 파괴노즐 방수량의 경우 강원·대구·충북이 4,000ℓ/min 이상, 광주·전북·충남이 3,800ℓ/min 이상으로 시·도 간 차이가 확인된다. (자료: 나라장터 시·도별 입찰공고)

7) 점검장비: 드라이버·스패너·렌치류, 소켓·파이프 공구, 절단·타격공구, 체인·시동 점프선 등 독립 품목 부수장비; 차량 편의장비, 수리·개폐 장비, 구조·탐색 도구, 조명·조작 안전 장비 등 (자료: 소방청)

8)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4조의2(소방장비의 통합 구매)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하여 다른 소방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소방장비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장비의 구매·보급이 시급한 경우
  2.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경우
  3. 해당 소방장비의 수요량이 적거나 규격 작성이 곤란하여 구매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기관이 개별적으로 소방장비를 구매하기 어렵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소방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6.11.]

으로 단독응찰로 귀결되는 장비로서 동 조항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통합발주가 도입될 경우, 가격·납기·사양의 일원화를 통해 소방장비 획득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획득 과정과 별개로 현재 운용 중인 장비에 대한 관리도 강화가 필요하다. 2026년 기준 내용연수(12년)<sup>9)</sup>를 초과하거나 근접한 장비가 11대에 이르고, 비교적 최근 배치된 장비 중에서도 출동실적이 높아 가속 노후화가 우려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이에 따라 본 장비의 내용연수 도래·초과 여부와 출동실적에 따른 가속 노후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 배분과 운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무인파괴방수차 교체수요 발생 가능 장비(예시)]

구분	배치관서	배치연도	경과연수 (2026년 기준)	누적 출동실적
내용연수 초과	울산 남부소방서	2012	14년	253건
	울산 동부소방서	2014	12년	185건
내용연수 근접 (10~11년)	중앙119 울산센터	2015	11년	77건
	중앙119 익산센터	2015	11년	183건
	중앙119 시흥센터	2016	10년	318건
	중앙119 구미센터	2016	10년	114건
	중앙119 여수센터	2016	10년	107건
	중앙119 서산센터	2016	10년	136건
	부산 기장소방서	2015	11년	180건
	경기 화성소방서	2015	11년	452건
고출동 ·가속 노후화 예상	전남 영광소방서	2015	11년	55건
	세종 남부소방서	2017	9년	818건
	세종 북부소방서	2018	8년	779건
	인천 공단소방서	2019	7년	829건
	경기 김포소방서	2019	7년	709건
	충남 천안서북소방서	2021	5년	607건
경남 김해서부소방서	2021	5년	690건	

자료: 소방청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함

9)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458호, 2026.4.10.) 제4조 및 별표 1(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이상을 종합할 때, 소방청은 본 장비의 효과적인 획득을 위해 단기적으로 정보 관리자 역할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발주 방식 도입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장비의 내용연수 도래·초과 여부, 출동실적 및 가속 노후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sup>1)</sup>은 도로상황 등 지리적 조건이 열악한 산림인접마을에 소방대 도착 전 주민자율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민가 등 시설물 보호와 산림화재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다. 소방청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예산현액 51억 6,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 개발	1,017	6,180	-	-	6,180	6,170	-	-	10,407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	5,163	-	-	5,163	5,163 (2,016)	-	-	2,28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소방청

### 나. 분석의견

**첫째,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분할교부 및 지방비 부담능력·연내 집행가능성 검토 의무가 있으나,<sup>2)</sup> 소방청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교부**

문소희 예산분석관(shmoo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33-300의 내역사업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 하여 전체 집행률이 39%로 부진하였다.

해마다 겨울·봄 건조·강풍으로 산불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데, 2025년 3월에는 전국 동시다발 산불(경북·경남·울산 등)로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산림인접 지역은 소방용수시설 부족·도로 여건 등 지리적 조건이 열악하여 주택·시설물 피해 우려가 높고 초기진화가 매우 중요함에 따라, 소방청은 2025년 3월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10개 시·도에 비상소화장치 1,199개소 설치를 확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1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국비 50%) 방식으로 지방비 매칭이 필수 전제조건이다.

소방청은 추경 확정(25.5.16.) 이후 각 시·도 교부신청(25.6.2.~6.11.)을 거쳐 7월 22일에 교부금을 일괄교부하였다. 그 결과 10개 시·도 전체 교부액 51억 6,300만원 중 실집행은 약 20억 1,600만원(집행률 39.1%)에 그쳤으며, 특히 강원(집행률 0%)·경북(집행률 1.6%)·충남(집행률 6.3%)은 교부금 대부분이 이월되었다.

소방청은 2022회계연도 동사업에서 일괄교부로 집행이 부진하여 국회로부터 분할교부를 시정요구<sup>3)</sup> 받았으나, 2025회계연도에도 일괄교부 방식을 반복하였다.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2024.2.)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6) 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등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2022년 연말 기준 계획 대비 장치 완공률이 10%에 불과하며, 실집행률도 23.1%로 저조함. 사유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에 따라 집행 경과를 살펴가며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여야 함에도 보조금을 1회에 전액 교부하였기 때문임.</li> <li>○ [시정요구사항] 소방청은 동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향후 예산편성시 연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반복적인 시정요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소방청에서 보조사업자 수행사항을 수시 점검한 결과, 강원·경북 모두 사업완료 하였음.</li> <li>○ 향후에는 국고보조금 교부시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연내 집행 가능토록 면밀한 계획수립과 보조사업자의 사업 수행사항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음</li> </ul> <p>* '24.1.11. 국고보조사업 교부 및 집행점검 철저 재강조</p>

[2025회계연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사업 시·도별 교부·집행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

시·도	수량		교부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완료 여부
	수요조사	설치					
계	1,254	1,199	5,163	2,016	3,074	39.1	-
대구	83	60	270	266.2	-	98.6	완료
울산	50	50	231	231	-	100	완료
세종	19	12	36	35.5	-	98.6	완료
경기	149	130	718.5	714.7	-	99.5	완료
전남	92	80	307.5	307.5	-	100	완료
경남	40	40	201	201	-	100	완료
전북	50	50	262.5	201.5	61	76.7	이월·'26년 사업완료
강원	84	63	346.5	0	346.5	0	이월·'26년 추진중(80.2%)
경북	654	654	2,493	40.3	2,453	1.6	이월·'26년 추진중(33.9%)
충남	33	60	297	18.8	278.2	6.3	이월·'26년 추진중(27.8%)

- 주: 1. 2025회계연도 결산시점 기준  
 2. 교부금은 2025년 7월 22일에 일괄 교부함  
 3. 강원, 충남, 경북의 추진중(비율)은 2026년 3월 31일 기준 실적행률임  
 자료: 소방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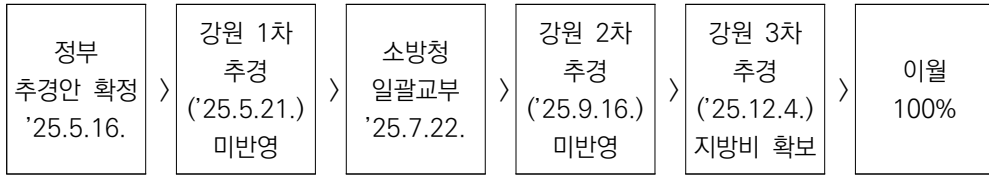
**둘째, 강원·경북은 지방비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해 교부금 대부분을 이월하였고, 충남은 도가 자체 분할배정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시·군비 확보 지연 등으로 이월이 발생하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강원·경북·충남의 경우 시·군비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여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이월하게 된 것은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강원의 경우, 1·2차 추경에서 지방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제3회 추경('25.12.4. 심의 완료)에 편성한 결과, 교부받은 3억 4,65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다.<sup>4)</sup>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지자체에 보조금 교부시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여 보조금 이월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	○ 조치완료일: 23년 12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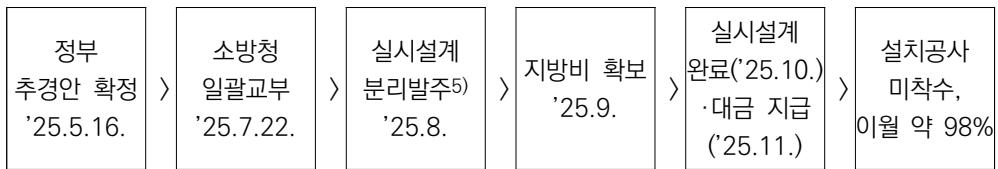
[강원 집행 지연 경위]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북의 경우, 수요조사 당시('25.3.) 스스로 제시한 654개소의 설치수량 과다와 지방비 확보 지연('25.9.)을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실시설계 완료 및 대금 지급이 11월에야 이루어져 연내 설치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교부받은 25억 7,300만원 중 4,000만원(1.6%)만 집행되어 24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다.

[경북 집행 지연 경위]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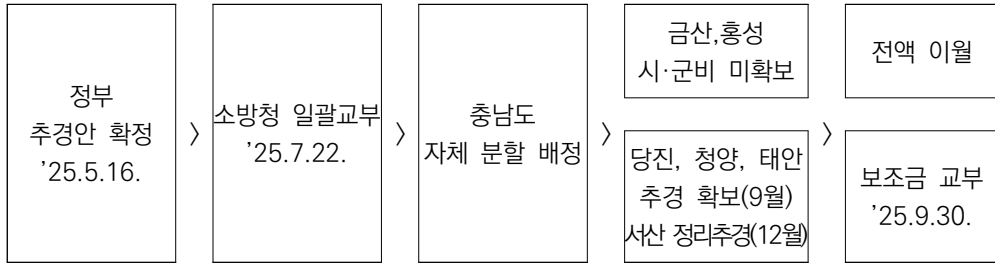
충남의 경우, 교부받은 2억 9,700만원 중 시·군비 확보(예정) 4개 시·군(당진·서산·청양·태안)에 1억 500만원을 우선 배정하고, 시·군비 미편성 2개 군(금산·홍성)분 1억 9,200만원은 유보하는 자체 관리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2개 군은 끝내 군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4개 시·군도 지방비를 확보하였으나 연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집행률 6.3%)<sup>6)</sup> 약 2억 7,800만원이 이월되었다.

4) 강원 제1회 추경('25.5.21.)은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25.4.28.)된 이후 정부 추경이 확정('25.5.16.)되어 반영이 불가하였고, 제2회 추경('25.9.16.)에는 폭염긴급사업비를 우선 편성하면서 동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5) 경북은 단일 발주 시 실시설계에 6개월 이상 소요되고 불법하도급 및 하자보수 문제도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5년 8월에 실시설계를 6개 권역으로 분리 발주하였다.

6) 4개 시·군 중 당진·청양·태안은 9월 추경으로 지방비를 확보하였으나 계획물량을 모두 설치하지 못하였고, 서산은 12월 정리추경으로 지방비를 확보하여 사실상 연내 집행이 불가하였다.

[충남 집행 지연 경위]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 3월 31일 기준 강원·경북·충남의 실집행률은 각각 80.2%, 33.9%, 27.8%로 집행이 진행되고 있으나,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가을철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방청은 지자체별 재정력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교부 전에 확인하고, 미확보 지자체에는 분할교부 또는 교부 유보를 적용하는 등 교부 관리 절차를 제도화 하여 추경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신규 데이터 적합성 및 운영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 가. 현황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sup>1)</sup>은 국민안전과 관련된 맞춤형 데이터 생산 및 개방 확대,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소방청은 동 사업의 예산현액 13억 8,500만원 중, 13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1,907	1,907	285	-	2,192	2,181	-	11	1,705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1,100	1,100	285	-	1,385	1,374	-	11	1,10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소방청

문소희 예산분석관(shmoo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33-311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sup>2)</sup>은 소방 관련 생산·유통되는 대용량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정제한 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저장·처리·분석·시각화하여 소방산업 업체, 종사자, 관·연·학계 및 대국민에게 양질의 특화된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분야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구축하였으며(‘20~’22년), 2023년부터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 상품 개발 및 데이터 품질관리 등 플랫폼 운영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 첫째,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한 데이터가 신규 유입되고 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의 신규 데이터 등록 건수(데이터셋 기준)<sup>3)</sup>는 2023년<sup>4)</sup>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서 유상거래 규모 감소 및 데이터 증가 규모의 미미함을 지적<sup>5)</sup>하였으며, 소방청은 민

2) <https://bigdata-119.kr/>

3) 이하 데이터 등록 건수는 모두 데이터셋 기준이다.

4) 2022년까지는 플랫폼 구축단계로 성과실적 기준이 상이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5)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2026.1.)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3) 소방안전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지속 가능성 강화 필요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적사항] 2024년도에 플랫폼을 위탁 운영한 민간업체가 위탁운영 과업 71건 중 22건이 미흡한 결과를 보임에 따라 이를 보완하느라 사업이 연내에 완결되지 못하였음. 사업 완성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과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지 못한 것은 문제임. 유상 거래 데이터 등록 건수(227건)가 무상 데이터 등록 건수(412건)에 비해 적고, 유상거래 규모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2023년 2억 3,660만원 → 2024년 1억 1,730만원, 1억 1,930만원 감소), 플랫폼을 통해 유통·거래되는 데이터의 증가 규모(연평균 증가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표준-품질 체계 수립-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데이터 표준용어, 단어, 도메인 정의 / 데이터 이상 값 수정 및 삭제, 좌표계 변경 등</li> <li>※ 모든 데이터 상품에 표준-품질 적용 및 데이터상품 목록 개편 완료(‘25.7.3.)</li> </ul> </li> <li>○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공공·민간의 데이터 유통·이용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25.6.13.)</li> <li>① 공공분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매지원</li> </ul>

간(카드사 등) 참여 확대를 통한 데이터상품 다각화 등으로 조치 완료(2025.12.31.)를 보고하였다.

2025년 신규 데이터 등록 건수는 총 963건으로 유상·무상 데이터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신규 데이터 등록 건수는 새롭게 발굴·도입한 ‘신규발굴 데이터’(699건)와 기존 데이터를 최신화한 ‘갱신 데이터’(264건)의 합으로 구성된다.<sup>6)</sup> 이 중 신규발굴 데이터 699건은 유상거래 데이터 98건, 무상거래 데이터 601건이다.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p>2.0%)가 미미하여,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p> <p>○ [시정요구사항] 소방청은 사회적 현안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소방분야 빅데이터 품질 제고, 유통 활성화, 위탁운영 지속 가능성 강화, 플랫폼 실질적 활용성 개선 등에 노력할 것</p>	<p>※ '26년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위탁운영 사업계획 수립 ('25.10.21.)</p> <p>②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심구역* 확대</p> <p>* 플랫폼 보유 데이터 및 청 미개방 데이터를 열람·분석 가능한 공간</p> <p>※ '대구 데이터 안심구역'과 협약 체결('25.9.18.) 및 소방공무원 대상 운영 개시('25.11.18~)</p> <p>③ AI 적용 확대로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도 제고</p> <p>※ AI기반 데이터 검색 기능 및 데이터 상품 설명 자동 생성 기능 등 홈페이지 구현 완료 ('25.11.28.)</p> <p>○ 민간(카드사 등) 참여 확대(8→16)를 통한 데이터상품 다각화* 및 설명회·간담회 개최</p> <p>* 주요데이터: 카드결제, 마트상품, 외식 배달 POS데이터 등</p> <p>※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설명회 ('25.7.4.) / 공공·민간데이터 활용 협력을 위한 간담회('25.9.29.)</p> <p>○ 조치완료일: 2025년 12월 31일</p>

6) 소방청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신규 데이터 등록 건수가 신규발굴과 갱신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 집계되어, 2021~2024년의 신규발굴·갱신 각각의 건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연도별 신규 데이터 등록 건수]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신규발굴	갱신
유상거래	908	365	130	227	322	98	224
무상거래	698	236	76	412	641	601	40
총계	1,606	601	206	639	963	699	264
비고	건축사업 2차 연도	건축 완료	민간위탁운영				

- 주: 1. 데이터 등록 건수는 데이터셋 기준임  
 2. 2022년까지는 플랫폼 구축단계로, 성과실적 기준이 상이하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함  
 3. '신규발굴'은 새롭게 발굴·도입한 데이터, '갱신'은 기존 데이터를 최신화한 경우를 말함  
 4. 2024년까지는 신규발굴과 갱신을 구분하지 않고 합산 집계되어, 각각의 건수는 확인되지 않음  
 자료: 소방청

2025년 신규발굴 데이터 699건을 플랫폼의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면, 소방안전·소방산업·화재안전성능 등 소방관련 카테고리가 274건(39.2%)이며, 이외 소비분석과 언론보도 카테고리가 425건(60.8%)이다.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신규도입 데이터 392건(전체의 56.1%)은 연합뉴스 단독 제공 데이터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공식 등록된 상품 설명을 확인한 결과 도박관련 사건사고, 비리사건(뇌물·배임 등), 지식 범죄(특허분쟁·산업스파이 등) 등 다수 항목은 소방 분야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소비분석 카테고리의 소상공인 외식 배달 POS 데이터 및 카드 소비데이터는 컬럼 구성상 소방·안전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언론보도·소비분석 데이터가 직접적인 소방 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구급수요, 행사·축제 대응, 사회재난 징후, 생활안전 분석의 보조자료로 활용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5년 신규발굴 데이터 현황]

(단위: 건, %)

카테고리 구분	제공기관	데이터셋 수	전체 대비 비율	소방관련 내 비율	비고
소방 관련	(주)올포랜드	108	15.5	39.4	화재·구급 격자 데이터
	(주)에측진단기술	79	11.3	28.8	압력용기·화학반응기 등
	소방청	31	4.4	11.3	-
	SK텔레콤	24	3.4	8.8	유동인구·실거주인구
	올라이트라이프(주)	17	2.4	6.2	산업시설 화재탐지 등
	(주)데이터사이언스랩	11	1.6	4.0	소방안전·기업 결합데이터
	기타	4	0.6	1.5	-
	소 계	274	39.2	100.0	-
소비 분석	NH농협카드	16	2.3	-	카드 소비데이터
	삼성카드	16	2.3	-	카드 소비데이터
	케이플러스	1	0.1	-	외식 배달 POS
	소 계	33	4.7	-	-
언론 보도	연합뉴스	392	56.1	-	도박·비리·노동시위·범죄 등
	소 계	392	56.1	-	-
합 계		699	100.0	-	-

- 주: 1. 2025년에 새롭게 발굴·도입한 신규발굴 데이터 699건에 한함  
 2. 소방관련 카테고리는 소방안전, 소방산업, 재난보험, 소방IoT, 화재안전성능, 화재위험분석, 지하 배관안전, 전기IoT를 포함함  
 3. (주)올포랜드는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수탁기관임  
 자료: 소방청 및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https://bigdata-119.kr/>)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그러나 플랫폼에 공식 등록된 상품 설명에서는 소방청이 주장하는 연관성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기 어렵다.<sup>7)</sup> 더욱이 현재 데이터 상품 입점 기준은 참여센터<sup>8)</sup> 등록 기관에 한하여 등록이 가능하다는 기관 자격 요건에 그칠 뿐, 등록되는 데이터의 소방 안전 분야 관련성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으며, 소방청도 이에 대해 향후 관련 절차를 추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7) 홈페이지상 일부 상품 설명을 살펴보면(2026.6.18. 검색 기준), '소상공인 외식 배달 POS 데이터'의 상품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의 업종별, 메뉴로 구분한 소상공의 시간대별 매출액 정보, (중략) 외식업 트렌드 분석 및 매출 증대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략) 외식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소방·안전 분야와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8) 참여센터는 계약센터와 자발적센터로 구성되며, 참여센터 가입 희망 시, 사업단 검토·승인 후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센터는 '20~22년 구축사업시 협약을 통해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참여한 센터이며, 자발적센터는 별도의 협약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데이터를 공급하는 센터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자발적센터로 등록·관리된다.

[2025년 신규 데이터셋 중, 소비분석 카테고리 데이터]

상품명	제공기관	데이터셋 수	가격	컬럼명
소상공인 외식배달 POS 데이터	케이플러스	1	1,000만원	메뉴분류명, 시간대별 판매금액, 사업장수, 판매금액 등
월별 가맹점 속성별 카드 소비데이터	NH농협카드	4	1,000만원	X·Y좌표, 격자ID, 기준연월, 소상공인여부, 시군구명·코드, 시도명·코드, 야간시간대코드, 업종대·중·소분류명, 읍면동명·코드, 이용건수, 이용금액 등
월별 고객 속성별 카드 소비데이터	NH농협카드	4	1,000만원	
일자별 카드 소비데이터	NH농협카드	4	1,000만원	
(준)실시간 카드 소비 모니터링용 데이터	NH농협카드	4	1,000만원	
월별 가맹점 속성별 카드 소비데이터	삼성카드	4	1,000만원	
월별 고객 속성별 카드 소비데이터	삼성카드	4	1,000만원	
일자별 카드 소비데이터	삼성카드	4	1,000만원	
(준)실시간 카드 소비 모니터링용 데이터	삼성카드	4	1,000만원	

자료: 소방청 및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https://bigdata-119.kr/>)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한편, 2025년 신규발굴 소방관련 데이터 274건 중 플랫폼 운영 수탁기관인 (주)올포랜드가 등록한 데이터가 108건(39.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소방청 자체 등록(31건, 11.3%)을 합산하면 소방관련 신규발굴 데이터의 절반 이상(50.7%)이 수탁기관 및 소관부처의 자체 등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규발굴 데이터 유입이 내부 운영관리 주체에 집중된 구조는 외부 공급자·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활성화와 거리가 있다.

소방청은 데이터 상품화, 분석·시각화, 안심구역 운영 등을 본 플랫폼의 차별화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안전 분야와의 연관성이 불분명한 데이터가 유입되고 있고, 소방 분야 데이터의 신규발굴은 내부 운영관리 주체에 집중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공유플랫폼·공공데이터포털 등 소방·안전 분야를 포괄하는 공공플랫폼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할 때,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의 차별적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상거래에서 민간 자발거래 매출이 감소하고 공공지원 기반 거래 비중이 심화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운영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완료 후 2023년부터 매년 약 11억원의 민간위탁운영비가 투입되고 있다. 같은 기간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25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2023년 대비로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과기정통부 지원사업(NIA 출연) 기반 구매 비중이 2023년 0%에서 2025년 89.8%로 급증한 반면 민간 자발거래 매출은 같은 기간 약 2억 3,656만원에서 약 1,615만원으로 급감하여, 플랫폼 매출에서 공공재원 기반 구매 비중이 높아지고 민간 자발 거래는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2023~2025년 유상거래 매출 현황]

(단위: 원)

구 분	2023	2024	2025
과기정통부 지원사업 (NIA 출연)	-	51,000,000 (43.5%)	142,250,000 (89.8%)
민간 자발 거래	236,564,000 (100%)	66,318,000 (56.5%)	16,153,000 (10.2%)
합 계	236,564,000	117,318,000	158,403,000
전년 대비 증감	-	△119,246,000	41,085,000

주: 1. 위탁운영비 연간 약 11억원 집행(2023~2025년)

2. 2024년 과기정통부 지원사업은 「2024 고수요 데이터 확충사업」임

3. 2025년 과기정통부 지원사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임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2025년 유료데이터 거래실적 목표를 3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매출액은 약 1억 5,840만원(달성률 53%)에 그쳤다. 실제 매출액 중 과기정통부 지원사업(NIA 출연) 구매 건(1억 4,225만원, 매출 총액의 89.8%)을 제외한 순수 민간 자발 거래 매출은 1,615만원(매출 총액의 10.2%)에 불과하며, 민간 자발 거래에서 발생한 이용료 국고 환수액은 약 101만원에 그쳤다.

소방청은 자생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유료 데이터 구매 시 수수료(10%) 부과 체계를 신설하였으나, 민간 자발거래 자체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거래규모 확대 없이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2025 유상거래 매출 내역]

(단위: 원)

구분	거래 건수	판매금액	서비스 이용료	비고
과기정통부 지원사업 (NIA 출연)	7건	142,250,000	5,589,270	회전기기·콘크리트크랙 테스트베드, 축사시설·FDS 화재 시뮬레이션 데이터
민간 자발 거래	15건	16,153,000	1,115,212	홍수·태풍·산불 등 재난위험지도, 소방 빅데이터 분석 과정, 화재 발생 영상 감지 데이터
총계	22건	158,403,000	6,704,482	-

- 주: 1. 서비스 이용료 중 부가세 제외 실제 국고 환수액: 6,094,984원  
 2. 민간 자발 거래 중 서비스 이용료 발생분 국고 환수액(부가세 제외): 약 1,013,829원  
 3. 과기정통부 지원사업은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분석서비스 지원 사업」임

자료: 소방청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청은 2026년 플랫폼 운영 예산 일부를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데이터 구매 지원에 활용하는 계획<sup>9)</sup>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은 시·도소방본부, 소속기관 및 소방청 각 부서의 데이터 활용 경험을 확대하고 실제 정책·현장 활용 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마중물 성격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방청이 설명한 취지는 인정하되 공공예산으로 유상거래를 발생시키는 방식이 지속되는 것은 외부 민간 수요 확대에 기반한 자생화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민간 자발거래 확대 성과와는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공공분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매지원 방법]

- ▶ (지원대상) 시·도소방본부, 소속 산하기관 및 소방청 각 부서
- ▶ (지원규모) 약 5,000만원(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 가능)
- ▶ (지원방법) 우선순위에 따라 수요과제별 차등지원
  - \* (1순위) 소방안전 플랫폼의 기존 등록 데이터 활용 과제
  - (2순위) 소방안전 플랫폼에 신규 등록 가능한 데이터 활용 과제
  - (3순위) 소방안전 플랫폼에 등록은 불가하나 시급성이 인정되는 과제

자료: 소방청

9)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활성화 추진계획(25.6.13.) 상 지원규모는 최대 2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소방청은 2026년 6월 기준 약 5,000만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플랫폼 운영 수탁기관은 2025년까지를 자생화 기반 마련 단계, 2028년 이후를 자생화 달성 단계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공공재원 기반 구매 비중이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 자발거래 매출은 감소하는 현 추세를 고려하면, 민간 자발거래의 실질적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자생적 생태계 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소방청은 소방안전 특화 플랫폼으로서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 황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sup>1)</sup>은 119구급활동 관련 노후·분산된 시스템을 정부 주도의 G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고도화하여 시·도 소방본부부터 소방청까지 구급활동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현장대응 및 구급활동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것이다. 소방청은 2025회계연도 본예산 15억 5,6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집행률 10%) 13억 6,300만원을 이월 및 3,700만원을 불용했다.

[2025회계연도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 (정보화)	1,556	1,556	-	-	1,556	156	1,363	37	1,09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소방청

## 나. 분석의견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구급 관련 시스템<sup>2)</sup>을 재구축하고 G클라우드 기반으로 통합함으로써, 구급활동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현장대응 및 구급활동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구급대원 단말기에서 구급일지·이송병원선정 등 통합업무 처리가 가능해지고, 중앙-시·도 단일시스템 운영으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재난정보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다.

동 사업은 2022년 1차 연도(구급활동정보시스템 구축)를 시작으로 2025년 4차 연도에는 구급과거데이터 조회·백업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은 이송병원선정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응급환자의 이송지연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sup>26</sup>년 3~5월, 광주·전북·전남 대상), 해당 시범사업에서 이송체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해 동사업의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활용하여 구급대의 환자정보를 병원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하고 있다.<sup>3)</sup>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연차별 구축 현황]

구분	내용	
1차 연도 (2022)	- 구급활동정보 시스템 - 구급활동정보 병원정보시스템	시스템 구축
2차 연도 (2023)	- 구급단말기 - 다수사상자관리 시스템	
3차 연도 (2024)	- 구급상황관리 시스템 - 119안심콜	
4차 연도 (2025)	- 구급과거데이터조회(백업) 시스템	
5차 연도 (2025)	- 사용자(구급대·병원) 중심 기능 개선 - 메신저 기능 개발	시스템 고도화

자료: 소방청

2) U119 안심콜, 구조구급활동정보시스템, 119구급상황관리시스템, 국가긴급이송정보망

3) 보건복지부·소방청 보도자료, 「지역사회 중심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 본격 추진」, 2026.2.25.

**첫째, 4차 연도 사업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지연되어 5차 연도 사업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각 단계별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

4차 연도 사업의 프로세스는 민간 개발업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위탁 발주하여, 동 기관 내 장비(H/W+S/W)에 탑재한 후 장비·시스템 간 연계 및 시험을 거쳐 운영하는 구조이다. 2025년 9월 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개발용역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발주 모두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sup>4)</sup>. 화재 당시 시스템 개발 실적은 약 58% 수준(25.9.25.기준)이었으며, 소방청에 따르면 2026년 5월 사업재개 및 장비도입 완료 후 시스템 연계·종료 감리를 거쳐 2026년 7월 중 4차 연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화재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 중단이었으나, 4차 연도 사업의 잔여 일정 지연이 후속 사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5차 연도 사업은 2026년 5월~6월 조달청 발주요청이 예정되어 있어 4차 연도 사업 완료 시점(26년 7월)과 일정이 중첩될 우려가 있으므로, 잔여 일정 및 후속 사업 착수 계획 간 일정 연계 현황을 지속 점검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사업을 통해 구축된 이송병원선정 기능이 구급대 이용률(21.8%)과 의료기관 응답률(47.9%) 모두 낮아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

이송병원선정 기능은 구급대의 선정 요청에 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수용 여부를 응답함으로써 적정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지원하고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2026년 3월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구급대의 수차례 수용 문의 없이 중증응급환자의 적정 이송을 강화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의 효율적 이송을 제고하는 구조를 설계하였다. 특히 중증응급환자 이송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최적 병원에 수용 문의를 담당하고 구급대는 환자 처치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로,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의 이송병원선정 기능이 중증환자 이송에 직결됨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송 시간 증감률·재이송률 등을 모니터링 지표로 설정하고 있어, 이 기능의 실효성은 환자 중증도와 연계된 이용 실태를 기반으로 측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4) 개발용역: 당초 계약기간 '25.6.13.~'26.1.9. → 변경계약기간 ~'26.7.3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위임발주: 당초 계약기간 '25.9.24.~'26.12.12. → 변경계약기간 ~'26.6.11.

이송병원선정 기능은 구급대의 활용과 의료기관의 실시간 응답이 모두 전제되어야 작동하는 구조이다. 소방청이 파악하는 구급대 이용률과 의료기관 응답률은 환자 단위·중증도 기반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기능 필요 환자군별 활용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두 지표 모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급대 이용률의 경우 전국 평균 21.8%로 낮은 수준이며, 시·도별 편차가 크다. 의료기관 응답률<sup>5)</sup>은 2025년 47.9%이며, 2024년(49.4%) 대비 오히려 하락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는 전산망을 통한 수용능력 확인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를 금지하고 있어 응답 의무에 대한 법적 기반은 갖추어져 있고,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시스템 접근 권한이 부여된 상황에서도 응답률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구급대 이송병원선정기능 이용률]

(단위: 건, %)

구분	출동건수(A)	병원선정 요청(B)	이용률(B/A)
전국	419,689	91,592	21.8

주. 2026년 1월 1일~3월 31일 집계기준  
자료: 소방청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의료기관 응답률]

(단위: 건, %)

연도	선정 요청(A)	응답 건수(B)	응답률(B/A)
2024	349,414	172,719	49.43
2025	563,521	270,244	47.96

자료: 소방청

5) 현행 응답률(응답건수/선정요청 건수×100)은 환자 단위가 아닌 선정요청 건수 기준으로 산출되며, 디지털과 유선 병행 비율도 파악되지 않아 지표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해 동일 환자에 대해 반복 요청할 경우 선정요청 건수가 늘어나 응답률이 실제보다 낮게 집계될 수 있고, 반대로 응답률 개선 시에도 실제 수용 증가인지 요청 반복 감소인지 구분이 어렵다. 2026년 5월 기준, 소방청은 환자 단위 집계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의료기관 응답률 제고를 위해 4차 연도 사업에서 UX 개선을 완료하여 기능을 보완하였으나, 응답 부담의 주요 원인이 시스템 외적 요인에 있어<sup>6)</sup> 기능적 개선만으로는 실효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보다 근본적으로, 소방청은 환자 증증도 기준의 이용 실태를 수집·분석하지 않고 있어, 이 기능이 적시 이송이 필요한 증증환자에게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구급대 이용률과 의료기관 응답률의 제고 방안은 각 활용 주체의 문제뿐 아니라, 낮은 이용률과 응답률이 어느 증증도 환자군에서 비롯되는지를 함께 확인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기 어렵다. 소방청은 이송병원선정 기능의 구축·고도화를 추진해 온 만큼, 환자 증증도 기반의 구급 통계 수집·분석 체계를 마련하여 기능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

6) 소방청은 이송병원선정 기능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사용자 470명을 대상으로 화면구성·사용편의성 등 5개 분야에 대해 설문을 진행(2025년 9월)한 결과에 따라 항목명 불분명(33%), 환자정보 확인 단계 어려움(33%) 등 시스템 UX 문제를 반영하여, 알람 조건 개선, 환자 발생 위치 추가 등 UX 개선을 완료하였다. 다만 응답 부담의 주요 원인이 입력 부족(29%) 및 다른 업무 우선(25%) 등 시스템 외적 요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소방청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반영 및 정보관리자 모니터링 업무 범위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고 구체적 이행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 가. 현황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sup>1)</sup> 사업은 소방헬기에 배면물탱크 장착을 통한 물 수송 용량을 증가시켜 향후 대형산불에 소방헬기의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예산현액 22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다.

[2025회계연도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중앙119특수 구조대 지원	37,374	39,574	8,290	△1,612	46,252	31,140	14,532	580	33,007
소방헬기 배면 물탱크 설치	-	2,200	-	-	2,200	-	2,200	-	-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소방청

### 나. 분석의견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사업은 대형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해 2022년과 2025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25년 사업은 입찰 조건 설계 미흡으로 전액 이월이 발생하였고, 2022년 사업은 4대가 미완료 상태로 남아있는 등 반복적인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추경사업의 특성상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만큼, 소방청은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문소희 예산분석관(shmoo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171-301의 내역사업

**첫째, 2025년 추경 배면물탱크 구매 사업은 외화 물품 구매임에도 입찰 기준을 원화로 설정하여 환율 변동으로 입찰금액을 초과하여 잔액 이월이 발생하였다.**

소방청은 추경 편성 당시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구매의 계획 수립 및 계약을 2025년 8월까지 추진하고, 이후 배면물탱크를 납품받아 헬기 수리개조 후 장착하여 2026년 3월에 사업을 완료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차 입찰공고('25.11.5.)와 2차 입찰공고('25.12.10.) 모두 단일응찰에 그쳤고, 2차 공고에서 기술평가를 통과한 업체가 가격평가 단계에서 입찰금액(2,139,968,300원)이 사업예산(2,017,965,000원)을 초과하여 협상적격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고 조달요청서가 반려되었다.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구매 사업의 당초 계획 대비 추진 현황 및 계획]

구분	당초 계획 ( '25년 제1회 추경)	실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25~'27)	비고
예산 배정	'25.5.	'25.5.	-
계획 수립 및 계약 추진	'25.5.~'25.8.	'25.5.~'25.12.30. (계약 미체결)	단일응찰·유찰·조달청 반려로 지연
재입찰 및 계약 체결	-	'26.4.2. 입찰공고 → '26.5.13. 개찰 → '26.6. 계약체결	유찰로 인한 재추진 절차
배면물탱크 제작 및 납품	'25.9.~'26.2.	'26.6.~'26.12.	계약 지연에 따라 순연
장착 수리개조 수행	'26.2.~'26.3.	'27.1.~'27.2.	동일 사유로 순연
사업 종료	'26.3.	'27.2.	약 11개월 지연

자료: 소방청

유찰의 실질적 원인은 입찰금액 자체가 아니라 입찰 조건 설계의 미흡에 있다. 동 사업은 외화(달러) 물품 구매임에도 계약 기준을 계획보고 및 계약요청일 시점('25.7.21., 1USD=1,391.70원)을 기준으로 원화 상한선(KRW 2,017,965,000원)으로 설정하였다.<sup>2)</sup> 조달청은 소방청의 계획요청일 이후 약 5개월이 지난 개찰 시점

(’25.12.23.) 환율(1USD=1,482.70원)을 적용하여 개찰하였고, 계획보고 시점 대비 약 91원 상승하면서 업체는 달러 기준으로는 공고 상한(USD 1,450,000) 이내로 투찰하였음에도 원화 환산액이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탈락하였다. 개찰일 환율은 투찰 시점에 확정되지 않아 업체가 원화 상한 이내로 맞추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이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업체에 전가하는 설계로, 외화 물품 구매 시에는 계약 기준을 달러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였다.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구매 계획보고·개찰 시점 환율 및 금액 비교]

구분	시점	적용 환율	달러 금액	원화 환산액
사업예산 설정 (A)	’25.7.21. (계획보고)	1USD=1,391.70원	USD 1,450,000	2,017,965,000원
업체 투찰 (B)	’25.12.23. (개찰일)	1USD=1,482.70원	USD 1,443,291 (추정)	2,139,968,300원
(B-A)	-	91원	△6,709달러	122,003,300원

주: 업체는 달러 기준 공고 상한(USD 1,450,000) 이내로 투찰하였으나, 개찰일 환율 적용 시 원화 환산액이 사업예산 초과

자료: 소방청이 제공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함

소방청은 2026년 재입찰 시 계약기준을 달러(USD)로 변경하였으나<sup>3)</sup>, 이는 2025년 입찰 조건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되었어야 할 사항이다. 향후 외화 물품 구매 시에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입찰 조건 설계 단계에서 반영하고 계획보고부터 개찰까지의 기간을 최소화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입찰공고서 제8.4.3.1항에는 "개찰일 최초 고시 매매기준 환율로 환산하여 협상적격 여부를 정하므로, 환산된 입찰금액이 원화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었다.

3) 소방청은 2026년 재입찰 시 '25년 공고의 원화 사업예산 상한 조항(8.4.3.1.)을 삭제하였으며, '26년 공고에는 "본 공고에 의한 계약은 USD(달러)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1.6.1.)", "입찰가격 평점산식 중 추정가격은 USD 1,395,000을 적용합니다(8.4.2.)"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료: 나라장터(www.g2b.go.kr), 「대형헬기(S-92) 배면물탱크 구매」 입찰공고(공고번호 R26BK01519464-000), 검색일: 2026.5.13.)

**둘째, 2022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추진된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은 추경 편성 후 4~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4대가 미완료 상태이다.**

2022년 강원·경북 산불 재난을 계기로 대형 산불현장에서의 소방헬기 대응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 제2회 추경을 통해 총 10대<sup>4)</sup>의 헬기에 배면물탱크를 설치하는 예산이 반영되었다. 국고보조(50%) 방식으로 국고보조금은 각 시·도에 교부되어 2023년까지 집행 완료되었으며, 배면물탱크 장착을 위한 수리개조 및 장착 단계는 지방비로 추진하였다. 2026년 현재 수리개조·장착이 완료되지 않은 건은 총 4대로, 2026년 말 또는 2027년 내 완료를 예정하고 있다.

[2022년 제2회 추경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 중 2026년 미완료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국고보조 단계 (완료)				향후 계획 <sup>2)</sup>
	국고보조금 교부액 <sup>1)</sup>	지방비 편성액 (추가액)	집행액 (실집행액)	미집행 잔액	
충남	654,750	1,046,750 (392,000)	1,702,000	217,000 <sup>3)</sup>	배면물탱크 장착 용역 진행 중 (‘26.4.~’26.6.)
전남	654,750	1,216,750 (562,000)	1,871,000 (1,721,000)	150,000	배면물탱크 장착 예정 (‘26년 8월)
경기	654,750	1,562,750 (908,000)	1,967,000 <sup>4)</sup> (1,809,000)	158,000	배면물탱크 장착 예정 (‘26년 11월)
광주	654,750	654,750	1,309,000	0	배면물탱크 장착 계약 예정(‘27년) 2027년 본예산 반영 (약 630백만원)

주: 1) 국고보조금은 2022년 6월에 일괄 교부함

2) 향후계획은 현재 지방비 자체 추진 단계로 진행 중임

3) 충남 미집행잔액 2억 1,700만원은 지체상금 도래(‘25.8.7.) 분으로, 사업종료 시 지체상금 부과액과 상계처리 예정

4) 경기 2억 5,000만원은 2024년 불용·반납

자료: 소방청

4) 2022년도 제2회 추경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은 소방청(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소방헬기 2대, 시·도소방본부 소속 소방헬기 8대(부산 1대, 광주 1대, 경기 1대, 강원 2대, 충남 1대, 전북 1대, 전남 1대)에 예산이 배정되었다. 2026년 기준 5대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중앙119구조본부 2대, 부산 1대, 강원 1대, 전북 1대), 강원 1대는 추경 편성 이후인 2022년 하반기에 구형 AW139 헬기용 배면물탱크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장착이 불가하여 불용 처리되었다. 나머지 4대(광주·경기·충남·전남 각 1대)는 2026년 5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소방청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을 헬기 제작사인 이탈리아 Leonardo사의 SB(Service Bulletin)<sup>5)</sup> 발행 지연으로 설명하고 있다. 2022년 추경 편성 당시 SB 발행이 결정된 상태였으나 실제 최초 발행은 2024년 초에 이루어졌고, 이후 2025년 하반기까지 수차례 수정이 반복되면서 부품 수급 및 개조 일정이 연계하여 지연되었다. 2025년 하반기 SB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개조 설계 및 소요 부품 규격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부품 제작이 진행 중이다. 충남은 배면물탱크 장착 용역이 진행 중이며, 전남·경기는 2026년 하반기에 장착 예정이다. 광주는 2027년 본예산에 약 6억 3,000만원을 반영하여 장착 계약을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 완료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사업은 추경 편성 당시 SB 발행 결정만 있었을 뿐 실제 발행까지 약 2년, 확정까지 약 3년이 소요되는 등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이 장기화되었다. 향후 유사한 외산 장비 도입 사업의 경우 제작사 기술 지침 확정 일정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사업 일정에 반영하고 단계별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선제적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소방청은 교부 이후에도 시·도별 추진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속한 완료를 촉구하는 등 사업관리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

5) SB(Service Bulletin)는 항공기 제작사가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기술 서비스 회보로, 항공기의 안전성 향상, 성능 개선 또는 특정 장비(배면물탱크 등) 장착을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 수정 지침 및 설계 변경 절차를 의미한다.(자료: 소방청)



인사혁신처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20억 5백만원이며, 623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5%인 623억 5,0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6,1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2,005	62,005	62,005	62,350	62,090	261	-	99.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6조 4,085억 6,700만원이며, 이 중 99.9%인 6조 4,085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27억 9,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408,567	6,408,567	6,408,567	6,405,777	-	2,790	99.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 나. 기금 결산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33조 7,736억 8,700만원이며, 55조 2,565억 9,897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0.0%인 33조 1,312억 5,600만원을 수납하고 1,646억 8,215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13억 7,455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기금	33,773,687	33,773,687	33,773,687	55,256,599	33,131,256	164,682	1,375	60.0

자료: 인사혁신처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33조 7,736억 8,700만원이며, 이 중 98.1%인 33조 1,312억 5,605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없으며 3,082억 4,617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공무원연금기금	33,773,687	33,773,687	33,773,687	33,131,256	0	308,246	98.1

자료: 인사혁신처

###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은 22조 7,117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805억 6,600만원(5.0%)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7,337	6,519	6,519	6,604	85	△733
기금	21,623,822	23,136,465	23,136,465	22,705,121	△431,344	1,081,299
합계	21,631,159	23,142,984	23,142,984	22,711,725	△431,259	1,080,56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총지출은 2조 8,308억 2,5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6,141억원(6.0%)이 증가하였다.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4 결산(A)	2025				전년 대비 (C-A)
		예산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19,028	235,751	235,751	232,961	2,790	13,933
기금	26,475,073	28,383,535	28,383,535	28,075,289	△308,246	1,600,216
합계	26,694,101	28,619,286	28,619,286	28,308,250	△305,456	1,614,149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인사혁신처의 자산은 24조 5,579억 5,200만원, 부채는 1,136조 5,663억 4,000만원으로 순자산은 △1,112조 83억 8,8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7조 2,749억 2,100만원, 유·무형자산 7조 2,484억 6,700만원, 기타자산 345억 6,4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조 6,069억 6,700만원(11.9%)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투자증권과 기타현금성자산의 증가 등에 따른 금융자산의 전년 대비 2조 5,128억 200만원 증가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4조 9,489억 4,700만원, 총당부채 1,131조 2,057억 4,000만원, 기타부채 4,116억 5,3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6조 7,707억 5,900만원(2.4%)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공무원연금총당부채 등의 증가에 따른 총당부채 26조 1,961억 9,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4,557,952	21,950,985	2,606,967	11.9
Ⅰ. 금융자산	17,274,921	14,762,119	2,512,802	17.0
Ⅱ. 유·무형자산	7,248,467	7,170,272	78,195	1.1
Ⅲ. 기타자산	34,564	18,594	15,970	85.9
부 채	1,136,566,340	1,109,795,581	26,770,759	2.4
Ⅰ. 차입부채	4,948,947	4,609,177	339,770	7.4
Ⅱ. 총당부채	1,131,205,740	1,105,009,548	26,196,192	2.4
Ⅲ. 기타부채	411,653	176,855	234,798	132.8
순 자 산	△1,112,008,388	△1,087,844,595	△24,163,793	△2.2
Ⅰ. 기본순자산	4,688,907	4,688,907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123,435,418	△1,098,213,304	△25,222,114	△2.3
Ⅲ. 순자산 조정	6,738,123	5,679,802	1,058,321	18.6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6조 6,587억 6,4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61조 3,234억 3,800만원, 관리운영비 1,017억 3,300만원, 비배분비용 412억 1,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8조 5,586억 1,600만원, 비배분수익 7,469억 4,700만원, 비교환수익 등 5조 5,020억 6,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 대비 3조 8,878억 7,400만원(10.2%) 증가한 42조 1,608억 2,800만원이며, 이는 주로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 설정 시 발생하는 비용 증가 등에 따라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4조 1,359억 2,6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공무원연금급여지급 프로그램(42조 6,983억 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737억 500만원과 경비 280억 2,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자산처분손실 242억 2,600만원과 기타비용 169억 9,300만원, 비배분수익은 이자수익 1,785억 7,800만원, 자산처분이익 3,678억 8,500만원, 배당금수익 1,863억 6,200만원 및 기타 141억 2,200만원, 비교환수익은 기타이전수익 5조 5,020억 6,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42,764,822	38,628,896	4,135,926	10.7
가. 프로그램 총원가	61,323,438	56,222,942	5,100,496	9.1
나. 프로그램 수익	18,558,616	17,594,046	964,570	5.5
II. 관리운영비	101,733	97,869	3,864	3.9
III. 비배분비용	41,219	14,380	26,839	186.6
IV. 비배분수익	746,947	468,192	278,755	59.5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42,160,828	38,272,954	3,887,874	10.2
VI. 비교환수익 등	5,502,064	4,943,690	558,374	11.3
VII. 재정운영결과(V-VI)	36,658,764	33,329,264	3,329,500	10.0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087조 8,445억 9,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112조 83억 8,8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4조 1,637억 9,300만원 (△2.2%)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 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36조 6,587억 6,400만원 발생한 반면 순자산 가산 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3조 4,078억 2,200만원, 조정항목은 9조 871억 4,8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기타이전수익 등 재원의 조달 6조 4,082억 4,8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기타이전비용 등 재원의 이전 3조 4억 2,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 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익 8,753억 2,600만원, 자산재평가이익 1,829억 9,500만원, 보험수리적손익 8조 288억 2,7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087,844,595	△1,016,012,100	△71,832,495	△7.1
II. 재정운영결과	36,658,764	33,329,264	3,329,500	10.0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407,822	3,024,654	383,168	12.7
IV. 조정항목	9,087,148	△41,527,885	50,615,033	121.9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1,112,008,388	△1,087,844,595	△24,163,793	△2.2

자료: 인사혁신처

## 마. 재정 구조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6조 1,728억원 전출되었으며,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반회계로 555억원 전입되었다.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교육기관교류협력 사업**, ② **국가인재원 기본경비 사업**이 있다.

교육기관교류협력 사업은 홍보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액(4억 800만원 → 3억 6,600만원)되었고, 국가인재원 기본경비 사업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가 감액(28억 9,700만원 → 28억 7,900만원)되었다.<sup>1)</sup>

---

1) 국회,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4.12.

인사혁신처는 ① 유능하고 역량있는 공무원 선발·육성, ② 디지털 기반 인사관리 정착 및 행정한류 확산, ③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공직사회 신뢰 제고, ④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재정 운영 및 기금운용수익 제고를 2025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인사혁신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재해보상 심의의 적시성과 신뢰성은 재해보상제도의 핵심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처리 지연, 심사결과 불복소송 확대,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이·전용 증가 등 관리·예산 전반에 걸쳐 문제가 누적됨으로써 재해공상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반환되어야 할 수탁금 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유보된 결과 2025년 결산 기준 누적 잉여금이 8,851억 원 수준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 재정운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준용한 잉여금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공무원 재해보상사업운영 현황 분석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하고 직무복귀를 지원하며,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공무원 및 그 유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이다.

기존에는 금전적 보상에 초점을 두고 공무원연금공단의 재해보상급여사업으로 운영했으나 「공무원 재해보상법」(18.9.)이 제정되면서 재해예방·보상·재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을 재해예방과 심의회·연금위원회 운영 내역사업으로 구성하여 추진 중이다.

[공무원재해보상운영 사업 체계]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 용	집행액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운영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합리적 보상 심사 추진	637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 등	공무상 요양 등의 불승인 건에 대한 특별행정심판을 통해 공상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재해보상 제도 개선·홍보를 통한 공직사회의 재해보상 인식 제고	207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공무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1,643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건강·안전 협력 네트워크 확립, 기관별 위험요인 진단 체계 마련, 맞춤형 컨설팅, 인식제고 교육 등을 통한 범정부 건강안전 추진기반 조성	99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 1-1. 재해보상심의 심의·심사 지연에 따른 재해공상자 부담 가중 해소 필요

### 가. 현황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sup>1)</sup> 사업은 재해보상에 대한 합리적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경비에 관한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전용 증액을 통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사업의 2025년 예산현액 6억 3,800만원 중 6억 3,700만원(99.9%)을 집행하였으며,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 사업의 2025년 예산현액 2억 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공무원재해보상 사업운영	2,591	2,591	-	±131	2,591	2,586	-	5	2,813
공무원 재해 보상심의회 운영	568	568	-	±131	638	637	-	1	671
공무원 재해 보상 연금 위원회 운영 등	207	207	-	-	207	207	-	-	226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 나. 분석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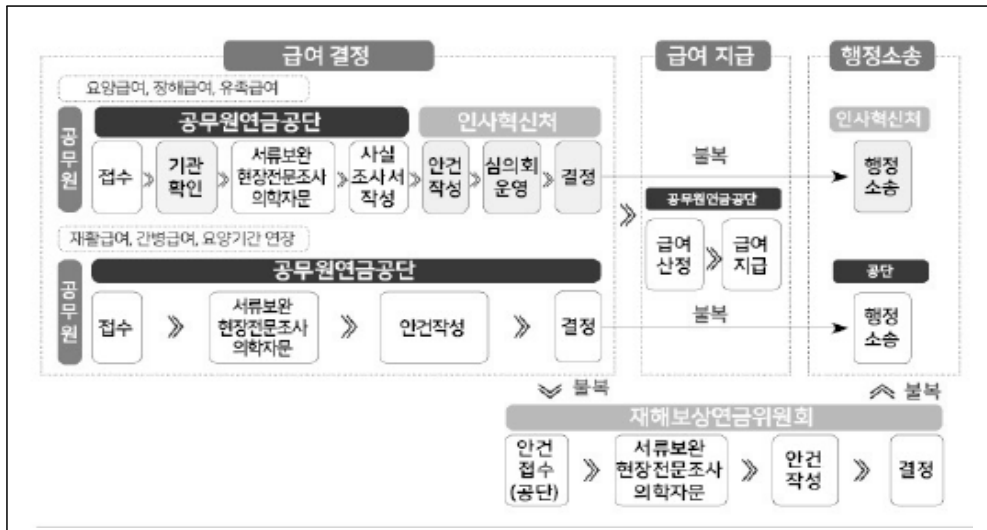
재해보상 심의의 적시성과 신뢰성은 재해보상제도의 핵심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처리 지연, 심사결과 불복소송 확대,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이·전용 증가 등 관리·예산 전반에 걸쳐 문제가 누적됨으로써 재해공상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44-306

재해공무원 등이 재해보상 급여를 청구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이 신청서와 경위조사서, 진단서 등 필수서류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하고, 인사혁신처는 해당 안건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에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진다.<sup>2)</sup> 따라서 재해보상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심의회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의결이 핵심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급여처리 흐름도]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최근 5년간(2021~2025년) 재해보상심의 처리 내역을 보면, 신규 접수 건이 증가 추세인 가운데 이전년도 이월 건이 2021년 1,189건에서 2025년 2,186건으로 두 배 가까이 누적되면서 심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sup>3)</sup> 처리기간 측면에서도 평균처리기간이 2025년 기준 116일을 상회하고 최대처리기간은 요양급여의 경우 950일, 장애급여 386일, 순직유족급여 433일에 달한다.

2) 동 심의회 결정에 대해 청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 재심을 진행하며, 재심 결과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3) 단, 인사혁신처는 일부 사례의 경우 직전년도 말에 접수되어 이월된 건이라고 설명하였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처리 및 이월 현황]

(단위: 건, 일)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심의회부건수 <sup>1)</sup>	6,538	6,855	8,689	9,892	9,377
해당연도 신규접수	5,349	5,609	6,775	7,364	7,191
이전년도 이월 건	1,189	1,246	1,914	2,528	2,186
가결건수	5,654	5,962	7,508	8,036	7,416
평균처리기간 <sup>2)</sup>	113.4	98.5	107.8	133.5	116.4
요양급여	71.2	65.3	69.4	74.9	69.4
장해급여	123	86.7	91.2	141.5	130.1
순직유족급여	146	143.4	162.7	184.2	149.7
최대처리기간					
요양급여	794	771	827	890	950
장해급여	1,217	295	435	1,510	386
순직유족급여	324	406	790	1,505	433

주: 1) 공무상 요양, 재요양·추가상병, 장해급여, 장해재판정, 순직유족급여를 모두 합한 건을 의미

2) 공단접수일~심의일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재심 절차를 담당하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처리 현황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최근 5년간 신규접수와 이월 건수 모두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25년은 이전년도 이월 건이 전년 대비 1.9배인 832건으로 총 심사대상 2,010건 중 765건을 처리하고 1,245건은 차년도로 이월되었다.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처리 및 이월 현황]

(단위: 건, 일)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심사대상	893	917	1,111	1,516	2,010
해당연도 신규접수	682	647	788	1,076	1,178
이전년도 이월 건 <sup>1)</sup>	211	270	323	440	832
처리건수	626	589	670	682	765
평균처리기간	145	186	188	247	357
최소처리기간	88	79	79	52	30
최대처리기간	416	509	478	442	555

주: 1) 이전년도 이월 건은 연도별 심사건수 중 이전년도에 이송된 건에서 철회·종결건수 제외

자료: 인사혁신처

처리 지연과 함께 심의회·연금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도 2020년 145건에서 2025년 371건으로 약 2.6배 증가하였으며, 진행 중인 소송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17건에서 249건으로 늘어나 소송 적체 또한 심화되고 있다. 정부 측 승소율은 2022년 84.3%에서 2024년 73.2%로 하락한 뒤 2025년 90.2%로 반등하였다. 그러나 전체 수행 371건 중 33%만 확정된 시점의 수치로, 249건의 진행 중인 사건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심의 품질 개선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더불어 소송 제기 건수와 사건 적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일부 연도의 결정 유지율이 높게 나타나더라도 심의 단계에서의 판단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0~2025년 재해보상 행정소송 수행 현황]

(단위: 건, %)

연도	수행			확정				진행중 (A-B)
	계(A)	이월	신규	계(B)	승소	패소	승소율	
2020	145	47	98	28	19	9	67.9	117
2021	204	117	87	59	49	10	83.1	145
2022	260	145	115	83	70	13	84.3	177
2023	273	177	96	93	78	15	83.9	180
2024	299	180	119	97	71	26	73.2	202
2025	371	202	169	122	110	12	90.2	249

자료: 인사혁신처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청구 건수 증가로 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인력과 예산이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편성되어 회의 개최 확대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질환·악성종양 등 발생 기전이 복잡하여 인과관계 판단이 어려운 사안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심의 난이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위원 참석·검토 수당 단가가 낮아 심사위원 확보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하였다.

[2021~2025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회의개최 횟수]

(단위: 회, 명, 천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회의 개최 횟수	113	107	109	105	104
회별 평균 참석 위원수	10~12	10~12	10~12	12~14	12~14
위원 수당 지출	275,158	270,362	279,939	296,414	328,960

자료: 인사혁신처

그러나 심의가 지연되는 기간 동안 재해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부는 치료비와 생계부담 감당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된다. 이는 재해보상제도가 표방하는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심의 지연 자체가 재해공무원 가족에게 또 다른 형태의 피해로 작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과 인력의 한계상 심의회 개최 확대가 어렵다고 하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5년간 회의 개최 확대를 위한 예산조정은 없었으며, 오히려 회의 개최비용 및 심사수당을 위해 편성된 일반수용비의 일부를 매년 소송비용 부족분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전용·세목조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처리지연 최소화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예산조정 내역]

구분	~에서		금액	~으로	비고
	세부사업 명	목-세목		목-세목	
전용	공무원 재해보상 사업운영	일반용역비	70	배상금	마음건강센터 운영용역비 → 소송비용
세목조정		일반수용비	18	공공요금및제세	심의위원 수당 → 우편발송료 → 소송비용 → 심의회 지원차량 임차료
전용			36	배상금	
세목조정			5	임차료	

자료: 인사혁신처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심사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체계 확립을 통해 재해공무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회의 개최, 전문성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1-2.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실효성 제고방안 모색 필요

### 가. 현황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sup>1)</sup> 사업은 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공무상 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2025년 예산현액 16억 4,500만원 중 99.9%인 16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공무원재해보상 사업운영	2,591	2,591	-	±131	2,591	2,586	-	5	2,813
공무원 마음 건강센터 운영	1,715	1,715	-	△70	1,645	1,643	-	2	1,815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는 직무스트레스와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전문심리상담을 제공하고자 인사혁신처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① 공무원의 우울·불안, 직무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경력개발 등에 대하여 진행되는 개인상담 프로그램, ② 스트레스, 진로, 인지, 정서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진단 및 심리검사 프로그램, ③ 공무원 재해예방·심리안정 촉진을 위한 다수인(人) 참여 프로그램과 민원 담당 공무원·신입공무원 등 정책대상별 단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음건강센터의 상담대상은 공무원 및 그 가족, 순직 공무원 유족 등이다.<sup>2)</sup>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44-306

2)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나, 소방청(‘찾아가는 상담실’)과 경찰청(‘경찰 마음동행센터’)은 자체 운영 중인 상담프로그램의 적합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우선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마음건강센터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구 분		분야 및 내용	
개인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울·불안, 직무 스트레스, 직장 내 갈등, 대인관계, 가족관계, 경력개발, 리더십 등</li> </ul>	상시
진단 및 심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트레스, 진로, 인지, 정서 등에 대한 대면·비대면 검사</li> </ul>	상시
단체 프로그램	일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 단체프로그램</li> <li>- 재해 예방 프로그램, 신규공무원 직무 적응, 개별 부서 요청에 따른 기획 프로그램 등</li> </ul>	월 1~2회
	맞춤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임공무원 직무적응 지원 프로그램</li> <li>민원담당공무원 특별관리 프로그램</li> <li>고위험임무 수행자 PTSD 예방지원 프로그램</li> <li>긴급 위기지원시스템</li> <li>공상공무원 직무복귀 지원 프로그램</li> </ul>	개별 요청에 따라 조정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나. 분석의견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사업은 센터 확충에도 불구하고 핵심 서비스인 개인상담 이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별 접근성 격차, 상담사 배치 불균형, 수요자 피드백 체계 미흡 등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센터별 운영 실태의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요양 승인 건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 승인 건수가 2021년 167명에서 2025년 326명으로 95.2% 급증하였으며, 2025년 기준 전체 질병 요양 승인 건수의 54.3%를 차지하는 등 공무원 직무환경에서의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2021~2025년 요양질병급여(정신질환) 신청 및 승인건수]

(단위: 명)

연도	구분	전체	일반직	교육직	경찰직	소방직	우정직
2021	승인	167	31	106	4	8	1
	신청	258	54	145	12	13	1
2022	승인	274	45	160	15	26	5
	신청	335	65	186	20	29	6
2023	승인	288	50	181	19	20	6
	신청	393	96	216	26	25	10
2024	승인	386	29	311	7	20	2
	신청	578	74	413	18	31	5
2025	승인	326	36	234	12	25	1
	신청	510	78	312	32	44	5

자료: 인사혁신처

정부도 이를 고려하여 공무원 마음센터 개소를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2025년 현재 전국적으로 10개 센터를 운영 중<sup>3)</sup>이다. 센터 운영업체가 활용하는 진단도구 방식에 따라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는 진단 및 심리검사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21~’25년) 마음건강센터의 이용 인원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2021~2025년 공무원 마음센터 상담인원 및 건수]

(단위: 명, 건)

연도	합계		개인상담		진단 및 심리검사		단체프로그램	
	이용인원	이용건수	이용인원	이용건수	이용인원	이용건수	이용인원	이용건수
2021	34,039	32,279	9,111	15,047	10,659	16,046	14,269	1,186
2022	27,533	25,643	8,333	12,527	5,855	12,169	13,345	947
2023	35,510	75,938	7,355	13,886	12,412	60,993	15,743	1,059
2024	39,456	40,667	7,030	15,122	15,400	24,518	17,026	1,027
2025	40,937	34,751	6,590	13,721	12,231	19,771	22,116	1,259

자료: 인사혁신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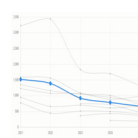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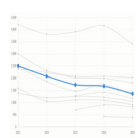
3) 2026년 2월 전북센터가 개소하여 11개 센터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심리지원 기제 가운데 공무원의 직무고충 해소와 심리적 안정화를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핵심 서비스는 개인상담이라 할 수 있는데, 2023년 이후 마음건강 센터가 4개소 추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센터에서 개인상담을 이용한 공무원 수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특정 센터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며, 전년도 대비 실적을 비교하더라도 2025년에 개소한 경남센터와 광주센터를 제외한 전 센터에서 감소가 확인된다. 한편, 복수 회기 상담이 단회 상담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심리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용 인원보다 상담 건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전년 대비 하향 추세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를 종합하면, 최근 5년간 센터 확충 등 외연적 인프라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대상 개인상담 서비스의 실제 수혜규모와 실효성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21~2025년 센터별 개인상담 서비스 제공 현황]

(단위: 명, 건)

연도	서울센터		경기센터		대전센터		세종센터		대구센터		광주센터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2021	1,227	3,001	1,594	2,383	1,352	2,473	3,223	4,204	770	1,596	945	1,390
2022	1,075	2,320	1,558	2,252	1,157	1,872	3,438	3,820	450	1,059	655	1,204
2023	1,067	2,090	1,086	2,031	1,045	1,478	1,834	3,917	516	1,118	692	1,263
2024	884	2,092	945	1,992	1,008	1,767	1,702	4,162	506	1,104	615	1,227
2025	980	2,040	809	1,812	709	1,302	1,319	3,417	427	917	661	1,064
연도	인천센터		강원센터		제주센터		경남센터		상담인원 추이		상담건수 추이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인원	건수				
2023	743	1,285	372	704	-	-	-	-				
2024	711	1,432	438	912	221	434	-	-				
2025	476	1,171	375	840	195	390	639	768				

자료: 인사혁신처

지역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11개 시·도에만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미설치 6개 시·도는 인접 센터의 관할구역에 편입되어 통합 운영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울산 권역과 같이 지리적 범위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단일 센터가 운영되는 경우, 원거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당한 이동 시간과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접근성 문제가 발생한다.

[2025년 센터별 관할권역 및 상담건수 비교]

(단위: 명, 건)

구분	관할 권역	위치	상담사 수	상담건수			
				개인	진단·검사	단체	합계
서울센터	서울, 경기(북부)	서울청사	3	2,040	1,267	70	4,338
경기센터	서울, 경기(남부)	과천청사	3	1,812	2,523	75	4,981
대전센터	대전, 충남	대전청사	3	1,302	2,060	251	4,784
세종센터	세종, 충북	세종청사2	5	3,417	4,708	161	9,073
대구센터	대구, 경북, 울산	대구청사	2	917	3,440	69	5,105
광주센터	광주, 전북 <sup>1)</sup> , 전남	광주청사	2	1,064	2,044	103	3,537
인천센터	인천	인천청사	2	1,171	1,993	146	3,424
강원센터	강원	춘천청사	2	840	881	104	1,825
제주센터	제주	제주청사	2	390	360	201	951
경남센터	경남, 부산	경남청사	2	768	495	79	1,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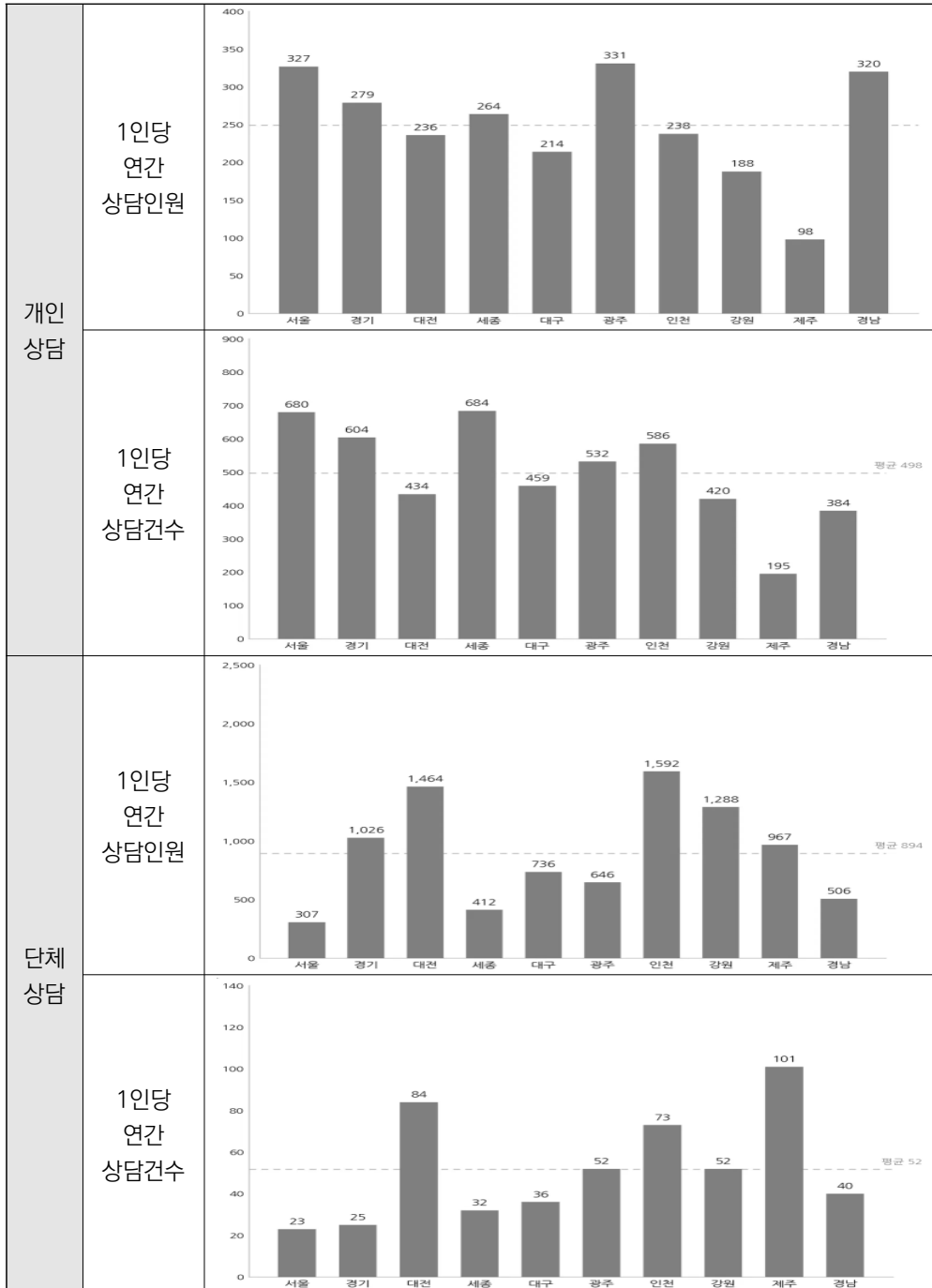
주: 1) 2026년 2월 전북센터 개소

자료: 인사혁신처

상담 인력의 배치 현황을 보면, 세종센터를 제외한 전 센터에서 관할 권역 내 공무원 수나 상담 실적 등 수요 지표와 무관하게 서울·경기·대전은 3인, 그 외 센터는 2인의 상담사를 일률 배치하고 있다. 그 결과, 센터별 상담사 1인당 업무 부담에 상당한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마음건강센터 상담사 1인당 평균 상담 인원은 전국 평균 248명이나, 최대 331명에서 최소 98명으로 격차가 크며, 상담 건수 역시 최소 195건에서 최대 683건에 이르는 센터별 불균형이 확인된다. 단체프로그램 운영 실적에서도 대전센터가 84건을 진행한 반면 수도권 센터는 23~25건에 그쳐 편차가 두드러진다. 아울러 상담 대상자 1인당 평균 상담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센터가 있는 반면, 일부 센터는 평균 3회 이상을 제공하고 있어 서비스의 집중도와 품질 면에서도 센터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센터별 상담사 1인당 연간 상담실적]

(단위: 명, 건)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상담사 추가 채용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이 있으며, 미설치 지역 공무원의 접근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관 단위 신청을 통한 ‘찾아가는 심리상담’ 사업을 단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마음건강센터의 문제를 전반적인 인력·개소 수 부족이라는 단선적 차원으로만 접근해서는 사업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센터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종류와 업무 강도, 피상담자 1인당 상담 횟수 등 운영 방식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에 기반한 인력 재배치나 자원 배분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로, 서울형 심리지원센터 등 정신건강복지센터들의 일반적인 상담사 1인당 상담건수는 월 40~50건인데, 일부 센터는 이보다 적은 24건을 진행하는 곳도 있는 반면 인천 일부 지역은 55건<sup>4)</sup>에 달한다.

나아가 권역별 공무원들이 실제로 어떠한 유형의 심리지원을 필요로 하는지, 제공 서비스가 그 수요에 부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비스를 이용한 공무원에 대한 만족도는 단일 문항의 5점 척도로만 확인하고 센터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는 수요자 중심의 피드백 체계도 마흡한 상황이다. 단순한 투입 자원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현장에서 작동 방식과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환류 체계 구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마음건강센터별 운영 실태와 수요자 요구에 대한 체계적 진단을 바탕으로 인력 배치 기준을 합리화하고, 서비스 품질 관리 및 수요자 피드백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4) 진단검사를 제외한 개인상담 및 단체상담건수 기준

소청심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1)에 근거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이자, 행정청의 결정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판단하는 준사법적 의결기관이다.<sup>2)</sup>

소청심사위원회는 원활한 소청심사 및 고충처리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된 소청심사기본경비의 2025년 예산현액 5억 4,400만원의 96.8%인 5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을 불용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본적 업무 수행과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의 2025년 예산현액 1억 900만원의 86.8%인 9,4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소청심사기본경비 및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소청심사 기본경비	544	544	-	-	544	544	-	18	821
소청심사 기본경비(총액)	108	108	-	1	109	94	-	14	11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국가공무원법」

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2)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은 국회사무처,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해당 소청심사위원회를 두어 심사·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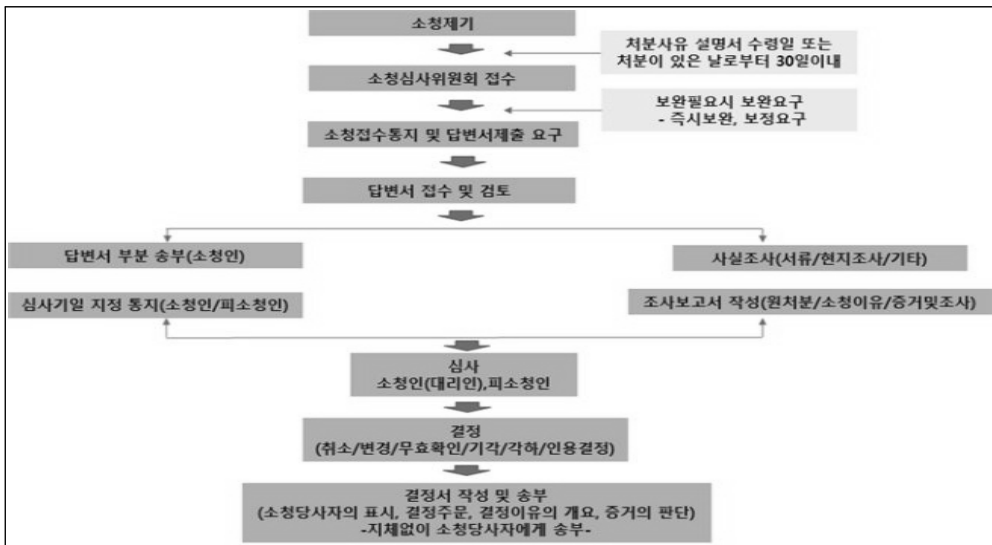
## 2-1. 소청심사 처리 지연 문제 개선 필요

### 가. 현 황

소청심사제도<sup>1)</sup>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이다. 이는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회의 핵심 기능으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 제도를 확립하고, 간접적으로 행정의 자기 통제 효과를 강화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는 징계 또는 불리한 처분 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며, 이후 위원회가 처분청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심리 기일을 정하면, 소청인은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을 마친 후 위원회의 최종 결정(취소, 변경, 기각 등)을 송달받게 된다.

[소청심사 절차]



자료: 소청심사위원회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7018-252

## 나. 분석의견

소청심사 청구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2025년도 심사처리율은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에 그치며, 법정 처리기한 초과 건수가 전체의 75%에 달하는 등 처리 지연이 상당한 수준이므로 소청심사 운영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소청심사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 접수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3년 885건으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세로 전환되어 2024년 966건, 2025년 1,093건을 기록하였다. 반면, 처리건수는 2021년 846건에서 2023년 940건으로 증가한 이후 2025년 920건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처리율은 2025년 기준 84.2%(당해연도 접수 건 처리율 62.9%)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21~2025년 소청심사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

연도	접수건수 (A)	처리건수 (B)	당해연도 접수건 처리건수(C)	처리율 (B/A)	처리율 (C/A)	심사결과			
						인용			기각· 각하 등
						최소	변경	소계	
2021	955	846	697	88.6	72.9	53	163	216	624
2022	850	821	568	96.6	66.8	40	149	189	632
2023	885	940	672	106.2	75.9	19	201	220	720
2024	966	883	670	91.4	69.4	32	196	228	655
2025	1,093	920	687	84.2	62.9	45	222	267	653

주: 접수건수 대비 처리건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전년도 접수 건에 대해 해당연도 심사처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의함

자료: 소청심사위원회

저조한 연내 처리율은 전반적인 처리 지연에 기인하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6조제5항<sup>2)</sup>에 따라 소청심사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청구 건이 해당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2025년의 경우 60일 이상 소요된 건이 전체 처리 건수의 90.3%를 차지한다. 다만, 동 법령에서는 사건이 복잡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법정 최대 시한인 90일을 준수하지 못한 심사 건이 71.2% 수준<sup>3)</sup>이다. 더불어 이 기간은 심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만을 의미하며, 결정 이후 결정문 작성 및 당사자 송달까지 통상 2주 내외의 추가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21~2025년 소청심사 접수 후 심사완료까지 소요기간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1~60일	130 (15.4)	280 (34.1)	203 (21.6)	253 (28.7)	89 (9.7)
61일~90일	460 (54.4)	290 (35.3)	379 (40.3)	479 (54.2)	176 (19.1)
90일 이상	256 (30.3)	251 (30.6)	358 (38.1)	151 (17.1)	655 (71.2)
합 계	846 (100.0)	821 (100.0)	940 (100.0)	883 (100.0)	920 (100.0)
평균소요일	90.9	103.4	95.9	108.0	136.1

주: 괄호 안은 비율(%)을 의미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2) 「국가공무원법」

제76조(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단, 이는 취하, 이송, 연기, 보류 사건을 포함한 기간으로 이를 제외하면 2025년 기준 102.4일이다.

한편, 소청심사위원회는 2025년 당해연도 접수된 637건 중 90일을 초과한 538건 중 30건(5.6%)에 대해서만 연기결정 통보를 이행하였다. 이중 접수일로부터 90일 이전 통보 건은 9건, 91일~110일 경 통보한 건은 14건, 110일을 초과한 날짜에 통보한 건이 7건이다.

[90일 초과 소청청구 건 연기결정 통보현황]

(단위: 건, %)

처리기간 별 건수			연기결정 통보 시기					
90일 이내	90일 초과	합계	이행				미이행	합계
			90일 이내	91~110일	110일 초과	소계		
99	538	637	9 (1.7)	14 (2.6)	7 (1.3)	30 (5.6)	508 (94.4)	538 (100)

주: 괄호 안은 비율(%)을 의미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인사혁신처는 이에 대해 심사 건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인력이 고정된 상황에서 1인당 검토 가능 건수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미처리 건이 차년도로 이월되며, 전년도 이월 물량을 우선 소화하는 과정에서 당해연도 심사 건수가 재차 차년도로 이월되는 악순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였다.

[2021~2025년 심사위원회 개최 현황]

(단위: 건)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당해연도 접수건	697	568	672	670	687
안건 수	846	821	940	883	920
개최 수	93	90	97	89	91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작성

그러나 처분의 불확실한 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당사자인 공무원의 신분 안정·생계 유지·업무 복귀 등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처분 결과의 조속한 확정은 해당 공무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속 기관 전반의 인사 관리 및 업무 운영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행 법령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도록 법정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 대해서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도록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처럼 입법자가 처리의 신속성을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과 청구인에게는 시한 준수를 엄밀히 적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법정 기한 내 처리율이 저조한 상황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소청심사는 행정기관이 스스로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하는 행정 내부의 자기 통제 절차로서, 행정소송에 앞서 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법부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권리구제 제도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소청심사 제도의 신속한 권리구제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정 처리기한 내 결정 완료율을 제고하기 위한 운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2. 소청심사위원회 관서운영경비 집행관리 개선 필요

### 가. 현황

관서운영경비는 관서 단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무관·지출관 간의 서류 송부, 계좌 이체 등 지출 절차를 간소화한 경비이며 일반적인 지출원칙의 예외이므로, 정부는 관서운영경비의 금액과 범위를 제한하여 과다 집행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기본경비 및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에 편성된 관서운영경비 총 6억 5,300만원 중 4억 6,667만원을 각 관서로 교부하고, 651만원을 지출관에게 반납하여 최종적으로 4억 6,016만원을 관서로 교부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관서운영경비 결산 현황]

(단위: 원)

사업명	총 교부액	총 반납액	실 교부액
소청심사기본경비	437,979,540	4,655,330	433,324,210
소청심사기본경비(총액)	28,686,000	1,853,500	26,832,500
합 계	466,665,540	6,508,830	460,156,710

자료: 인사혁신처

### 나. 분석의견

소청심사위원회는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있어 관서업무추진비의 예산목적 외 사용 및 특근매식비 일정액 장부결제 등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지출 규정을 위반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였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는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및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편성된 경비이다. 단, 「2025년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월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하고, 특히 연말에 예산을 몰아서 쓰는 등의 행위는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고액집행 시 사적 용도 사용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액이 건당 50만원 이상일 경우 품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청심사위원회의 관서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검토한 결과, 연말(11~12월)에 전체 집행 건수의 33.2%가 집중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지출액은 연간 총지출의 41.8%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 등 공식 행사 일정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연말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25년 소청심사위원회 월별 관서업무추진비 집행현황]

(단위: 건, 원, %)

월	지급 건		지출액		월별 최고액 지급 건명
	건수	비중	금액	비중	
1월	18	3.02	2,372,600	2.95	직원격려 간담회 비용 지급
2월	40	6.70	4,587,300	5.71	조사관 간담회 비용 지급
3월	45	7.54	5,353,700	6.67	직원격려 및 업무발전방안 간담회 비용
4월	35	5.86	4,549,600	5.67	비상임위원 송별오찬
5월	38	6.37	4,444,500	5.53	직원 의견수렴 회의 비용
6월	33	5.53	3,957,050	4.93	과장 송별 만찬
7월	38	6.37	4,299,200	5.35	소청연구모임 비용
8월	40	6.70	4,121,600	5.13	소청연구모임 비용
9월	63	10.55	6,830,600	8.51	업무발전방향 공유 간담회 비용
10월	49	8.21	6,201,000	7.72	명절 시설방문 격려금 지급
11월	76	12.73	9,094,600	11.33	업무 효율성 제고 간담회 비용
12월	122	20.44	24,487,800	30.50	인사혁신처장 및 위원장 표창 부상품 구입
합계	597	100.0	80,299,550	100.0	-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일례로, 12월 집행 내역을 보면 12월 10일 40건(659만원), 12월 26일 41건(654만원), 12월 30일 39건(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중 내부직원 의견청취 및 격려비용 지급 건이 일별 12~14건 수준이고, 기타 금액도 대부분 내부직원 간 회의

및 간담회 비용으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로 명시된 것은 12월 지출 건 122건 중 14건(11.5%)에 불과하다. 더불어 직원 격려를 위한 상품권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건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소청심사위원회는 관서업무추진비가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원칙에 부합하도록 집행되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집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소청심사위원회 관서업무추진비 지출 미부합 집행사례 일부 예시]

(단위: 원)

구분	내역	지급일	지급업체	지급액
연말집중 사용내역 일부예시	행정팀 격려 노고격려 비용	12.26.	본OOO	100,800
	비상임위원 의견수렴 간담회	12.26.	마키OO	480,000
	위원회 최우수 사건 선정회의	12.26.	오OO	304,000
	비서실 직원 의견수렴 간담회	12.26.	진주OO	76,000
	심사팀 격려 오찬비용	13.12 <sup>1)</sup>	마키OO	222,300
	위원회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회의비용	13.12	수미O	346,000
	비서실 직원 격려 오찬비용	13.12	마키OO	102,300
	청년인턴 격려 오찬 비용	13.12	르가OO	158,800
	조사관 업무노고 격려비용	13.12	르가OO	131,600
목적 외 사용	가족의 달 맞이 직원 격려비용(상품권 구매)	-	-	480,000

주: 1) 12월 15일 이후 사용액의 경우 카드사 처리절차에 따라 지급결제일이 13월로 기재  
자료: 인사혁신처

마지막으로 특근매식비를 매월 특정 일자에 일정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일시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근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 또는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및 을지연습 참여 직원을 지급 대상으로 하여, 소요 발생일에 인원당 9,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청심사위원회는 매월 외부 식당에 일정액을 정례적으로 사후결제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집행 방식은 실제 특근 발생 여부 및 대상 인원과 무관하게 정해진 일자에 일괄 지출이 이루어지는 구조로, 특근매식비를 특정일자에 정액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거나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을 일시 집행하는 것은 지급요건 및 단가 기준을 규정한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실제 특근 발생 실적에 기반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2025년 소청심사위원회 특근매식비 하반기 집행내역]

지급일	지급업체	지급액(원)	비고
09.10	풀000000	125,000	8월분 특근매식비
09.25	풀000000	50,000	8월분 특근매식비
09.25	간0000	150,000	8월분 특근매식비
09.25	바0000	300,000	8월분 특근매식비
09.25	한00	300,000	8월분 특근매식비
11.10	간0000	126,000	10월분 특근매식비
11.10	한00	180,000	10월분 특근매식비
11.10	바0000	270,000	10월분 특근매식비
11.25	풀000000	115,000	10월분 특근매식비
11.25	바0000	549,000	10월분 특근매식비
12.10	풀000000	115,000	11월분 특근매식비
12.26	간0000	90,000	11월분 특근매식비
12.26	바0000	441,000	11월분 특근매식비
13.12	풀0000	220,000	12월분 정산
13.12	바0000	297,000	12월분 정산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따라서, 소청심사위원회는 관서업무추진비의 연말 집중집행 및 목적 외 사용, 장부결제 등 집행지침상 지급 규정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관서운영경비 집행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예산이 목적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sup>1)</sup>는 고위정책과정, 전문교육과정, 디지털역량교육과정, 글로벌역량강화과정, 외국공무원교육과정, 교육운영부대경비 등으로 구성되는 국가 공무원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인사혁신처는 2025년 예산현액 20억 3,200만원 중 19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가인재원수입 대체경비	2,032	2,032	-	±9	2,032	1,977	-	55	2,001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 나. 분석의견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사업은 국내 공무원 과정의 초과 수입이 외국공무원 과정의 지출 부족분을 충당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과정별 교육비 산정의 적정성 제고와 초과 수입의 교육과정 품질 향상 환류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우리나라 공무원과정과 외국공무원 과정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131-650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사업은 유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5년도 기준 고위정책과정, 전문교육과정, 외국공무원과정 등 6개 과정을 운영하였다.

[2025년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교육과정 운영현황]

구분	개요	2025년 실적
고위정책과정	· 고위공무원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1회 65명(44주)
전문교육과정	· 공직자의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대상 직무역량교육 운영	4개과정 9회 198명
디지털역량교육과정	· 공직자의 종합적 디지털 역량 및 정보화 실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 운영	27개 과정 77회 1,812명
글로벌역량교육과정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국외훈련 지원	6개 과정 8회 354명 교육
외국공무원교육과정 (KOICA)	· 베트남 미래지도자 역량강화과정 · 우즈베크 영리더거버넌스 역량강화과정 · 몽골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과정 · 몽골 고위공무원 역량강화과정 · 몽골 성과관리 운영역량강화과정 · 다국가디지털역량강화 과정	5개 과정 5회 74명 교육
외국공무원과정 (외국정부주문형과정)	· 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 · 인도네시아 교육부 공무원 역량강화과정	4개 과정 6회 125명 교육

자료: 인사혁신처

국가인재개발원은 공무원 교육과정의 일부를 수입대체경비 방식으로 운영하며 수강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방식은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수강료 수입을 교육 품질 향상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정책적 취지를 갖는다. 그러나 2025년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정책적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수입대체경비는 수익 창출이 아닌 관련 지출 소요를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수지균형’을 전제로 설계된 제도이나, 코로나19 이후 예산액을 초과하는 징수가 정례화된 반면 세출 집행은 예산액을 하회하면서, 현재 수입이 지출을 20% 이상 상회하는 불균형이 반복되고 있다.

[2022~2025년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수입·지출액 비교]

(단위: 백만원)

구분	수입(A)			지출(B)	차액 (A-B)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2022	1,961	1,749	1,749	1,643	106
2023	1,765	2,065	2,065	1,749	316
2024	1,945	2,293	2,293	1,831	462
2025	2,032	2,384	2,384	1,977	407

자료: 인사혁신처

교육비는 각 부처와 기관의 예산에서 지출되는 만큼 발생한 잉여분이 교육 개선에 환류되지 않는다면 교육 수요기관들이 지불한 재원이 국가 전반의 일반 세출 재원으로 흡수됨을 의미이며, 이는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공무원 교육과정에 비용을 자부담하는 것의 정당성이 수입의 품질 향상 환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보다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거나, 혹은 필요한 재투자와 지출이 지나치게 억제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적정 교육비를 재계상하여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교육비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 초과 수익은 교육생들에게 고품질의 교육 콘텐츠로 환류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특히 과정별로 구분해보면, 우리나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2025년 기준 수입은 10억 700만원이고 지출은 9억 7,200만원으로 수입액이 지출액을 상회하는 반면, 외국공무원 대상 과정은 수입보다 지출액이 크고 매년 21% 수준의 적자가 발생한다. 이처럼 외국공무원대상 과정의 적자를 국내 공무원 대상 과정의 잉여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는 국내 교육생이 사실상 외국 교육생의 재원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023~2025 과정별 수입·지출액 현황 비교]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수입	지출	수입	지출	수입	지출
국가 공무원	고위정책과정	617	606	617	615	617	590
	전문교육과정	32	67	40	67	26	67
	디지털역량교육과정	192	196	192	197	201	197
	글로벌역량교육과정	131	118	135	115	163	118
외국인공무원과정		340	483	510	558	584	706
합 계		1,312	1,470	1,494	1,552	1,591	1,678

주: 1. 외국인공무원과정은 KOICA과정과 외국정부주문형과정으로 나뉘어지나 인사혁신처의 관리계정상 별도 확인이 불가하여 합계액으로 기재  
 2. 국가인재원 수입대체경비 전체 결산액은 과정별 결산액 외 기관교육경비 예산이 포함되어 금액이 상이함  
 자료: 인사혁신처

외국공무원과정은 반복적으로 KOICA가 ODA사업의 위탁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실제 운영 비용 간에 차이가 존재해왔으나 단가 재산정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외국정부주문형 과정은 수입과 지출 간 괴리가 더 크다. 국가인재원은 매년 그 부족분을 국내 공무원 과정의 초과 수입으로 반복적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2025 외국공무원과정 수입·지출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과정명	연도	내역	수입(KOICA→인재원)	지출
외국공무원 과정 (ODA)	2023	베트남 미래지도자 역량강화과정 등	169	265
	2024	몽골 인사행정역량과정 등	329	310
	2025	다국가 디지털 역량강화 과정 등	339	343
과정명	연도	내역	수입(외국정부→인재원)	지출
외국정부 주문형과정	2023	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 등 4개	171	218
	2024	우즈베크 고위급 과정 등 6개	181	248
	2025	몽골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 과정 등 6개	245	363

자료: KOICA와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국가인재원의 수입대체경비 운용에 있어 과정별 소요 산정기준의 적정성 및 재원 운용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초과수입금이 국가공무원 대상 신규과정의 수요 분석과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사업<sup>1)</sup>은 공무원에게 경력설계, 취·창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원활한 사회진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2025년 예산현액 2억원의 91.5%인 1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공무원후생복지 지원	770	770	-	±2	770	748	-	22	706
공무원 전직 지원 컨설팅	200	200	-	-	200	183	-	17	300

주: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 나. 분석의견

전직지원 컨설팅 사업은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 연장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 입찰을 통한 민간업체 선정 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단기·제한적 서비스 제공, 차년도 사후관리 이행 확인 및 관리의 어려움, 서비스 연속성 저하 등으로 실효성 확보에 제약이 있으므로 컨설팅 운영 성과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방식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민간업체를 활용해 퇴직했거나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 경력설계와 취업·창업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직지원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일반회계 2044-303

지원대상은 퇴직 전·후 3년 이내의 국가·지방직 공무원이며 신청자 중 선발된 500인에게는 1:1 맞춤형으로 구직전략 수립 및 일자리 발굴, 채용정보 제공 및 면접 지원,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단, 용역계약상 컨설팅은 사업 종료 후 1년까지 사후관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공무원 전직지원 컨설팅 사업 개요]

참여대상	· 퇴직 전·후 3년 이내 국가·지방공무원									
목적	· 1:1 맞춤형 경력설계 및 컨설팅을 통한 재취업·창업 등 취업 지원									
운영기간	· 계약 체결 후~ 12월 / 기간내 개인별 3회 이상 컨설팅									
운영방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style="border: none;">사업기획 및 공고</td> <td style="border: none;">신청접수</td> <td style="border: none;">계약체결</td> <td style="border: none;">대상자 선발</td> </tr> <tr> <td style="border: none;">사업계획수립 1~2월 입찰공고 3월</td> <td style="border: none;">4월 (2주간)</td> <td style="border: none;">5월</td> <td style="border: none;">6월</td> </tr> </table>		사업기획 및 공고	신청접수	계약체결	대상자 선발	사업계획수립 1~2월 입찰공고 3월	4월 (2주간)	5월	6월
	사업기획 및 공고	신청접수	계약체결	대상자 선발						
사업계획수립 1~2월 입찰공고 3월	4월 (2주간)	5월	6월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 <b>1:1 맞춤형 컨설팅 실시</b>                  · 개인별 3회 이상 대면상담(6~12월)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취업</td> <td>역량분석→구직전략→면접 등 지원</td> </tr> <tr> <td>창업</td> <td>아이템신청→입지조사→상권분석</td> </tr> </table> </td> <td style="width: 5%; text-align: center;">+</td> <td style="width: 45%; text-align: center;"> <b>사후관리</b>                  · 사업 종료 후 1년                  · 정보 지속 제공,                  재취업 준비 지원             </td> </tr> </table>		<b>1:1 맞춤형 컨설팅 실시</b> · 개인별 3회 이상 대면상담(6~12월)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취업</td> <td>역량분석→구직전략→면접 등 지원</td> </tr> <tr> <td>창업</td> <td>아이템신청→입지조사→상권분석</td> </tr> </table>	취업	역량분석→구직전략→면접 등 지원	창업	아이템신청→입지조사→상권분석	+	<b>사후관리</b> · 사업 종료 후 1년 · 정보 지속 제공, 재취업 준비 지원	
<b>1:1 맞춤형 컨설팅 실시</b> · 개인별 3회 이상 대면상담(6~12월)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취업</td> <td>역량분석→구직전략→면접 등 지원</td> </tr> <tr> <td>창업</td> <td>아이템신청→입지조사→상권분석</td> </tr> </table>	취업	역량분석→구직전략→면접 등 지원	창업	아이템신청→입지조사→상권분석	+	<b>사후관리</b> · 사업 종료 후 1년 · 정보 지속 제공, 재취업 준비 지원				
취업	역량분석→구직전략→면접 등 지원									
창업	아이템신청→입지조사→상권분석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2022년 이후 퇴직자 증가와 함께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 연장에 따라 정년과 연금개시일 격차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동 사업의 신청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2026년 퇴직자 및 전직지원컨설팅 신청·선발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퇴직자	44,676	54,993	57,163	55,412	56,781
신청자	451	706	1,270	1,119	959
선발자	450	501	501	517	541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이러한 컨설팅 수요는 대상자의 퇴직(예정)일이나 목표 기업의 채용 일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상반기에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실제 월별 퇴직자수를 보면 상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sup>2)</sup> 특히 창업 컨설팅 수요자의 경우 충분한 사전조사 및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사업은 경쟁입찰에 따른 단년도 용역계약으로 운영되어 조달절차상 민간업체와의 계약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자 선발 후 실질적 대면 컨설팅은 하반기에만 이루어지는 구조이다. 더불어 신청·접수 기간도 매년 특정기간 동안 연 1회만 부여되어 참여자의 수요를 충족하기에 한계가 있다.<sup>3)</sup>

또한 현행 사업은 계약 체결 시 종료 후 1년까지의 사후관리를 과업 내용으로 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인사혁신처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업체와 당해연도 컨설팅 업체가 달라질 경우 전년도 업체의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 노력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

이는 민간부문의 중장년 대상 전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사업과 비교되는데, 중장년내일센터 사업의 경우 전국 38개 센터 중 신청자가 원하는 개소로 수시 접수·방문이 가능하고 전직 단계별로 다른 고용노동부 사업과 연계하여 패키지 지원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중장년내일센터(중장년 전직컨설팅) 사업 개요]

- 고노부 민간경상보조사업
- 전국 38개 센터 중 신청자가 원하는 개소로 지정·방문 가능
- 센터당 전문컨설턴트(직업상담사 자격증, 직업상담교육 경력 5년이상) 5~10인 상주
- 수시 접수 / 1인당 컨설팅 횟수 제한 없음
- 내일이음패키지 사업 중 하나로 전직예정자 대상(만40세이상) 컨설팅
- 생애경력설계-전직스쿨-재도약프로그램으로 체계적 지원
- 2025년부터 내일이음패키지 사업화하여 컨설팅-일경험-취업알선 패키지지원

자료: 고용노동부

2) 일례로, 2024년 퇴직자 55,412명의 월별 분포를 살펴보면, 하반기에는 월 1,800~5,000명 수준인 데 반해 3월에 12,144명, 7월에 10,679명이 집중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역시 총 퇴직자 56,781명 중 3월 10,190명, 7월 10,985명으로 상반기 특정 월에 편중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3) 다만, 인사혁신처는 특정 기간 연 1회 대상자를 선발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6년부터는 수시 모집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일반모집은 4월 초 600명을 선발하고 수시모집은 5월~7월 중 진행하여 약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전직예정 공무원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며, 국방부의 국방전직교육원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공무원연금공단 이 전담 시행주체로서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이 현재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일환으로 퇴직예정 공무원 대상 은퇴 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하여 전직 컨설팅을 함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부연하였다.

그러나 국방전직교육원과 달리, 공무원연금공단에는 현재 전직 컨설팅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컨설턴트 또는 직업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없으며, 컨설팅을 직접 운영해본 경험이 없어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행 중인 은퇴지원교육은 다수를 대상으로 한 집합·온라인 방식의 일방향적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인 1:1 컨설팅과는 그 성격이 상이하다. 또한 국방전직교육원의 경우 상주 컨설턴트 10명 외에 37명의 위촉상담사를 활용하여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나, 위촉상담사를 통한 서비스는 대면 제공이 불가하여 서비스의 내실화에 제약이 있으며, 실효성 측면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있다.<sup>4)</sup>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단순히 민간업체 위탁 방식을 공무원연금공단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오히려 공무원연금공단이 위탁을 받아 이를 다시 민간전문업체에 재위탁하는 구조로 귀결될 경우, 불필요한 행정절차의 증가와 간접비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부터 전직지원 컨설팅 사업을 통해 퇴직공무원의 안정적인 사회 재진입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 연장에 따라 소득공백기가 길어지고 퇴직공무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사업의 추진 여건이 변화하고 정책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사업 추진 방식을 점검하여 보다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정책대상자의 수요와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사업 성과를 면밀히 관리하는 것을 토대로, 퇴직공무원들에게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

4) 국회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사업비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역예정희망자의 취업률이 하락하는 데 대해 '취업지원 사업 중 성과 우수 사업에 한정된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고 성과 저조 사업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한 바 있으며 「2025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는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현 취업지원사업의 사업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 가. 현 황

관서운영경비는 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그 성격상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sup> 즉, 관서운영경비는 관서 단위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무관·지출관 간의 서류 송부, 계좌 이체 등 지출 절차를 간소화한 경비이며 일반적인 지출원칙의 예외이므로, 정부는 관서운영경비의 금액과 범위를 제한하여 과다 집행을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025년 국가인재원 기본경비, 국가인재원 기본경비(총액)을 비롯하여 교육개발평가지원, 교육과정운영, 교육기관교류협력 등 9개 사업에 편성된 관서운영경비 54억 5,500만원을 실교부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관서운영경비 결산 현황]

(단위: 천원)

사업명	교부액	반납액	실교부액
국가인재원기본경비(총액)	184,033	5,685	178,348
국가인재원기본경비	2,286,089	47,181	2,238,908
이러닝센터운영(정보화)	96,114	547	95,567
국가인재원전산운영(정보화)	79,150	20,874	58,276
교육개발평가지원	85,000	57	84,943
국가인재원수입대체경비	1,168,756	2,466	1,166,290
교육과정운영	1,207,787	2,005	1,205,781
교육기관교류협력	231,706	2,028	229,678
교육시설유지관리	197,351	30	197,321

자료: 인사혁신처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 1)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격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 나. 분석의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의 관서운영경비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시설운영용품 구입, 체험학습을 위한 임차료 집행과정에서 관서운영경비 금액한도(건당 500만원)를 초과하는 건을 동일 업체에 동일한 용도로 같은 날 분할 집행하여 근거 법령상 지출절차를 회피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구조물·음향시스템 설치, 리더십진단 컨설팅 비용 등 일반수용비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대금을 이러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고금 관리법」과 관련 법령을 위배하는 것으로 향후 집행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6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 및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운영비(210목) 및 업무추진비(240목)은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할 수 있다.<sup>2)</sup> 이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5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지출관의 검토를 통해 해당 지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지출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25회계연도 기간 동안 500만원을 초과하는 교육운영물품 및 임차료 등을 5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한 사례가 다수 나타난다.

### 2)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⑥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지급절차 및 정부구매카드의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2.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재외공관 및 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에 지급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여비
4. 그 밖에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 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년 관서운영경비 분할 집행 일부예시]

(단위: 원)

비목명	사업명	지급용도	지급일	지급업체	지급액
일반 수용비	교육시설 유지관리	(지원관리) 물품구입	02.03.	OO기업	4,534,200
					1,617,000
					계: 6,151,200
임차료	교육과정 운영	신입관리자과정 직렬별 교육 강의장·버스 임차	09.23.	OOOO OO인력 개발원	4,950,000
					5,000,000
					계: 9,950,000
일반 수용비	수입대체 경비	고위정책과정 현장학습 입장료	10.27.	OOO OOOO 오픈리뷰	1,672,000
					1,672,000
					1,672,000
					1,672,000
					1,698,000
					계: 8,384,000
일반 수용비	교육과정 운영	조선의 국가리더십 과정 교재 인쇄비	12.18.	OO 디자인	4,304,850
					4,319,700
					4,173,400
					계: 12,797,950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특히 분할 집행 사례 중 일부는 음향시스템 및 구조물 설치, 교육과정생 대상 컨설팅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일반수용비의 용도<sup>3)</sup>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3)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는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간행물 등 구입비, 비품 수선비, 각종 수수료, 공고료 및 광고료,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특수목적 대학의 초과·야간 강의료를 일반수용비 내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관서운영경비 분할집행 사례 중 일반수용비 용도 미부합 사례 예시]

(단위: 원)

비목명	사업명	지급용도	지급일	지급업체	지급액
일반 수용비	교육과정 운영	국가비전제시 관련 특강 운영시스템 및 음향, 구조물 설치비	07.22	마0000	4,180,000
					1,250,000
					2,500,000
					계: 7,930,000
일반 수용비	교육과정 운영	신임과장과정 리더십 사전진단비	11.26.	㈜000 컨설팅	4,081,000
					3,630,000
					계: 7,711,000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또한 매년 특정 교육과정에서 컨설팅 업체를 통해 리더십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연중 실시 시기 및 대상인원을 예상할 수 있고 용역 형태의 서비스 구입에 해당한다는 점, 과정별로 특정 업체를 통해 반복 집행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일 계약으로 보아 관서운영경비가 아닌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절차를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리더십교육 리더십 진단비 컨설팅업체 대금지급 내역]

(단위: 원)

비목명	사업명	지급용도	지급업체	지급액
일반 수용비	교육 과정 운영	181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리더십 진단	티00컨설팅	4,257,000
		182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리더십 진단	지00컨설팅	3,514,500
		116기 신임과장과정 리더십 진단	클00컨설팅	755,700
		117기 신임과장과정 리더십 진단		594,000
		118기 신임과장과정 리더십 진단		594,000
		119기 신임과장과정 리더십 진단		1,068,100
		121기 신임과장과정 리더십 진단(1차)		4,081,000
		121기 신임과장과정 리더십 진단(2차)		3,630,000
		제5기 신임과장 직무과정 리더십 진단		775,500
		제6기 신임과장 직무과정 리더십 진단		4,496,800
		합 계		23,766,600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둘째, 신입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중 일부를 실질적으로 위탁사업 형태로 운영하면서 관련 비용을 프로그램에 포함된 개별 항목별로 나누어 관서운영경비로 임의 분할 집행한 것은 예산집행의 적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계약을 통한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 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2024년부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하 “KIRD”)과 협약(’24~’26년)을 맺고 신입관리자과정(공채) 직렬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연 1회 5일간(총 30시간) 진행되며 2025년 기준 총 5,650만원을 지급하였다.

[2025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정책입안자교육 프로그램 현황]

(단위: 명)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방법	교육시간	인원	비고	
정책 입안자 교육	과기부	수습사무관과정	집합	14시간	30	무료
		승진사무관과정	집합	14시간	30	무료
		재직자과정	집합	14시간	30	무료
	우주 항공청	재직자과정	집합	15시간	30	연구개발활동비
	인사 혁신처	신입관리자과정	집합	30시간	183	관서운영경비

자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2025). 「2025 KIRD 교육프로그램」

그런데 해당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기관을 통해 일정, 장소, 숙박, 교육 및 컨설팅 등이 패키지로 제공되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프로그램 내에 포함된 버스 임차, 숙박, 컨설팅 서비스 등을 개별 항목으로 임의 분할하여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고 있다. 이같이 교육 위탁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의 실질은 사업비 성격의 위탁계약 대가에 해당함에도, 이를 소액·경상적 지출을 위한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것은 국고금 지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해 예외적 조항을 둔 근거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적법한 계약 및 가격검증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교육프로그램 비용 지급 내역]

(단위: 원)

사업내역	지급일	비목명	지급항목	지급업체	지급액
제70기 신임관리자 과정 (공채) 직렬별 교육	9.23	임차료	버스 임차료	국가 과학기술 인력 개발원	5,000,000
		일반수용비	교육운영물품		353,280
		일반수용비	TKI 갈등관리진단		1,464,000
		일반수용비	교육운영물품		4,056,760
		임차료	강의장 사용료		4,950,000
		일반수용비	두뇌 사고유형 진단 프로그램비		4,249,740
		일반수용비	명찰 인쇄비		27,500
		일반수용비	교재인쇄비		3,608,000
		국내여비	여비(숙박비)		32,795,000
합 계					56,504,280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또한 이와 같이 무리하게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일반수용비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TKI 갈등관리진단, 두뇌 사고유형 진단 프로그램비 등 컨설팅·진단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용을 일반수용비로 지급하는 등의 문제도 확인된다. 국내여비·임차료로 지급한 숙박비와 버스 이용료 역시 단일 일정에 소요된 비용을 분리 집행함으로써 예산편성 단계의 사업 규모와 실제 집행 현황 사이의 괴리를 확인하기 어렵고 예산 총액 관리 및 성과 평가 역시 왜곡이 생길 수 있다. 더불어 단일 위탁계약 체결 시 단가 협상, 품질 관리, 사후 정산 등이 일원화되어 재정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은 것은 효율적 재정운용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전반기관에 단일 교육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의 정상적인 일괄 위탁계약 체결 및 일반적인 국고금 지출 절차를 통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근매식비는 관련 지침에 따라 특근자를 대상으로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집행해야 하나 주간 업무시간대 식당 외 업체 지출을 비롯하여 월별 일괄 전자대금 이체 방식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지침에서 정한 집행 기준 및 절차가 준수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로서,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 혹은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휴일 2시간 이상 근무자에 지급하며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인당 9,000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재원의 특근매식비 집행내역을 보면 7개과에서 원내 구내식당에 분기별로(1개과는 월별 지급) 일정 금액을 전자자금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어 실제 일자나 일별 사용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다.

또한 과 전체 인원이 일시에 특근을 실시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준 금액의 3~4 배를 초과하는 지출 사례가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일부 과에서는 평일 9~18시에만 운영하는 인근 카페에서 기준 인원 대비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한 사례도 다수 이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구내식당의 경우 특근자가 매번 식권을 구매·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자에게 식권을 사전 배포하고 식당이 이를 취합하여 지급 요청을 하면 과에서 1~3개월 단위로 총액을 전자자금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단가 기준 초과 집행의 상당 부분은 인근 업체에서 실제 이용한 금액을 합산하여 분기별로 일괄 결제하는 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건별로는 단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025년 국가인재원 특근매식비 부적정 집행 내역 일부예시]

(단위: 명, 원)

구분	과 구분	현원(과)	지급일	지급업체	지급액	비고
업무시간대 (9~18시) 지출	교육지원	(진천)33	4.25	두000카페	308,000	업체당 월별 지급, 연 4~12회 결재
			6.25	두000카페	350,000	
			9.25	1000카페	210,000	
			10.27	커피00	280,000	
기준금액 초과지출	신규자교육	13	5.12.	00한우	623,000	-
	관리자교육(과)	(과천)3	7.25.	00궁	308,000	-
	글로벌교육	13	13.12 <sup>h</sup>	00루	459,000	-
분기별 구내식당 결재	교육지원	(진천)33	12.10.	구내식당	517,500	연 3~12회 분기·월별 결재
	신규자교육	13	8.11.	구내식당	855,000	
	전문역량교육	(진천)6	11.26	구내식당	441,000	
	스마트개발	33	12.30.	구내식당	396,000	

주: 1) 12월말 지출분에 대한 카드 결재가 차년도에 발생

1. 과별 현원은 방호, 시설관리 공무원, 청년인턴 등을 모두 합한 인원

자료: 인사혁신처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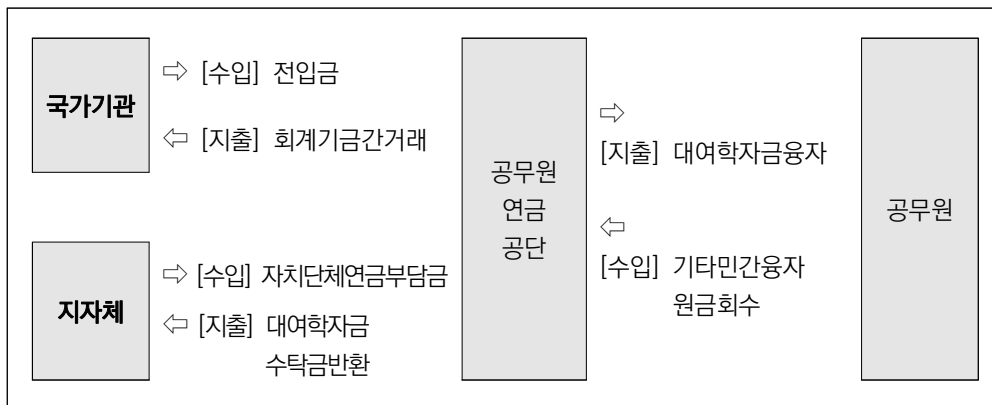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집행의 투명성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정부 기관이 외부 영세업체에 대해 2~3개월간 선매식 후 사후결재하는 방식은 적절한 관서운영경비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분기별 사후결재 대상 업체 중 상당수가 평일 09:00~18:00에만 운영하는 카페로, 특근매식비 집행 대상 업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지침에 위배되므로 해당 비목 집행방식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인재원은 관서운영경비 한도 분할 집행, 일반수용비 용도 외 지출, 특근매식비 집행기준 미준수 등 반복적으로 확인된 예산집행 상의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국고금 관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집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수행하고 있다.<sup>1)</sup>

대여학자금 용자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재원을 조달한 공무원연금공단이 중간 운용 주체로서 수혜 대상인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직접 용자하고, 회수된 원금을 다시 순환시키는 구조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전입금 형태로 재원을 수취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자치단체 연금부담금을 수입으로 받는다. 지출 측면에서는, 공단이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직접 대여학자금을 용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집행한다. 한편, 국가기관과의 사이에서는 회계기금 간 거래가 지출로 처리되며,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탁받은 학자금의 수탁금 반환이 이루어진다.

[대여학자금 용자사업 관련 예·결산 흐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대출은 예상 퇴직금(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졸업(중퇴) 익월부터 2년 거치 후 2년에서 4년 이내에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 6-1. 대여학자금 용자사업 연례적인 계획변경 문제

### 가. 현황

대여학자금 용자 사업<sup>1)</sup>은 재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무이자로 대부하여 공무원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계획현액 3,424억 8,000만원 중 3,378억 9,400만원을 집행하고 45억 8,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여학자금용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						2026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대여학자금 용자	267,900	342,480	-	342,480	337,894	-	4,586	237,90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나. 분석의견

**첫째, 대여학자금 용자 사업은 당초계획 대비 대부건수 증가 및 평균등록금 증가를 이유로 증액 수정 후 상당액을 불용하는 재정 운용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소요추계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연금법」 제17조 및 제75조<sup>2)</sup>에 근거하여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대부하고 있다. 국내대학의 경우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3141-321

2) 「공무원연금법」

제1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① 제17조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 부담금”이라 한다)한다.

실등록금 납부액 전액이고 해외대학은 연 \$10,000이내에서 실등록금 납부액에 대하여 동 사업을 통해 무이자로 대부가 가능하며 졸업(중퇴) 익월부터 2년 거치 후 2~4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대여학자금 융자 사업 운영개요]

구분	세부내역		
대부재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대여학자금 부담금		
대부대상	• 「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의한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공무원 배우자 제외)		
대부조건	구분	국내대학	해외대학
	대부금액	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납부액 ※ 실등록금: 등록금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	연 \$10,000이내에서 실등록금 납부액 ※ 정규학년 등록금만 대부 가능
	신청횟수	학기별 신청(연 2회)→총 12회	횟수 제한 없음
	대부 제외	대학원, 직업훈련기관, 계절학기 수강, 어학연수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이 아닌 교육비	비학위과정 (Foundation, Certificate, 전문사 등)
대부한도	• 예상 퇴직금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대부 가능 ※ 예상 퇴직금 초과 시 보증보험 설정 필요		
지급·상환	• 대부 심사 후 본인 계좌로 3일 이내 입금 • 졸업(중퇴) 익월부터 2년 거치 후 2~4년 균등 분할 상환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그런데 최근 3년간(2023~2025년) 학자금 대출 예산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대여학자금 부족을 이유로 당초 예산 대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증액이 이루어지면서 한편으로는 46억원~184억원 규모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주요 사유로 계획 대비 대여학자금 대부 건수 증가 및 등록금 단가 상승에 따른 소요 자원 증가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불용액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출 실적 부진을 들고 있다.

이는 수요 감소 요인을 불용액의 사후적 설명 근거로, 수요 증가 요인을 기금 증액 변경의 사전적 근거로 각각 활용하여 상충되는 논리가 혼재하는 가운데, 결과적으로 증액 수정과 불용이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3~2025년 대여자금 용자 기금계획변경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A)	기금운용계획 변경		집행액	불용액
		증감(B-A)	수정(B)		
2023	316,491	78,719(17.6%)	395,210	376,801	18,409
2024	284,065	70,164(19.1%)	354,229	346,551	7,678
2025	267,900	74,580(24.1%)	342,480	337,894	4,586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실제 학령인구 감소로 대부 건수가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 이를 반영하여 당초 계획액을 편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의 경우, 전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판정으로 지출구조조정 대상이 됨에 따라 예상 대부 건수를 보다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 대부 건수가 예상을 상회하고 평균 등록금까지 상승하면서 소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반복되어 연례적인 증액 수정이 불가피하였다고 부연하였다. 아울러, 직전 3개 연도의 1·2학기 대부 신청 비중을 적용하여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추계와 달리 2학기 대부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022~2025년 연간 대여자금 대부 현황]

(단위: 건, 천원, 억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대부건수	107,202	114,547	105,390	99,459
평균등록금	3,245	3,289	3,289	3,400
대부액	3,478	3,768	3,466	3,379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그러나 당초 계획, 계획변경 및 결산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대부 건수뿐만 아니라 대부 단가 추계의 면밀성 부족 역시 연례적인 계획 변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먼저 국내 대학의 경우, 2025년부터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 II유형에 대한 패널티 적용이 완화되는 등(24년 2월 초 발표) 등록금 동결 기조가 완화되면서 일부 대학에서 법정 상한(5.49%)을 초과하는 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정책 변화는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 산정 시에는 직전년도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대학 등록금 인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대학의 경우에도 물가 상승과 정부 보조금 축소 등의 영향으로 등록금이 상승하는 추세였음에도, 당초 예산 산정 시 이러한 단가 상승 요인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았다.

[2021~2025년 국내·해외대학 대부건수 및 금액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대부 건수	국내	1학기	59,008	53,810	59,457	55,219	51,604
		2학기	53,097	51,051	52,636	47,737	45,622
	해외	2,077	2,341	2,454	2,434	2,233	
	합 계	114,182	107,202	114,547	105,390	99,459	
대부 금액	국내	1학기	186,700	169,560	191,718	177,902	170,930
		2학기	165,049	158,227	164,161	147,576	146,188
	해외대	16,049	20,060	20,922	21,073	20,776	
	합 계	367,798	347,847	376,801	346,551	337,894	
상환액		607,029	559,893	530,549	494,038	466,191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아울러 계획 변경 과정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대부 단가와 최근 3년간 추세를 적용하여 증액이 이루어졌으나, 해외 대학은 연간 대부 한도가 1만 달러로 제한되어 있어 상반기 대부액이 클 경우 하반기에는 추가 대부 가능액이 감소하는 구조적 특성이 존재한다. 더불어 1학기 성적을 반영하여 2학기에 지급되는 장학금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장학금 감면 이후 잔여 한도 내 신청액이 감소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와 같이 수요 및 단가 구조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추계의 면밀성을 높임으로써 실소요를 상회하는 증액과 그 결과 발생하는 불용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 대비 결산 대부건수 및 대부단가 비교]

(단위: 건, 백만원)

구분	대부건수		대부단가	
	대부 건	산정기준	금액	산정기준
당초계획	81,453	임의 감축조정	3,289	직전년도 평균 단가
계획변경	100,391	최근 3년 3월말 대부실적(건수) 비중으로 1,2학기 대부수요 산출	3,411	당해연도 3월말 실적(단가) 대비 4~12월 감소율 (최근 3년 평균) 적용
결산	99,459	-	3,400	-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학자금 대출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에는 대부 건수와 국내외 등록금 단가 관련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수요·단가 추계를 기반으로 반복적인 계획변경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 6-2. 대여학자금 수탁금 적기 반환 필요

### 가. 현황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수탁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여학자금용자 사업(3141-321)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자금 대여 상환액이 학자금 대여액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2015년부터 수탁금반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회계 전출(대여학자금반환)·특별회계 전출(대여학자금반환)<sup>1)</sup>은 국가기관에 대해 대여학자금수탁금 잉여액을 반환하는 사업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예산현액 총 656억 9,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한편,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에 위탁한 대여학자금 부담금 중 일정 조건을 만족한 수탁금에 대한 반환은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sup>2)</sup>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이 사업의 2025년 예산현액 405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전출·특별회계 전출(대여학자금반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일반회계 전출 (대여학자금반환)	58,488	58,488	-	58,488	58,488	-	-	113,311
특별회계 전출 (대여학자금반환)	7,208	7,208	-	7,208	7,208	-	-	6,81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025회계연도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대여학자금 수탁금 반환	40,500	40,500	-	40,500	40,500	-	-	50,00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8920-891, 8920-892

2)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3141-323

## 나. 분석의견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회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반환되어야 할 수탁금 잉여금이 매년 과다하게 유보된 결과 2025년 결산 기준 누적 잉여금이 8,852억 원 수준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 재정운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준용한 잉여금 반환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여학자금 부담금은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연도의 학생증가율·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현재는 상환액이 대부액을 초과하여 국가와 지자체 모두 추가 부담 없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위탁된 대여학자금 부담금에서 기관별로 3년 이상 연속으로 회수액이 대여액을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대부수요 준비금 등을 제외한 이월액을 국가와 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 조건]

구분	내용
반환대상	· 3년 이상 연속해서 부담금 잉여금 발생 기관
반환시기	· 부담금 정산년도 기준 차차년도 상반기(매년 6월 중 반환)
반환예정액	· 반환예정액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 (예산심의 과정에서 감액될 경우 최종 확정 예산액으로 반환확정액 결정)
반환예정액 산정방식	· $N+1$ 년도 반환예정액 = $N-1$ 년도 부담금 정산액 - $N$ 년도 반환확정액 - $N$ 년도 대부예상액 · $N-1$ 년도 부담금 정산액 = $N-2$ 년도 결산잔액 - ( $N-1$ 년도 대부액, 수탁금반환액) + ( $N-1$ 년도 상환액, 순부담금) ※ $N+1$ 년도에 $N$ 년도 상환액의 $\pm 25\%$ 범위 내 금액 반환 가능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에 근거하여 재구성

최근 5년간의 수탁금 반환 내역을 분석한 결과, 피수탁기관은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처리기준'상 산식을 준용하여 반환을 이행한 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산정액의 10~50% 수준만 반환하였다.

특히 2022년도 결산심사 당시 과도한 수탁 잉여금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에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국가기관에는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해 정상 반환한 것과 달리 지자체 대상으로는 기준에 부합하는 반환 실적이 전무하다. 2025년은 산정액 대비 국가기관은 812억 원, 지방자치단체는 3,657억 원이 각각 과소 반환된 것으로 확인된다.

[최근 5년간(2021~2025) 업무처리기준상 반환액·당해연도 예산확정액 비교]

(단위: 억원)

연도	반환대상 구분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반환금액(A)	당해연도 예산 확정액(B)	차이 (B-A)
2021	국가	761	761	-
	지자체	1,580	1,580	-
	소계	2,341	2,341	-
2022	국가	774	774	-
	지자체	2,594	1,594	△1,000
	소계	3,368	2,368	△1,000
2023	국가	118	118	-
	지자체	2,326	1,304	△1,022
	소계	2,444	1,422	△1,022
2024	국가	395	395	-
	지자체	1,650	825	△825
	소계	2,045	1,220	△825
2025	국가	1,469	657	△812
	지자체	4,062	405	△3,657
	소계	5,531	1,062	△4,469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중장기 사업계획(2026~2029) 수립 시 반환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2029년까지 수탁 잉여금을 3,699억 원 수준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그 일환으로 2026년도 반환 예산을 전년 대비 크게 증액 편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대부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잉여금 유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여학자금 용자사업이 시작된 1981년부터 2025년까지 대부된 학자금의 잔액이 누적되면서 2025년 현재 누적액이 2조 222억원이고 기관으로 받은 대여학자금 수탁금의 누적액은 2조 9,074억원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은 총 8,852억원 수준이다. 이에 반해 학령인구감소와 다양한 장학금 지원 제도 도입 등의 사업환경을 감안하면 향후 학자금 대부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대여학자금 상환액이 학자금 대여액을 초과하는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수탁금 잉여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부 담 금	누적액	3,746,499	3,512,488	3,275,714	3,134,163	3,012,730
	수입액	135	55	608	534	859
	반환액	234,146	236,829	142,159	121,967	106,196
	(누적)잔액(A)	3,512,488	3,275,714	3,134,163	3,012,730	2,907,393
대 부 금	대부액	367,798	347,847	376,801	346,551	337,894
	상환액	607,029	559,893	530,549	494,038	466,191
	(누적)잔액(B)	2,663,820	2,451,774	2,298,027	2,150,540	2,022,243
잉여금(A-B)		848,668	823,940	836,136	862,190	885,15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또한, 인사혁신처의 중기사업계획(2026~2029)의 수탁금 잉여금 감축 목표에 따르면 수탁금 반환(예정액)은 2026년 6,053억원 수준이어야 하나 2026년에도 1,701억원을 편성하여 이에 크게 미달한다.

[2025~2029년 중기사업계획 기준 반환 예정액]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수탁금 반환(예정)액	2,045	5,531	6,053	6,300	1,172	706
당해연도 예산 확정액	1,220	1,062	1,701	-	-	-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부 수요 정체가 예상되어 잉여금 누적이 구조적으로 지속될 상황임에도, 자체 업무처리기준 및 중기사업계획상 감축 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는 반환금을 편성·집행하고 국가기관과 지자체 간 반환 이행에 일관성 없는 차등을 유지하는 것은, 8,852억 원에 달하는 공적 재원이 국가·지방재정으로 환류되지 못한 채 불필요하게 적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재정 효율성과 제도 운용의 일관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을 준용하여 반환 중기사업계획상 감축 목표에 부합하는 반환금을 차질 없이 편성·집행함으로써 누적 잉여금을 조속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주택사업관리 사업<sup>1)</sup>은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원활한 반환 및 임대주택의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계획현액 4,153억 4,500만원 중 4,043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110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주택사업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주택사업관리	358,141	415,345	-	415,345	404,335	-	11,010	342,53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나. 분석의견

주택사업관리 사업은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수요 증가를 사유로 연례적인 증액 변경(530억원)을 실시하였으나 실수요 부족으로 108억원이 불용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택사업관리는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위한 주택임대보증금과 임대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주택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에는 5건의 계획변경이 있었는데 주택임대보증금과 관련하여 약 530억원을 예비비로 증액 변경하였고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약 42억원의 계획 변경 및 세목 조정이 있었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1)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3151-333

[2025년 주택사업관리 사업 계획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세목	금액	계획변경 사유
자체변경 (07.22.)	시설장비유지비	858	김포한강 분양주택 하자소송 판결에 손해배상금 지급 부족예산 확보
	공공요금및제세	△858	
자체변경 (07.22)	일반수용비	63	남양주별내 분양전환 관련 근거당 설정비용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취하세대 시설보수 비용 지급 부족예산 확보
	시설장비유지비	△63	
자체변경 (10.27.)	공공요금및제세	1,203	재산세 납부 부족 예산 확보
자체변경 (11.10)	반환금및손실금	52,973	임대보증금 반환 부족 예산 확보
	시설장비유지비	2,128	임대주택 노후화에 따른 보수 비용 상승으로 부족 예산 확보
	무형자산	900	LH 공공임대주택 기관공급 입차보증금 예산 확보
자체변경 (12.13.)	시설장비유지비	192	퇴거세대 증가에 따른 시설유지관리비 집행 증가 및 노후시설 보수에 필요한 시설유지비 부족예산 확보
	일반수용비	△117	
	일반수용비	△75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먼저,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집행 내역을 보면, 2023년에는 3,675세대에 대하여 4,066억 3,800만원, 2024년에는 3,444세대에 대하여 3,884억 5,200만원이 집행되어 당초 예상보다 많은 퇴거세대 발생에 따른 반환금 소요 증가로 계획액을 초과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임대보증금 부족분 마련을 위하여 연도별로 각각 279억 100만원, 809억 8,100만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2025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반환 예상 세대수를 3,265세대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을 529억 7,300만원이 증액된 3,815억 2,800만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실수요가 부족하여 108억 500만원이 불용되었다.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계획변경 및 결산 내역]

(단위: 세대, 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결산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2023	3,571	379,690	3,930	407,591	359	27,901	3,675	406,638
2024	3,061	307,475	3,319	388,456	258	80,981	3,444	388,452
2025	2,812	328,555	3,265	381,528	453	52,973	3,412	370,72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전년도 집행규모와 제반여건을 고려할 때 재원 부족이 예상되어 계획액을 변경하였으나,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규제 및 실거주 의무를 강화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25.10.15.)의 영향으로 지역 내 주택임대가 어려워지면서 예상과 달리 퇴거세대가 감소하여 불용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였다.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당초계획 대비 결산 비교]

(단위: 백만원)

당 초		결 산	
정상운영: 2,589세대×111	287,347	정상운영: 2,996세대×105	314,795
신축단지: 71세대×360	25,568	신축단지: 173세대×176	30,402
신규매입: 28세대× 63	1,764	신규매입: 37세대× 57	2,126
별내분양: 125세대×111	13,876	별내분양: 206세대× 114	23,400
합 계	328,555	합 계	370,72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그러나 주택임대차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갱신되어 해당 연도의 소요액 추정엔 큰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족 예산 확보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11월 10일에 이루어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 등을 고려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소요액에 대한 사전 추계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상당 규모의 불용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도 당초계획 대비 퇴거세대 증가로 기금운용계획을 증액 변경한 바 있어 수요 추정의 어려움이 일회성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환 세대수 추정이 매년 당초계획과 결산 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전년도 집행규모를 기준으로 한 증액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정부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한 수요 예측 모형을 마련하는 등 추계 방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임대보증금 반환 수요에 대한 정밀한 사전 수요 예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증액 후 불용이 반복되는 비효율적 재정운용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2억 9,900만원이며, 41억 8,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0.8%인 25억 4,500만원을 수납하고 16억 6,5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300만원이다.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299	1,299	1,299	4,183	2,545	1,635	3	60.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438억 8,100만원이며, 이 중 96.6%인 8,155억 8,400만원을 지출하고 282억 9,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이월액은 없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63,407	363,407	843,881	815,584	0	28,297	96.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산은 7,880억 7,600만원, 부채는 26억 5,400만원으로 순자산은 7,854억 2,2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93억 9,400만원, 유·무형자산 7,676억 6,100만원, 기타자산 110억 2,0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1억 4,100만원(0.3%) 증가하였다. 이는 건물·구축물 및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 취득, 감가상각누계액 증가 등에 따른 유·무형자산 17억 4,2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차입부채 26억 5,200만원과 기타부채 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3억 7,700만원(△56.0%)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리스부채의 상황에 따라 기타 차입부채 33억 7,900원(△56.0%)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788,076	785,935	2,141	0.3
I. 금융자산	9,394	8,942	452	5.1
II. 유·무형자산	767,661	765,919	1,742	0.2
III. 기타자산	11,020	11,074	(54)	(0.5)
부 채	2,654	6,031	(3,377)	(56.0)
I. 차입부채	2,652	6,031	(3,379)	(56.0)
II. 총당부채	0	0	0	0.0
III. 기타부채	2	1	1	100.0
순 자 산	785,422	779,904	5,518	0.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8,722억 2,0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5,241억 6,100만원, 관리운영비 3,486억 9,200만원, 비배분비용 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6억 3,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9억 500만원(0.1%) 증가한 8,722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하다.

프로그램순원가는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으로 5,241억 6,100만원이며,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2,441억 5,600만원과 경비 1,045억 3,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비용은 기타국가운영비용 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수익은 재화및용역제공수익 4,800만원과 자산평가이익 3억 7,800만원, 기타국가운영수익 2억 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	524,161	534,159	(9,998)	(1.9)
II. 관리운영비	348,692	339,196	9,496	2.8
III. 비배분비용	1	2	(1)	(50.0)
IV. 비배분수익	634	2,042	(1,408)	(69.0)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872,220	871,315	905	0.1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 - VI)	872,220	871,315	905	0.1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7,799억 4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7,854억 2,200만원으로 전기 대비 55억 1,800만원(0.7%) 증가하였는데, 회계연도 중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전기 대비 9억 500만원 증가하였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조달및이전이 297억 2,000만원 감소, 조정항목이 전기 대비 8억 900만원 감소한 반면, 기초순자산이 전기 대비 369억 5,3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등 재원의 조달 8,860억 7,100만원과 국고이전지출, 기타이전비용 등 재원의 이전 56억 9,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26억 3,7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779,904	742,951	36,953	5.0
II. 재정운영결과	872,220	871,315	905	0.1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80,376	910,096	(29,720)	(3.3)
IV. 조정항목	(2,637)	(1,828)	(809)	(44.3)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785,422	779,904	5,518	0.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재외선거관리**와 **위원회기본경비**가 있다.

재외선거관리의 경우 재외선거관리 내역사업에서 4,500만원이 감액되어 100만원이 편성되었고, 위원회기본경비에서는 외국선거 교류협력 국외업무여비 6,000만원이 감액되어 150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선거관리 ②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③ 미래 지향적 조직역량 강화를 2025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쉼위선거로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는데, 대체로 준수한 집행을 보였으나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일반수용비 중 참관인수당, 재외선거관리사업의 일용임금 및 국외업무여비 등 일부 사업 및 비목의 집행이 부진한바,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의 경우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별정려금이 선거사무에 대한 격려금의 성격으로 공직선거 기간 전후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선거라는 선관위 본연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별도로 지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급의 필요성과 지급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 외로 운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에 포함되도록 수입대체경비 등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1

##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회계처리 방식 변경 필요

## 가. 현 황

위원회기본경비<sup>1)</sup>는 행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현액 149억 5,800만원 중 146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위원회기본경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위원회 기본경비	15,099	15,099	-	△443 302	14,958	14,637	-	321	15,273
손실보상금 (310-01)	2	2	-	129	131	131	-	-	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실보상금(310-01)은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로 현업관서에서 적법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로 인해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sup>2)</sup>가 이에 해당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의2<sup>3)</sup>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sup>4)</sup>에 따라 각급선거관리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7111-250

2)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274

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 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 지급하는 선거재해보상금이 이에 해당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액 200만원에 이·전용 등 증액 1억 2,9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 1억 3,1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다.

##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등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을 손실보상금 비목으로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였는데,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납한 세입 과목인 과태료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과오납금 반환 처리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위원회 기본경비 세부사업의 손실보상금(310-01) 비목의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선거재해보상금 1억 2,800만원 외에 과태료 재판 결과 미부과에 따른 과태료 반환을 위해 300만원 등 총 1억 3,1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25회계연도 위원회기본경비 손실보상금 세부 집행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일자	금액	내용	비고
선거재해보상금	2.24.	128,290	유족·장제보상(1건)	
과태료 반환	2.17.	1,837	과태료 반환액 지급(8건)	
	9.12.	1,046	과태료 반환액 지급(1건)	
합 계		131,17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3) 「공직선거법」

제277조의2(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 및 개표사무원(공무원인 자를 제외한다)이 선거기간(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을 두는 기간을 말한다)중에 선거업무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의6(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① 법 제277조의2제1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위원·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사전투표사무원·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종사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생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의 예산액 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부과했던 과태료 반환액 8건을 지급하고, 부족한 예산은 이·전용 등 예산조정을 통하여 1억 2,9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현액 1억 3,100만원을 확보하였다.

[손실보상금 확보를 위한 이·전용 등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자체이용 (25.2.20)	재보궐선거관리 (1131-303)	일반수용비 (210-01)	50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손실보상금 (310-01)	선거재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른 재원 마련
자체전용 (25.2.20)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일반수용비 (210-01)	±78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손실보상금 (310-01)	선거재해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른 재원 마련
세목조정 (25.9.9)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배상금 (310-02)	±1	위원회기본경비 (7111-250)	손실보상금 (310-01)	과태료 재판 결과(미부과)에 따른 과태료 반환 재원 마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예비후보자가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여 '25.4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으나 당사자의 이의제기로 '25.8월 법원에서 과태료 미부과 결정을 함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배상금(310-02)을 손실보상금(310-01)으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한 바 있다.

선거재해보상금에 대한 손실보상금 비목 집행은 타당하나, 과태료 재판 결과 (미부과)에 따라 수납한 과태료 반환액을 지급하는 9건에 대한 회계처리는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으로 처리하여야 한다.<sup>5)</sup> 즉, 세출예산의 손실보상금 비목에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예산 과목인 과태료(56-563)에서 반환할 과태료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태료 재판 결과 미부과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이 자주 발생하고 규모가 큰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정부 내 중앙행정기관에서도 해당 금액을 세입 과목에서 차감하여 상계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내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도 세입예산에서 차감하여 상계처리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 등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액을 지급할 경우 세출예산의 손실보상금 비목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납한 세입 과목인 과태료에서 직접 차감하여 상계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다.

---

5)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 수입징수관은 징수결정·수납의 착오 및 중복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에 대하여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 반환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결정을 한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의 감액이 있는 것으로 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6.3. 궐위선거로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위하여 총 10개 세부사업에 예비비 4,804억 4,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4,536억 5,400만원을 집행(집행률 94.4%)하고, 267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코드)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자금배정일
대통령선거관리 (1131-300)	290,061	269,399	-	20,662	'25.4.8.
재외선거관리 (1131-305)	10,538	8,491	-	2,047	'25.4.8.
선거보전금 (1131-307)	93,707	93,263	-	444	'25.8.5.
정당보조금 (1132-322)	52,383	52,383	-	-	'25.4.8.
공명선거기반조성 (1133-332)	6,695	6,619	-	76	'25.4.8.
위법행위예방활동 (1133-333)	23,501	20,086	-	3,415	'25.4.8.
인터넷심의기반조성 (1135-314)	260	259	-	1	'25.4.8.
선거방송토론 (1135-314)	450	381	-	69	'25.4.8.
선거여론조사심의 (1135-315)	353	276	-	77	'25.4.8.
인건비 (7101-150)	2,498	2,498	-	-	'25.4.8.
합 계	480,448	453,654	-	26,79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에 앞서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었는지(예측불가능성), 연도 중에 시급하게 지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시급성), 기정예산으로 충당이 가능한지(보충성), 연내에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신청하였는지(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sup>1)</sup>

전임 대통령의 탄핵에 따른 권위선거 실시를 위한 예비비 편성은 위와 같은 예측불가능성, 시급성, 보충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마지막 요건인 집행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준수한 집행을 보임에도 일부 사업이나 비목에 있어서는 집행이 저조하거나 초과 집행한 경우가 나타났다.

---

1)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p. 140-142.

## 2-1.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집행 현황 분석

### 가. 현황

대통령선거관리 사업<sup>1)</sup>은 대통령선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투·개표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은 미편성되었으나, 예비비로 2,900억 6,100만이 배정되어 예산현액 2,900억 6,100만원 중 2,693억 9,900만원을 집행(집행률 92.9%)하고, 206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대통령선거관리	-	-	-	±1,201	290,061	290,061	269,399	-	20,66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역사업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선거일반관리 298억 4,700만원, 당내경선관리 2,800만원, 선거운동관리 378억 7,500만원, 사전투표관리 798억 4,500만원, 선상투표관리 4억 100만원, 투표관리 929억 4,700만원, 개표관리 284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다. 내역사업별 집행률을 살펴보면, 당내경선관리가 집행률 3%로 집행이 가장 저조<sup>2)</sup>하였고, 선상투표관리(83.0%), 개표관리(88.0%), 투표관리(91.9%) 등 내역사업이 동 세부사업 전체 집행률 92.9%보다 집행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31-300

2) 각 정당에서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 준비 기간 부족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 위탁 관리를 신청한 정당이 없었던 데 기인한다.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선거관리일반	31,560	29,847	-	1,713	94.6
당내경선관리	948	28	-	920	3.0
선거운동관리	40,456	37,875	-	2,581	93.6
사전투표관리	83,129	79,845	-	3,284	96.0
선상투표관리	483	401	-	82	83.0
투표관리	101,156	92,947	-	8,209	91.9
개표관리	32,329	28,456	-	3,873	88.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나. 분석의견

대통령선거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반수용비 중 참관인 수당 등 일부 비목 및 사업에 있어 집행률이 부진하게 나타나는데, 예비비의 경우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결위선거의 성격을 반영하여 보다 면밀한 편성으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집행률은 예산현액 2,901억원 대비 2,694억원을 집행(집행률 92.9%)하여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나, 직전 제20대 대통령선거관리 사업<sup>3)</sup>이 예산현액 3,107억원 대비 2,998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6.5%를 보였으며,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률이 다소 낮은 측면이 있다. 이 중 각종 수당, 사례금, 인쇄·발간 비용 등으로 집행하는 일반수용비(210-01) 비목의 경우 예산현액 1,420억원 대비 1,298억원을 집행(집행률 91.5%)하여 동 세부사업 전체 집행률에 비해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

3) 2021년 및 2022년 사업 결산액을 합산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일반수용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대통령선거관리	290,061	269,399	-	20,662	92.9
일반수용비 (210-01)	141,969	129,842	-	12,127	91.5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집행 부진의 사유로 후보자 등록 수가 예상보다 적어짐에 따라 선거벽보 첩부비용 등 선거운동관리사업의 집행이 저조하였고, 후보자 수에 연동되는 참관인 신고·선정인수가 예상보다 적어 참관인수당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선거 참관인 선정·신고 기준]

- (사전)투표참관인: 정당·후보자별 (사전)투표소마다 2명 선정·신고 가능, (사전)투표소별 최대 8명, 교체 시 최대 16명
- 개표참관인: 정당은 6인, 무소속후보자 3인 선정·신고, 최대 인원 제한규정 없음
- ※ (공통)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신고한 후 교체 가능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등록 후보자 수]

(단위: 명)

대수	제19대	제20대	제21대
후보자 수	15 (2명 사퇴)	14 (2명 사퇴)	7 (2명 사퇴)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공직선거 참관인 수 및 참관인 수당 집행액]

(단위: 명, 백만원, %)

구분	제19대 대선 <sup>1)</sup> (2017)	제20대 대선 (2022)	제22대 총선 (2024)	제21대 대선 (2025)
사전투표참관인 수	56,091	54,185	98,080	76,477
투표참관인 수	115,121	100,830	172,253	144,822
개표참관인 수	14,197	10,423	17,469	7,858
참관인 수 합계	185,409	165,438	287,802	229,157
편성액(A)	6,163	9,964	19,982	29,066
집행액(B)	7,896	8,723	29,448	23,633
집행률(B/A)	128.1	87.5	147.4	81.3

주: 1) 제19대 대선은 궐위선거로 실시되었으나 당초 12월 예정된 선거가 5월로 앞당겨 실시되어 추가소요에 대한 예비비 일부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으로 선거경비가 집행되었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런데, 참관인 수당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서 설명한 대로 제21대 대선 등록 후보자 수는 7명으로 제20대 대선 후보자 수 14명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참관인 수는 229,157명으로 오히려 제20대 대선의 165,438명보다는 증가하였음이 확인된다. 선관위는 참관인 수당의 증가가 참관인 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또한, 선관위는 제22대 총선에서 참관인 수당 인상<sup>4)</sup> 등으로 참관인 신고·선정 건수가 폭증된 선례를 고려하여 제22대 총선 집행액 수준으로 제21대 대선 참관인 수당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입장이나 총선 기준으로 대통령 궐위선거의 참관인 수를 산정한 것은 선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에 대한 예비비 편성 시 궐위선거의 특성을 면밀히 반영하는 등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함으로써 국회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예비비의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차료 비목은 예비비 지출결정액보다 초과 집행되었고,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임차료 집행이 직전 대통령선거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대통령선거관리 사업의 임차료(210-07) 비목의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예비비 지출결정액 185억 1,300만원(예산현액 197억 1,400만원) 대비 188억 3,700만원

4) 5만원 → 10만원

을 집행하여 예비비 지출결정액 대비 초과 집행하였다. 직전 제20대 대선 집행액은 140억 5,100만원으로 직전 대선 대비 34.1% 증가하였으며, 권위선거로 실시된 제 19대 대선 집행액 100억 1,000만원 대비로는 88.2% 증가하였다.

[대통령선거관리 사업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이·전용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선거관리일반	500	1,060	1,560	1,413	-	147
당내경선관리	-	48	48	2	-	46
사전투표관리	201	6,608	6,809	6,617	-	192
선상투표관리	-	10	10	10	-	-
투표관리	500	5,327	5,827	5,729	-	98
개표관리	-	5,460	5,460	5,066	-	394
합 계	1,201	18,513	19,714	18,837		87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근 대통령선거 임차료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제19대 대선 (2017)	제20대 대선 (2022)	제21대 대선 (2025)
예산액	11,139	18,723	-
이·전용등	△1,898 782	△4,494	1,201
예비비	-	-	18,513
예산현액	10,023	14,229	19,714
집행액	10,010	14,051	18,83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에 따르면, 임차료 초과 집행 사유로는 인구수 등의 통보 시기가 제21대 대선 예비비 편성 이후에 이루어져 정확한 수요 예측이 불가하여 편성 당시 기준보다 투표구 수, 선거인 수, 세대수가 증가<sup>5)</sup>하였고, 과거와 달리 공공기관 등의 투·개

5) 편성 당시 기준(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보다 투표구수 14,259 → 14,295, 선거인 수 44,251,919 → 44,380,468, 세대수 24,096,819 → 24,207,918로 각각 증가

표소 무상 사용, 차량 무상 협조 등이 어려워진 관계로, 투·개표소 사용, 투표함 회송차량 등을 사례금(210-01)으로 해결할 수 없어 임차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임차료 단가가 상향되어 각종 임차료가 편성 예산보다 부족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일반용역비(210-14)와 관리용역비(210-15)의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 결정액 내에서 집행하였으나, 직전 제20대 대선과 비교해 보면 일반용역비는 164억원 집행(제20대 대선 88억원)하여 집행이 87% 증가하였고, 관리용역비는 32억원 집행(제20대 대선 8억원)하여 집행이 271% 증가하였다.

[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 집행 현황 및 집행액 비교]

(단위: 백만원, %)

구분	제21대 대선						제20대 대선 집행액 (B)	증가율 [(A-B)/B]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일반용역비 (210-14)	△830	17,469	16,639	16,433	-	206	8,787	87.0
관리용역비 (210-15)	△41	3,259	3,218	3,153	-	65	849	271.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용역비의 경우 제20대 대선에서 실시되었던 (사전)투표소 방역 용역 등이 실시되지 않은 대신 특별방호 경비용역 16억원, 선거벽보 첩부 및 철거 용역<sup>6)</sup> 55억원,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설치용역 53억원, 개표소 CCTV 설치 및 방호용역 30억원 등이 신규로 실시되었다.

관리용역비의 경우 사전투표관리 내역사업의 사전투표 운용장비 기술지원, 사전투표소 선거전용통신망 정비 등과 선상투표관리 내역사업의 실드팩스 현장기술지원, 선상투표시스템 위탁관리 등 및 개표관리 내역사업의 투표지분류기 보안프로그램 위탁, 투표지분류기 운영 등의 용역 집행액이 증가하였거나 신규로 실시되었다.

위와 같은 비목의 집행 추이와 선거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공직선거 시 임차료 및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비목의 증가 추이가 예상된다.

6) 제20대 대선에서는 사례금 지급, 일용인부임 등으로 집행

## 2-2.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집행 현황 분석

### 가. 현황

재외선거관리 사업<sup>1)</sup>은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은 1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예비비로 105억 3,800만이 배정되어 예산현액 105억 3,900만원 중 84억 9,100만원을 집행(집행률 80.6%)하고, 20억 4,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재외선거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외선거관리	1	1	-	-	10,538	10,539	8,491	-	2,048	4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역사업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제21대 대선 재외선거관리 79억 5,300만원, 재외선거 인력운영 5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각각 84.5%, 47.8%로 재외선거 인력운영 내역사업의 집행이 저조하였다.

[재외선거관리 사업 내역사업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제21대 대선 재외선거관리	9,414	7,953	-	1,461	84.5
재외선거 인력운영	1,125	538	-	587	47.8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31-305

## 나. 분석의견

일용임금 및 국외업무여비 등 일부 비목 및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바,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의 경우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편성함으로써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여건에서 궐위선거로 실시되었던 제19대 대선보다 집행이 부진하므로, 집행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재외선거관리 사업의 집행률은 예산현액 105억 3,900만원 중 84억 9,1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4,800만원을 불용하여 80.6%의 집행률을 보였으나 직전 제20대 대선에서 예산액 184억원 대비 169억 2,700만원을 집행(집행률 92.0%)하였고,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다.

특히, 제21대 대선 재외선거관리 내역사업의 일용임금(110-04)은 예산현액 13억 7,000만원 중 7억 6,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55.8%에 그쳤고, 재외선거 인력운영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11억 2,500만원 중 5억 3,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47.8%로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그 중 국외업무여비(220-02)는 예산현액 3억 9,200만원 중 6,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16.3%에 불과하였다.

[집행부진 사업 및 비목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제21대 대선 재외선거관리	9,414	7,953	-	1,461	84.5
일용임금 (110-04)	1,370	765	-	605	55.8
재외선거 인력운영	1,125	538	-	587	47.8
국외업무여비 (220-02)	392	64	-	328	16.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고로, 최근 대선에서 동일 내역사업 및 비목에 대한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제20대 대선에서는 집행률이 일용임금 75.2%, 국외업무여비 100%로 나타났으며, 유사한 여건에서 궐위선거로 실시된 제19대 대선의 경우에도 일용임금 72.2%, 국외업무여비 100%로 집행률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대통령선거 일용임금 및 국외업무여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제19대 대선 (2017)	제19대 대선 재외선거관리 일용임금	7,623	6,451	-	1,172	84.6
	(110-04)	2,289	1,653	-	636	72.2
	재외선거 인력운영	2,395	1,847	-	548	77.1
	국외업무여비 (220-02)	258	258	-	-	100
제20대 대선 (2022)	제20대 대선 재외선거관리 일용임금	5,608	5,029	-	578	89.7
	(110-04)	1,033	777	-	256	75.2
	재외선거 인력운영	849	846	-	3	99.6
	국외업무여비 (220-02)	283	283	-	-	100
제21대 대선 (2025)	제21대 대선 재외선거관리 일용임금	9,414	7,953	-	1,461	84.5
	(110-04)	1,370	765	-	605	55.8
	재외선거 인력운영	1,125	538	-	587	47.8
	국외업무여비 (220-02)	392	64	-	328	16.3

선관위는 집행 부진의 사유로 궐위선거로 인해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고가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sup>2)</sup> 공관에서 사무보조원 등의 단기 채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재외선거관 파견기간이 3개월여에 불과하여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단신부임하게 됨에 따라 국외업무여비 잔액이 발생하였다는 설명이다.

2) 궐위선거로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20일(2025.4.4.~4.24.)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90일(2021.10.10.~2022.1.8.)과 대비된다.

[최근 재외선거관 파견 및 예산집행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연도	선거	파견기간	파견 공관	집행액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2017.2.~ 2017.6.	일본, 인도네시아, 로스앤젤레스, 미국, 프랑스, 중국, 필리핀,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토론토, 오사카, 상하이, 칭다오, 시드니, 호치민, 휴스턴, 밴쿠버, 나고야, 광저우 (22)	1,847 (업무지원 877 / 체재지원 970)
2021	제20대 대통령선거	2021.4.~	일본, 호치민, 로스앤젤레스, 뉴욕, 프랑스, 중국, 상하이, 칭다오, 필리핀, 시드니, 오사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토론토, 프랑크푸르트, 광저우, 나고야, 밴쿠버, 휴스턴 (22)	2,259 (업무지원 1,002 / 체재지원 1,257)
2022		~2022.3.	프랑크푸르트, 광저우, 나고야, 밴쿠버, 휴스턴 (22)	846 (업무지원 332 / 체재지원 514)
2023	제22대 국회의원선거	2023.6.~	일본, 호치민, 로스앤젤레스, 뉴욕, 프랑스, 중국, 상하이, 칭다오, 필리핀, 시드니, 오사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토론토, 프랑크푸르트, 광저우, 나고야, 밴쿠버, 휴스턴 (22)	2,139 (업무지원 912 / 체재지원 1,227)
2024		~2024.5.	프랑크푸르트, 광저우, 나고야, 밴쿠버, 휴스턴 (22)	1,313 (업무지원 572 / 체재지원 741)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2025.4.~ 2025.6.	일본, 호치민, 로스앤젤레스, 뉴욕, 프랑스, 중국, 상하이, 칭다오, 필리핀, 시드니, 오사카, 미국,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프랑크푸르트, 휴스턴 (18)	538 (업무지원 188 / 체재지원 35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러나,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궐위선거로 진행됨에 따라 재외선거인 등록 및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 단축 운영될 것과 재외선거관 파견이 단기간 운영되어 가족 동반이 제한될 것임은 상당 정도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선관위는 집행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예비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사한 여건에서 실시되었던 제19대 대선의 경우에는 동 내역사업의 일용임금 및 국외업무여비의 집행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할 때,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비로 편성한 재외선거 사업의 경우 국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궐위선거의 특성을 반영하는 등 집행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고, 유사한 여건에서 궐위선거로 실시되었던 제19대 대선보다 집행이 부진하므로 집행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국제교류협력 사업<sup>1)</sup>은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 교류, 서울국제선거포럼 등 국제회의 개최, 국가 간 선거제도 비교·연구 및 관리 기법 공유 등을 통해 민주주의 분야에서 국제 협력관계를 증진·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억 8,300만원 중 1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국제교류협력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교류협력	926	926	-	△7	-	919	908	-	11	995
국제교류협력	190	190	-	△7	-	183	179	-	4	409
A-WEB 운영지원	736	736	-	-	-	736	729	-	7	58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7132-345의 내역사업

## 나. 분석의견

국제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5년 서울국제포럼행사 개최 시 행사 대행을 위한 포럼 운영 계약, 홍보물 등 제작·설치 관련 계약, 오찬 운영 계약 등 총 3건의 계약을 집행상 편의를 우선하여 행사가 임박한 시점에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는데, 이러한 계약 방식은 전체 행사를 통일적, 효과적으로 치루는 데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입찰을 회피하기 위한 분할 수의계약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일반 용역비 비목으로 편성하여 일괄계약 및 일괄집행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제교류협력 내역사업 중 서울국제선거포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5년부터 국내·외 선거 관계자, 주한 외교공관 등을 대상으로 선거 제도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행사이다. 2025년의 경우 세계정치학회 서울 총회와 연계 개최되었으며, 행사 개요는 다음과 같다.

### [2025 서울국제선거포럼 개요]

- 일 시: 2025. 7. 15.(화) 09:00 ~ 16:45
- 장 소: 서울 코엑스(3층 컨퍼런스 E5룸, 2층 201호 ballroom)
- 참 석 자
  - 축사(환영사)자, 사회자, 발제자 등 23명
  - 국내·외 선거 관계자, 주한 외교공관, 세계정치학회 관계자 등 100여명
- 대주제: 선거 신뢰의 회복(Restoring Trust in Elections)
  - 제1세션: 선거관리 및 제도 개혁
  - 라운드테이블: 선거 신뢰 회복
  - 제2세션: 선거교육 개혁
- 특 징: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연계 개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포럼을 위하여 총 8,41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비목별 세부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5 서울국제선거포럼 예산 세부 집행내역]

(단위: 천원)

비목	내용	집행액
일반수용비 (210-01)	기념품 제작	1,990
	현수막, 배너, 행사부스, 안내책자 등 제작	13,700
	사회자·발제자, 토론자 사례금	7,200
	오찬 부대행사 사례금	2,500
	사회자 촬영용 분장비용	396
	오찬행사 통역 사례금	385
	소 계	26,171
특근매식비 (210-05)	직원 행사준비 및 자료정리 매식비	720
임차료 (210-07)	사무기기 및 집기류 임차	1,183
	오찬장소 빔프로젝터, 마이크 임차	253
	소 계	1,436
일반용역비 (210-14)	행사 참석자 초청 및 홍보, 자료수집 및 발제자 안내, 동시통역	18,900
	음향, 프롬프터, 조명 설치 및 운영	8,200
	소 계	27,100
국내업무여비 (220-01)	행사장소 설비 관련 직원 숙박비	880
국외업무여비 (220-02)	외국인 발제자·토론자 항공·숙박·식비 등 여비	15,104
사업추진비 (240-01)	오찬 식사, 다과	12,709
합 계		84,12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 포럼을 위해 용역 계약 등 3건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3건의 계약은 각각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통상 국제세미나, 포럼 등 행사 대행 용역은 행사 운영, 홍보, 오찬 등을 총괄하는 일반용역비(210-14) 비목으로 집행되며, 이는 행사에 대한 참석자 확보, 초청, 홍보, 각종 인쇄물 및 비품 제작, 오찬 등을 행사 기조에 부합하도록 통일성과 일관성 있게 진행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 아울러, 중앙선거위는 포럼 행사일이 7.15.임에도 포럼 운영 계약을 8일 전인 7.7.에, 홍보물 등 제

작·설치 계약을 4일 전인 7.11.에, 오찬 운영 계약을 1일 전인 7.14.에 매우 임박하게 체결하여 집행상 편의를 우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홍보물 등 제작·설치 계약의 경우 동일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일반용역의 형태로 계약 및 집행이 이루어졌음에도 음향, 프롬프터, 조명 설치 및 운영의 경우는 일반용역비로, 현수막, 배너, 행사부스 안내책자 등 제작은 일반수용비로 각각 비목을 달리하여 집행하였는데,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동 계약은 모두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집행하여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2025 서울국제선거포럼 계약 현황]

(단위: 천원)

구분	계약대상	계약내용	계약방식	예산과목	예산규모	계약일
포럼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석자 초청 및 홍보</li> <li>• 자료수집 및 발제자 안내</li> <li>• 동시통역</li> </ul>	수의계약	일반용역비 (210-14)	18,900	7.7.
홍보물 등 제작·설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사장 홍보 현수막·배너 등 제작·설치</li> <li>• 참석자 명찰 등 비품 및 자료집 등 제작</li> <li>• 음향 및 조명 등 설치·운영</li> </ul>	수의계약	일반용역비 (210-14)	13,700	7.11.
				일반수용비 (210-01)	8,200	
오찬 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제공</li> <li>• 장비 임차</li> </ul>	수의계약	사업추진비 (240-01)	12,709	7.14.
				임차료 (210-07)	253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렇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국제선거포럼 행사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사업추진비, 임차료 등 각각 별도의 예산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행사에 임박한 시점에 집행상 편의를 우선하여 각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집행하였는데, 이는 공개입찰을 회피하기 위한 분할 수의계약으로 보일 여지가 있으며, 행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향후 가급적 일반용역비 비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일괄계약 일괄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2025 서울국제선거포럼은 세계정치학회 총회와 연계하여 개최되었는데, 세계 유수의 정치학자들이 발제자·토론자로 참여하게 되고 주제가 연계되는 장점이 있었으나, 연계 개최가 행사 준비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향후 타 행사와 연계 개최 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2025 서울국제선거포럼의 주요한 특징은 2025 세계정치학회<sup>2)</sup> 서울 총회와 연계하여 개최하였다는 것이다.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 총회는 2025.7.12.부터 7.16까지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양극화 사회에서의 권위주의 경향에 대한 대응(Resisting Autocratization in Polarized Societies)’이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95개국 3,500명의 학자들이 참석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세계정치학회 서울 총회 조직위원회의 후원 요청에 따라 서울국제선거포럼을 해당 행사와 동일 시기, 동일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2024년 12월에 결정하였다.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 총회 개요]

- 일 시: 2025.7.12.(토)~7.16.(수) (5일간)
- 장 소: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
- 대주제: 양극화 사회에서의 권위주의 경향에 대한 대응  
(Resisting Autocratization in Polarized Societies)
- 학술프로그램: 700개 이상의 패널 세션 및 라운드테이블 진행
- 일자별 주요 행사
  - 7월 13일 (일): 개막식 및 기조연설(이재명 대통령), 기예르모 오도넬(Guillermo O'Donnell) 상 시상 강연
  - 7월 14일 (월): 칼 도이치(Karl Deutsch) 상 시상 강연, 김대중(Kim Dae-jung) 상 라운드테이블
  - 7월 15일 (화): 마이젤-라퐁세(Meisel-Laponce) 상 시상 강연
  - 7월 16일 (수):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상 시상 강연, 마테이 도간(Mattei Dogan) 재단상 시상 강연 및 폐막

자료: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 총회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세계정치학회(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IPSA)는 1949년 프랑스 파리에서 UNESCO 후원 아래 창설되었으며, 전 세계ahems 지역의 정치학 발전 지원 및 동서남북을 잇는 학술네트워크 구축을 임무로, 세계총회(격년 개최), 연구위원회, 학술지 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국정치학회(KPSA)가 1967년 가입하였으며, 1997년 제17차 총회 및 2025년 제28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5 서울국제선거포럼을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 총회와 연계 개최함에 따라, 세계 유수의 정치학자들의 발제자·토론자 참여<sup>3)</sup>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 모색의 장 마련하고 국제행사의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세계정치학회 총회 지원 성격의 연계 개최가 행사 준비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등의 부정적 측면은 향후 포럼 개최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세계정치학회 서울 총회 연계 개최에 따른 선관위 자체 평가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긍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유수의 정치학자들의 발제자·토론자 참여로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 모색의 장 마련 및 국제행사의 품격 제고</li> <li>• 포럼 대주제로 '선거 신뢰 회복'을 선정하여 세계정치학회 총회 대주제인 '양극화 사회에서의 권위주의 경향에 대한 대응'과 연관성이 높아 적시성·효과성 극대화</li> <li>• 세계정치학회 소속 전 세계 선거·정치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서울국제선거포럼을 폭넓게 홍보하는 효과</li> </ul>
부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정치학회 총회 지원 성격의 연계 개최가 행사 준비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요소로 작용</li> <li>• 세계정치학회 총회의 참석자 규모 및 운영 방식이 당초 예상과 상이하여 포럼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았음</li> <li>• 발제자 등 참여자와 행사 장소에 대한 탄력적 선택이 불가하여 단기간에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어려움 가중</li> </ul>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2025 세계정치학회 서울 총회 조직위원장인 김의영 교수가 환영사를 하고, 세계정치학회 회장인 Pablo Onate 교수, 한국정치학회 회장인 김범수 교수, 세계정치학회 연구위원회 공동의장인 Thresa Reidy, 前 유럽 정치 연구 컨소시엄 의장인 David Farrell 교수 등이 발제자·토론자로 참여

종합하면, 서울국제선거포럼이 보다 저명하고 규모가 큰 세계정치학회 총회와 연계 개최됨으로써, 포럼의 품격과 질이 제고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국제선거포럼이 폭넓게 홍보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수 있겠으나, 자체적으로 기획한 포럼 행사보다는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연계 방식으로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전 협의를 충분히 진행하고, 행사 대행 계약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일원화하여 체결함으로써 행사의 통일성 및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가. 현황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sup>1)</sup>은 정치풍토 개선 및 깨끗한 선거문화 정책을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을 통하여 공직선거 위법행위를 예방·단속하고,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예방 안내 및 위법행위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은 74억 3,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비 배정액 235억 100만원 및 이·전용 증감액 등을 합한 예산현액 303억 2,900만원 중 266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 8,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위법행위 예방활동	7,439	7,439	-	△611 ±62	23,501	30,329	26,648	-	3,681	10,551
포상금 (310-03)	20	20	-	+12	300	332	33	-	299	2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상금(310-03) 비목은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 및 민간인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으로, 동 세부사업에는 상시 단속 포상금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전용 증액과 제21대 대통령선거범죄포상금 등을 위한 예비비 배정액을 합한 예산현액 3억 3,200만원 중 3,3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900만원을 불용하였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33-333

## 나. 분석의견

포상금 예산의 불용이 상당하고, 특히 제21대 대통령선거범죄포상금의 경우 집행액이 7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 실적이 저조한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포상금 예산은 위법행위예방단속 내역사업과 정치자금조사 내역사업에 각각 편성되어 있다. 위법행위예방단속 내역사업의 포상금은 상시 단속 포상금 및 제21대 대통령선거범죄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예산현액 2억 8,200만원 중 3,300만원<sup>2)</sup>이 집행(집행률 11.7%)되었으며, 정치자금조사 내역사업의 포상금은 제21대 대통령선거범죄 포상금으로 편성되어 예산현액은 5,000만원이나 전액 미집행되어 불용되는 등 전반적인 포상금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포상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	예산현액(A)	집행액(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위법행위예방단속	7,526	5,776	-	1,750	76.7
포상금 (310-03)	282	33	-	249	11.7
정치자금조사	1,787	1,430	-	357	80.0
포상금 (310-03)	50	-	-	50	0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히, 제21대 대통령선거범죄포상금의 경우는 2건 70만원(집행률 0.2%)만 집행되어, 제20대 대선의 선거범죄포상금 지급액 5건 820만원(집행률 4.0%)에 비해 집행이 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제21대 대선의 경우 짧은 궐위선거 일정에 따른 신고·제보 건수 감소 및 포상금 지급 건 미발생으로 불용이 발생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의 경우에는 포상금 예산 2억원을 전액 집행하였다는 설명이다.

2)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상시단속 포상금으로 3,200만원, 제21대 대선포상금으로 70만원 집행

[제20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범죄신고포상금 지급 실적]

(단위: 천원)

선거명	연번	위반내용	지급일자	지급액
제20대 대통령선거	1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	2022.03.21.	300
	2	후보자 지지 서명부 비치	2022.04.21.	300
	3	선거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	2022.05.03.	800
	4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 제공	2022.12.09.	5,000
	5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 및 실비 제공	2023.04.05.	1,800
	합 계			
제21대 대통령선거	1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	2025.07.16.	200
	2	선거사무원에게 금품 제공	2025.12.12.	500
	합 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한 일반시민 등이며, 선관위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 정당 또는 해당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후보자와 선거사무관계자 등 이해관계인 등은 제외한다.

그런데, 선거범죄포상금의 지급 근거 및 기준을 살펴보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관리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에 근거하여 선거범죄사무편람에서 지급 금액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고발·수사의뢰, 이첩 및 수사자료 통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또는 5억원 이하로 포상금액이 높은 반면, 경고한 경우에는 50만원 이내로 포상금액이 낮다. 경고한 경우 포상금 지급 상한이 50만원에 불과하고, 상당액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중요 선거범죄 신고 및 고발·수사의뢰, 이첩 및 수사자료 통보는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아 포상금 지급 실적 저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범죄포상금 지급기준]

가. 고발·수사의뢰, 이첩 및 수사자료 통보한 경우

1)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범죄 신고자: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범죄인지 여부는 공무원 조직내부에서 상·하관계의 지위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하여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거범죄로서 주모자·참여자·행위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함.

2) '중요 선거범죄'신고자

가) 대상 범죄

(1) 금품·향응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2) 허위사실공표·비방행위

☞ 프로그램 등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조직적·계획적 행위로서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 또는 혐의입증이 곤란한 사안을 말함.

(3)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위 '1')을 제외

(4) 대규모 사조직·유사기관 이용 선거범죄

☞ 대규모 사조직 또는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그들로 하여금 불법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안을 말함.

(5)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 수수행위

(6) 불법선거여론조사

(7)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8) 담합에 의한 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행위

나) 포상금액: 5억 원 이하

3) 기타 선거범죄 신고자

가) 대상범죄: 위 '중요 선거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선거 및 정치자금 범죄

나) 포상금액: 5천만 원 이하

나. '경고'한 경우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되, 불법비용의 2배(최고 50만원) 이내 또는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함.

다.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동시에 신고한 경우

1) 포상금심사위원회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배분 지급함.

☞ 동일한 사안을 시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최초신고 후 기 신고된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신고하여 혐의입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심사위원회가 적정하게 결정하여 배분 지급함.

2)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여 지급함.(공선규칙 제143조의4 및 자금규칙 제47조)

라. 공정선거지원단이 신고한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이 인지·적발한 경우 활동실적과 근무상황이 우수한 공정선거지원단원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성과수당을 지급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사무편람에서 발췌

아울러, 현재 포상금제도와 관련한 홍보 내역을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법 안내 책자인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을 통해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법규 및 지급 사례를 안내하거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통해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안내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범죄포상금 제도의 홍보는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금액 확대, 선거범죄에 대한 신고 의식 고취를 위한 선거범죄포상금 제도에 관한 홍보 강화 등 포상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특별정려금(精勵金)은 선거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종 선거기간에 지급하는 격려금의 일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 및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다.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시 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및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은 월 15만원, 6급 이하는 월 10만씩,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총 11억 1,400만원의 특별정려금<sup>1)</sup>을 지급하였다.

[최근 공직선거 특별정려금 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구분	제20대 대선 (2022)	제8회 지선 (2022)	제22대 총선 (2024)	제21대 대선 (2025)
지급액	1,105	국비 139 (지방비 958)	1,400	<b>1,114</b>
지급인원	2,611	335(국비)	2,640	<b>2,628</b>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정려금 지급기준표<sup>2)</sup>]

직급별	지급액
5급(상당) 공무원	150,000원
6급(상당) 이하 공무원	100,000원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 1) 기타운영비(210-16) 비목으로 집행
- 2)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별표

## 나. 분석의견

특별정려금이 선거사무에 대한 격려금의 성격으로 공직선거 기간 전후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선거라는 선관위 본연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별도로 지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지급의 필요성과 지급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5년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특별정려금의 지급 대상을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법률의 위임에 따른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급 대상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는 특별정려금의 지급 대상으로 파견·위촉공무원도 명시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선관위 직원과 위촉공무원과의 처우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등의 분석<sup>3)</sup>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2026년 1월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지방선거부터는 파견·위촉공무원 중 월정액 지급이 가능한 읍·면·동선관위 간사 및 서기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직선거별 특별정려금 지급주체]

구분	중앙선관위 직원	시·도선관위 직원	구·시·군선관위 직원	읍·면·동선관위 간사·서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국가	국가	국가	제외 <sup>1)</sup>
지방선거	국가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주: 1) 읍·면·동선관위 간사·서기에 대한 국가의 특별정려금 지급은 추후 예산당국과 협의 후 규정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360-364.

[특별정려금 지급 규정 개정 내용]

구 분	규 정	
「선거관리위원회법」	<p>제19조의2(특별정려금 지급) ①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기간(準備期間을 포함한다)중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파견·위촉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선거 및 국민투표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이를 부담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국가가 부담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정려금은 선거실시가능기간의 개시일전 3월부터 선거일후 1월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선거유형별 지급대상·지급기간 및 지급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p>	
「특별정려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전	개정(2026.1.23.) 후
	<p>제2조(지급대상)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p> <p>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p> <p><u>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u>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p>	<p>제2조(지급대상) ① 특별정려금을 지급하는 선거(국민투표·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및 지급대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공직선거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선거</p> <p>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재선거를 포함한다)</p> <p><u>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및 파견·위촉 공무원 중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간사·서기[이하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상당) 이하 공무원등” 이라 한다]</u></p> <p>② 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가 특별정려금을 부담하는 경우, 특별정려금 지급대상에서 파견·위촉 공무원을 제외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별정려금 지급 범위가 파견·위촉 공무원까지 확대되었다고는 하나 15일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파견·위촉공무원 중 읍·면·동선관위 간사 및 서기만 지급이 가능하며, 공직선거 시 투표기간 및 개표일에만 위촉되는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과 투표기간 전후에 위촉되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등 선거사무종사자에게는 지급이 불가능한 문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그런데, 처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떠나서, 국가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선관위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인 선거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별도의 격려금 성격을 지닌 특별정려금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특별정려금은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5급 이하 선관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업무성과와 특별정려금 지급액 간 연계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보상 체계는 봉급, 수당, 성과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특별정려금은 이 체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통상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초과근무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 되는데, 특별정려금은 봉급 외에 시간외근무수당과 함께 지급되어 이중지급의 문제가 있다.

또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등 다른 직종의 공무원의 경우 선관위와 유사하게 월정액 형태의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는 찾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설령, 선관위 공무원의 선거사무 수행에 대한 보상 및 격려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월정액 형태의 특별정려금보다는 포상금 등을 활용하여 선거사무 수행의 공로와 성과에 따른 심사를 거쳐 포상금의 형태로 지급하거나, 초과근무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현업공무원 지정 또는 시간외근무시간 상한선 확대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의 선거업무 부실관리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특별정려금의 지급 필요성 및 지급 방식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가. 현황

위탁선거관리 사업<sup>1)</sup>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과 개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공단체 등의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위탁선거 및 주민투표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억 3,100만원 중 1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5회계연도 위탁선거관리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									202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위탁선거관리	136	136	-	△5	-	131	128	-	3	116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경비란 「선거관리위원회법」<sup>2)</sup>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sup>3)</sup>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를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를 말한다.

위탁선거는 농협(축협 포함)·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장 선거,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 국립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대한체육회장·지방체육회장 선거 등이 있으며, 법령에 따라 대상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하는 의무위탁선거와 재량에 따라 임의로 위탁할 수 있는 임의위탁선거로 구분된다.

권인오 예산분석관(kwonton@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131-306

2)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선거(이하 “위탁선거”라 한다)에 관한 사무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위탁선거”란 관할위원회가 공공단체등으로부터 선거의 관리를 위탁받은 선거를 말한다.

[위탁선거의 구분]

구분	의무위탁선거	임의위탁선거
내용	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	단체가 재량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선거
대상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li> <li>○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대학</li> <li>○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지방체육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li> <li>○ 그 밖에 의무·임의위탁선거 대상 단체에 준하는 단체로서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려는 단체</li> </ul>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작성

위탁선거경비는 크게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개정,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국가가 부담할 경비와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 제도·홍보,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 등 위탁단체가 부담할 경비로 구분된다.<sup>4)</sup> 전자는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로부터 별도로 납부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집행하고 남은 경비는 위탁단체에 반환하고 있다.

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선거관리경비) ① 위탁선거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단체가 부담한다. (이하 생략)

1. 위탁선거의 준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위탁선거에 관한 제도·홍보에 필요한 경비
  3. 위탁선거 위반행위의 단속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
- ③ 위탁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1. 위탁선거에 관한 사무편람의 제정·개정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위탁선거 사무의 지도·감독 등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나. 분석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 외로 운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국가재정에 포함되도록 수입대체경비 등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 회계연도의 국가 재정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계상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sup>5)</sup>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sup>6)</sup>

다만,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국가재정법」과 「국고금 관리법」은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현물출자, 전대차관, 차관물자대 초과지출, 전대차관 초과지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상 근거 없이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서에 명시되지 않은 자금을 임의로 운용하는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고, 국가 재정활동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는 예산을 근거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선거경비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는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은 2025년 결산 기준으로 1억 2,800만원에 불과한 반면, 위탁단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납부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는 위탁선거경비는 2025년 실제 집행액 기준으로 223억 1,1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세입세출예산으로 운용되는 위탁선거관리 사업비는 실제 위탁선거경비 집행액 224억 3,900만원<sup>7)</sup>의 0.57%에 불과한 수준으로, 대부분의 위탁선거경비가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집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5)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6) 「국고금 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7) 2025년 결산액 1억 2,800만원 + 위탁선거경비 집행액 223억 1,100만원

[위탁선거관리 건수 및 위탁선거경비 납부 및 집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위탁선거관리 건수	37	265 <sup>1)</sup>	1,376 <sup>2)</sup>	39 <sup>3)</sup>	1,190 <sup>4)</sup>
납부액	1,237	3,703	38,163	1,051	38,835
집행액	908	2,387	34,002	700	22,311
반환액	329	1,316	4,161	351	16,524
집행률	73.4	64.5	89.1	66.6	57.5

주: 1) 지방체육회장 선거 244회 포함

2) 동시조합장 선거 1,347회 포함

3) 조합장 23회, 국립대학 총장 7회, 체육회장 8회, 중앙회장 1회

4) 동시이사장 선거 1,101회 포함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위탁선거경비가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다 보니 국회의 예결산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으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25.8.14.)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위탁선거경비의 산출기준 및 결산서 등을 제출하고는 있으나 국회에 제출되어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고 있는 세입세출예산 수준의 투명성에는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아울러, 위탁선거에 쓰는 경비를 정당한 보고나 결재 절차 없이 집행하거나 지급결의서를 변조·허위 작성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는 선관위 자체 감사의 결과도 있었다.<sup>8)</sup>

한편, 2029년에는 전국동시신용협동조합이사장선거가 최초로 실시될 예정으로 대상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는 의무위탁선거의 대상도 증가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는 위탁선거경비의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8) KBS뉴스, “충북선관위, 선거 경비 230억원 임의 지출에 위·변조까지”, 2025.3.2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05289&ref=A>

[향후 주요 위탁선거 실시 일정]

연도	선거명	선거시기	비고
2026	2026 지방체육회장선거	2026년 12월	
2027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27년 3월	
2029	제2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029년 3월	
2029	제1회 전국동시신용협동조합이사장선거	2029년 11월	최초 실시
2030	2030 지방체육회장선거	2030년 12월	
2031	제5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31년 3월	
2033	제3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2033년 3월	
2033	제2회 전국동시신용협동조합이사장선거	2033년 11월	
2034	2034 지방체육회장선거	2034년 12월	

주: 전국 단위 의무위탁선거 기준. 국립대학총장선거 및 각 조합중앙회장 선거 제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시정요구가 있어 왔고, 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의 집행 결과를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세입세출 예산으로 편성하지는 않고 있다.

[위탁선거경비 예산총계주의 위배 관련 시정요구]

구 분	시정요구사항(유형) 및 지적사항
2019회계연도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예산 외 운용 관련 지적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더불어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으로 운용하는 방안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시정)</li> <li>○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 결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위탁선거경비 감사를 매년 실시하며 결산 내역 및 감사 결과를 매년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할 것(제도개선)</li> </ul>
2021회계연도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단체 부담경비의 예산 외 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단체 부담경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사항을 강구할 것(제도개선)</li> </ul>
2023회계연도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되는 위탁선거경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제도개선)</li> </ul>
2024회계연도 결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재정법」제17조상 예산총계주의를 고려하여,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제도개선)</li> </ul>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위탁선거경비의 법적 근거 없는 세입세출예산 외 운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22대국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위탁선거경비 세입·세출 외 운용 근거 마련 관련 의안 발의현황(제22대국회)]

의안번호	의안명	대표발의	관련 주요 내용	비고
2207939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및 중앙회장 선거를 의무위탁 선거로 규정하고 관련 규정 정비</li> <li>○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 및 산출기준, 결산서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li> <li>○ 위탁선거 운동의 제한·중지 규정 신설</li> </ul>	위탁선거 경비 세입·세출 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 반영 없이 대안반영 폐기
221240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 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li> <li>○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 메시지 이용 시 문자 외 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전송 근거 마련</li> <li>○ 개표참관인의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 2일로 함</li> <li>○ 관할구역에 적정 시설 등이 없는 경우 인접한 다른 구역에 개표소 설치 근거 마련</li> </ul>	소위계류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이와 같이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경우 예산총계주의의 예외가 적용되어 법적 효과가 인정되며, 「국가재정법」의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위탁선거경비를 운용함으로써 다양한 상황변화에 따른 융통성 있는 재정집행이 가능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의 재량에 따라 위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위탁선거의 특성상 예산안 편성·심의 단계에서 예산규모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선거기간이 두 회계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경비의 이월처리 문제 등이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2025.8.14.)으로 현재 시행규칙에 따라 제출하고 있던 위탁선거경비 산출기준, 결산개요, 사업설명자료, 성질별·세목별 집행내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은 위탁선거경비의 대부분이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등 사전에 실시가 예정된 의무위탁선거에 대한 것<sup>9)</sup>으로 예측가능성 문제로 인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은 설득력이 낮고, 두 회계연도에 걸쳐 있는 경비의 경우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하게 예산을 두 회계연도에 걸쳐 편성하거나 이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가재정 체계 내로 편입하는 것이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탁선거경비의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수수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수입대체경비로 볼 수 있으며, 수입대체경비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sup>10)</sup> 별도의 법령 개정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입대체경비의 예시로는 외교부의 여권발급수수료, 인사혁신처의 수탁출제경비, 국가인재원 교육과정 운영경비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보다는 위탁선거경비를 국가재정에 포함되도록 수입대체경비 등으로 운용하는 것이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9) 2025년 전체 위탁선거 1,190건 중 의무위탁선거가 1,136건(재보궐선거 53건 제외)이고, 임의위탁선거는 1건(국기원장)에 불과하였다.

10)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1. 국가가 특별한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고 그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경비
2. 수입의 범위 안에서 관련경비의 총액을 지출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경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I 결산 개요

## 1 현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24억원이며, 이 중 70.0%인 86억 7,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6억 1,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5회계연도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0	0	12,400	8,676	112	3,612	70.0

주: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배정됨  
자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 나.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현재 특별조사위원회의 자산은 16억 3,100만원, 부채는 1억 1,100만원으로 순자산은 15억 2,100만원이다.

자산은 금융자산 10억 500만원, 유·무형자산 5억 400만원, 기타자산 1억 2,2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4억 1,100만원(641.4 %) 증가하였다. 이는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등으로 금융자산이 전년 대비 10억 5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박은형 예산분석관(vitaly27@assembly.go.kr, 6788-4640)

부채는 차입부채 3백만원, 총당부채 1억 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대비 800만원(7.8%) 증가하였다. 이는 기타총당부채의 증가 등으로 총당부채가 6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특별조사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1,631	220	1,411	641.4
Ⅰ. 금융자산	1,005	0	1,005	순증
Ⅱ. 유·무형자산	504	216	288	133.3
Ⅲ. 기타자산	122	4	118	2,950.0
부 채	111	103	8	7.8
Ⅰ. 차입부채	3	3	0	0.0
Ⅱ. 총당부채	107	101	6	5.9
Ⅲ. 기타부채	0	0	0	0.0
순 자 산	1,521	116	1,405	1,211.2

자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73억 5,400만원 발생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순원가 9억 2,600만원, 관리운영비 64억 2,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대비 66억 6,700만원(970.5%) 증가한 73억 5,400만원으로 재정운영결과와 같다.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대비 2억 3,9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일반수용비 증가에 기인한다. 또한 관리운영비는 전년대비 64억 2,800만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건비가 32억 2,300만원 증가하고 기타 경비가 32억 500만원 증가하였다는 점 등에 기인한다.

[2025회계연도 특별조사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	926	687	239	34.8
II. 관리운영비	6,428	0	6,428	0.0
III. 비배분비용	0	0	0	0.0
IV. 비배분수익	0	0	0	0.0
V. 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	7,354	687	6,667	970.5
VI. 비교환수익 등	0	0	0	0.0
VII. 재정운영결과(V-VI)	7,354	687	6,667	970.5

자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조사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억 1,6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5억 2,1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4억 500만원(1,211.2%)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가 기초 대비 66억 6,700만원 증가하였으나,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이 이를 상회하여 기초 대비 79억 5,5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5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86억 7,600만원, 기타이전 수익 8,2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특별조사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116	0	116	0
II. 재정운영결과	7,354	687	6,667	970.5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8,758	803	7,955	990.7
IV. 조정항목	0	0	0	0
V. 기말순자산(I-II+III+IV)	1,521	116	1,405	1,211.2

자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2025회계 연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므로,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해당 예산과 관련한 별도의 국회 심의·논의 사항은 없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I 결산 개요

## 1 현 황

### 가. 세입·세출 결산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없으나, 1억 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1,0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다.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	-	-	110	110	-	-	100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52억 4,200만원으로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2025년 5월 26일에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2025년 12월 31일로 청산을 완료하면서 이를 전액 집행하였다.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6,763	16,763	15,242	15,242	-	-	100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라. 재무 결산

2025회계연도 말 기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자산은 전년 대비 33억 9,618만원이 감소된 0원으로, 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라 금융자산이 16억 6,660만원, 유·무형자산이 11억 3,923만원 및 기타자산이 5억 9,035만원 감소된 데 기인한다. 부채는 전년 대비 5억 4,207만원 감소된 0원으로, 이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라 총당부채가 5억 4,207만원의 감소한 데 기인하고 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전년 대비 28억 5,410만원이 감소된 0원이다.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프로그램 순원가는 33억 5,5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020만원 감소하였으며, 재정운영결과는 171억 1,303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9,988만원 감소하였다.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	3,396	△3,396	△100
Ⅰ. 유동자산	-	1,667	△1,667	△100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	880	△880	△100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	259	△259	△100
Ⅵ. 기타비유동자산	-	590	△590	△100
부 채	-	542	△542	△100
Ⅰ. 유동부채	-	-	-	-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총당부채	-	542	△542	△100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	2,854	△2,854	△100
Ⅰ. 기본순자산	-	-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	2,854	△2,854	△100
Ⅲ. 순자산 조정	-	-	-	-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355	4,666	△1,311	△28.1
가. 프로그램 총원가	3,355	4,666	△1,311	△28.1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13,849	14,609	△760	△5.5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92	162	△70	△43.2
V. 재정운영순원가(I+II+III-IV)	17,113	19,113	△2,000	△10.5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17,113	19,113	△2,000	△10.5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8억 5,4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0원으로 2025년 12월 31일로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청산을 완료하였기 때문이다. 재정운영결과는 171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이 감소하였다.

한편, 2025년 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등 재원의 조달 163억 6,200만원과 재원의 이전 21억 3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회계연도(A)	2024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기초순자산	2,854	4,182	△1,328	△31.7
II. 재정운영결과	17,113	19,113	△2,000	△10.5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4,259	17,785	△3,526	△19.8
IV. 조정항목	-	-	-	-
V. 기말순자산(I-II+III+IV)	-	2,854	△2,854	△100

자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2025년 5월 26일에 조사활동을 종료하고 2025년 12월 31일로 청산을 완료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안은 5개월 간 조사활동 및 이후 백서 작성과 청산 절차 수행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별도 논의사항은 없다.

결산분석시리즈 IV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발간일 2026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지동하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

ISSN 3140-322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http://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71-10

ISSN 3140-322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